

# 베트남 건축매뉴얼

2014. 2.



# CONTENTS

1. 베트남건설법	5
2. 베트남건축법(일반사항)	45
2-1. 종합병원 설계가이드	129
2-2. 직업훈련원 설계가이드	197
3. 베트남투자법	219
4. 베트남기업법	251
4-1. 사업자등록에 관한사항	361



# 베트남건설법



# 건 설 법

베트남 공화사회주의국의 국회가 규정된 건설법 2003년 11월 26일  
16/2003/QH11

10대 국회의 2011년 12월 25일자 10차 회의에서 적성된, 결의안 51/2001/QH10에 의해  
개정 및 추가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1992년 헌법에 준함

*이 법안은 건설 행위를 규정한다.*

## 제 1 장. 일반적 규정

### 제 1 조. 조정범위

이 법은 건설 행위 및 건설업에 투자하거나 종사하는 단체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 제 2 조. 적용 대상

이 법안은 국내 단체 및 개인,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의 건설 활동에 투자 또는 종사하는 외국 단체 및 개인에 적용된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서명하거나 승인한 국제 조약이 이 법안과 상이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경우, 그 국제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 3 조. 용어의 해석

이 법안에서는, 다음 용어들이 아래와 같이 해석된다:

1. “건설 활동”이란 건설 종합 계획의 체계화, 건설공사의 체계화, 건설측량, 건설공사계획, 시공, 시공 감독, 건설공사 투자계획의 관리, 도급자의 선정 및 기타 건설공사 관련 행위로 구성된다.
2. “건설 공사”란 인간 노동력과 건물 자재, 그리고 지상 및 지하 또는 수면을 포함할 수 있고, 설계에 부합하여 지어지는 대지의 고정 지역에 설치된 장비의 산물을 뜻한다. 건설 공사는 공공 건설 공사, 주거, 산업 시설, 교통 시설, 관개 시설, 에너지 시설 및 기타 시설의 공사를 포함한다.
3. “공사에 설치된 장비”란 건물 장비 및 기술 장비로 이루어진다. 건물 장비는 공사 계획에 부합하여 건설 공사에 설치된 장비를 뜻한다. 기술 장비는 기술 계획에 부합하여 건설 공사에 설치된 기술 선 내의 장비를 뜻한다
4. “건물 시공”이란 다음 공사 및 그러한 공사에 설치된 장비로 이루어진다: 신규 공사; 보수 공사, 수선 공사, 이전 공사, 개량 또는 복원 공사; 공사 장비의 철거; 공사 행정 및 관리.
5. “기술 기반 공사 계통”이란 교통 장치, 정보 및 통신 장치, 에너지 공급 장치, 공공

조명 장치, 수도 공급 및 배수 장치, 오물 처리 장치 및 기타 공사로 이루어진다.

6. “사회 기반 공사 계통”이란 의료, 문화, 교육, 스포츠, 상업 시설, 공공 시설, 수목, 공원, 수도 및 다른 공사로 이루어진다.

7. “적색선 경계”란 건설 공사가 허용된 대지와 도로로 지정된 대지, 기술 기반 공사 및 기타 공공 장소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종합 계획 또는 실제 대지의 도면에 근거하여 확정된 경계를 뜻한다

8. “건설 경계”란 대지의 한 구획에 건설이 허용된 한계를 표시하는 경계를 뜻한다

9. “건설 종합 계획”이란 도시 공간 및 전원 주거 지역의 조성, 기술 및 사회 기반 공사, 영토 내 모든 지역의 거주자들을 위한 적합한 생태 환경의 조성, 국가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조정의 확보, 사회경제 개발, 국가 방위와 보안, 환경 보호의 목표 달성 등을 뜻한다. 건설 종합 계획은 차트, 도면, 모형 및 주해 등으로 구성된 건설 구역 계획으로 표현될 수 있다.

10. “지역 건설 종합 계획”이란 전원 주거 지역의 계통, 그리고 때때로 사회 경제 개발의 요구를 포함하는 한 지방 또는 지방 교차 지역의 행정 경계 내의 기술 및 사회 기반 건설의 조성을 뜻한다.

11. “도시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이란, 사회 경제 개발을 위한 전체 종합 계획, 그리고 때때로 국가 방위 및 각 지역 및 주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개발 종합 계획에 부합하는 도시 공간 그리고 기술 및 사회 기반의 계통 조성을 의미한다.

12. “도시 건설의 세부 종합 계획”이란, 시공 관리, 정보 제공, 공사 허가권의 발행, 건설 공사를 위한 투자 계획을 개시하기 위한 대지의 할당 및 임대 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도시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 내용의 세부화를 의미한다

13. “전원 주거 지역의 건설 종합 계획”이란 전원 주거 지역을 위한 공간, 그리고 기술 및 사회 기반 계통의 조성을 의미한다.

14. “전원 주거 지역”이란 생산 및 주거, 그리고 정해진 지역 내에서의 기타 사회적 활동을 위해 상호간 긴밀히 연결된 다수의 주거가 집중된 지역을 의미하며, 자연 조건, 사회 경제 조건, 문화, 관습, 풍속 및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 형성된 자치 행정 중심, 촌락, 마을, 공동 촌락, 소규모 촌락, 산지 마을, 산지 촌락 및 소수 인종 마을 (하기에 종합적으로 촌락으로 일컬어짐) 을 포함한다

15. “도시 설계”란 도시 지역내의 건축, 각 기능 구역의 조경, 도시 지역 내의 도로 및 기타공공 장소 상의 도시 건설에 관한 일반 및 상세 종합 계획으로부터 특정 계획을 체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16. “건물 시공의 투자 보고서”란, 투자를 허가하는 관할 당국에 제출하기 위한, 건물 시공에서의 투자 지침을 위한 지원 서류를 의미한다.

17.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이란, 주어진 기간내에 공사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개발, 관리, 향상하기 위한, 신축, 확장 또는 보수 공사를 위한 자본 지출에 관련된 제안

서의 집합을 의미한다.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은 해설 부분과 예비 설계의 부분을 포함한다.

18. “건설 공사의 경제기술 보고서”이란 법규에 규정된 기본 요구사항들만을 기술하는 건설 시공을 위한 요약된 투자 기획을 의미한다

19. “건설 규정”이란 건설관련 국가행정기관에 의해 공포된, 건설 행위에 적용되는 의무 규정을 의미한다.

20. “건설 표준”이란, 관할 단체 나 조직에 의해 발행되거나 건설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지되는 기술 표준, 경제기술 척도, 기술 업무의 시행 순서, 기술 척도와 지침 및 자연 지침 등에 대한 규정을 의미한다. 건설 표준은 의무 규정 또는 그 적용이 권장되는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21. “시공 건설의 투자자”란 자본가 또는 건물 시공의 자본의 관리 및 활용에 선임된 개인을 의미한다

22. “건설 행위에서의 도급자”란 건설 행위의 완전한 능력이 있는 조직, 또는 건설 실무의 완전한 능력이 있는 개인으로서, 건설 행위에 관련된 계약 관계에 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23. “일반 건설 도급자”란 건설 공사의 한 업무나 모든 투자 기획 업무에 관한 전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건설 공사의 투자자와 직접 계약에 가담하는 도급자를 의미한다. 일반 건설 도급자는 다음의 주요 형태를 포함한다: 일반 설계 도급자; 일반 시공 도급자; 건설 공사 기술 장비의 설계 및 조달을 위한 일반 도급자; 건설 공사, 설계, 산업 장비의 조달 및 시공에 대한 투자 기획의 체계화를 위한 일반 도급자

24. “건설 행위에서의 수석 도급자”란 한 업무의 주요 부분 또는 건물 시공을 위한 투자 기획을 실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건설 공사의 투자자와 직접 계약에 가담하는 도급자를 의미한다.

26. “단독 주택”이란, 법안에 부합하는 개인 세대가 사용권한을 소유하는 대지 경계 내에 지어진 건물을 뜻한다.

27. “예비 설계”란 전체 투자 자본의 수준을 준비하기 위해 기본 충족 조건을 제시하는 설계안을 표현하는 설명 및 도면으로 구성된 자료의 모음으로서, 이어지는 설계 단계를 개시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28. “저작자의 감독”이란, 시공이 설계를 정확하게 따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건물의 시공 과정 동안 이루어지는 설계자에 의한 감독을 의미한다.

29. “시공 건물 사고”란 허용 안전 한계를 초과하는 파손, 시공 건물의 낙하 위험, 시공 건물 전체 혹은 일부의 파손을 뜻하거나, 또는 시공 건물이 설계된 대로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제 4 조. 건설활동 기본 원칙**

1. 건설물이 종합 계획 및 건물의 설계에 부합하여 지어질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시

공 건물의 미, 그리고 환경 및 일반 조경의 보호를 보증해야 한다; 건물이 자연 조건 및 지역의 특정 문화 사회적 조건에 부합하게 시공됨을 보증해야 한다; 그리고 시공 건물이 사회 경제 개발과 국가 방위 및 보안을 병합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건설 절차 및 건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시공 건물의 품질, 일정 및 안전을 보증해야 한다; 사람의 생활과 번영을 보증해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소방, 폭파의 예방을 보증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 위생을 보증해야 한다;

4. 각 건물 동시적인 시공 및 기술 기반 설비의 동시적인 시공을 보장해야 한다

5. 경제성 및 효율성을 보증해야 한다; 지출 낭비나 손실이 없고 시공에서의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없음을 보증해야 한다

### **제 5 조. 건설 공사의 형태와 수준**

1. 건설 공사는 공사의 형태와 수준으로 분류된다.

2. 건설 공사의 형태는 그 사용 기능에 따라 정해진다. 각 건설 공사의 형태는 특수 수준, 수준 I, 수준 II, 수준 III 및 수준 IV 로 구성되는 다섯 가지 수준으로 나뉘어진다.

3. 건설 공사의 수준은 규모, 기술 요구사항, 건설 공사에 사용된 자재, 건물의 수명에 근거한 시공 건물의 형태에 부합하여 정해진다

4. 정부는 건설 공사의 분류와 수준에 관한 규정을 제시한다.

5. 경제성 및 효율성을 보증해야 한다; 지출 낭비나 손실이 없고 시공에서의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없음을 보증해야 한다.

### **제6조 건설 규정 및 건설 표준**

1. 건설 규정 및 건설 표준의 편성은 건설 행위에서의 일정한 적용을 위해 건설관련 국가 행정기관에 의해 공포되거나 인지되어야 한다.

2. 건설 행위는 건설 규정 및 건설 표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외국 건설 표준이 적용되는 경우, 건설관련 국가행정기관의 승인이 요구된다.

3. 단체나 개인은 건설 규정 및 건설 표준을 연구하고, 이를 공포 또는 인지시키기 위해 건설관련 국가행정기관에 제안할 수 있다.

### **제 7 조. 건설 기술 능력, 건설 활동 능력**

1. 건설 기술 능력은 건설 행위에 참여하는 개인에 관해 규정된다. 건설 활동 능력은 건설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관해 규정된다.

2. 개인의 건설 기술 능력은 합법한 전문 훈련 기관이 인증하는 전문 수준과 경험 및 전문 윤리에 기반을 둔 등급에 부합하여 정의된다.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건설 종합 계획의 설계, 건설 측량, 건물 설계 또는 건물 시공 감독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은 적합한 실무 인증을 지녀야 하고 그 자신의 업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단체의 건설 활동 능력은 그 단체 내의 개인들의 건설 실무 능력, 그리고 건설 활동, 경제 수용 능력, 장비 및 단체의 관리 능력에 관한 경험에 기반을 둔 등급에 부합하여 정의된다.

4.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의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 단체 및 개인은 반드시 이 조의 조항 1,2, 및 3에 공보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또 건설관련 국가행정기관으로 부터 업무승인을 받아야 한다.

5.정부는, 건설 활동을 위한 단체의 능력, 건설 실무를 위한 개인의 능력, 건물의 형태와 수준에 적합한 개인의 실무 인증 발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 제 8 조. 건설에대한 법 이행 감리

1.국회, 국회 상무 위원회, 민족 회의, 국회의 위원회, 국회 대표단, 국회의원, 인민회의, 인민회의 상무, 인민회의의 조직, 각지방의 인민회의의 대표자는 자기의 임무, 권한에 건설에 대한 법률 이행을 감리책임을 가진다.

2.베트남 조국 전선 및 그의구성원은 자기의 임무, 권한에 국민이 이행하기 설명하고 이행 동원하는 책임을 가지고 건설에 대한 법률 이행 감리 책임을 가진다.

### 제 9 조. 건설 활동에 격려 정책

국가는 단체 및 개인이 선진 건설 기술 과학을 적용 하고, 새로운 자재를 사용하고, 재원을 절약 하고 환경보호하는 연구에 격려하고 조건을 이루어 진다. 단체, 개인이 깊은 구역, 먼곳에, 특별 어려운 구역, 홍수의 구역에 기획에 따라 건설활동에 참여하기 조건을 이루어진다.

### 제 10 조. 건설 활동에 금지 행위

건설 활동에 다음 행위는 금지하여야 한다.

1.건설이 금지된 곳에서의 건설 행위; 통행로의 안전 지대, 관개 시설, 제방, 에너지 시설, 문화 혹은 역사 유물 지역 및 법안에 부합하는 다른 시설을 위한 보호 지대 지역 등을 침입하거나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건설 행위; 사태나 홍수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제외한 모든 건설 행위.

2.종합 계획에 반하거나, 시공 건물의 시공 경계 및 표준 지상 바닥 높이를 위반하는 건설 행위; 법안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건설 행위 또는 발행된 건설 허가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이루어지는 건설 행위.

3.시공 실무 또는 건설 활동 능력을 초과하는 건설 활동에 참여하는 도급자; 도급자가 시공 실무 또는 건설 활동 능력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경우.

4.건설 규정 및 건설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건설 행위

5.건설에 사 개인 생명 및 재산의 안전 및 건설의 환경 관항 규정을 위반할 경우

6.승인되고 공공공간, 공공장소, 복도 또는 이미 승인되고 공포된 건설 종합 계획의 영향을 받는 다른 지역을 침범하거나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확장도 건물의 건설

7. 건설 행위 중의 뇌물 수수 행위, 입찰을 매매하거나, 또는 입찰가를 입찰 대상의 시공사 보다 싼 가격으로 낮추려는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입찰에 응할 경우
8. 건설법 위반을 위해 직위나 권력을 악용하는 경우, 건설법의 위배를 묵인하거나 은닉할 경우
9. 합법적 건설 행위의 방해
10. 건설법에 위반하는 기타 행위

## 제2장 건설종합계획

### 2.1. 일반규정

#### 제 11 조. 건설 종합 계획

1. 건설 종합 계획은 그 계획에 뒤따르는 건설 행위의 근간을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체계화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건설 종합 계획은 5년, 10년 주기로 체계화되며 장기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건설 종합 계획은 사회 경제 개발의 현화에 대한 적합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건설 종합 계획의 개정은 이전에 체계화되고 승인된 건설 계획을 이어받는 전통을 보장해야 한다.

2. 국가는 건설 종합 계획의 체계화 업무를 위한 국가 재정 예산을 보장해야 하며 그 업무를 위한 기타 재원으로부터의 재정 증액 정책을 가져야 한다. 국가 재정 예산은, 지역 건설 종합, 일반 도시 건설 종합 계획, 전원 주거 지역에 관한 건설 종합 계획 및 업무 중심 건설 투자 기획의 외부에 위치한 기능 지역에 대한 상세 종합 계획 등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 내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3. 모든 단계의 국민 위원회는, 건설 행위, 건설 시공의 투자 기획 행위 및 실제 건물 시공을 관리하는 토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위원회가 임명된 행정단국의 행정구역 내 건설 종합 계획의 체계화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4. 국민 위원회가 건설 종합 계획의 체계화, 개정 및 승인, 또는 개정 건설 종합 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역할을 위해 전문가를 초비하고 고문을 고용할 수 있다.

5. 모든 단체 및 개인은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건설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 제 12 조. 건설 종합 계획의 분류

1. 건설 종합 계획은 다음의 3가지로 분류된다.

- (a) 지역 건설 종합 계획
- (b) 도시 건설의 일반 및 세부 종합 계획을 포함하는 도시 건설 종합 계획
- (c) 전원 주거 지역 건설의 종합 계획

#### 제 13 조. 건설 종합 계획에 적용되는 일반 요구사항

1.전체 사회 경제 개발, 타 지역의 개발 종합 계획 및 대지 용도 지구에 부합해야 한다, 세부 건설 종합 계획은 일반 건설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건설 종합 계획은 국가 방위 및 보안을 보장하고 사회 경제 개발의 기동력을 생성해야 한다.

2. 자연 조건에 부합하는 자연 자원, 대지 및 기차 자원의 적합한 개발 및 사용, 역사적 특징, 사회 경제적 조건 및 각 개발 단계에 있어서의 국가의 과학 기술적 진보를 기반으로 한 지역 공간을 구성하고 조정해야 한다.

3.편안하고 안전하며안정적인 환경을 생성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환경과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역사 문화적 명소 및 자연 경관을 보존하며, 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 발전 시켜야 한다.

4. 종합 계획 준비 작업, 투자 관리, 건설 투자 유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 **제 14 조. 건설 종합 계획을 설계하는 단체 및 개인에 적용되는 조건**

1.건설 종합 계획을 설계하는 단체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a) 건설 종합 계획의 설계 활동을 위해 등록되어야 한다
- (b) 건설 종합 계획의 설계 활동에 대한 전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 (c) 건설 종합 계획의 도면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그러한 도면의 특수 부분의 설계를 담당하는 개인은 반드시 건설 실무에 대한 전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각 건설 종합 계획의 형태에 대한 적합한 실무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건설 종합 계획의 설계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모든 개인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a) 건설 종합 계획의 설계에 관한 전적인 실무 능력과 실무 자격을 가져야 한다
- (b) 건설 종합 계획의 설계 활동을 위해 등록되어야 한다.

정부는 건설 종합 계획의 설계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개인의 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 **2.2. 지역 건설 종합 계획**

#### **제 15 조. 지역 건설 종합 계획**

1. 지역 건설 종합 계획의 과업을 체계화하는 책임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 (a) 건설부 장관은 핵심 지역 및 지방 교차 지역의 지역 건설 종합 계획의 과업을 체계화하여야 하고, 관련 부처 및 지방 국민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정부의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b) 중앙 당국 예하 지방 및 도시의 국민 위원회 (이하 지방 국민 위원회) 는, 그들이 관리하는 행정 구역 내에서 지방 건설 종합 계획의 과업을 체계화하여야 하며, 중앙 당국 예하 지방 및 도시의 국민 위원회 (이하 지방 국민 위원회) 에 이를 제출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2. 지방 건설 종합 계획의 과업의 내용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지역의 사회 경제 개발에 대한 종합 계획, 그리고 5년, 10년 주기 혹은 보다 장기의 인구 배치에 대한 국가 전략에 일관된 도시 및 전원 인구 규모의 예측
- (b) 기본 산업 토대를 위한 공간 구성; 지역 전체의 사회 경제 개발 종합 계획에 일관된 각 단계의 영역 내에서 기술 및 사회 기반의 체계 구성

(c) 국가 방위 및 보안, 그리고 전체 지역의 자연 자원 개발을 보증하는, 각 지역의 지리적 및 자연적 조건에 일관된 도시 계통 및 전원 주거 지역의 구성

### 제 16 조. 지역 건설 종합 계획의 내용

지역 건설 종합 계획은 반드시 주요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1. 산업, 농업, 임업 및 관광업의 지원을 목표로하는 도시 및 주거 지역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기술 기반 시설을 적소에 배치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공간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특수화된 지부 시설을 위한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4. 개발 요구를 보조하기 위해 지정지를 마련해야 한다

### 제 17 조. 지역 건설 종합 계획을 체계화, 평가 및 승인권한

1. 건설부 장관은 핵심 지역 및 지방 교차 지역에 대한 지역 건설 종합 계획의 체계화 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관련 부처와 지방 국민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정부의 국무 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지방 국민 위원회는, 동급의 국민 평의회가 결정을 내린 후, 그들이 관리하는 행정구역 내의 지역 건설 종합 계획을 승인할 책임이 있다.

### 제 18 조. 지역 개발 종합 계획의 개정

1. 지역 건설 종합 계획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하에 개정되어야 한다:
  - (a) 전반적인 지역 사회 경제 개발 종합 계획, 지역내 지부의 종합 개발 계획, 또는 국가 방위 및 보안 전략에 변화가 있을 경우;
  - (b) 지리적, 자연적 또는 사회 경제적 조건 혹은 인구 변화가 있을 경우.
2. 지역 건설 종합 계획의 개정 업무 및 그 개정안을 승인하는 당국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 (a) 정부의 국무 총리는, 관련 부처 및 국민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건설부 장관이 제안한 핵심 지역 및 지방 교차 지역에 관한 지역 건설 종합 계획의 개정 업무 및 그 개정안을 승인해야 한다.
  - (b) 지방 국민 위원회는 그들이 관리하는 행정구역내의 개정 업무 및 개정될 지역 건설 종합 계획을 체계화해야 하고, 이를 동급의 국민 평의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 2.3. 도시 건설 종합 계획

### 제 19 조. 도시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 업무

1. 도시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 업무에 대한 책임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a) 건설부 장관은 신규 지방 교차 도시 지역, 첨단 기술 지역 및 특수 경제 지구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 업무를 체계화하여야 하며, 관련 부처 및 국민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정부의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b) 지방 국민 위원회는 특수 분류 및 분류 1 과 2 에 해당하는 도시 지역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을 체계화하고 이를 동급의 국민 평의회에 제출하여 통과하도록 해야한다. 건설부 장관은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정부의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분류 3의 도시 지역에 관련하여, 지방 국민 위원회는 일반 건설 종합 계획 업무를 체계화하고 이를 동급의 국민 평의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c) 지구, 자치구 및 지방 도시의 국민 위원회 (이하 모두 지구 국민 위원회) 는, 그 위원회가 관리하는 행정구역내의 분류 4 및 5 에 해당하는 도시 지역의 일반 건설 종합 계획 업무를 체계화하고, 이 종합 계획을 그 지구, 자치구 또는 지방 도시의 국민 평의회 (이하 지구 국민 평의회) 에 제출하여 통과시키고, 이를 다시 지방 국민 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2. 도시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 업무 내용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도시 지역의 성격 및 도시 인구의 규모, 각 5년 및 10년 주기의 도시 공간과 기술 및 사회 기반 시설의 개발 방향, 그리고 20년 주기의 도시 지역 개발 방향 예측을 마련

(b) 도시 발전의 일반 건설 종합 계획과 관련하여, 이 조의 조항 2의 (a) 절에 규정된 항목에 추가적으로, 개척되어야 하는 부지, 재개발을 위해 유보되어야 하는 지역, 보호되어야 하는 지역, 각 도시 지역의 특수한 성격에 따른 특수 요구사항의 마련

## 제 20 조. 도시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의 내용

1. 도시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은 각 계획 단계간의 인구 규모에 맞추어 도시 지역의 전체 사용 대지 면적을 결정해야 한다; 도시 지역에서의 기능 지역을 배치해야 한다; 인구 밀도, 대지 사용 효율 및 기타 각 기능 지역 및 도시 지역에 대한 경제 기술 척도를 결정해야 한다; 전체 도시 기술 기반 시설, 건설 경계 및 주요 도시 도로망을 위한 적색선 경계, 그리고 각 지역 및 전체 도시 지역의 표준 지면 높이의 통제를 확정해야 한다.

2. 도시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은 건설 법규 및 건설 표준에 부합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지세, 수목, 수면 및 기타 계획 대지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국가 문화 정체성을 유지 해야 한다.

3. 도시 발전의 일반 종합 계획은 설정된 업무와 일관되게 기존 건물 및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 21 조. 도시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을 체계화하고 승인권한

1. 건설부 장관은 신규 지방 교차 도시 지역, 첨단 기술 지구 및 특수 경제 지구의 일반 종합 계획을 체계화하여야 하며, 관련 부처 및 국민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의 국무 총리에게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방 국민 위원회는 그들 각 지방내의 특수 분류 및 분류 1 및 2 에 해당하는 도시 지역 건설에 대한 일반 종합 계획을 체계화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동급의 국민 평의회에 제출하여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부 장관은 평가를 수행하고 국가의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분류 3에 관련하여, 지방 국민 위원회는 도시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을 체계화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동급의 국민 평의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3. 지구 국민 위원회는 분류 4 및 5에 해당하는 도시 지역 건설에 대한 종합 개발 계획을 체계화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동급의 국민 평의회에 제출하여 통과되도록 하고, 또 동급의 지방 국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 22 조. 도시 건설 일반 종합 계획의 개정

1. 도시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하에 개정되어야 한다:

(a) 지역의 사회 경제 개발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경우

(b) 도시 건설 및 도시 개발 방향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기타 목표를 위해 자본 자원으로

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  
(c) 지리적 그리고 자연적 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2. 종합 계획 업무 및 도시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을 승인할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은 개정 종합 계획 업무 및 개정 후의 도시 건설 일반 종합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 제 23 조. 도시 건설의 세부 종합 계획 준비 업무

1. 지구 국민 위원회는, 사회 경제 개발, 건설 감독의 요구사항, 건물 시공에 있어서 투자자의 요구사항 및 계획 구역내 시민의 의견 등을 기반으로 도시 건설의 세부 종합 계획 업무를 체계화할 책임이 있으나, 그 세부 종합 계획은 승인된 도시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도시 건설의 세부 종합 계획 준비 업무는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

- (a) 사용될 대지의 필수 면적, 그리고 세부 종합 계획, 도시 설계 및 설계되는 지역 내의 기술 및 사회 기반 시설의 동시적인 설계 등의 규모 및 범위
- (b) 발전 종합 계획의 대상 지역 내에서 보존이 요구되는 건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법안 제안 목록의 준비
- (c) 설계되는 각 지역에 적용되는 기타 요구사항

### 제 24 조. 도시 건설의 세부 종합 계획의 내용

1. 도시 건설의 세부 종합 계획은 다음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a) 도시 건설의 세부 종합 계획이 마련되는 지역 내에서, 여러 형태의 건물의 시공을 위한 대지 면적을 확정해야 한다.
- (b) 도시 건설의 세부 종합 계획이 마련되는 지역 내에서, 적색선 경계, 건설 경계, 기술 기반 시설에 관한 표준 지면 높이를 확정해야 한다.
- (c) 도시 지역의 기술 기반 시설 계통, 경관과 생태 환경을 보충하기 위한 척도, 관련 경제 기술 척도 등의 설계안을 포함해야 한다.
- (d) 도시 발전의 세부 종합 계획과 관련하여, 설정된 업무 및 그 지역의 건설 일반 종합 계획에 일관된 기존 건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 제 25 조. 도시 건설의 세부 종합 계획을 승인하는 당국

- 1. 지방 국민 위원회는 특수 분류 및 분류 1, 2 와 3 에 해당하는 도시 지역의 건설에 관한 세부 종합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 2. 지구 국민 위원회는 분류 4 와 5에 해당하는 도시 지역의 건설에 관한 세부 종합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 제 26 조. 도시 건설 세부 종합 계획의 개정

1. 도시 건설의 세부 종합 계획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일 때 개정되어야 한다:

- (a) 도시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이 개정될 경우
  - (b) 투자를 장려하고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도시 건설의 세부 종합 계획을 승인할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은 도시 건설의 개정 세부 종합 계획도 승인해야 한다.
3. 이 조의 조항 1(b) 에 규정된 대로 도시 건설의 세부 종합 계획을 개정할 경우, 그 계획 구역 내의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며,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에 대한 구조는 크게 변해서는 안 된다.

## 제 27 조. 도시 설계

1. 도시 설계의 내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 도시 건설의 일반 종합 계획에 관련한 도시 설계는 시공 건물 그리고 각 도로 및 전체 도시 지역의 조경에 대한 건축 공간을 규정하고 표현해야 하며, 각 지역 및 전체 도시 지역에서의 시공 건물의 고도 제한을 규정해야 한다.

(b) 도시 건설의 세부 종합 계획에 관련한 도시 설계는, 각 도로망에서 도로 표면의 표준 지면 높이, 포장 도로, 시공 건물의 기초 및 바닥, 시공 건물의 높이, 수직면의 건축, 지붕 건축의 형태 및 건물의 색상을 규정하고 표현해야 한다

(c) 도시 설계는 지역의 자연조건에 일관되게, 그리고 설계되는 지역의 자연 및 인공 경관에 조화롭게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수면과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문화적 자취와 역사적 유산을 보호하며, 국가 문화 정체성을 보존해야 한다

2. 지방 국민 위원회는 승인된 도시 설계대로 건설을 감독하기 위해 건축 관리에 관한 법규를 공포해야 한다.

3. 정부는 도시 설계에 관한 특수 법규를 제시해야 한다.

## 2.4. 전원 주거 지역의 건설 종합 계획

### 제 28 조. 전원 주거 지역 건설 종합 계획 업무

1. 지방 국민 위원회는 전원 주거 지역의 건설 종합 계획 업무를 체계화 하여야 하고, 이를 동급의 국민 평의회에 제출하여 통과하도록 하며, 다시 국민 위원회에 재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2. 전원 주거 지역의 건설 종합 계획 업무의 내용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각 단계동안 전원 주거 지역에서 증가된 인구 규모의 예측

(b) 전원 주거 지역 내의 생산 기초, 소규모 산업 및 전통 공예 마을을 위한 공간 구성

(c) 주거 지역의 개발 방향.

### 제 29 조. 전원 주거 지역의 종합 계획의 내용

1. 기능지역, 기술 및 사회 기반 시설의 계통 및 각 주거 지역의 개발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시민들의 건설 활동을 이끌기 위해 각 지역의 자연 조건 및 관습과 풍속에 부합하는 견본 주택의 설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자치구 중심이 되는 지역의 건설에 대한 상세 종합 계획은 관청 및 기관의 본관, 교육 시설, 의료 시설, 문화 활동 및 스포츠, 상업 및 서비스 센터, 그리고 기타 건물등의 위치와 면적을 결정해야 한다.

3. 오랜 기간동안 존재해온 전원 주거 지역에 관련해서는, 건설 종합 계획이 실행될 때 기능 지역과 기술 및 사회 기반 시설의 증진 및 윤색에 관한 설계가 있어야 한다.

### 제 30 조. 전원 주거 지역에서의 건설 종합 계획을 체계화하고 승인하는 당국

1. 전원 주거 지역에서의 건설 종합 계획은 다음 중 한가지 개정되어야 한다

(a) 지역 사회 경제 개발 전략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경우

(b) 지역 건설 종합 계획의 개정이 있을 경우

(c) 지형 및 자연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지구 국민 위원회는 건설 종합 계획의 개정 업무를 승인해야 하고, 그 국민 위원회가 관리하는 행정구역 내의 전원 주거 지역에 적용 가능하도록 계획이 개정된 후 그 건설 종합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 제 31 조. 전원 주거 지역의 건설 종합 계획의 개정

1. 전원 주거 지역에서의 건설 종합 계획은 다음 중 한가지 상황일때 개정되어야 한다:
  - (a) 지역 사회 경제 개발 전략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경우
  - (b) 지역 건설 종합 계획의 개정이 있을 경우
  - (c) 지형 및 자연 조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2. 지구 국민 위원회는 건설 종합 계획의 개정 업무를 승인해야 하고, 그 국민 위원회가 관리하는 행정구역 내의 전원 주거 지역에 적용 가능하도록 계획이 개정된 후 그 건설 종합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 2.5. 건설 계획 관리

### 제 32 조. 건설 종합 계획의 통보

1. 세부 건설 종합 계획의 체계화 과정 동안, 각 형태의 건설 종합 계획 업무에 관계된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2. 건설 종합 계획이 관할 국기 기관으로부터 승인된 날짜로부터 업무일 기준 30일의 기한 내에, 모든 단계의 국민 위원회는 그들이 정보를 관리하고 감사 및 수행을 실시하는 행정구역내의 세부 건설 종합 계획을 그 계획 구역내의 단체와 개인에게 널리 공포해야 한다. 지역 및 일반 건설 종합 계획 공포의 경우, 계획을 승인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은 공포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3. 승인된 건설 종합 계획을 기반으로, 지방 국민 위원회는 다음의 수행 방향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4. 건설 종합 계획을 공포할 책임이 있는 개인은 종합 계획 공포의 실패, 혹은 건물 시공에 투자하기 위해 대지 정리가 수행되어야 할때 경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공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승인된 세부 종합 계획이 공포 일자로부터 3년의 기한내에 실행되지 않거나 만족스럽게 실행되지 못할 경우, 그 계획을 승인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은 이 상황을 고칠 수 있을지 판단하고 이를 계획 구역 내의 단체 및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세부 종합 계획이 수행될 수 없을 경우, 이 조의 조항 2 의 규정에 부합하여 개정 또는 철회되고 또 재공포 되어야 한다.

### 제 33 조. 건설 종합 계획의 정보 제공

1. 모든 단계의 건설 행정 기관은 건설 종합 계획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행정 기관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건물을 시공하기 희망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건설 종합 계획의 인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정보는 다음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 (a) 건설 종합 계획, 구성 차트, 건설 종합 계획의 모형 및 도면 등의 공공 전시
  - (b) 건설 종합 계획의 설명;
  - (c) 건설 종합 계획 인증의 제공;
3. 건설 종합 계획의 인증은 대지 사용에 관한 정보, 기술 기반 시설 계통, 건축, 화재 예방, 소방 및 폭발 예방,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 그리고 기타 세부 건설 종합 계획에 관련된 규정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제 34 조. 건설 종합 계획의 행정 관리 내용

1. 건설 종합 계획의 행정 관리는 다음 내용들로 이루어진다:
  - (a) 종합 계획, 건축, 건설에 대한 투자 유치 정책에 관한 규정 권한의 공포
  - (b) 건설 종합 계획에 부합하는 건물 시공의 관리

- (c) 대지 상의 경계 표시 관리
  - (d) 도시 기술 기반 시설의 동시 시공 관리
  - (dd) 건설의 중지, 행정 처벌의 부과, 불법적으로 지어지거나 허가 또는 건설 종합 계획에 위배하여 지어진 건물들의 강제 철거 해결
2. 건설 종합 계획을 관리하는 당국을 대표하는 개인은 그들에게 주어진 행정 업무에 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뒤늦은 결정이나 당국과 반대로 내려진 결정으로 인해 발생된 국가나 국민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 제 3 장.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

### 제 35 조. 건물 건설 투자 프로젝트

1. 건물 시공에 있어 투자자가 투자를 할때, 이 조의 조항 3항 및 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안을 형성해야 한다.
2.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은 그 규모 및 투자된 자본의 성격 및 재원에 따라 분류된다. 형성된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 내용은 각 기획 형태의 요구사항에 일치해야 한다
3. 다음 시공 건물은 경제 기술 보고서를 작성할 것만이 요구된다:
4. 이 조의 3항에 기술된대로, 건물 시공의 경제 기술 보고서의 내용은, 투자의 필요성, 건물 시공 및 그 위치의 목적, 건물의 규모 및 생산 수용량; 건물의 등급, 자원, 영향 및 건설 기간; 실시 설계 도면, 건물 시공의 견적 예산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건물 시공에서 투자자가 단독 주택에 투자를 할때, 그러한 건물 시공에 대한 투자 기획안이나 경제 기술 보고서는 요구되지 않으나, 이 법안 제 62 조의 조항 1(d)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 허가의 발행을 위한 지원 서류의 준비만이 요구된다

### 제 36 조.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1.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은 다음 기본 요구사항을 보증해야 한다:
  - (a) 사회 경제 개발의 종합 계획, 지부 개발의 종합 계획 및 건설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 (b) 적합한 설계 계획 및 기술 계획을 가져야 한다.
  - (c) 건물의 시공, 운영, 개발 및 사용하는 동안에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 및 폭발 예방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
  - (d) 기획의 사회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2. 투자자가 대규모의 건물 시공에 투자할때, 기획의 체계화에 우선적으로 건물 시공의 투자 보고서를 준비하여 투자 허가 요청을 위해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물 시공에 대한 투자 보고서의 기본 내용은, 투자의 필요성, 제안되는 투자 규모, 투자의 형태; 기술의 분석 및 예비 선정, 전체 투자 자본의 예비 산정, 자본 환수 및 부채 상환 능력을 포함한 자본 증액 계획; 그리고 기획의 사회 경제적인 투자 효과에 대한 예비 산출을 포함해야 한다
3.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은, 이 조의 조항 1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추가적으로, 시공 비용의 계산이 건설 관련 국가 행정 기관에 의해 공포되고 안내된 확정된, 결정된 수준 및 경제 기술 척도에 부합해야 한다

### 제 37 조. 건물 시공에 대한 투자 계획의 내용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은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1. 기획 형태에 따라 다음의 기본적인 항목들을 포함하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설명적 보고서: 목표, 위치, 규모, 생산 수용량 및 기술; 경제 기술 대책, 자원 및 투자 자본의 총액; 투자자 및 기획 관리의 형태; 투자 형태, 투자 기간, 효율성, 화재 예방 및 소방, 폭

발 예방,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2. 건물 시공의 각 투자 기획과 일관성있게 준비되어야 하는 예비 설계로서 다음을 포함: 건축적 해결안을 제시하는 설명 및 도면, 주요 측량 및 구조; 수평면, 단면 및 수직면; 기술 및 시공 해결안; 기술, 건물 준비, 시공에 사용되는 건물 자재의 기본 형태.

### 제 38 조.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을 체계화하는 단체 및 개인에 적용되는 조건

1.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을 체계화하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a)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 체계화 활동에 대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b)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 체계화 작업과 일치하는 건설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 (c) 기획 체계화에 대한 실무 능력의 조건 및 최고 기획자 역할의 수행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는 개인이 있어야 한다

2.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 체계화에 대한 실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개인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a)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 체계화 활동에 대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b)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 체계화에 대한 실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독립적으로 실무를 수행하는 개인에 의한 건물 시공 투자 기획의 체계화 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 제 39 조. 조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 및 투자 결정에 대한 평가

1. 투자 결정에 앞서,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은 정부의 규정에 부합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2. 정부의 국무 총리는, 국회가 투자 정책을 통과시킨 후, 건물 시공에 대한 주요 국가 투자 기획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건물 시공의 잔여 투자 기획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당국에 대한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3.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을 평가하는 단체 및 개인은 그 평가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건물 시공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모든 개인은 그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 40 조.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의 수정

1. 승인된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수정될 수 있다:

- (a) 자연재해, 전쟁,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 (b) 보다 고효율을 생성하는 요인이 나타나는 경우
- (c) 건설 종합 계획이 수정되는 경우.

2. 투자 결정을 내리는 개인은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에 대한 모든 수정사항에 대해 승인해야 하며, 그 기획은 이어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건물 시공의 기획에 대한 수정을 결정하는 개인은 그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제 41 조. 투자 기획의 체계화 동안 건물 시공의 투자자가 갖는 권한 및 의무

1.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투자 기획의 체계화 동안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자신이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의 구체화 능력에 대한 조건을 만족할 때 그 자신을 투자 기획에 포함시켜 체계화
- (b) 계약의 교섭, 서명 및 그 집행을 감독
- (c) 관련 단체에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을 체계화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구;
- (d) 기획을 체계화하기로 계약한 고문이 그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 이행의 중지 또는 계약의 종결
- (dd)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권한

2.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투자 기획의 체계화 동안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a) 투자자가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을 체계화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그 계획의 체계화를 위해 고문을 고용
- (b) 건물 시공에 대한 투자 계획 업무의 내용 결정
- (c) 투자 계획을 체계화하는 고문에게 계획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d) 당국에 부합하거나 또는 당국에 평가와 승인을 위한 제출을 통해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에 대한 점검과 수용, 평가와 승인을 계획
- (e)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에 대한 문서를 기록 보관
- (g) 계획을 체계화하는 능력이 부족한 고문을 이용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법규에 대한 부정확한 평가나 점검 및 수용, 혹은 투자자의 과실로 인한 기타 불이행에 의해 야기되는, 각종 손실의 배상
- (h)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의무

**제 42 조.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을 체계화하기 위해 계약된 고문의 권한과 의무**

1.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을 체계화하기 위해 계약된 고문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투자자로 하여금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의 체계화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할 권한
  - (b) 투자자로부터의 비합법적인 요구의 이행을 거부할 권한
  - (c)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권한
2.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을 체계화하기 위해 계약된 고문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a) 고문의 건설 활동을 위한 능력에 적합한 건물의 시공에 대한 투자 계획을 체계화하는 업무만을 수용
  - (b) 서명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집행
  - (c) 그 고문이 체계화하는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의 품질에 책임을 질 것임
  - (d) 다른 계약 당사자나 권한이 부여된 개인의 동의없이, 그 고문이 수행하는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의 체계화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하지 말 것임
  - (dd) 정보, 자료, 건설 법규 및 표준 또는 기술 해결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고문의 과실로 인한 기타 불이행에 의해 야기되는, 각종 손실의 배상
  - (e)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의무

**제 43 조.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 비용의 관리**

1.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 비용은 계획의 효율성을 보증하기 위해 산정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2. 국가로부터 지원된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에 대한 비용의 관리는 경제 기술 척도 및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공포된 기타 관련 법규에 기반해야 한다
3. 기타 재원으로 부터 지원되는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에 관련하여, 투자자와 도급자는 계약서 서명을 위해 이 조의 조항 2에 기술된 법규를 참조할 수 있다

**제 44 조. 건물 시공의 투자를 결정하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

1. 건물 시공의 투자를 결정하는 개인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a) 목표와 효율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권한
  - (b)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승인된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의 집행 혹은 집행을 준비중인 계획을 중지할 권한
  - (c)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에 대한 목표 및 내용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권한
  - (d) 법에 부합하는 기타 권한
2. 건물 시공의 투자를 결정하는 개인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a)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의 구성
  - (b)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에 대한 집행의 검사

- (c)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을 승인하는 결정, 계획의 집행을 중지하는 결정 및 부여받은 권한 내의 기타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
- (d) 법에 부합하는 기타 의무

**제 45 조.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에 대한 관리 내용 및 형태**

1.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에 대한 관리는 수량과 품질, 일정, 주거 안전 및 건설 환경의 관리를 포함한다.
2. 단체 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개인과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다음 중 한 형태의 관리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a) 건물 시공의 투자자가 고문 기관을 고용하여 계획을 관리한다
  - (b) 건물 시공의 투자자가 계획을 직접 관리한다
3. 이 조의 조항 2(b) 에 기술된 계획의 직접 관리를 적용하는 투자자가 기획 관리 위원회를 수립할 경우, 그 위원회는 할당된 의무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안과 투자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4. 정부는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 관리의 형태와 그 계획을 관리하는 단체와 개인의 능력에 적용가능한 조건에 대해 특정한 법규를 제시해야 한다.

## 제 4 장. 건설 측량 및 설계

### 4.1. 건설 측량

**제 46 조. 건설 측량**

1. 건설 측량은 지형 측량, 건물의 지질 측량, 수질 측량, 건물의 현황 측량 및 기타 건설 활동을 보조하는 측량으로 이루어진다.
2. 건설 측량은 승인된 측량 업무만 수행될 수 있다.

**제 47조. 건설 측량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건설 측량은 다음 조건을 보증해야 한다

1. 측량 업무는 각 건물의 형태 및 각 설계 단계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2. 정직하고 객관적이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3. 건설 측량에 적용되는 수량, 내용 및 기술 요구사항은 측량 업무에 적합해야 하고 또 건설 규정과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4. 지질 측량 작업은, 이 조의 조항 1, 2 및 3 에 규정된 항목에 추가하여, 적절한 관리 척도를 제안하기 위해 침식 수준 및 계절에 따른 지표수 변동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대규모 및 중요 건물의 측량은 시공 과정 및 사용 중의 건물의 환경에 대한 영향을 측량하고 관찰해야 한다
5. 측량 결과는 반드시 평가되고 또 법안에 부합하게 점검 및 승인 되어야 한다.

**제 48 조. 건설 측량 결과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

1. 건설 측량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기본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 (a) 측량의 원리, 절차 및 방법
  - (b) 자료의 분석, 측량의 평가 및 측량의 결과
  - (c) 측량 결과로부터의 결론 및 권고 사항

**제 49 조. 건설 측량을 수행하는 단체에 적용되는 조건**

1. 건설 측량을 수행하는 단체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a) 건설 측량의 활동에 대해 등록되어야 한다
  - (b) 건설 측량의 완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 (c) 모든 측량 업무에는, 건설 측량 실무의 전적인 능력과 적합한 실무 인증을 가지고 건설 측량을 책임지는 개인이 있어야 한다
  - (d) 건설 측량을 보조하는 기계류 및 장비는 그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며, 측량 업무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 **제 50 조. 건설 측량 중 건물 시공 투자자의 권한 및 의무**

1.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건설 측량 중 다음 권한을 지닌다
  - (a) 건설 측량 능력에 관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그들 자신이 건설 측량을 수행
  - (b) 계약의 교섭, 서명 및 그 집행을 감독
  - (c) 설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의해 측량 업무를 수정
  - (d) 법안에 부합하여 계약의 집행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종결
  - (dd)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권리
2.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건설 측량 중 다음 의무를 지닌다
  - (a) 설계자나 측량 도급자에 의해 설정된 측량 업무의 승인 및 그 업무를 건설 측량 도급자에게 할당
  - (b) 투자자가 그 스스로 건설 측량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건설 측량 도급자의 선정
  - (c) 건설 측량 도급자에게 측량 업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 (d) 측량의 범위를 결정하고 건설 측량 도급자가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증
  - (e) 점검 및 승인을 계획하고 측량 결과의 기록 보관
  - (g) 부정확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부정확한 측량 업무의 설정, 또는 투자자의 과실로 인한 기타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 (h)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의무

#### **제 51 조. 건설 측량 도급자의 권한과 의무**

1. 건설 측량 도급자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투자자로 하여금 측량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한
  - (b) 측량 업무 외의 요구에 대한 집행을 거부할 권한
  - (c)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권한
2. 건설 측량 도급자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a) 그 활동 능력에 관해 적합하게 측량 업무를 수행할 것에 대해서만 계약서에 서명하며, 서명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수행할 것
  - (b) 측량 결과의 품질과 책임을 보증하며, 할당된 측량 업무를 정확히 수행할 것
  - (c) 설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지할 경우 추가적인 측량 업무를 제안할 것
  - (d) 측량되는 지역의 환경을 보호할 것
  - (dd) 전문 손해 배상 보험을 구입할 것
  - (e) 측량업무의 부정확한 수행, 현실성이 부족한 측량 혹은 부적절한 정보, 자료, 건설 법규 및 표준의 사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분량의 업무 발견, 또는 도급자의 과실로 인한 기타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손실을 보상
  - (g)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의무

## **4.2. 건설 설계**

## 제 52 조. 건물 시공의 설계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1. 건물 시공의 설계는 다음의 일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건설 종합 계획, 경관, 자연 조건 및 건설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승인된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에 부합해야 한다

(b) 투자 기획이 기술 설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 기술 설계에 부합해야 한다

(c) 건물의 기초는 튼튼해야 하고, 가라앉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혹은 허용 한계 이상으로 변형되어 그 건물 및 주변 건물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d) 건물 시공의 설계 내용은 각 설계 단계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기능에 관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며, 미적인 설계와 합당한 주요 비용을 보증해야 한다.

(dd) 안전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 적용되는 건설 법규 및 건설 표준, 화재 예방, 소방 및 폭발 방지에 관한 표준, 환경 보호에 관한 표준, 그리고 기타 관련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공공 건물의 설계는 장애인 관련 설계의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e) 각 건물의 동시적인 시공을 보증해야 하며, 건물들의 작동 및 사용에 관한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관련된 건물들을 통합해야 한다

2. 토목공사 및 산업 건물은, 이 조의 조항 1에 규정된 항목을 보증하는 것에 더하여, 다음 요구사항을 또한 만족해야 한다

(a) 건축은 각 지역의 관습, 전통 및 문화 사회적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b) 유사시 사람들의 안전; 예방 및 구호 활동을 위한 안전한, 적합한 그리고 효율적인 조건; 건물 간의 간격; 화재시에 주변 건물 및 주변 환경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화 자재 및 시설의 사용

(c) 건설물 사용자를 위한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건강한 조건

(d) 적합한 자연 조건의 최대 활용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적합한 자연 조건의 최소화

## 제 54 조. 건물 시공의 설계 단계

건물 시공의 설계 내용은 다음 기본 요소들로 구성된다

1. 건물 시공의 설계는 다음 단계들로 구성된다: 예비 설계; 기술 설계; 건물 시공을 위한 설계 도면.

2. 특정 시공 건물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설계는 1, 2 또는 3단계로 다음과 같이 체계화된다:

(a) 1단계 설계, 즉 건물 시공을 위한 설계 도면의 체계화, 경제 기술 보고서의 준비만이 요구되는 건물에 적용됨.

(b) 2단계 설계, 즉 예비 설계의 체계화 및 건물 시공을 위한 설계 도면의 체계화,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이 준비되어야 하는 건물에 적용됨.

(c) 3단계 설계, 즉 예비 설계의 체계화, 기술 설계의 체계화 및 건물 시공을 위한 설계 도면의 체계화,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이 준비되어야 하고 대규모 복합 건물인 경우 적용됨.

3. 2단계 또는 3단계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는 경우, 선행 설계 단계는 후행 단계가 착수되기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정부는 각 건물 형태에 적용되는 설계 단계 및 각 설계 단계의 내용에 관해 세부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 제 55 조. 시공 건물에 대한 건축 설계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

1. 시공 건물에 대한 건축 설계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개최할 것이 권장된다.

2. 다음의 건물들의 경우 건물 시공을 위한 투자 기획에 앞서 건축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현상 공모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a) 지구 등급 이상의 국가 단체의 본관;

- (b) 문화 활동 및 스포츠를 위한 대규모 건물 및 기타 대규모 공공 건물;
- (c) 기타 특수 건축의 건물;
- 3. 현상 공모의 비용은 건물 시공의 투자 자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4. 선정된 건축 설계에 대한 설계자의 저작권은 보증되어야 하며, 그 설계자는 건물 시공 설계 능력에 대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뒤따르는 설계 단계를 수행할 우선권을 갖는다.
- 5. 정부는 시공 건물의 건축 설계 선정을 위한 현상 공모에 대해 세부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제 56 조. 건물 시공의 설계에 착수하는 단체 및 개인에 적용되는 조건**

- 1. 건물 시공의 설계에 착수하는 단체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a) 건물 시공의 설계 활동에 대해 등록되어야 한다;
  - (b) 건물 시공의 설계 활동에 대한 완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 (c)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나 최고 설계자는 시공 설계 실무의 완전한 능력이 있어야 하며 건물의 각 형태 및 수준에 적합한 실무 인증을 가져야 한다.
- 2. 건물 시공의 설계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a) 시공 설계 실무에 관한 전적인 능력, 그리고 건물 시공의 설계에 대한 실무 인증을 가져야 한다.
  - (b) 건물 시공의 설계 활동에 대해 등록되어야 한다.
- 3. 단독 주택의 시공 설계와 관련하여:
  - (a) 단독 주택이 시공 연면적이 250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주택이 3개층 이상을 가지거나, 주택이 문화 혹은 역사 유적지에 위치한 경우, 그 설계는 시공 설계 활동 능력의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 단체나 시공 설계 실무 능력의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에 의해 착수되어야 한다.
  - (b) 단독 주택이 (a) 절에 규정된 것보다 작은 규모일 경우, 개인 혹은 세대는 그 스스로 설계가 가능하나, 그 설계는 승인된 건설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그 개인이나 세대는 설계의 품질, 건물의 환경에 대한 영향 및 인접 건물의 안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7 조. 건물 시공의 설계 과정 중 그 건물 시공의 투자자의 권한과 의무**

- 1.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건물 시공의 설계 과정 중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a) 시공 설계 활동의 능력 및 건물의 각 형태 및 수준에 적합한 실무 능력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들 스스로 건물 시공의 설계를 수행할 권한
  - (b) 설계 계약의 교섭, 서명 및 그 수행을 감독할 권한
  - (c) 설계 도급자로 하여금 서명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요구할 권한
  - (d) 설계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할 권한
  - (dd) 법안에 부합하여 건물 시공의 설계를 중지시키거나 계약을 종결시킬 권한
  - (e)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권한
- 2.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건물 시공의 설계 과정 동안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a) 투자자가 시공 설계 활동 능력이나 스스로 건물의 설계를 수행할 실무 능력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설계 도급자를 선정
  - (b) 시공 건물의 설계 업무를 결정
  - (c) 설계 도급자에게 완전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
  - (d) 서명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수행
  - (dd) 설계를 평가 및 승인하거나, 법안 규정에 부합하는 인가된 기관에 평가 및 승인을 위하여 설계안을 제출;
  - (e) 설계 문서의 점검 및 승인
  - (g) 설계 문서의 기록 및 보존

- (h) 법규에 반한 설계 업무의 설정, 정보나 자료의 제공, 또는 설계 문서의 승인, 또는 투자자의 과실로 인한 기타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 (i)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의무.

**제 58 조. 건물 시공의 설계 도급자의 권한과 의무**

1. 건물 시공의 설계 도급자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설계 업무 이외의 요구에 대한 수행을 거부할 권한;
  - (b) 설계 업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권한;
  - (c) 그 자신의 건물 설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권리;
  - (d)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권한;
2. 건물 시공의 설계 도급자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a) 그 자신의 시공 설계 활동의 능력 또는 건물 시공 설계의 실무 능력에 적합한 건물 시공 설계를 수행하는 계약만을 수용;
  - (b) 설계 업무의 정확한 수행, 일정의 준수 및 설계 품질의 보증;
  - (c) 착수한 설계 작업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d) 건물 시공 과정 중 시공자를 감독;
  - (dd) 각 설계 단계의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설계 업무를 보조하는 측량 업무를 체계화;
  - (e) 건물에 대해 건축 자재, 공급물 또는 건설 장비의 제조업자를 지정하지 말 것;
  - (g) 전문 손해 배상 보험을 구입;
  - (h) 부적합한 측량 업무의 설정, 부적합한 정보, 자료, 건설 규정 및 기준, 기술 해결안 또는 건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등의 사용, 또는 도급자의 과실로 인한 기타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 (i)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의무;

**제 59 조. 건물 시공 설계의 평가 및 승인**

1. 건설 관련 국가 행정기관은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을 승인시 예비 설계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 투자자는 승인된 예비 설계와 반드시 일관되어야 하는 후속 설계 단계의 평가 및 승인을 실시해야 한다.
3. 설계를 평가 및 승인하는 개인은 그 평가나 승인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정부는 시공 건물 설계의 평가, 평가 내용 및 승인에 대한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제 60 조. 건물 시공 설계의 수정**

1. 승인된 건물 시공의 설계는,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이 개정되고 그러한 개정이 설계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기타 필수적인 상황에서만 수정될 수 있다.
2. 설계의 수정을 결정할 권한이 부여된 개인은 그러한 결정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정부는 시공 건물의 설계 수정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제 61 조. 건물 시공 설계의 문서 기록 및 보존**

1. 건물 시공 설계의 문서는 시공 건물의 수명 동안 기록 및 보존되어야 한다.
2. 역사,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및 국가 방위와 보안에 관련하여 중요한 건물의 시공에 관련하여, 건물의 설계 문서는 국가 기록 보관소에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3. 정부는 건물 시공의 설계 문서에 대한 기록 보존에 대해 세부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제5장 건설 시공**

## 5.1. 시공허가

### 제 62 조. 시공 허가

1. 시공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자는 다음 건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시공 허가를 가져야 한다:

- (a) 국가 기밀로 분류되는 건물, 긴급 명령에 따라 시공되는 건물, 주요 건물의 시공을 보조하기 위한 임시 건물;
- (b) 관할 국가 기관이 이미 건물 시공의 투자 계획을 승인한 경우, 도시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도로망을 따라 건설 종합 계획에 부합하여 지어지는 건물;
- (c) 자치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규모 기술 기반 시설;
- (d) 도시 지역 혹은 주거 밀집 지역에 있지 않거나, 승인된 건설 종합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전원 주거 지역인, 원격 지역에 위치한 단독 주택;
- (dd) 보수 또는 개선되는 건물; 건축, 내력구조 또는 그 건물의 안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장비의 실내 설치.

2. 전원 지역의 단독 주택과 관련하여, 시공 허가에 대한 규정은 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 지구 국민 위원회는, 시공 허가가 발행되어야 하는 그들 각 지역내의 주거 집중 지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3. 건설 종합 계획이 이미 승인되고 공포되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물 및 단독 주택의 시공에 관련하여, 임시 시공 허가만이 종합 계획의 실행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발행되어야 한다.

### 제 63 조. 시공 허가의 지원 서류

1. 건물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시공 허가를 위한 지원서류는 다음 기본 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 (a) 시공 허가의 발행을 위한 지원서;
- (b) 건물 시공의 설계 도면;
- (c) 대지에 대한 법안과 부합하는 대지 사용 권한에 관한 서류

2. 이 법안의 62.3 조에 규정된 건물 및 단독 주택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 조의 조항 1에 규정된 항목에 추가적으로, 건물의 소유주는 국가가 종합 계획을 실시할때 건물을 해체할 것에 대한 서면 보증을 지원서에 포함해야 한다.

### 제 64 조. 시공 허가의 내용

1. 시공 허가는 다음 기본 항목들을 포함한다:

- (a) 시공 건물의 장소와 위치, 시공 건물의 경로;
- (b) 건물의 형태 및 수준;
- (c) 건물의 표준 지면 높이;
- (d) 적색선 경계 및 시공 경계;
- (dd) 환경의 보호 및 건물의 안전;
- (e) 도시 지역의 국가 건물 및 산업 건물과 관련하여, 이 조의 조항 1(a) 부터 (dd)까지 규정된 항목에 추가적으로, 시공 허가는 시공 건물의 면적, 각 층의 높이, 전체 건물의 최대 높이 및 건물의 색상을 포함해야 한다.
- (g) 각 건물의 형태에 적용되는, 규정된 기타 항목;
- (h) 시공 허가의 유효성;

### 제 65 조. 도시 지역에서 시공 허가 발행의 조건

1. 승인된 세부 건설 종합 계획에 일관되어야 한다;
2. 적색선 경계 및 시공 경계, 도시 설계,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교통 시설, 관개 시설, 제방, 에너지 시설, 문화 혹은 역사 유적지에 대한 안전 통로의 보호, 법안에 부합하는 다른 건물에 대한 보호 통로의 지역 등에 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 문화 또는 역사 유적의 보존 지역 내에서 시공 건물 및 단독 주택은 시공 밀도 및, 수목 및 차량 주차를 위한 공간 확보를 보증해야 하며, 경관 및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4. 보수 또는 개선되는 건물은 인접 건물의 구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주변 건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수도 공급 및 배수 장치, 공조 및 조명 장치, 환경 위생, 그리고 화재 예방, 소방 및 폭발 예방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5. 위생 시설, 독성 화학물 용기, 및 기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로부터 규정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바로 인접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6. 도로가 건설되거나 개선되는 경우, 기술 기반 시설의 동시 설치를 위해 지하 터널 장치가 지어져야 한다; 도로 표면의 표준 지면 높이는 건설 종합 계획 및 도시 설계의 표준 지면 높이와 일치해야 한다.
7. 특수 분류 및 분류 1에 해당되는 고층 주거 건물의 시공은, 지하층 설계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층의 설계를 가져야 한다.
8. 임시 시공 건물과 관련하여, 시공 허가의 발행은 이 법안의 62.3조 및 63.2조에 부합해야 한다.

### 제 66 조. 시공 허가를 발행권한

1. 지방 국민 위원회는 대규모 건물, 특수 건축, 종교 건물 및 그들이 정부의 규정에 부합하여 관리하는 각 행정 구역 내의 기타 건물에 대한 시공 허가를 발행해야 한다.
2. 지구 국민 위원회는 도시 지역의 건물, 그리고 이 조의 조항 1에 규정된 건물을 제외한, 그들이 관리하는 각 행정경계 내의 자치구 중심에 대한 시공 허가를 발행해야 한다.
3. 자치구의 국민 위원회는, 승인된 건설 종합 계획을 가진 전원 주거 지역, 그리고 그들이 관리하는 각 행정경계 내에서 지구 국민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시공 허가의 발행이 요구되는 주거지역에 지어지는 단독 주택에 대한 시공 허가를 발행해야 한다

### 제 67 조. 시공 허가를 발행하는 기관의 책임

1. 시공 허가에 대한 규정을 공공에 전시하고 그들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2. 완전하고 유효한 지원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업무일 기준 20일**, 또는 단독 주택의 경우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으로 시공 허가를 발행해야 한다.
3. 시공 허가에 부합하여 시공이 수행되는 것을 검사하고, 투자자가 이를 불이행하여 시공을 수행할 경우, 시공을 중지시키고 시공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
4. 시공 허가의 발행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은 부정확한 허가의 발행이나 기간을 벗어난 허가의 발행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법안에 부합하여 손실이나 손상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5. 시공 허가를 발행하는 기관은, 종합 계획과 불일치하게 시공되는 건물, 시공 허가 없이 시공되는 건물 또는 발행된 시공 허가에 반하여 시공되는 건물에 대하여, 관할 기관에 전기, 수도, 업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통보해야 한다.
6. 시공 허가를 발행하는 기관은 시공 허가의 발행과 관련한 항의와 고발을 해결해야 한다.

### 제 68 조. 시공 허가의 발행에 대한 신청자의 권한과 의무

1. 시공 허가의 신청자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시공 허가를 발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시공 허가의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설명, 안내 및 수행할 것을 요구할 권한;
- (b) 시공 허가의 발행 동안 법안의 불이행에 대한 항의와 고발을 제출할 권한;
- (c) 이 법안 67.2조에 규정된 기한이 만기되는 경우, 시공 허가의 발행 기관이 이 법안 72 조의 조항 1,3 4, 5, 6 및 7 에 규정된 조건이 언제 만족었는지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제시하지 못할 때 건물의 시공을 개시할 권한

2. 시공 허가의 신청자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a) 완전한 신청 서류 및 시공 허가 발행 대금의 제출;
- (b) 시공 허가 발행을 위한 지원서류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
- (c) 개시 일자 7일 이전의 기한내에, 건물이 위치하는 자치구의 국민 위원회에 건물 시공의 개시 일자를 서면 통보;
- (d) 시공 허가의 조건을 정확히 수행; 설계에 관한 모든 개정이나 수정은 반드시 시공 허가 발행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5.2. 건물 시공을 위한 대지 정리

### 제 69 조. 건물 시공을 위한 대지 정리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건물 시공을 위한 대지 정리는 다음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1. 건물 시공을 위한 대지 정리 계획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 계획은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또 그 계획은 투자 기획의 승인과 동시에 승인받아야 한다.
- 2. 주거 재정착을 요구하는 기획의 경우, 재정착을 위한 계획 또는 기획이 준비되어야 하고, 또 시공을 위한 대지 정리에 우선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3. 건물 시공을 위한 대지 정리의 범위는 승인된 세부 건설 종합 계획 및 승인된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에 부합해야 한다.
- 4. 건물 시공을 위한 대지 정리 기한은 승인된 기획의 수행 일정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하거나,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의 결정에 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 제 70 조. 건물 시공을 위한 대지 정리에 관한 보상의 원칙

- 1. 건물 시공을 위한 대지 정리를 수행하기 위한 보상의 지급은 국가의 이익 및 관련된 단체 및 개인의 법적 권한 및 이익을 보증해야 한다. 단체나 개인의 주거 건물에 대한 문제는, 당사간의 특정 동의를 있지 않는 한, 주거 조건이 이전 주택과 동일 혹은 더 나은, 신축의 안정적인 주택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고용 창출 및 재정착하는 사람들의 안정된 삶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 2. 건물 시공을 위한 대지 정리를 수행하기 위한 보상의 지급은 한가지, 혹은 금전 지급, 대지 사용권 또는 주거 소유권 등의 조합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공평성을 보증하고, 법안에 부합하여 공개적으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 3. 도시 지역에서 기술 기반 시설의 건설을 위한 대지 정리를 수행하기해 보상 지급을 하는 경우, 대지 정리 계획은 신축 건물 및 도로에 면한 건물의 재건축이 승인된 세부 건설 종합 계획에 부합함을 보증해야 한다; 또한 국가가 대지 정리 및 건물 시공의 투자 이후 지가 차액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증해야 한다.
- 4. 다음의 경우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
  - (a) 침범된 대지 또는 불법적으로 점유된 대지;
  - (b)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물; 건설 종합 계획의 공포일 이후 건설 종합 계획의 대상 지

역 지면에 나타나거나 생성된 건축물, 수목, 식물, 농작물 및 기타 자산;  
(c) 대지에 관한 법안에 규정된 기타 경우;

### 제 71 조. 건물 시공을 위한 대지 정리의 계획

1. 건물 시공을 위한 대지 정리를 계획할 때, 시공 대지의 정리에 의한 보상 관련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2. 승인된 건설 종합 계획에 따르지만 건물 시공을 위한 투자 기획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상 지급은 다음과 같이 집행되어야 한다:
  - (a) 권한이 부여된 등급의 국민 위원회는 건물 시공을 위한 대지 정리에 관한 보상 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회를 통해 대지 정리를 관리하거나, 또는 대지 정리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그 업무를 할당해야 한다.
  - (b) 대지 정리를 위한 재원은 예산으로부터 마련되거나 모금되어야 하며, 정리된 대지에 건물을 시공하는 투자자에게 대지를 할당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상환해야 한다.
  - (c) 건물 시공을 위한 대지 정리 시한은 그 지역의 사회 경제 개발 요구사항 및 결정권자의 결정에 부합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
3.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에 따르는 대지 정리의 경우, 보상 지급은 다음과 같이 집행되어야 한다:
  - (a) 업무용 투자 기획의 경우, 그 건물을 시공하는 투자자가 지휘하는 보상 위원회가, 대지 정리를 계획하는 권한 등급의 국민 위원회와 협조해야 한다; 비업무용이 아닌 공동체 서비스에 관한 투자 기획의 경우, 국민 위원회가 지휘하는 보상 위원회가 대지 정리를 계획하는 시공 건물의 투자자와 협조해야 한다.
  - (b) 대지 정리를 위한 재원은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으로부터 직접 마련되어야 한다.
  - (c) 건물 시공을 위한 대지 정리의 시한은 승인된 기획의 수행 일정에 부합해야 한다.
4. 정부는, 시공 대지의 정리를 수행할 경우 보상의 원칙, 방법 및 액수의 틀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규정은 지방 국민 위원회가 각 지역내에서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5. 보상이 올바르게 해결된 공사 대지에 자산을 소유한 단체 또는 개인이 그러한 해결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수행을 집행하기 위해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그 단체나 개인은 강제 집행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6. 감춰진 동기를 가지고 건물 시공에 관한 대지 정리 수행을 위한 보상 법규를 위해하거나, 국가, 단체 또는 개인의 자산에 손해나 손실을 야기하는 모든 개인은, 그 위배의 정도에 따라, 징계되거나 형사 고발에 처해지며, 법안에 부하하여 손상을 보상해야 한다

## 5.3. 건설시공 조건

### 제 72 조. 시공 개시의 조건

건물의 시공은 다음 조건이 만족된 경우에만 개시될 수 있다:

1. 건물 시공의 투자자와 도급자 사이에 합의된 시공 일정에 따라, 양도될 준비가 된 전체 면적 또는 부분 면적이 존재한다.
2. 이 법안 68조의 조항 1(c) 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이 허가가 요구되는 분류에 속할 경우, 시공 허가가 존재한다.
3. 건물 요소 또는 전체 건물에 적용되는 건물 시공의 승인된 설계 도면이 존재한다.
4. 시공 계약이 존재한다.
5. 건물 시공 투자 기획의 승인된 일정에 부합하는 시공 일정을 보증하는 충분한 자본 자금이 존재한다.
6. 시공 과정 동안 안전 및 환경 위생을 보증할 수단이 존재한다.

7. 신 도시 지역에 관련하여,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전체 또는 각 부분의 기술 기반 시설이 건물 시공의 개시에 우선하여 완료되어야 한다.

### 제 73 조. 건물 시공의 조건

1. 건물 시공에 종사하는 도급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a) 시공 활동에 대해 등록되어야 한다;
- (b) 관련 시공 업무의 형태와 수준에 적합한 시공 활동의 전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
- (c) 시공 현장의 지휘자는 관련 시공 업무의 수행에 있어 시공 실무의 완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 (d) 건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시공 장비를 갖춰야 한다.

2. 전체 시공 면적이 250 평방미터 이하 또는 3층 미만의 층을 가진 단독 주택의 자체 시공을 수행하는 모든 개인은 건물 시공의 수행에 있어 시공 실무의 전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며, 품질, 안전 및 환경 위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제 74 조. 시공 현장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모든 시공 현장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안내판을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 1. 건물 시공의 투자자 성명, 전체 투자 금액, 공사 개시 일자 및 공사 완료 일자;
- 2. 시공 수행 개체, 시공 현장의 지휘자 성명;
- 3. 설계 개체, 설계 책임자 성명;
- 4. 건물 시공을 감독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
- 5. 성명과 직위에 추가적으로, 건물 시공의 투자자, 현장 지휘자, 설계 책임자 및 시공을 감독하는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한 연락 주소 및 전화 번호가 있어야 한다.

### 제 75 조. 시공 기간 동안 시공 건물 투자자의 권한 및 의무

1. 시공 건물의 투자자는 전체 시공 기간 동안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관련 시공 업무의 수행 능력에 관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시공을 직접 수행할 권한;
- (b) 계약의 교섭, 서명 및 그 수행을 감독할 권한;
- (c) 건물의 시공에 대한 계약을 법안에 부합하여 중지시키거나 종결시킬 권한;
- (d) 시공을 수행하는 도급자가 건물의 품질이나 안전 및 환경 위생에 관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공 업무를 중단시키고 그 결과를 교정할 것을 요구할 권한;
- (dd) 관련 단체나 개인에 대해 전체 시공 과정에 걸쳐 업무 수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한;
- (e) 품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작업이나 비합리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에 대해 공사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권한;
- (g) 법에 부합하는 기타 권한;

2.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전체 시공 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a) 관련 시공 업무의 수행 활동에 대한 전적인 능력이 있는 도급자의 선정;
- (b) 시공 건물의 도급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공사 대지의 정리를 조율 관리하거나, 또는 그 권한 수준의 국민 위원회에 참여;
- (c) 건물 시공의 감독을 계획;
- (d) 안전 및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을 점검;
- (dd) 건물 시공의 점검 및 승인, 지불 및 완결을 계획;
- (e) 필요할 경우, 건물의 품질을 평가 하기위해 건설 활동의 전적인 능력이 있는 고문 기관을 고용;
- (g) 전체 시공 기간 동안 도급자에 의해 제기되는 설계 관련 제안에 대한 고려 및 의사 결정;

- (h) 건물의 설계에 있어 설계자의 저작권 존중;
- (i) 건물의 보험 구입;
- (k) 건물 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 (l) 시공을 수행하는 도급자에 대한 손실을 야기하는 계약 위반, 품질 보증에 실패하여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검 및 승인, 또는 투자자의 과실로 인한 기타 위반 사항으로 야기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 (m)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 건물이 일정도로 시공되는 지의 보증 및 건물의 품질과 효율성에 대한 책임;
- (n)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의무.

**제 76 조. 시공을 수행하는 도급자의 권한 및 의무**

1. 시공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불법적인 요구에 대한 수행을 거부할 권한;
- (b) 건물의 품질과 효율성을 보증하기 위해 현실에 부합하는 설계의 수정을 제안할 권한;
- (c) 계약에 부합하여 완료된 업무의 가치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할 권한;
- (d) 계약을 체결한 관계자가 서명된 계약 내용의 이행에 실패하여 도급자에게 장애 및 손실을 야기하는 경우 시공 업무의 수행을 중지할 권한;
- (dd) 건물 시공의 계약을 철회하는 관계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한;
- (e)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권한.

2. 시공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a) 서명된 계약내용을 정확히 이행;
- (b) 설계 및 시공 기준, 그리고 공사 일정에 부합하여 시공 업무를 정확히 수행; 품질, 안전 및 환경 위생을 보증;
- (c) 시공 일지의 작성 및 관리;
- (d) 건물 자재 및 제품의 검증;
- (dd) 보안과 질서, 그리고 주변 주거 지역에 불리한 영향이 없음을 보증하는 현장 인부의 관리;
- (e) 완료된 건물의 도면 체계화 및 건물의 점검과 승인에 참여;
- (g) 건물의 보증서 제공;
- (h) 보험에 관한 법안에 부합하여 모든 형태의 보험을 구입;
- (i) 계약의 위반, 부정확한 자재의 사용, 품질 보증에 실패하거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시공의 수행 등에 의한 손실이나, 또는 계약자의 과실에 의한 기타 위반으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 (k) 도급자가 수행한 시공 업무의 품질에 대한 책임;
- (l)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의무;

**제 77 조. 시공 기간 동안 설계 도급자의 권한 및 의무**

1. 설계 도급자는 시공 기간 동안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이 법안의 58.1 조에 기술된 권한;
- (b) 건물 시공의 투자자 및 시공을 수행하는 도급자로 하여금 설계를 정확히 구현할 것을 요청할 권한;
- (c) 투자자로 부터의 설계 변경에 대한 비합리적인 요구를 거부할 권한;
- (d) 설계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시공된 건물의 항목에 대해 검사 및 승인을 거부할 권한;

2. 설계 도급자는 시공 기간 동안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a) 이 법안의 58.2 조에 기술된 의무;
- (b) 법규에 일치하여 시공자를 감독할 완전한 능력을 갖는 개인이 있어야 함; 설계 도급

자에 의해 한 개인이 공사를 감독하도록 지정된 경우, 시공자는 그 감독하에 발생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과실로 인한 손해나 손상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c) 건물 시공의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건물의 검사 및 승인에 참여;

(d) 설계의 비합리적인 요소에 대하여 투자자로부터 발생한 모든 요청을 고려하고 처리;

(dd) 도급자가 수행하는 시공 업무가 승인된 설계에 대해 부정확하게 수행될 경우, 이를 적시에 감지하고 투자자에게 알리며, 같은 문제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

## 제 78 조. 시공 기간 동안의 안전

건물의 시공 기간 동안, 시공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다음 책임을 갖는다:

1. 사람, 기계류, 장비, 자사, 시공되는 건물, 그리고 지하 및 주변 건물의 안전을 보증하기 위한 수단을 취할 것; 시공을 보조하는 기계류 및 장비는 사용에 앞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건물 및 엄격한 안전이 요구되는 시공 작업의 요소에 대해 별도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할 것;

3. 시공 과정 동안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과 자산의 손해 및 손실을 제한하는 수단을 취할 것.

## 제 79 조 시공 기간 동안 환경 위생의 보증

시공 과정 동안 시공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다음 책임을 갖는다:

1. 시공 과정 동안, 공기 환경, 수질 환경, 토양 오염, 소음 및 기타 환경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환경 위생을 보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2. 시공 과정 또는 자재의 운송 과정에서 도급자에 의해 발생하는 특정 지점의 환경 위생 파괴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3. 환경 보호에 대한 법안의 다른 규정에 부합할 것;

## 제 80 조 시공된 건물의 점검, 승인 및 양도

1. 시공된 건물의 점검 및 승인은 다음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a) 시공 건물의 품질 관리에 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b) 각 작업, 부위, 층 및 각 건물의 요소 및 건물의 위임에 대해 검사 및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감춰진 각 부위에 대한 검사 및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어지는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완성된 작업의 도면이 작성되어야 한다.

(c) 검사 및 승인은 그 목적이 완료되었을때만 수행되어야 하며, 법규에서 요구하는 대로 완전한 문서가 갖추어져야 한다.

(d) 시공된 건물의 위임에 대한 검사 및 승인은 모든 설계 및 품질 요구사항이 만족되고 법규에 규정된 표준이 획득되었을 때만 수행되어야 한다.

2. 시공된 건물의 양도는 다음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a) 시공 완료된 건물의 양도와 건설 법안에 부합하는 위임에 대한 원칙, 내용 및 절차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b) 건물이 위임될때, 작동 및 사용시의 안전을 보증해야 한다.

3. 시공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모든 시공 작업의 완료, 대지의 청소, 완료된 건물의 도면 작성, 완료된 건물의 검사, 승인 및 양도를 보조하는 모든 문서의 준비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검사 및 승인을 수행하고 시공된 건물을 인수 받을 책임이 있다. 건물의 검사 및 승인, 그리고 양도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은, 시공 과정 및 완료된 건물의 양도 과정에서 그에 의해 인증된 제품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있다.

### 제 81 조. 건설 활동의 대금 지급 및 완결

1. 도급자는 대금 지급을 위한 서류 준비 및 완료된 작업의 완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검사되고 승인된 시공 업무에 대해 도급자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2.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법이 달리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된 건물의 양도 및 위임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기한에 투자된 자본의 완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대금의 지급이나 완결 작업의 수행에 책임이 있는 개인은 그 업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지급이나 완결의 지연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지급이나 완결에 의해 야기되는 손해나 손상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4. 정부는 건설 활동에서 대금의 지급 및 완결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 제 82 조. 시공된 건물의 보증서

1.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자는 시공된 건물에 대한 보증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건물에 대한 장비 조달을 맡는 도급자는 그러한 장비에 대한 보증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시공된 건물의 보증서의 내용은 장비가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또는 건물이 그 작동이나 사용에 있어서 도급자의 과실로 인해 비정상적이 될 경우에 대한 교정, 보수 및 교체 등으로 구성된다.
3. 보증 기간은 건물의 형태와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4. 정부는 시공된 건물의 보증 기간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1.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자는 시공된 건물에 대한 보증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건물에 대한 장비 조달을 맡는 도급자는 그러한 장비에 대한 보증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 제 83 조. 시공 건물의 유지 관리

1. 건물의 소유주나 사용을 관리하는 개인은 건물의 유지 관리 및 준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건물의 유지 관리 및 그 준비는 설계자와 제조업자의 방향과 규칙에 부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 건물의 유지 관리는 건물의 형태와 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정부는 건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 제 84 조 공사 사고

1. 시공 과정 또는 건물의 작동이나 이용 중 공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을 수행하는 도급자, 소유주 또는 건물 사용을 관리하는 개인은 다음에 관해 책임을 져야한다:
  - (a) 시공 업무의 중단, 건물의 작동이나 사용의 중단 및 사람과 자산의 안전을 보증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 (b)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예방 및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관할 기관 및 개인, 또한 관련된 단체 및 개인에게 통보할 것;
  - (c) 응급 처치 수단이 손해와 손상을 방지하게 취해져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를 보호할 것.
2. 공사 사고의 통보를 받을 경우, 관할 기관 및 개인은, 각 의무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을 책임져야 한다:
  - (a) 즉각적인 응급 복구 조치를 취할 것;
  - (b) 건설 관련 국가 행정 기관은 조사 수행 능력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사

고의 원인과 이를 야기한 실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3. 과실로 공사 사고를 유발한 개인은 손해와 손실 및 관련 비용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있으며,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다.

### 제 85 조. 시공 건물의 이전

1.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의 시공 건물의 이전은 승인된 건설 종합 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건축 및 건물의 품질이 유지되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2. 시공 건물의 이전에 우선하여 시공 건물의 투자자는 지방 국민 위원회에 의해 발행되는 이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3. 시공 건물의 이전 작업에 착수하는 모든 도급자는 작업자의 안전, 이전되는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안전 및 환경 위생을 보증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 86 조. 시공 건물의 철거

1. 시공 건물은 다음 상황일때 철거되어야 한다:

(a) 신규 건물이나 이 법안 94.2 조에 기술된 임시 건물의 시공을 위한 대지 정리를 수행하기 위해;

(b) 붕괴 위험이 있는 시공 건물이 공동체와 인접 건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경우;

(c) 이 법안의 10.1 조에 규정된 대로 건설이 금지된 지역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d) 시공 건물이 건설 종합 계획에 반하거나, 법안이 요구하는 시공 허가가 없이 지어진 경우, 또는 발행된 시공 허가의 규정에 대해 부정확한 경우;

(dd) 법안에 규정된 기타 상황;

2. 시공 건물의 철거 작업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서만 수행된다.

(b) 안전 및 환경 위생을 보증하는, 승인된 철거 방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 시공 건물의 철거에 참여하는 관계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a) 시공 건물의 철거를 계획하도록 임명된 개인은 이 조의 조항 2의 규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자신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및 손상에 보상해야 한다.

(b) 이 조의 조항 1에 규정된 대로 철거되어야 하는 건물의 현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건물을 철거하는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에 부합해야 하며, 소유주나 사용자가 그러한 결정에 자발적으로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건물은 강제적으로 철거되어야 하고 또 소유주나 사용자는 그러한 업무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c) 시공 건물의 철거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개인은, 결정을 내는데 실패하거나,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법안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결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5.4. 시공감리

### 제 87 조. 시공 감리

1. 시공 과정 중에는, 모든 시공 작업은 감리해야 한다

2. 시공 감독은 시공 중의 품질, 수량, 일정, 작업 안전 및 환경 위생을 감시 및 검사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3.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고문 감독관, 또는 시공 감독 능력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그 자신을 고용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사 감독을 수행하는 모든 개인은 건물의 형태와 수준에 적합한 시공 감독의 실무 인증을 져야 한다.

4. 단독 주택의 경우 감독 체제를 구현할 것이 권장된다.

#### **제 88 조. 시공 감독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시공 감독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건물 시공의 개시 일자로부터 즉시 수행되어야 한다.
2. 시공 과정 동안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감독은 승인된 설계 및 적용 가능한 건설 법규와 건설 표준을 토대로 해야 한다.
4. 정직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감추어진 의도를 가지고 수행되어서는 안된다.

#### **제 89 조. 건물의 시공에서 시공 감독이 이루어지는 동안 투자자의 권한과 의무**

1.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시공 감독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a) 시공 감독 능력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그 스스로 감독을 수행할 권한;
- (b) 계약의 교섭 및 서명, 그 이행에 대한 감독 및 관리의 권한;
- (c) 감독관이 법규에 부합하여 그 임무를 정확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감독관의 교체, 또는 고문 기관에 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할 권한;
- (d) 시공 감독 계약의 수행을 중지 시키거나 법안에 부합하여 계약을 종결시키는 권한;
- (dd)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권한;

2. 시공 건물의 투자자는 시공 감독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a) 투자자가 시공 감독 활동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경우 고문 감독관을 고용;
- (b) 고문 감독관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해 관계자에게 알려야 함;
- (c) 감독관으로부터의 제안을 적시에 다루어야 함;
- (d) 시공 감독의 계약에 있어 동의된 사항에 대해 그 의무를 완전히 면제함;
- (dd) 감독의 거짓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공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 (e) 시공 감독의 결과를 획득할 것;
- (g) 시공 감독 능력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고문 감독관의 선정, 부정확한 작업의 양이나 설계에 대해 부정확하게 시공된 작업의 검사 및 승인, 또는 투자자의 과실로 인한 기타 위반에 의해 야기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한 배상;
- (h)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의무;

#### **제 90 조. 시공 감리 도급자의 권한과 의무**

1. 시공 감독 도급자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a) 건물이 설계 및 건설 법규와 건설 표준, 품질에 부합하여 정확히 시공되었을 경우 검사와 승인을 인증하는 권한;
- (b) 시공 도급자로 하여금 그 계약을 정확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
- (c) 수행한 감독 업무에 관한 의견을 유지하는 권한;
- (d) 관계자로부터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권한;
- (dd)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권한.

2. 시공 감독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a) 서명한 계약 내용에 부합하여 감독 업무를 정확히 수행;
- (b) 요구되는 품질 및 건물 설계자의 기술 척도에 미치지 못하게 시공된 건물에 대해 검사 및 승인을 인증하지 않아야 함;
- (c) 품질에 관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 검사 및 승인을 거부해야 함;
- (d) 설계의 비합리적인 요소를 즉각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제안을 해야 함;
- (dd) 전문 손해 배상 보험의 구입;
- (e) 시공 도급자나 건물 시공의 투자자와 공모하여 감독의 거짓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위배행위를 안 된다

- (g) 설계, 건설 법규 또는 건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된 건물의 감독 결과를 속이거나, 투자자 혹은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에게 문제를 처리하도록 통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감독 도급자의 과실로 인한 기타 위반으로 인해 야기되는 손해나 손실에 대한 보상;
- (h)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의무.

## 5.5. 특수 건물의 시공

### 제 91 조. 특수 건물의 시공

특수 건물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국가 기밀 건물;
2. 긴급 명령에 따라 시공된 건물;
3. 임시 건물;

### 제 92 조. 국가 기밀 건물의 시공

1. 필수적으로 시공되는 국가 기밀 건물은 전체 건설 활동에 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 방위, 보안, 경제, 과학 및 기술, 또는 기타 구역에 포함된다.
2. 국가 기밀 건물 시공의 관리 및 수행에 관한 역할을 부여받은 모든 개인은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기획 체계화, 측량, 설계, 시공 및 건물의 검사, 승인 및 위임 단계 까지의 시공 감독 등의 단계에 걸쳐 시공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3. 정부는 각 국가 기밀 건물의 시공에 대해, 동일한 시공이 요구되는 시점이 언제일지 결정해야 한다.

### 제 93 조. 긴급 명령에 따르는 건물의 시공

1. 긴급 명령에 따르는 건물은, 자연 재앙, 전쟁, 또는 기타 정부의 규정에 부합하는 긴급 상황을 예방하거나 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 요구를 즉각적으로 만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2. 긴급 명령에 따른 건물 시공의 관리 및 수행의 역할을 부여받은 모든 개인은, 요구사항과 긴급 상황에 적합한 측량, 설계, 및 시공의 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고, 건물의 시공을 계획할 책임이 있으며, 사람과 자산의 손실과 손해를 최소화하는 목표를 즉각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 제 94 조. 임시 건물의 시공

1. 임시 건물은 시공될 수 있고 제한된 기간 동안만 존재할 것이 허용된다.
2. 임시 건물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주 건물의 시공을 보조하는 임시 건물;
  - (b) 대지 정리가 아직 수행되지 않은, 종합 계획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시공이 허용된 건물 및 단독 주택.
3. 주 건물의 위임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의 기한에, 주 건물의 시공을 보조한 임시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승인된 건설 종합 계획과 일관된 대규모 임시 건물이나 주거 지역이 아닌 경우, 스스로 임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 제한된 기간 동안만 시공이 허가된 건물 및 단독 주택에 관하여, 그 임시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스스로 임시 건물을 철거해야 하며, 만약 철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건물은 강제로 철거되어야 하고 또 투자자는 그 작업 비용을 부담하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제 6 장. 도급자의 선정과 시공 계약서

### 6.1. 도급자 선정

#### 제 95 조. 건설 활동에 있어서의 도급자의 선정

1. 건설 활동에서의 도급자의 선정은, 각 업무나 업무그룹, 또는 세부 건설 종합 계획의 체계화를 위한 전체 업무,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의 체계화, 측량, 설계, 시공, 감독 및 기타 건설 활동 등을 위해 수행해야 한다.
2. 도급자 선정의 목표는, 건설 활동의 능력 및 건물의 형태 및 수준에 적합한 건설 실무 능력을 완전히 갖춘, 최고 도급자, 일반 도급자 및 하도급자를 식별하는데 있다.
3. 주 도급자 또는 최고 도급자는, 건설 활동 능력 및 관련 시공 실무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건물 시공의 투자자에게 승인을 받은 하도급자에게 그들의 계약 업무의 일부를 할당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4. 건설 활동에서의 도급자의 선정은 이 법안의 규정과 입찰 관련 법안에 부합해야 한다.

#### 제 96 조. 건설 활동에 있어서 도급자 선정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1. 도급자의 선정은 다음 요구사항을 보증해야 한다:
  - (a)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의 효율성을 만족해야 한다;
  - (b) 선정된 도급자는 건설 활동의 전적인 능력 및 관련 시공 실무의 전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며, 계약의 입찰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 (c) 도급자의 선정은 객관적, 공개적이고 공명정대하며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2. 투자 결정을 내리는 개인 혹은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도급자 선정의 형태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 제 97 조. 건설 활동에서의 도급자 선정의 형태

특정 시공 건물의 규모, 성격 및 재원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개인 또는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도급자를 선정할 수 있다:

- (a) 공개 입찰, 제한 입찰;
- (b) 도급자의 지정;
- (c) 건물 시공의 건축 설계를 위한 도급자의 선정

#### 제 98 조. 건설 활동에서의 입찰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1. 건설 활동에서 적합한 도급자 선정을 위한 입찰 목적은 경쟁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2. 입찰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결정된 이후에만 진행되어야 한다.
3. 입찰을 수행하는 기한은 건물 시공 투자 기획의 일정과 효율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연장될 수 없다.
4. 성공적인 입찰은 전문 계획, 최적 기술 및 합리적인 입찰 가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베트남 내의 국제 입찰에 참여하는 국내 입찰자는 정부의 규정에 부합하여 우대 제도의 자격이 부여된다.
6. 입찰에 참여하는 개체는 다른 단체의 법적 지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입찰의 매수나 매도를 실행하거나 협정해서는 안된다; 입찰 결과의 조작을 위해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되며, 입찰의 대상인 건물의 시공 비용 이하로 입찰가를 낮추어서는 안된다.

#### 제 99 조. 건설 활동에서의 공개 입찰

1. 공개 입찰은 시공 수행의 도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행되며, 참여하는 입찰자의 수는

제한되지 않는다.

2. 입찰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대중 매체를 통해 입찰 참여에 대한 조건 및 시한을 널리 알려야 한다.
3. 입찰자는, 입찰을 요청하는 당사자에 의해 공포된 조건에 부합하는, 건설 활동의 전적인 능력 및 건물의 형태와 수준에 적합한 건설 실무의 전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4. 입찰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입찰 심사의 결과 및 계약 금액을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알릴 책임이 있다.

#### **제 100조. 건설 활동에서의 제한 입찰**

1. 제한 입찰은 건설 고문 도급자 및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에 적용가능한 시공 도급자의 선정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 입찰의 참여에 초대될 수 있을 만한 건설 활동 능력 및 시공 실무 능력의 조건을 만족하는 제한된 수의 도급자만이 있을 때 수행된다.
2. 건물 시공 및 국가 재정의 지원을 받는 건물의 투자 기획에 관련하여, 다음 주체들은 동일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기업 및 그 구성회사, 모회사 및 그 자회사, 공동 벤처 기업 및 그 공동 벤처에 기여하는 자본주.

#### **제 101 조. 건설 활동에서의 도급자 지정**

1. 투자 결정을 내리는 개인 또는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다음 상황일때 합리적인 가격에 건물의 시공을 수행할, 건설 활동의 전적인 능력이 있는 단체 혹은 시공 실무의 전적인 능력이 있는 개인을 직접 지정할 권한이 있다:
  - (a) 국가 기밀의 분류에 해당하는 건물, 긴급 명령에 따라 시공되는 건물 및 임시 건물;
  - (b) 연구 또는 실험 성격의 건물;
  - (c) 정부 규정에 부합하는 단순하거나 작은 규모의 시공 건물 요소 또는 건물;
  - (d) 문화 또는 역사-문화적 유적지에 위치한 건물의 수선, 윤색 또는 복원;
  - (dd) 투자 결정의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에 의해 허용된 기타 특별 사례.
2. 도급자의 지정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은 건설 활동의 전적인 능력 및 시공 실무의 전적인 능력이 있는 도급자 선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도급자로 지정된 단체나 개인은 건설 활동에 대한 전적인 능력과, 건물의 형태 및 수준에 적합한 시공 실무의 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경제적 상태가 명백해야 한다.

#### **제 102 조. 시공 건물의 설계 도급자의 선정**

1. 시공 건물의 설계 도급자의 선정은 이 법안의 조항 55에 규정된 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정되어야 한다.
2. 선정된 건축 설계 계획의 설계자는, 시공 설계 활동 및 건물의 시공에 대한 실무 설계 능력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뒤따르는 설계 단계에 대한 선정에 있어 우선권이 있다.

#### **제 103 조. 건설 활동에서의 일반 도급자의 선정**

1. 건물의 규모, 성격, 형태 및 수준, 그리고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에 대한 특정 조건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개인 또는 건물 시공의 투자자는 건설 활동에 있어서 다음 형태의 일반 도급자 선정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a) 시공 설계의 전체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설계 도급자;
  - (b) 전체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도급자;
  - (c) 설계 및 시공의 전체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도급자;

- (d) 설계, 자재 및 장비의 조달, 시공의 전체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도급자;
  - (dd) 기획의 체계화부터 설계, 자재 및 장비의 조달, 그리고 시공까지 전체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턴키 도급자.
2. 건설 활동의 입찰에 참여하는 독립 도급자 또는 제휴 도급자는, 이 법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물의 형태 및 수준에 적합한 건설 활동의 능력에 대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3. 이 조의 조항 1에 규정된 일반 도급자의 형태가 적용될 경우, 그 일반 도급자는 그 전체 업무에 대해 협력하기 위하여 시공 실무 능력의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을 지정해야 한다.

**제 104 조. 입찰을 요청하는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1. 입찰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a) 입찰자로 하여금 도급자의 선정에 도움이 되는 필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한;
  - (b) 성공적인 입찰자를 선정하거나 또는 입찰 관련 법안에 부합하여 입찰자 선정 결과를 취소할 권한;
  - (c) 법안에 부합하는 다른 권한;
2. 입찰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의무를 갖는다:
  - (a) 입찰 초청 서류 및 승인된 건물 시공의 투자계획 내용에 일치하는 입찰 계획의 준비;
  - (b) 건설 활동 능력, 시공 실무 능력 및 그 입찰자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선정된 입찰자의 공포를 점검;
  - (c) 시공을 일정대로 완료하기 위해 자본 자금을 즉각적이고 전적으로 제공;
  - (d) 입찰자에게 필수적인 요구사항을 알리고 공지된 사항을 정확히 수행;
  - (dd)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시공 건물에 관련하여, 입찰의 결과가 결정된 후 성공적인 입찰자 및 계약 금액의 공개 공지;
  - (e) 건물의 보험 구입;
  - (g) 입찰을 요청한 당사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입찰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 (h) 입찰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계획, 입찰의 매매, 입찰 심사 동안의 정보 누설, 입찰자와의 공모, 또는 입찰 관련 법안의 기타 위반 등에 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i)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의무.

**제 105 조. 입찰자의 권한과 의무**

1. 입찰자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a) 독립 도급자 또는 타 도급자와의 제휴 도급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권한;
  - (b) 입찰 준비를 위해 정보를 제공 받을 것과 대지 측량을 수행할 것을 요청할 권한;
  - (c) 입찰자 선정에 관한 규정의 위배를 발견시 이에 대한 항의와 고발을 제출할 권한;
  - (d)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권한;
2. 입찰자는 다음 의무를 가진다:
  - (a) 진실되고 정확하며 입찰 초청 문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입찰의 준비;
  - (b) 이 법안의 98.6 조에 기술된 바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c) 입찰 연장 또는 재입찰을 야기하는 위반 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 (d) 입찰 보장의 수행;
  - (dd)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의무.

**제 106 조. 선정 과정 중 건물 시공의 투자 결정자의 책임**

1. 위반 사항을 검사하고 처리하며, 도급자 선정 과정중의 항의나 고발의 해결;
2. 도급자 선정 과정 중의 위반 사항 발견시 도급자의 선정을 중단하거나 선정 결과를 취소;
3.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그 결정에 의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함

## 6.2. 건설 활동 계약

### 제 107 조. 건설 활동에 계약에 대하여

1. 건설 활동에서의 계약은 건설 종합 계획의 체계화,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 체계화, 건설 측량, 건물 시공의 설계, 감독, 시공, 건물 시공의 투자 기획 관리 및 기타 건설 활동 업무 등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2. 건설 활동에서의 계약은 서면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 법안 및 기타 관련 법안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 건물의 규모와 성격, 업무의 형태 및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건설 활동에서의 계약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다.

### 제 108 조. 건설 활동에서 계약의 기본 내용

건설 활동에서의 계약은 다음 기본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1. 수행될 작업 내용;
2. 건물의 품질 및 기타 기술 요구사항;
3. 시공의 기간 및 일정;
4. 검사, 승인 및 양도의 조건;
5. 대금 지급 액수 및 방법;
6. 보증 기간;
7. 계약상 위반의 책임;
8. 각 특정 계약 형태에 따른 기타 합의사항;
9. 계약서에 사용되는 언어;

### 제 109 조. 건설 활동에서의 계약서 조정

1. 건설활동에서의 계약은 다음 상황에서 투자 결정을 내린 개인의 허가가 있을 경우만 수정될 수 있다:
  - (a) 건물 시공의 투자기획에 수정이 생길 경우;
  - (b) 국가가 관련 정책을 변경할 경우;
  - (c) 불가항력의 경우.
2. 계약의 수정을 허용하는 개인은 그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그 결정의 결과로 야기되는 손해나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 제 110조. 건설활동에서의 계약의 이익 배당금,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계약 분쟁에 대한 해결

1. 계약의 이익 배당금이나 계약 위반에 대한 징계가 적용될 경우, 계약서는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2. 국가 재정에 의해 지원되는 시공 건물에 관련하여, 이익 배당금의 최고액은 계약의 이익부분에 대해 12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벌금 최고액은 위반된 계약 가치의 12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는 재원은,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건물의 조기 위임 또는 작동의 결과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계약 부분으로부터 구해지거나, 계약 성능의 비용에 만들어진 합리적인 저축으로부터 얻어진다.
3. 건설 활동에서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교섭에 의해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간의 교섭이 조정을 이루지 못할 경우, 분쟁은 화해나 중재로 해결되어야 하며, 또는 법원이 법안에 부합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 제 7 장. 건설의 국가 행정 관리

### 제 111조. 건설의 국가 행정 관리 내용

1. 건설 활동의 개발에 대한 전략 및 계획의 체계화 미 그러한 전략과 계획의 수행 지휘;
2. 건설 관련 법안 문서의 공포 및 그 수행의 계획;
3. 건설 법규 및 건설 표준의 공포;
4. 시공 건물의 품질 관리 및 문서 기록 및 보존;
5. 건설 활동에서의 모든 형태의 허가에 대한 발행 및 취소;
6. 건설 활동에서의 안내, 점검, 조사, 항의와 고발의 해결, 위반의 처리;
7. 건설 활동에서의 과학 기술 연구의 편성;
8. 건설 활동의 노동력 양성;
9. 건설 활동 지역에서의 국제 협조;

### 제 112 조. 건설 관련 정부 행정 기관

1. 정부는 전 국토에 걸쳐 균일하게 국가의 건설 행정관리를 완수해야 한다.
2. 건설부 장관은 정부가 균일하게 국가의 건설 행정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3. 각 부처 및 동급 기관은 그들의 각 의무 및 권한 내에서, 국가 건설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건설부 장관과 협력해야 한다.
4. 모든 등급의 국민 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그들에게 위임된 권한에 부합하는 그들의 각 지역내에서 국가 건설 행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 제 113 조. 건설 사찰단

1. 건설 사찰단은 건설에 대해 특수화된 검사관 일행해야 한다.
2. 정부는 건설 사찰단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 제 114조. 건설 사찰단의 임무

건설 사찰단은 다음 의무를 가진다:

1. 건설에서의 법안의 이행을 검사;
2. 그 권한에 부합하여 건설에서의 위반을 감지, 예방 및 조치하거나 또는 관할 국가 기관에서 이를 다루도록 권장한다;
3. 관할 국가 기관에서 건설에 관련된 항의와 고발을 다루는 것을 검증하고 권장한다.

### 제 115조. 건설 사찰단의 권한과 의무

1 건설 사찰단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a) 관련 단체 및 개인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공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설명하도록 요청할 권한;
- (b) 필요한 경우 건물의 품질에 관련된 항목의 평가를 요청할 권한;
- (c) 법안에 부합하는 방지 조치를 적용할 권한;
- (d) 검사의 의사록을 준비하고 그 권한에 부합하는 위배를 처리하거나 관할 국가 기관에 이를 처리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할 권한;
- (dd)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권한;

2. 건설 사찰단은 다음 의무를 가진다:

- (a) 법규에 부합하여 사찰관의 기능과 임무를 완수하고, 사찰관의 명령과 절차를 수행
- (b) 사찰에 대한 결정 및 사찰관 카드를 사찰의 대상이 되는 개체에 제시한다. 사찰은 기록되어야 한다.

- (c) 사찰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부정확한 결론으로부터 야기되는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 (d) 법안에 부합하는 기타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제 116 조. 사찰의 대상이 되는 단체 및 개인의 권한과 의무**

- 1. 사찰의 대상이 되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a) 사찰관 또는 사찰단으로 하여금 사찰의 요구사항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권한;
  - (b) 사찰의 수행 동안 법안의 위반에 관련하여 항의와 고발을 제출할 권한;
- 2. 사찰의 대상이 되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a) 사찰관 또는 사찰단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도움을 제공;
  - (b) 자료를 제공하고, 본질적 문제를 설명하며, 건설 사찰단의 결론에 따라야 함;

**제 117 조. 항의와 고발을 제출할 권한, 항의와 고발을 해결할 의무**

- 1. 건설 관련 국가 행정기관이 이 법안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개인은 항의와 고발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고, 단체는 항의를 제출하거나, 또는 법정에 항의와 고발에 관한 법안에 부합하여 호소할 권한이 있다.
- 2. 모든 등급의 건설 관련 국가 행정 기관은 그들 권한 내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의 항의와 고발을 해결할 책임이 있으며, 그들 관할권 밖으로부터 항의나 고발을 접수할 경우, 이를 관할 당국에 전송하고, 이에 대한 서면 공지를 항의나 고발을 제출한 개체에 보내야 한다.

**제 118 조. 항의와 고발, 항의와 고발의 해결**

- 1. 항의와 고발 및 그에 대한 해결책은 항의와 고발에 관한 법안에 부합하여 제시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 2. 항의, 고발 또는 법정 호소에 대한 현안의 해결책에 관련하여, 건설 관련 국가 행정 기관에 의해 부과된 행정 결정에 면한 단체 및 개인은 그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건설 관련 국가 행정 기관에 의한 항의와 고발에 대한 해결, 법원 판결 또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정에 위해, 사안은 그러한 결정 또는 법원 판결 또는 결론에 부합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 제 8 장. 상여금 및 위반처리

**제 119 조. 상여금**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 관리, 활동에서 단체나 개인은 성적이 좋다면 상여금을 받는다

**제 120 조. 위반 처리**

- 1. 건설 관련 법안 및 기타 관련 법안을 위반하는 모든 개인은, 그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되거나, 행정 처벌을 받거나 또는 형사 고발되어야 한다; 또, 그 개인이 국가의 이익이나 단체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한과 이익에 손해와 손실을 야기했을 경우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 2. 건설 종합 계획에 반하거나, 법안이 요구하는 시공 허가를 갖추지 않았거나, 또는 발행된 시공 허가에 대해 부정확한 시공 건물은 반드시 철거되거나, 또는 위반된 부분이 법규에 부합하여 철거되어야 한다.

## 제 9 장. 규정의 이행

### 제 121 조. 이 법의 효력이 있기전에 이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건설 공사 처리

1. 종합 계획에 부합하나 일치하지 않는 건축물을 가진 기존 시공 건물은 현상태로 유지될 것이 허용된다, 건물이 확장 및 개선 혹은 보수되는 경우, 이 법안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종합 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 a) 건물의 확장, 개선 및 보수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국가 기관은 건물소유주에게 종합 계획의 기관과 동일한 기한의 임시 시공 허가를 심사 발급한다.
  - b) 건물이 계획된 구역으로 이전될 경우, 건물의 소유주는 법안에 부합하여 보상 혹은 보조를 받아야 한다.
3. 기한있는 임시 건설 건물에 대하여, 기획 이행기한전에 혹은 임시 건설 허가서에 이전요구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 제 122 조. 유효성

이 법안은 2004년 7월 01일부터 효력이 있다.

### 제 123조. 이행 안내

정부는 이 법안의 이행에 관한 세부 규정 및 안내를 제시해야 한다.

*이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11대 국회에 의해 2003년 11월 26일 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베트남건축법(일반사항)



## 제 1 장

### 현행 건축법규의 일반 규정

#### 제 1.1 조 건축법규의 적용범위

베트남건축법규(The Building Code of Vietnam)(이하 BCV)는 상기 언급된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각종 건축 관련 활동, 솔루션(solution), 규격 등에 필수가 되는 최소한도의 기술사양을 명문화한 법적 규정서이다.

주:

1. BCV 적용에 한계가 있는 사례들이 일부 장(章)에 명기되어있다.
2. 건축법규에 일반 글씨체로 쓰인 모든 문장은 필수 규정사항이고, *이탤릭체*의 문장은 권장 규정에 해당한다. (제 1.4 조 참조)
3. BCV는 세팅, 설계, 프로젝트 계획의 승인 및 평가, 시공작업의 설계, 시공 과정의 검사, 시공작업의 허가, 이용율(occupancy) 등을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4. BCV는 시공 상의 기술적 사항과 관련된 규정만 포함할 뿐, 건축물에 대한 감리절차 및 관리, 공공질서, 위생 관련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 제 1.2 조 용어의 정의

BCV에서 아래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 1.2.1 시공(건설) 활동(construction activity)

시공 활동에는 시공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기술 활동을 포함하며 두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된다.

- 1) 시공 계획- 시공 계획안 작성과 이러한 계획안에 따른 시공관리를 포함한다.
- 2) 자금출자 및 시공- 출자 사업계획서 작성, 현장측량, 설계, 시공 수행(준비, 수리, 철거 포함), 시공작업 (construction works)의 유지관리가 포함된다.

##### 1.2.2. 베트남 규격

베트남 규격이란, 베트남에서 발행된 규격을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1) 코드명이 TCVN인 베트남국립규격(The National standards)
- 2) 코드명이 TCXD인 건축규격(Building standards)
- 3) 코드명이 TCN인 정부규격(Ministerial standards)

#### 제 1.3 조 건축법규의 목적

BCV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모든 신축된 또는 재건축된 도심, 주거지역, 공업구역,

시공 프로젝트 등의 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1. 도시지역에 신축 또는 재건축된 건축물 거주자들의 안전과 위생, 편의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2. 다음과 같이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a) 생활환경, 조망, 역사적·문화적 유물의 보호, 즉, 국가적 문화정체성의 보전 및 개발
  - b) 공공재산의 보호: 건축물과 자산
  - c) 국방 및 보안 요건의 충족
3.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자자본, 토지, 기타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1.4. 조 건축법규의 기술적 요건

제 1.3 조에서 언급된 목적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견지에서, 모든 시공활동은 반드시 다음 장(章)에 명기되어 있는 기술적 요건들에 부합해야 한다.

1. 계획안은 개인의 안전과 편의 차원에서 토지용도, 환경, 건강보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2. 프로젝트 설계 및 실행은 반드시 거주자들의 안전, 위생, 편의에 관한 최소한도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3. 시공 중에는, 건설근로안전, 환경, 조망보호에 대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제 1.5 조 권장 기술솔루션(Deemed-to-satisfy technical solutions)

##### 1.5.1 기술솔루션의 요건

1. 계획, 설계, 시공수행을 위해 제시된 기술솔루션은 BCV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기술요건에 부합되는 것에 한해서만 승인된다.
2. 주변환경 상 BCV를 엄격히 따를 수 없는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 시에는, 적절한 솔루션이 최대한도로 본 건축법규의 기술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5.2 권장 기술솔루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본 건축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솔루션;
  - a. 이와 같은 솔루션들은 BCV가 채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존 베트남 규격에서 기초하고 있다. 어떤 기존 규격이 새로이 승인된 규격으로 대체되면, 대체된 규격은 자동적으로 BCV에 의해 채택된다.
  - b. BCV와 채택된 규격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BCV 요건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는,
2. BCV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련 당국이 BCV에 따르고 있다고 간주하

는 모든 솔루션

주:

대개, 이러한 솔루션들은 제 1.6 조에 따라 수용가능한 국제규격 혹은 해외규격에 기초한다.

1.5.3 건설부에서 발표한 시공 구성요소 및 세부사항의 표준 설계사양은 건축 설계에 적용 시에 평가될 필요가 없는 권장 기술솔루션으로서 권장된다.

### 제 1.6 조 국제규격 및 해외규격의 적용

국제규격 및 해외규격의 경우, BCV에 규정된 기술요건에 부합하고 건설부가 수용하는 경우에 한해, 베트남 내 현장측량, 건축설계, 시공프로젝트의 수행에 적용이 가능하다.

주:

1. 건설부 (간행물 번호 12/BXD-KHCN (1995년 4월 24일자) 및 78/BXD-KHCN (1995년 7월 17일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영국,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의 현행 건축규격 적용을 수락, 허가하였다. 단, 다음은 제외되었다.

- a) Data: Climatic data, hydro-geological data for construction (자료: 시공을 위한 기후적, 수계지질학적 자료)
- b) Precautions against explosions, fire, wind, cyclones, lighting (폭발, 화재, 바람, 태풍, 번개 등에 대한 사전대책)
- c) Environmental hygiene(환경 위생)
- d) Safety of construction projects regarding local climatic impact(지역적 기후영향과 관련한 시공 프로젝트의 안전성)
- e) Labor safety(근로안전(인부안전))

2. 베트남 내에서 국제규격 및 해외규격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규격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베트남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조건에 더욱 적합하게 하려면 이러한 규격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 Part I - 제 2 장

### 건축설계용으로 사용되는 자연조건에 관한 데이터

본 장의 주안점은 도시 계획안과 프로젝트 설계가 베트남 자연 환경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 제 2.1 조 건설구역의 자연조건에 관한 데이터

계획 및 설계를 위해 사용된 건설구역의 자연조건에 대한 데이터는 반드시 다음에 부합해야 한다.

1. 현행 베트남 규격에 언급되어있는 내용, 혹은
2. 상당하는 베트남 규격이 없는 경우에 적절한 자격을 갖춘 베트남의 정부기관이 제공해준 내용을 따른다.

주:

1. 자연조건에 관한 데이터와 관련하여, 다음 규격을 이용할 수 있다.
  - a) TCVN 4088-85 “Climatological data used in construction designing,”.
  - b) TCVN 2737-95 “Loads and impact,”.
2. 자연 조건에 관한 이외의 자료와 관련하여, “BCV- Volume 3- Appendix- Data on natural conditions of Vietnam”을 참조하여도 무방하다.

## 제 2.2 조 건설 현장 측량

건설부가 승인한 베트남 규격 또는 국제/해외 규격에 따라 측량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해 반드시 건설현장에 관한 기술적 측량보고서(지질학적 특성, 지형학적 특성, 수문지리학(hydro-geology), 환경영향 등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주:

건설현장의 기술적 측량에 관련된 현행 베트남 규격 목록이 건설부에 의해 “List of Vietnamese Standards on Construction”에 매년 게재되어 오고 있다.

## 시공작업 설계를 위한 일반 기술적 조건

본 장의 주안점은 건축 작업이 베트남의 자연적 특성, 인적/사회적/경제적/기술적 조건들에 따라 설계되도록 하는데 있다.

### 제 3.1. 조 건설 작업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건설 작업은 반드시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계획 및 건축설계
2. 구조적 안전성
3. 화재 및 폭발 사고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안전성
4. 사용자의 위생, 편의, 기타 안전성 조건

### 제 3.2. 조 계획 및 건축설계

#### 3.2.1 건설 현장

제안된 건설 현장은 반드시 다음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반드시 승인 받은 구역계획안(zone planning scheme)과 일치해야 한다 (계

획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제안된 건설현장은 반드시 적절한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2. 건설공사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작업할 수 없다. (환경, 천연자원, 조망, 유적, 기반시설, 국방시설 등의 보호에 따른 이유)
3. 조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허용수준 이상의 오염을 야기해서도 안 된다. (제 4 장 참조)
4. 화재 및 폭발 예방 관련 요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제 3.4 조 참조)
5. 대지, 특히 농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3.2.2 건축 설계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건축설계 (현장 계획(site planning), 공간적 배치, 실내외 데코레이션, 안뜰(courtyard) 및 정원 배치)는 다음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1. 관할 당국이 결정한 시공관리 규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2. 지역적 기후조건을 반드시 고려하여, 자연 통풍 및 채광을 위해 유리한 지역 기후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리한 기후조건에 영향을 피한다.
3. 반드시 건설현장 주변 지역의 자연적, 인공적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기존의 수면, 녹지공간, 차도 및 인도 등을 최대 활용한다.

## 제 3.3 조 천연자원과 환경 보호

건설공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1.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일환으로 환경 및 조망 보호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자연보호구역은 물론 역사적, 문화적, 건축학적 유물들을 보호해야 한다.
3. 개발단계 전반에 걸쳐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4. 건설현장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습과 관례, 종교 등을 존중해야 한다.

## 제 3.4. 조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예방조치

### 3.4.1 건설현장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다음 요건에 따라야 한다:

1. 주변 지역의 인구 및 구조물에 미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의 부정적 영향을 제한한다.
2.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적절한 급수시설과 이에 대한 편리한 접근을 확보함으로써, 소방용 장치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

### 3.4.2 시공물

1. 시공물의 설계, 구현, 이용은 다음 요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a)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예방한다. 해당 시공물의 규모 및 기능에 적합한 내화성을

갖는 자재 사용.

b) 가연성 및 폭발성 자재들은 각종 화재 및 폭발 위험물로부터 격리시킨다.

c) 화재 및 폭발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 i) 위험 경고 및 감지 기능이 있는 적절한 장치
- ii) 건물 내 모든 거주자의 안전하고 시기 적절한 비상탈출
- iii) 화재 및 폭발의 확산 방지
- iv) 적합하고 유용하여 효율적인 화재진압장비의 소지

2. 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화재진압의 요건 및 솔루션이 제 11 장에 기술되어 있다.

### 제 3.5 조 구조적 안전성

#### 3.5.1 일반 요구사항

1. 다음과 같이 건축물은 공사 기간 동안은 물론 건축물의 제안된 수명 동안 안전성 및 사용성(serviceability)을 보장하여야 한다:

a. 다음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성(stability)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한다.

i) 연쇄적인 붕괴하중(collapse load)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진적 하중을 포함하여, 여러 하중의 최악의 조합.

ii) 시간적 영향 등과 같은 기타 영향들

b. 시공 자재 및 건축물은 변형이나 진동, 노후화(degradation) 등에 의한 손상 없이 지정된 용도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2. 시공 자재는 프로젝트 설계기간 동안 교환할 필요 없도록, 내구성이 우수해야 하고 더불어, 규정된 기능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건물의 구조적 설계에 관한 요구사항 및 솔루션은 제 9 장에 기술되어 있다.

#### 3.5.2 하중 및 충격

1. 시공프로젝트 설계에 적용되는 하중 및 충격은 Standard TCVN 2737-95 Loads and Impact- Design requirement(표준 TCVN 2737-95 하중 및 충격 - 설계 요건)에 언급되어 있는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해당 건설현장의 측량 및 계측 결과에 맞춰 적절히 수정되어야 한다.

2. 풍하중(wind load)은 설계 뿐만이 아니라 시공 중에도 반드시 고려에 넣어야 한다.

주:

태풍(폭풍우)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건축물의 경우, 폭풍을 증폭시키거나 빗물을 고이게 만드는 건축학적, 구조적 설계를 가능한 피해야 한다. 이러한 설계는 위험한 추가하중, 과도한 진동, 물 고임현상(water ponding)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풍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통적인 구조패턴은 물론, 공

지역학적으로 효과적인 구조적 패턴을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5.3. 홍수에 대한 예방조치

해안 지역 및 홍수다발지역에서의 건설 공사의 경우, 거주민들의 홍수, 붕괴, 해일, 침수 피해 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지역에서, 홍수, 산사태, 토양침식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 3.6 조 지진에 대한 예방조치

### 3.6.1 지진 발생에 대한 예방조치

내진성을 위해, 시공 프로젝트는 세가지 등급으로 나뉘어진다:

#### 1. 1 등급 건축물

- a. 1 등급 건축물은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부분적인 변형이나 피해가 치명적인 위험을 부를 수 있으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 b. 1 등급 건축물은 국무총리의 결정 하에 선정된다. 대표적으로, 원자로, 대규모 댐(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복구에 큰 어려움이 따름), 유독성 화학약품 생산공장, 영속적 의의가 있는 문화적 유산, 주요 화재진압 시스템 등이 이 등급에 해당한다.
- c. 1 등급 건축물의 경우, 어떤 진동에도 최대 등급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설계요건을 충족하도록 내진(paraseismic) 조치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2. 2 등급 건축물

- a. 2 등급 건축물은 거주자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별 구성요소들의 손상, 균열과 같은 부분적 변형이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b. 2 등급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는, 각 경우에 대해 예상되는 지진 정도를 견딜 수 있는 설계요건에 부합하도록 내진(paraseismic) 조치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 3. 3 등급 건축물

- a. 3 등급 건축물은 지진으로 인한 붕괴에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건축물을 말한다.
- b. 3 등급 건축물에는, 단층 주택이나 공공건물, 중요 자산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산업용 건축물, 일반 창고, 보조건물 등이 있다.
- c. 3 등급 건축물의 설계에서는 내진 조치가 필요 없다.

### 3.6.2. 지진등급

특정한 시공 현장의 최고 지진등급은 해당 지역의 지진대(seismic zone) 지도에 따라 결정하며(BCV 3권 부록 2.3. 참조), 토양상태에 따라 재조정된다.

### 3.6.3. 내진 설계

내진 설계 계산은 반드시 관련 규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주:

*베트남 내진성 규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설계자는 건설부의 승인을 받은 다른 선진공업국의 현행 규격을 채용, 적용할 수 있다.*

### 제 3.7. 조 방식(부식방지; anti-corrosion) 조치

3.7.1. 베트남의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모든 건물과 프로젝트에는 적합한 방식(부식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3.7.2. 선택한 방식 조치는 효율성, 지속성, 경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화학적, 생물학적 성분이 부식작용으로부터 구조물 및 프로젝트를 보호하도록 고안된 이러한 조치들은 부식성 작용제(화학약품 또는 생물체가 분비하는 생물학적 물질)의 특성에 적합해야 하며 이러한 작용제의 영향을 상쇄시켜야 한다.

3.7.3. 권장 솔루션

다음과 같은 방식 조치들을 적용할 수 있다.

1. 금속 구조물의 경우

- a. 코팅: 공기에 노출된 구조물에 적용.
- b. 전기화학적 보호기능을 겸비한 코팅: 수중 및 지하에 놓인 구조물들에 적용.

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및 프리스트레스트(pre-stressed)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 a. 주변 조건에 적합한 시멘트 종류의 사용
- b. 콘크리트의 밀도를 높이고 방수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콘크리트 커버의 두께가 부식성 주변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c. 콘크리트 표면에 실링(sealing) 처리를 하여 수분의 침투를 막는다.
- d. 적합한 전기화학법으로 철근을 보호한다.
- e.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에 내장되는 고강도 강선(steel cable) 및 인장선(tensile wire)은 부식방지 처리가 되어야 하고 콘크리트 안의 폐쇄형 채널에 삽입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개방형 채널에 놓아 시멘트 모르타르로 실링해서는 안 된다.

### 제 3.8. 조 방수(water-proof) 조치

3.8.1. 설계 및 시공 시 방수 조치를 반드시 염두에 넣어야 한다.

3.8.2. 강우량이 많은 고온 다습한 열대 기후와 대체로 높은 지하수수위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수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3.8.3. 권장 솔루션

1. 아래의 방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 a. 시멘트용액을 방수 콘크리트 층의 표면에 도포
  - b. 아스팔트 고무 페인트칠
  - c. 콘크리트 표면에서 황사(yellow sand)와 배합하여 단열재로 덮은 모르타르로 미장공사(plastering)
2. 다음과 같은 방수 솔루션 및 방수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a. 아스팔트 페인트칠
  - b. 콘크리트 표면 위에 아스팔트지 혹은 방수 고무를 접착
  - c. 단열재 층이 없이 시멘트 모르타르의 미장공사

### 제 3.9. 조 번개에 대한 보호 조치

#### 3.9.1. 피뢰설비(lightning protection) 요건

1. 피뢰(避雷)보호를 목적으로, 시공 프로젝트(단, 아래 3번 단락에 기술되어 있는 특수 프로젝트는 제외)는 표 3.9.1에 명기된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된다.
2. 어떤 시공 프로젝트가 해당 프로젝트의 부분별로 각기 다른 피뢰보호등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전체 프로젝트의 종합적 피뢰보호등급으로 취하여야 한다.
3. 아래와 같이 특수 피뢰보호요건을 가지고 있는 시공물의 경우 반드시 개별 기관이 제시한 별도의 피뢰보호 규정에 따라야 한다.
  - a) 폭발성 물질(자재), 석유, 오일, 윤활유 등의 저장소
  - b) 송전선, 전화선
  - c) 방송탑(broadcasting tower), 무선의 송·수신기용 안테나

표 3.9.1.

피뢰보호 측면에서의 건축물 분류

구분 및 피뢰보호요건	피뢰보호등급		
	I	II	III
1. 건축물 특징에 관한 피뢰보호 분류			
a) 중요: (발전소, 방송국, 등)		+	
b) 생산 공정 중의 폭발의 위험:			
i) 매우 높다(정상 상태에서 발생 가능)			
ii) 높다(의외의 상황에서만 발생 가능)	+	+	
c) 폭발에 의해 초래되는 위험			
i) 인명 피해 또는 상당한 재산 피해			
ii) 인명 피해 없고, 경미한 피해에 한함	+	+	
d) 기타 건축물 (I)		+	+

2. 피뢰보호 요건:			
a) 직접 낙뢰로부터의 보호	+	+	+(1)
b) 정전기반사(electrostatic reflex) 및 전자기 반사로부터의 보호	+	+	0
c) 외부 전력공급선 및 금속관에서의 번개 전달로부터 보호	+	+	+
3. 직접 낙뢰, 정전기반사 및 전자기반사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작동하게 될 때의 요건:			
a. 기기 및 장비 설치 시작 시에	+	+	+
b. 완공 후			

주:

(1) 다음과 같은 3 등급 이하의 건축물은 직접낙뢰에 대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a. (지면에서부터 건축물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가 8m 보다 낮은 건축물:

i) 거주자가 거의 없는 건축물

ii) 대형 금속 구조물 부품이나 장비가 전혀 없는 건축물

iii) 거의 번개가 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건축물 (5년 이상 낙뢰가 없는 곳)

iv) 직접낙뢰가 유의할 만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건축물

b.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건물들로 둘러싸인 건축물

### 3.9.2. 피뢰 시스템

1. 피뢰를 위해 제공된 접지장치는 지형학적, 지질학적, 기상학적 조건 및 시공(construction work)의 특성에 적합해야 한다.

2. 세로로 긴 금속구조물이 옥외에 높은 고도로 세워져 있는 경우, 그리고 건축물 안에 전문장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피뢰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피뢰 시스템을 설치할 때에는, 피뢰보호구역에 있는 거주자, 기술장비, 건축물 전체의 안전성을 유효하게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피뢰 시스템은 반드시 완공 직후에 작동되어야 한다. 설치 후, 피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거쳐야 한다. 사용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정기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한다.

4. 주택, 공공건물, 산업용건물을 위한 피뢰시스템은 제 10 장에 기술되

어 있다. 특수 건축물을 위한 피뢰 시스템의 설계는 반드시 관련 전문 기관의 피뢰 요건에 따라야 한다.

### 제 3.10 조 방열(heat protection) 처리(내열 처리)

#### 3.10.1. 저온 및 고온으로부터의 보호

1. 건축설계에 사용될 TCVN 4088-85 기후학적 데이터의 기후 구역화 지도에 정의되어 있는 기후구역 B에 속하는 베트남 남부지역의 건축물 (3권 부록 2.1 참조)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방열 조치를 염두에 넣어야 한다.
2. 기후구역 A에 속하는 베트남의 북부지역의 건축물은 반드시 하절기의 더위와 동절기의 추위 모두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는, 저온으로부터의 보호만이 요구된다.

#### 3.10.2 일광(sunlight)으로부터의 보호

1. 방열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종류 및 크기의 개구부의 일광(햇빛)으로부터의 보호도 고려해야 한다. 서향 개구부는 수와 크기를 제한해야 한다.
2. 하절기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직사광선이 실내에 비춰지지 않도록, 일광 보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3.10.3 강우(降雨)로부터의 보호

강우로부터의 보호조치를 하여, 바람을 동반한 폭우가 출입문 및 다른 개구부를 통해서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설계는 우기 동안의 강수량, 풍력, 바람빈도, 주요 풍향과, 출입문 및 개구부의 방향에 기초해야 한다.

### 제 3.11 조 유해한 생물학적 물질로부터의 보호

- 3.11.1. 생물학적 공격을 당할 수 있는 물품의 가공처리, 생산,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식물성 원료 자재는 그러한 생물학적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방어 가능해야 한다.
- 3.11.2. 염수에 놓여지는 구조물들은 반드시 해양천공충류(marine borers) 및 좁조개(shipworm)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3.11.3. 이에 따른 보호용 약품 및 보호방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베트남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
- 3.11.4. 유해한 생물학적 물질을 함유된 건축자재(construction materials)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3.11.5. 흰개미와 나무좀벌레로부터의 건축물 보호는 제 10 장에 기술되어 있다.

### 제 3.12. 조 과도한 소음과 진동에 대한 보호

3.12.1. 시공활동은 물론 시공된 시설물의 본래 고안된 사용이 과도한 소음이나 진동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주거지역의 최대허용소음레벨에 대해서는 제 4 장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3.12.2. 건물 내의 과도한 소음에 대한 방음 조치는 제 10 장에 기술된다.

### 제 3.13 조 위생 및 편의

3.13.1. 건축물은 장애인 등과 같은 본래 사용자를 위한 위생 및 편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13.2. 위생 및 편의 요건은 제 10, 12, 13 장에 규정되어 있다.

## 제 4 장

### 건설 계획의 일반 규정

본 장은 토지용도, 건축물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설 계획을 세우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제 4.1. 조 적용 범위

4.1.1. PartⅡ의 건설 계획 부분에 언급된 규정은 도시 및 전원 주거지역의 건설 계획의 준비 및 승인을 위한 기준이 된다.

4.1.2. 도시 및 전원 주거지역의 허가된 건설 계획안은 현장 승인을 의미하는 계획인증서 및 건설허가증 발급을 위한 법적 근거이다.

4.1.3. 승인계획이 유효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계획인증서 및 건설허가증 발급이 본 part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 제 4.2. 조 용어의 정의

BCV에서 아래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 4.2.1. 건설 계획 또는 시공 계획(construction planning)

건설 계획이란,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떤 현장에 여러 건축물을 건축학적, 공간적으로 구조화 및 배열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건설 계획은 출자, 시공수행, 사회경제적 개발을 위한 근거가 된다.

##### 4.2.2. 도시지역(urban area)

도시지역이란, 어떤 행정구역에서 사회경제적 개발을 장려하는 집중화된 주거지역을 말하며, 적절한 사회·경제기반시설과 함께 그 내부에는 4000명(도심에 2000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최소 60%의 인력이 농업외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도시지역에는 대도시(city), 지방도시(provincial town), 지역의 소도시(district town) 등이 포함된다.

##### 4.2.3. 도시토지 또는 도시대지(urban land)

도시토지 또는 도시대지란, 어떤 도시의 경계선 안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적법한 자격을 갖춘 권한당국이 도시개발을 위해 승인한 근교토지계획도 도시토지로서 관리 되어질 것이다.

##### 4.2.4. 도시의 기반시설(인프라)

도시 기반시설의 구성:

###### 1. 물리적 기반시설:

###### a. 수송시스템;

- b. 정보통신시스템;
- c. 공급시스템: 전력, 연료, 난방;
- d. 공공조명시스템;
- e. 급수 및 하수처리시스템;
- f. 폐기물관리, 환경위생시스템.

2. 사회적 기반시설:

- a. (주거용) 주택;
- b. 의료, 문화, 교육, 체육, 스포츠, 무역, 서비스 등과 관련이 있는 공공 건물
- c. 공간: 숲, 공원, 물

4.2.5. 계획인증서

계획인증서는 설계 및 시공 수행 단계에서 출자 프로젝트를 기술 시 준수해야 하는 요건들을 지정하기 위한 필수 문서를 뜻한다.

주:

계획인증서의 내용:

1) 대지사용에 관한 요건:

- a) 프로젝트의 특성 또는 기능
- b) 최대 건축물 밀집도
- c) 대지이용율(coefficiency of land usage)
- d) 전면부지의 최소 폭
- e) 적색경계선 및 시공경계선의 위치

2) 건축, 도시계획, 물리적 인프라에 관한 요건

- a) 일반 건축 현장과 제안 프로젝트와의 관계
- b) 구조물의 최대 높이(마감된 지면에서부터 지붕꼭대기까지)
- c) 건축 요건: 지붕, 울타리(적용 가능한 경우에 한해), 색상, 외부 장식용 자재
- d) 바닥의 높이
- e) 주차시설
- f) 도시 시스템과 프로젝트 시설과의 연관성

3) 이외의 요건

4.2.6. 적색 경계선- 시공 경계선- 세트백(또는 단형후퇴; setback)

1. 적색 경계선(red boundary line):

적색 경계선이란, 도로나 다른 물리적 인프라의 부지 또는 다른 공공지역을 구획화하기 위해 계획지도 및 현장에 정의되어 있는 경계선을 뜻한다.

주:

도시지역에서는, 적색 경계선이 도시도로를 향하는 길을 따라 나있으며 인도 및 포장도로를 포함하여 노반(road bed)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시공 경계선(construction boundary line)

해당 부지 상에 시공 프로젝트가 건조되도록 허가된 정확한 지점의 경계를 정하는 한계선이다.

주:

- 1) 시공 경계선은, 제안 프로젝트가 적색 경계선에 근접할 수 있는 경우 적색 경계선과 일치하게 된다.
-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색 경계선으로부터 단형 후퇴(set back)된다 (도시계획 요건에 의거)

## 3. 세트백(setback)

세트백이란, 적색 경계선에서부터 시공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 4.2.7. 건축물의 밀집도- 대지이용율

#### 1. 건축물의 밀집도(DC; density of construction)

$$DC(\%) = \frac{\text{건축물 시공부지 면적(m}^2\text{)} \times 100\%}{\text{총 부지(land plot)면적(m}^2\text{)}}$$

주:

건축물 시공부지 면적은 건물 지붕의 가로 방향 돌출부까지로 계산된다.

#### 2. 대지이용율(CLU; coefficient of land usage)

$$CLU = \frac{\text{전체 건축물의 총 바닥면적(m}^2\text{)}}{\text{총 부지(plot) 면적(m}^2\text{)}}$$

주:

위 공식에서 정의된 전체 건축물의 총 바닥면적에는 지하면적과 지붕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 4.2.8. 도시 건축(물)

도시 건축(물)은 도시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조각상이나 동상, 장식용 정원, 광고포스터 등과 같은 소형 오브제 포함)을 포괄한다. 이 용어는 신축, 구(舊)지역의 재건축,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 및 복원 등 각종 건축공사에 적용될 수 있다.

## 제 4.3. 조 시공계획의 요건

시공계획은 반드시 다음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1. BCV의 목적에 확실히 부합한다.(제 1.3 조 참조)
2. 기술적 작업, 방위관련 작업(defense work),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유물과 환경의 보호의 규정을 따른다(제 4 장 참조).
3. 사회경제적 개발 계획 및 관련 시공계획 규정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지역적 특성에 따라야 한다:
  - a) 자연적 조건: 지형, 지리, 수리지질, 토양, 수자원, 환경, 기후, 천연자

- 원, 조망 등등
- b) 경제적 조건: 실제 현황과 발전가능성
- c) 사회적 조건: 인구, 인습 및 관행, 종교적 신앙

#### 제 4.4. 조 위생 및 안전을 위한 완충지역(Buffer Zone)과 건축물 보호 구역

4.4.1. 시공계획은 제 4.5 조 ~ 제 4.14 조에 제시된 건축물 보호구역과 위생 혹은 안전을 위한 완충지역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부록4.1 참조)

주: 위에 언급된 건축물 보호 구역과 위생 혹은 안전 완충지역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a) 다음과 같은 물리적 인프라 건축물을 위한 보호구역:
  - i) 제방, 관개, 수자원 관리 건축물
  - ii) 수송 시설물: 도로, 선로, 수로, 항공로
  - iii) 통신시스템
  - iv) 고전압 전력공급망
  - v) 오일 및 가스 수송관
  - vi) 급수 및 배수 시설물
- b) 역사적, 문화적 유적을 위한 보호구역, 미관지구
- c) 방위관련 건축물 보호구역 및 군사지역
- d) 수원지(水源地) 및 급수소를 위한 위생보호 구역
- e) 민간지역에서부터 다음에 이르는 완충지역:
  - i) 산업용 공장
  - ii) 저장소
  - iii) 폐수처리공장
  - iv) 쓰레기 처리장, 공동묘지
- f) 각종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완충지역
  - i) 건물 사이
  - ii) 상업용 건물과 다른 건물들 사이
  - iii) 연료 저장고, 주유소 혹은 가스 배급소, 기타 건축물 사이

#### 4.4.2 물리적 인프라를 위한 보호구역

1. 물리적 인프라를 위한 보호구역은 피보호 대상의 순수 부지는 물론이고, 해당 건축물의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지상, 지하의 모든 부분을 포괄한다.
2. 보호 구역에서는, 구조물을 세우거나 땅을 파거나 뚫거나 흙을 제거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3. 보호 구역과 관련된 규정은 현행 법령 및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다 (제 4.5 조 및 제 4.9 조 참조). 법령 및 시행령이 변경될 때에는, 대체된 법적 문서가 보급될 것이다.

#### 4.4.3 건설 제한 구역

보호 구역에 인접한 지역은 건설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한 지역에서는, 모든 건설관련 활동들이 규정된 건축물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 제 4.5 조 제방 보호 구역

#### 4.5.1. 제방 보호

제방 보호는 1989년도 제방에 관한 법령(Ordinance on dykes 1989)과, “제방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현정부의 각료회의가 발표한 1900년 12월 15일자 제 429 호 시행령 (Decree No.429/HDBT)에 명시되어 있다.

주:

1. 위 법령에서 언급하는 제방이란 다음과 같다.
  - a) 홍수 및 해일 예방을 목적으로 적법한 당국이 승인한 바 있는, 기존 제방과 신축 제방
  - b) 제방 보호 구역 내에 있거나 제방 안전과 관련이 있는 배수로 및 기타 건축물
2. 제방 보호 규정에 대해서는 제 4.5 조의 4.5.2.와 4.5.3.을 참조한다.

#### 4.5.2. 제방 보호 구역

1. 제방 보호 구역은 표 4.5.1에 규정되어 있다.
2. 하천수 및 해수의 정기적,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보조 제방 및 제방선 (예를 들어, 도시, 공업지대, 방위를 위한 해안제방,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보호 범위를 결정한다.

#### 4.5.3. 제방 보호 구역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시공

제방 보호 구역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시공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굴착: 구멍 1m 깊이마다 제방 보호 구역으로부터 10m씩 떨어진 곳에 굴착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주>예를 들어, 2m 깊이의 구멍을 팔 경우, 20m가 떨어져야 한다). 구멍의 깊이에 따라 거리는 증가하게 된다.  
이 규정에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방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

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들은 제방건설 담당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규모 및 중간 규모의 교량, 항만, 저수지 등과 같이 제방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은 반드시 제방건설 담당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4.5.1 제방 보호 구역

건축물의 종류 및 보호 구역	보호 구역	
	거리(m)	측정방법
1. 제방(1) I. 제방: 제방의 양쪽 코리더(corridor) a. 하천제방: + 제방의 바깥쪽(하천을 향해서) + 제방의 안쪽(지면을 향해서) b. 해안제방: + 제방의 바깥쪽(바다를 향해서) + 제방의 안쪽	20 25 100 20	제방의 최저부로부터
2. 제방 보호 댐(barrage)- 댐(barrage)에 수직으로 + 댐의 안쪽 부분 + 바깥 부분(하천, 바다를 향해서) - 댐을 따라서(강둑, 해안을 따라)	50 20 100	.석재로 덮혀있는 댐의 최상부와 그 L자형 코너로부터 .댐의 최저부로부터 + 댐에서 상류까지, 댐에서 하류까지
3. (제방 보호 구역내에 있고 제방 안전과 관련있는) 배수로, 배수거(culvert) : 배수관으로부터 모든 측면방향으로 + 일반 배수관 + 조수의 영향을 받는 지역 내의 배수관	50 80	배수관의 석조부분 말단 경계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부분

#### 제 4.6. 조 수자원관리 건축물 보호구역

수자원관리 건축물 보호구역은, 1994년도에 발표된 “수자원관리 건축물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과, 1995년 12월 27일에 발효된 “수자원관리 건축물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령 시행을 규정한 정부의 제 98 호 시행령/CP (Decree No 98/CP)”에 정의되어 있다.

주: 본 시행령에 기술된 규정이 표 4.6.1에 나와 있다

표 4.6.1. 수자원관리 건축물 보호 구역

건축물 종류 및 보호 구역	보호 구역	
	거리(m)	계산법
2.1. 댐(1) a. 댐의 외부: + 1등급 댐 + 2등급 댐 + 3등급 댐 + 4등급 댐 + 5등급 댐 b. 댐의 내부(저수지 쪽으로)	300 200 100 50 20	댐의 최상부 높이에 있는 경계를 따라
2.2. 관개 수로: 양쪽 코리더(corridor) a. 유속 2~10m <sup>3</sup> /sec b. 유속 2~10m <sup>3</sup> /sec 초과	5 10	수로의 바깥쪽 성토(embankment)로부터
2.3. 배수 수로: 양쪽 코리더 a. 유속 10~20m <sup>3</sup> /sec b. 유속 10~20m <sup>3</sup> /sec 초과	20 30	

주:

- (1) 댐의 등급 분류는 설계에 관한 주요 규정인 수자원관리 건축물 규격 TCVN 5060-90을 따른다

#### 제 4.7 조 수송 건축물 보호 구역

##### 4.7.1 수송 건축물 보호 구역

수송 건축물 보호 구역은 다음과 같은 문서에 규정되어 있다.

1. 수송 건축물 보호에 관한 법령(1994년에 공포)
2. 1982년 12월 21일자 각료회의의 제 203 호 시행령(Decree No. 203/HDBT)과 관련하여 공포된 도로관리법.
3. 1996년 7월 5일자에 발효된 철도 수송체계 안전 보장에 관한 제 39 호

정부 시행령 (Government Decree No. 39/CP).  
 4. 1996년 7월 5일자 내륙수로 수송체계 안전 보장에 관한 제 40 호 정부  
 시행령(Decree No 40/CP).

4.7.2. 도로 보호구역과 완충지역

1. 4.7.1항에 열거된 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구역이 표 4.7.1에 요약되어 있  
 다.

표 4.7.1. 도로 보호 구역

건축물(시공물)의 종류 및 보호구역	보호 구역	
	거리(m)	계산법
1. 도로: 양쪽 코리더 a. 국도(國道) b. 지방도로	20 10	노상의 매립 성토의 최저부 가장자리 혹은 굴착된 성토의 최상부 가장자리로부터, 또는 성토를 따라있는 배수로의 바깥 가장자리
2. 교량 및 배수관: 교량과 배수관의 극단 주위 (R 반경): a. 교량: - 길이: 60m 초과 - 길이: 30~60m - 길이: 30m 미만 b. 배수관	R=100  80 60 30	교량 배수관 헤드부에서부터 도로까지
3. 교량, 부두: 교량, 부두의 양쪽을 따라(하안(river bank), 강표면 위) a. 교량: - 길이: 60m 초과 - 길이: 30~60m - 길이: 30m 미만 b. 페리 선착장: - 일반 페리 - 모터 페리 c. 부유식 교량의 선창	  150 100 80  150 100	교량측, 부두 중심선으로부터 양 사이드까지

4. 교량, 도로: 보호 구역의 영공구역		교량측, 도로표면으로부터 위를 향해
a. 영공보호구역	4.5	
b. 다음과 같은 전압을 가진 전선까지의 거리		
+ 110KV 미만	7	
+ 110~220KV	8	

주: 기존 도시 지역 내에 있는 도로의 경우, 이격거리가 50%로 감소될 수 있다.

## 2. 도로 양측에서의 시공

도시 지역을 벗어난 도로 양측에 위치한 건축물의 시공 및 재건축의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a. 건설허가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한다. 시공은 승인된 계획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미적인 측면은 물론, 위생, 안전, 교통·운송 등을 고려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 b. 새 건축물(가정주택, 저장고, 석회/벽돌 가마)은 반드시 도로의 보호 코리더로부터 최소 15m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조용한 환경과 교통 안전이 요구되는 건축물(병원, 학교, 유치원, 등등)은 도로로부터 최소 100m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 c. 수많은 인파와 차량이 몰리는 건축물(마켓, 영화관, 경기장, 창고, 대규모 상점, 등등)의 경우에는, 교통흐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차 공간과 집회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d. 전신주는 그 높이 이상에 달하는 거리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 불가하다면, 대안적 조치로서 관련 도로 담당 정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e. 시공 전, 후에 노면과 건축물을 위한 적절한 배수가 보장되어야 한다.
- f. 개선문, 슬로건 스크린, 동상 등과 같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구조물을 세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g. 간선도로와 만나는 모든 도로/골목길은 간선도로의 높이에 맞게 올리거나 낮추어야 한다.

### 4.7.3. 철도 보호구역과 완충지역

#### 1. 철도 보호구역:

4.7.1항에 기재된 문서에 명기되어 있는 철도 보호구역은, 표 4.7.2.에 요약되어 있다.

2. 철도와 시가지 사이의 완충지역:

새로운 지역의 도시 계획 시, 철도로부터 주거지역까지의 최소 거리가 20m 이상이어야 한다.

표 4.7.2 철로 보호 구역

건축물 종류 및 보호 구역	보호 구역	
	거리 (m)	측정방법
1. <i>궤도 바닥(railway bed)</i> a. 매립 또는 굴착된 바닥(bed)	5 혹은 3	- 궤도 바닥의 매립된 성토의 최저부 가장자리 또는 굴착된 성토의 최상부 가장자리로부터 - 성토를 따라있는 배수로의 바깥쪽 가장자리로부터
b. 평탄 바닥 (매립이나 굴착을 하지 않음)	5,6	- 외측 철로의 바깥쪽 가장자리로부터 각 측면으로 - 철로의 최상부로부터 상향으로 수직방향
2. 철로영공보호구역	7,5	
3. 철로 교량		
a. 교량의 양쪽 라인에 수직: + 도시 지역내의 고가교 교량 + 길이가 20m 미만의 작은 교량	5 20	-바깥 난간부터 양측으로 -교량구조물의 가장 바깥쪽 부분에서부터 양측으로
+ 중간규모 교량: 20-60m	50	
+ 대규모 교량: 60-300m	100	
+ 초대형 교량: 300m 이상	150	
b. 교량 헤드부에서: + 보호신호 폴(pole)이 있음	2개의 보호 신호폴 사 이	교량 양쪽
+ 보호신호 폴이 없음	50	- 교량의 가장 바깥쪽 말뚝에서부터 양 측으로
4. 전화, 전신, 신호 시스템		
a) 전신주	3,5	- 전신주 중심에서부터 주

b) 전선	2,5	변 지역으로 -가장 바깥쪽 전선으로부터 터 수직, 수평
-------	-----	--------------------------------------

#### 4.7.4. 수로시설물과 민간주거지역 사이의 완충지역

새로운 도시지역의 시공계획은 표 4.7.3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은 수로시설물과 민간주거지역 사이에 최소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표 4.7.3 수로시설물과 민간주거지역 사이의 이격 거리

건축물(시설물) 종류	최소 거리(m)	
	주거지역	선착장 부두
- 일반 항구	100	300
- 어업용 항구	1,000	
- 창고, 탱크, 가연성액체를 채우기 위한 장비		
창고 수용력 30,000m <sup>3</sup> 초과	200	
30,000m <sup>3</sup> 이하	100	

#### 4.7.5 공항과 거주 지역 사이의 완충지대

시공 도시계획은 표 4.7.4에 제시된 공항과 주거지역 간의 최소 이격거리를 보장해야 한다.

표 4.7.4 공항과 주거지역의 최소 이격 거리 (km)

주거지역에 관련된 이륙 방향과 비행로	공항등급			
	I	II	III	IV
a. 주거지역을 가로지르는 이륙 + 주거지역을 가로지르는 비행로 + 주거지역을 가로지르지 않는 비행로	5	10	20	30
b. 주거지역을 가르지 않는 이륙	2	5	6	6

주:

1) 공항등급은 다음과 같이 비행장 활주로 길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공항등급	I	II	III	IV
활주로 길이(m)	800 이하	800-1,200	1,200-1,800	18,00 이상
ICAO의 분류	1	2	3	4

2)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ssociation의 약어

#### 제 4.8 조 고전압 전력공급망의 보호 코리더

고전압 전력공급망의 보호 코리더는 각료 의회에 의해 1987년 4월 30일자로 발효된 고전압 전력공급망 보호에 관한 시행령(Decree NO.70/HDBT)에 규정되어 있다.

주: 고전압 전력공급망의 보호 코리더는 표 4.8.1에 요약되어 있다.

표 4.8.1 고전압 전력공급망의 보호 코리더

건축물 종류와 보호 구역	보호 코리더	
	거리 (m)	측정방법
1. 전압이 높은 오버헤드 전선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바깥쪽에서부터 양쪽으로
a. 1 ~ 15 KV	1	
+ 피복선	2	
+ 피복되지 않은 전선	3	
b. 35KV	4	
c. 66-110KV	6	
d. 220 (230KV)		
2. 매립용 전선케이블		
a. 지하케이블이 배선되는		
+ 안정적 토양	1	
+ 불안정적 토양	3	
b. 수중케이블(하천, 호수)		
+ 뱃길 유(有)	50	
+ 뱃길 무(無)	100	
3. 변압기: 펜스가 없는 변압기, 풀에 걸쳐 있는 변압기	1번과 동일	

주:

전선 보호코리더에 시공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경우, 건축물에서부터 가장 낮은 전

선까지의 수직 거리가 반드시 다음과 같아야 하며, 그러한 계획안은 반드시 전력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최대 35KV 전압에 대해서는 3m
- 최대 66-100KV 전압에 대해서는 4m
- 최대 220(230)KV 전압에 대해서는 5m

#### 제 4.9 조 급수 시설물 보호 지역

##### 4.9.1. 수자원 위생보호구역

급수시스템을 위한 수자원은 표 4.5.1의 규정에 따라 위생보호구역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표 4.9.1 수자원 위생보호구역

수자원 종류 및 보호구역	보호구역(m)	보호구역 내 금지사항
지상 수자원: 해당 수자원으로부터 -상류부까지 -하류부까지	200 ~ 500 100 ~ 200	-건설 -폐수 및 농업 관개수 배출 -세척
지하수자원: 반경을 갖는 드릴링(drilling)된 정(井) 주변	25	-건설 -퇴비, 쓰레기, 석회 등의 매립 -가축 사육, 쓰레기 폐기
저수조가 있는 댐 -저수조의 평탄한 둑 -저수조의 경사진 둑	300 모든 수로	건설, 가축사육, 과실나무 재배

##### 4.9.2. 수처리시설 및 급수소의 위생보호구역

1. 구조물로부터 30m 이상 거리를 두고 수처리시설물 주변에 보호용 울타리나 벽을 세워야 한다.

2. 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 공연장, 공중보건시설 등을 짓는 것은 물론, 나무를 교접시키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다.

##### 4.9.3. 급수 수송관 보호구역

수송관의 지름과 중요성에 따라 급수 수송관 보호구역은 수송관 벽면에서부터 0.5m ~ 3m의 범위 내에 있다. 이러한 규정은 1994년 8월 17일에 정부가 제 91/CP 호 시행령과 함께 공포한 도시계획관리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제 4.10 조 폐수펌프장, 폐수처리시설, 쓰레기장, 공동묘지로부터의 위생격리거리

4.10.1 폐수처리시설과 폐수펌프장

1. 최소한도의 거리를 두어 폐수처리시설 및 폐수펌프장을 주거지역이나 식품가공시설 등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표 4.10.1 참조).
2. 상기에 언급된 경우는, 반드시 10m 이상의 폭으로 일종의 나무 울타리를 심어야 한다.

표 4.10.1 급수, 펌프장, 폐수처리장과 주거지역, 식품가공시설 사이의 최소 격리거리

펌프장 또는 폐수처리시설의 종류	수용량(m <sup>3</sup> /일)별 위생 격리거리(m)			
	200이하	200-5000	5000-50000	50000이상
1. 펌프장	15	20	25	30
2. 처리시설				
a) 슬러지건조상(sludge drying bed)을 이용한 기계적 처리	100	200	300	400
b) 슬러지건조상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150	200	400	500
c) 여과 시설	200	300	500	1000
d) 관개농지	150	200	400	1000
e) 생물학적 연못	200			
f) 산화수로(oxidation canal)	150			

주:

폐쇄된 맨홀 안에 설치된 수중펌프를 이용하는 폐수펌프장은 격리거리를 둘 필요가 없다.

4.10.2 쓰레기장 및 공동묘지

도시의 쓰레기장 및 공동묘지와 시가지 지역 사이의 최소 격리 거리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쓰레기장:
  - a. 2000m 매립지 (기계적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 b. 쓰레기처리시설(예: 발효공법), 소각시설 1000m
- c. 시내 공동묘지 2000m

**제 4.11 조 공업회사, 저장소, 주거지역 간의 위생 완충지역**

1. 공업회사, 저장소(창고), 주거지역 간 완충지역의 거리는 표 4.11.1에 명시된 최소값에 부합해야 한다.
2. 이 완충지역에서, 부지면적의 최소 40%는 나무 울타리로 둘러져야 하며, 최대 30% 정도는 소방서, 주차장, 저장소(단, 식품류 제외)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표 4.11.1 공업회사, 저장소, 거주지역 간 완충지역의 최소 거리

유해물질 배출농도에 따른 공업회사 및 저장소의 등급 분류	완충지역 최소거리 (m)
I	1000
II	500
III	300
IV	100
V	50

주: 유해물질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한 공업회사들의 등급분류는 과학·기술·환경부가 발행한 환경보호에 관한 임시규격에 규정되어 있다 (부록 4.8 참조).

**제 4.12 조 화재 안전을 위한 격리 거리**

4.12.1 주택 및 공공건물

1. 줄지어 서있는 형태의 주택 및 공공건물 간의 화재안전 거리는 최소 6m 이상이어야 한다.
2. 가장 고층에 해당하는 건물의 박공벽(gable wall)이 방화벽일 경우, 주택 박공(gable)들 간의 화재안전 거리는 불필요하다.

4.12.2 공업회사

여러 공업회사들간의 화재안전 거리는 표 4.1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12.1 다양한 공업용 건축물 간의 화재 안전 거리

건축물의 내화성 등급과 그 생산 등급	방화성 등급이 정해진 시공 주변 건물들과 주변 구조물의 거리		
	I 과 II	III	IV와 V
I 등급 및 II 등급: + A,B,C 생산등급 -자동 화재진압 없이 -자동 화재진압 + D,E 생산등급	9  6 규정되지 않 음	9	12
III	9	12	15
IV와 V	12	15	18

주:

- (1) 혹은, 건물 내에 일상적으로 저장되는 가연성 재료의 밀도가  $10\text{Kg/m}^2$ 의 건평(바닥면적)을 넘지 않는다.
- (2) 내화성 및 생산등급은 제 11 장에 설명되어 있다.

4.12.3 연료 및 가연성 물질 저장소, 가스충전소, 주유소

1. 가연성 재료들을 보관하는 옥외 저장소와의 최소거리는 표 4.12.2에 나와있다.

표 4.12.2. 저장소와 다른 구조물 간의 화재진압 거리

번호	저장물 종류	수용량	내화성등급이 있는 구조물과 저장소 거리(m)		
			I 과 II	III	IV와 V
1	석탄	1000톤 이상	6	6	12
		1000톤 이하	규정되지 않음		
2	토탄가루(peat dust)	1000톤 이상	24	30	36
		1000톤 이하(1)	18	24	30
3	토탄덩어리(peat in lump)	1000톤 이상	18	18	24
		1000톤 이하(1)	12	15	18
4	재목, 원목	1000m <sup>3</sup> 이상	15	24	30
5	톱밥, 대팻밥	1000m <sup>3</sup> 이상	13	13	24
6	인화성 액체	1000m <sup>3</sup> 이상	30	30	36
		600~ 1000m <sup>3</sup>	24	24	30
		600m <sup>3</sup> 이하	18	18	24
		5000m <sup>3</sup> 이상	30	30	36
		3000~5000m <sup>3</sup>	24	24	30
7	가연성 액체	1000~3000m <sup>3</sup>	18	18	24
		1000m <sup>3</sup> 이하	12	15	18

주:

- 가연성 액체 저장소의 수용량이 100m<sup>3</sup> 보다 작거나 석탄, 토탄가루나 토탄덩어리 저장소의 수용량이 1,000톤 이하이며 이러한 저장소를 바라보고 있는 건물벽이 방화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 거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나무, 석탄 등의 재료들이 저장소에 2.5m이상 높이로 쌓여져 있을 경우, IV 등급 및 V등급을 갖는 주택 및 주변건물과의 최소 거리는 30% 증가하여야 한다.
- 가스충전소에서부터 주변건물들까지의 거리는 표 4.12.2의 6번에 표기되어 있다.
- 도심지역의 주유소  
 시내 주유소의 위치는 반드시 제 7.15조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제 4.13 조 국방관련 건축물 보호구역

국방관련 건축물과 군사지역은 반드시 다음의 규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

- A. 국방관련 건축물 및 군사지역 보호 법령
- B. 1995년 1월 16일에 발효된 국방관련 건축물 및 군사지역 보호법을 공포한 정부시행령 O4/CP(Decree O4/CP)

주: 위의 문서에 따르면:

1. 국방관련 건축물 및 군사지역은 그 현장의 특성에 따라 적법한 당국이 결정한 금지구역, 보호구역, 안전지대(safety belt) 등으로 둘러싸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구조물들은 군사지역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금한다:
  - a. 정찰, 관측, 병력이동, 사격조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높이 혹은 크기의 구조물
  - b. 전투기 이·착륙에 방해가 되는 구조물
  - c. 군사항구의 입·출항로 또는 이를 이용하는 선박에 제약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구조물
3. 1등급(가장중요) 및 2등급(중요) 국방관련 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은 반드시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3등급 및 4등급에 해당하는 (전투작전, 훈련, 조사, 거주 필요요건 등을 지원)은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항 4.14 유적 및 미관지구 보호구역

유적과 미관지구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역사적, 문화적 유적과 미관지구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법령
2. 1985년 12월 31일자에 발효된 역사적, 문화적 유적 및 미관지구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각료회의 시행령 No. 288/HDBT
3. 1986년 7월 22일자에 발효된 역사적, 문화적 유적 및 미관지구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한 법령 시행을 권고하는 문화정보부의 회람지 No. 206/VHTT

주:

위의 규정에 따라

1. 미관지구 및 부동산에 해당하는 역사적 혹은 문화적 유적지는 3가지 보호구역중 하나이다.
  - a. 1 구역: 실제 유적지로서 어떠한 변화도 허가되지 않은 구역.
  - b. 2 구역: 1 구역의 주변지역으로, 관련 유적을 보존 및 복구하기 위해 설계된 석판, 동상 또는 조각상, 문화적 작품만을 설치할 수 있다.
  - c. 3 구역: 2 구역의 주변지역으로, 편의시설만을 세울 수 있되, 이러한 시설들은 해당 유적지 및 미관지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밀집도가 높은 시공현장의 경우, 2 구역 및 3 구역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3. 상기의 3 구역에 세워진 모든 구조물들은 반드시 문화정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보호구역의 결정은 미관지구 및 유적의 특성과 가치는 물론, 대지 여건과 관할지역의 재정계획에 따른다. 보호구역은 관련 지방 또는 시의 주민위원회 회장에 의해 제안되어, 일반 규정에 근거하여 문화정보부에 의해 결정된다(표 4.14.1). 특별히 중요한 유적과 미관지구의 경우, 문화정보부가 최종결정을 위해 국무총리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 4.14.1 유적 및 미관지구 보호지역

유적의 특성	1 구역 1	2 구역	3 구역
단일 유적: 높이: 5m이상	반경이 높이보다 3배 이상 큰 구역	1 구역을 에워싼 지대, 폭:100~200m	각각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다름
복합적 유적 (전체 유적지)	유적지대, 폭: 100-500m	1 구역을 에워싼 지대, 폭: 200m 이상	각각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다름
작고 높이가 낮은 유적(마을입구, 석판, 묘비...)	10m 이상의 반경을 갖는 구역		각각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 다름

#### 제 4.15 조 생활 환경을 위한 수질상태

4.15.1 도시와 농촌지역의 급수시스템은 부록 4.2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4.15.2 음용수 공급의 경우, TCVN 5501-91 음용수 - 기술적 요구사항(Drinking water - Technical requirements)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들 (부록 4.3 참조)을 따라야 한다.

4.15.3 세탁이나 수영장 등에 쓰이는 물은 TCVN 5502-91 생활 용수 - 기술적 요구사항(Water for living condition- Technical requirements)에 포함된 요건을 따른다.

#### 제 4.16 조 인구밀집지역의 최대허용소음도

거주지역에서의 최대허용소음도는 TCVN 5949-95 방음(Acoustics), 공공장소 및 인구밀집 지역, 최대허용소음도에 규정되어 있다 (부록 4.4 참조).

주: 공장 내부의 최대허용소음도 및 교통으로 인한 최대허용소음도에 관한 기준은 관련 규격에 명시되어 있다.

## 제 4.17 조 폐수 방출

4.17.1 환경으로 방출하기 전, 폐수는 수질규정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은 배수구역의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 4.17.2 공업폐수의 방출

1. 환경으로 방출하기 전, 공업폐수는 반드시 TCVN 5945-95 공업폐수 방출에 관한 규격(부록 4.5 참조)에 규정되어 있는 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특수한 분야의 공업폐수는 방출 규격에 관한 특정 규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제 4.18 조 대기오염(기체폐기물의 방출)

### 4.18.1 대기오염

대기로 배출되기 전 기체형태의 산업폐기물은 다음과 같은 농도 한계값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 무기 물질 및 먼지: 무기 물질 및 먼지와 관련해서는, TCVN 5939-95 산업폐기물의 대기오염 규격(quality of air standards on industrial waste)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2. 유기 물질: 유기 물질의 경우, TCVN 5940-95 산업폐기물의 대기오염 규격(quality of air standards on industrial waste)에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4.18.2 특수 생산 및 가동으로 인한 가스 배출은 그 농도 한계값에 대한 특정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 5 장 도시 계획

본 장은 도시 계획이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도시 레이아웃 구성 및 인프라 개발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2. 투자와 대지, 기타 천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한다.
3. 산업화, 현대화, 국가의 문화정체성을 목적으로, 도시 발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한다.

### 제 5.1 조 도시 계획 프로젝트

- 5.1.1 모든 도시지역의 개발은 반드시 사전에 계획되어야 하며 그러한 계획들은 반드시 적절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계획은 도시 재건 및 건설의 기초가 된다.

5.1.2 도시 계획의 준비는 반드시 건설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주:

1. 모든 도시 지역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5 등급으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등급분류는 1990년 5월 5일에 발효된 각료회의(정부) 결정 No 132-HDBT에 규정되어 있다.
2. 도시 계획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기본 (도시) 계획(general planning)은 도시 전체 대지에 대한 계획안이다.
  - b. 상세 (도시) 계획(detailed planning)은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시 지역의 다양한 부분이나 기능적 도시 부분을 위한 계획안이다.
3. 1993년 12월 28일자에 건설부 결정 No. 322-BXD/DT와 함께 공포된 도시 계획안 준비(작성)에 관한 법규를 참조한다.

## 제 5.2 조 기본 도시 계획

### 5.2.1 기본 도시 계획의 내용

기본 도시개발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공간, 인프라, 환경 보호 차원의 조치를 포함하여, 향후 15년에서 20년 동안의 도시 개발 구상(concept)
2. 5년~10년 기간에 걸친 도시 계획의 첫 번째 단계
3. 상세계획 준비를 위한 기본 틀 구축
4. 도시 계획에 따른 도시 개발 관리에 관한 법규 수집

### 5.2.2. 기본 도시 계획의 요건

기본 도시 계획은 반드시:

1. 본 BCV의 제 4.1조에 명기된 계획에 따른 일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2. 도시 복구(rehabilitation) 및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조건, 실질적 경제현황과 잠재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도시 지역의 특성, 인구, 토지조건을 측정하고, 주요 생태기술적(eco-technical)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
3. 다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간 개발과 인프라를 개념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 a. 토지와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
  - b. 안정적 개발을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서의 환경보호; 자연재해와 잠재적 산업 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 c. 역사적·문화적 유물과 자연조망의 보전
  - d. 국가치안과 방위의 보장
4. “도시 개발 관리에 관한 규정(서)”을 마련(작성)해야 한다.

## 제 5.3 조 상세 도시 계획

5.3.1 승인 받은 상세 도시 계획은 부지 승인을 위한 개발관리, 계획인증서 발급, 토지 임대 혹은 재배치, 건축허가증 발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다.

### 5.3.2 상세 계획(Detailed plan)의 내용

상세 계획은 향후 10년 내로 복구 및 개발되어야 하는 지역과 관련하여 도시 개발 단계에서 기본 계획의 개념을 확인시켜주며, 다음으로 구성된다.

1. 지역별 토지 사용, 로트(lot) 분할, 그 용도에 관한 규정을 위한 계획안 작성
2. 건축학적 특징을 말해주는 적색 경계선 및 시공 경계선 확립과 도시 조망과 환경을 위한 보호조치
3. 물리적 인프라 시스템의 건설 혹은 복구를 위한 제안 설계

### 5.3.3 상세 도시 계획(Detailed urban planning)을 위한 요건:

1. 대상 지역의 기본 계획을 위해 개략적으로 짜여진 컨셉에 세부사항을 제공하고 확인해야 한다.
2. BCV의 제 4.3 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 계획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3. 기존 자연조건과 건축물을 평가하고, 토지 이용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결정해야 하며, 시공, 단계적 개발과 투자유치 간의 균형을 최적화해야 한다.
4. 토지를 분할하고, 지역 토지 이용 관리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안해야 한다.
5. 적색 경계선, 시공 경계선, 건축관리상의 규제, 조망보호를 결정하고, 관련 건설 관리에 관한 법령을 수집, 정리한다.

## 제 5.4 조 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 선택

도시 개발을 위해 선택된 토지는 반드시 다음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1. 경제, 도시 기반시설, 계획 인구, 기후, 조망 등을 위한 이점이 있어야 하며 도시 개발의 추세와도 맞아야 한다.
2. 과도한 자연적 장애 없이 시공수행에 유리한 자연 조건들이 (지형, 지질, 수리(hydrology), 기후) 있어야 한다.
3. 향후 20 년 내외의 도시 개발을 위한 적절한 토지 면적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4. 다양한 개발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양적 차원은 물론, 질적 차원의 좋은 수자원이 있어야 한다.
5. (독성 화학약품, 방사능, 소음, 질병에 의한) 심각한 환경오염에 의해 위협받는 지역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6. 채광, 자연 보전, 고고학적 탐사를 위한 보존지역으로 결정된 구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
7. 제 4 장에 명시되어 있듯이 건설이 금지된 구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

## 제 5.5 조 다양한 기능적 민간 지역 분류를 위한 원칙

5.5.1 기능 구간(functional area)은 반드시 환경보호, 조망, 화재예방 등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장소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신속하며 안전한 교통 체제로 서로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5.5.2 인프라 시스템의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기능 도시 구간의 배치가 자연 지리적 조건, 현 경제상황, 사회적 현황, 기존 건설 프로젝트들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고비용의 기술이나 비용낭비를 제한해야 한다.

주: 기능 민간 지역의 구성

1. 민간 지역(civil area):
  - a. 거주구역
  - b. 해당 시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회사 및 학교를 위한 구역
  - c. 도심 및 공공서비스 구역
  - d. 오락 및 여가 구역, 녹지 구역
2. 민간 지역 밖에 배치된 지역들
  - a. 산업 지역 및 저장소 지역
  - b. 외부 교통 구역
  - c. 물리적 기반시설, 전력공급, 급수 및 하수, 화재예방 관리구역
  - d. 격리가 요구되는 구역 (도살장, 공동묘지, 쓰레기장).
  - e. 특수 구역 (군사 지역)
  - f. 특수 녹지대: 수목원, 그린벨트, 식물 연구원, 지표수면
  - g. 향후 도시 개발과 다른 종류의 토지를 위한 보존 구간

## 제 5.6 조 민간 지역 계획

5.6.1 민간 지역은 반드시:

1. 오염 및 유해 물질을 방출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면서 상류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고층 건물을 세우기에 수용 가능한 기후, 배수, 지질, 토지 임대 등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5.6.2 주거용 주택부지, 공공서비스 건물, 물리적 기반시설, 공원 및 정원은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5.6.3 토지사용 기준

민간 지역으로 할당된 토지 용도는 표 5.6.1에 제시된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표 5.6.1

민간 지역 토지 용도 기준

도시분류	도시 구간 토지 (제곱미터/인구) 구성				
	주택구간(1)	교통(2)	공공빌딩	공원과 정원	총
I-II	25-28	19-21	4-5	6-7	54-61
III-IV	35-45	16-20	3-4	7-9	61-78
V	45-55	10-12	3-3.5	12-14	>80

주:

- (1) 주거부지의 요소: 표 5.7.1 참조
- (2) 교통용 보존부지의 요소: 표 5.6.2 참조

표 5.6.2

민간지역의 교통용 보존부지의 기준

도시분류	토지 면적 (m <sup>2</sup> /1인당)	
	도로망	정류장, 주차장
I - II	15.5 - 17.5	3.5 3 - 3.4
III - IV	13.5 - 16.8	
V	8 - 10	

제 5.7. 조 거주 구역을 위한 계획

5.7.1. 대지 사용

1. 대지 사용의 기준

- a) 거주 구역을 위한 대지 사용 계획은 반드시 표 5.7.1.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표 5.7.1.

거주 구역의 각종 대지 사용 기준

도시 분류	대지 기준(m <sup>2</sup> /1인당)				
	주택	안뜰, 도로	공공건물	공원과 정원	총계
I - II	19-21	2-2.5	1.5-2	3-4	25-28
III-IV	28-35	2.5-3	1.5-2	3-4	35-45
V	37-47	3	1.5	3-4	45-55

b) 일부 신도시 지역의 경우, 표 5.7.1.에서 요구한 기준보다 엄격한 대지 사용 기준이 필요하다.

2. 최대 건축밀도

도시 계획에서, 건축 밀도는 다음의 최대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a) 건물

택지(land lot)의 최대 순수 건축 밀도는 표 5.7.2.에 나와 있다.

표 5.7.2.

주택지의 최대 순수 건축 밀도

택지면적(m <sup>2</sup> )	50이하	50-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최대 건축 밀도(%)	100	90	80	70	60	50

(b) 주택단지 혹은 거리그리드(street grid)

주택단지 혹은 거리그리드의 건축 밀도는 주택행간에 최소 분리 거리를(자연적 통풍 및 조명을 위해) 확보해야 한다:

표 5.7.3

주택간의 분리 거리

층수	1	5	10	15
거리 (m)				
(두 주택행의 긴 면 사이의 거리)	5 (L=1.5 h)	20 (L=1.3 h)	30 (L=1.0 h)	45 (L=1.0 h)

주

- 1) 표 5.7.3 의 규정을 바탕으로, 표 5.7.4 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택단지 또는 거리그리드의 최대 순수 건축 밀도(공공대지면적 제외)와 최대 토지이용율을 계산한다.

표 5.7.4

주택단지 또는 거리그리드의 최대 순수 건축 밀도(공공 대지면적 제외)와 최대 토지이용율

평균 층수	최대순수건축밀도(%)	최대토지이용율
1	70	0.70
2	60	1.20
3	53	1.59
5	47	1.88
6	39	2.00
7	36	2.34
8	33	2.52
9	31	2.54
10	28	2.70
11	26	2.80
12	24	2.86
13	22	2.88
14	21	2.90
15	20	2.94
15 이상		3.0-5.0

2) 주택단지의 총 건축 밀도(brutto, 공공대지면적 포함)는 다음 공식으로 얻을 수 있다.

$$M_{brutto} = M_{netto} \left(1 - \frac{S_{dct}}{S_{dtg}}\right) = M_{netto} \frac{S_{dct}}{S_{dtg}}$$

M brutto - 총 건축 밀도(brutto, 공공 대지면적을 포함)

M netto - 최대 순수 건축 밀도(공공 대지면적 제외)

Sdct - 주택지 면적

Sdcc - 공공 목적의 부지면적

Sdtg - 총 대지면적(안뜰, 정원, 도로, 광장 등의 대지로 구성)

3) 거주 구역을 위한 표 5.7.1.의 자료를 따르면 Mbrutto = 0,8 netto 이다.

### 5.7.2. 지침

1. 도시 거주 구역의 구조물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1군 혹은 2군: 도시, 도시의 일부(도시 관할구역), 거주구역, 거주단위에 해당하는 3가지 또는 4가지 레벨이 있다.
- b) 3군 혹은 4군: 주요도시 또는 지방도시, 거주구역, 거주단위에 대항하는 2가지 또는 3가지 레벨이 있다.
- c) 5군: 지방도시에 해당하는 단 1가지 레벨이 있다.

주:

기존 도시의 개조(renovation)를 위한 도시 계획의 경우 거주 구역의 경계와 구조는 행정적인 경계 및 구조와 정렬될 수 있다.

2. 거주 구역은 주택으로부터 일터까지의 접근을 보장하고 공공서비스 및 오락시설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 거주 구역은 공공 건물의 배치뿐만 아니라 행정적 관리를 위한 거주단위로 편의에 따라 나뉘어져야 한다. 거주 구역 이내에 있는 공공 건물의 서비스 반경은 1500m 이하여야 한다.
4. 거주 구역의 기본단위는 거주단위(residential unit)이다. 각 단위에는, 일일 요구사항이 필요한 유치원, 보육학교, 초등학교, 지역행정, 문화정보원, 시장, 놀이터, 정원, 도로 등과 같은 일상생활 요구사항에 필요한 1등급 공공 건물 및 주택단지가 있다.
5. 거주 단위를 위한 새로운 계획은 다음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a) 거주 단위 이내에 있는 모든 공공 건물의 서비스 반경은 500m 이하이다.
  - b) 주 도로는 거주 단위를 가로지르지 않는다.

## 제 5.8. 조 공공 건물의 계획

5.8.1. 공공서비스 건물은 반드시 도시계획 구조와 행정조직에 맞게 설계 및 배치되어야 한다.

### 5.8.2. 도시계획:

1. 공공 건물에 관한 설계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표 5.8.1. 참고).
2. 증가하는 인구와 서비스 기준에 따라, 공공건물의 수용력을 결정하기 위해 외부 방문자의 수와 계획단계의 개발을 포함해야 한다.
3. 인구 및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학교 및 병원을 확장시킬 수 있는 대지를 남겨둔다.
4. 공공 건물은 그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 a) 다음과 같은 건물에는 조용한 환경이 요구된다: 유치원, 학교, 병원, 연구 시설은 반드시 주요 도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하며 안뜰, 정원, 녹지 등을 위한 적당한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b) 문화시설, 무역 및 서비스 시설은 반드시 주요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 c) 고가횡단보도나 우회로 터널이 있지 않은 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과 연결된 도로는 주요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절대 안 된다.

표5.8.1.

## 공공 건물의 설계 기준

건물의 종류	관리 등급	추산 능력			
		건물		대지	
		산출 단위	기준	산출 단위	기준
1. 교육시설:					
a) 보육학교	거주단위	place/1000	60-70		20-30
b) 초등학교(1등급)	거주단위	per	100-130	m <sup>2</sup> /place	18-22
c) 중학교(2등급)	거주단위		80-100		20-25
d) 고등학교(3등급)	거주지역		20-30		30-35
2. 건강관리:		Station/			500
a) 공공 보건소	거주단위	1000	1	m <sup>2</sup> /station	3500-4200
b) 임상진단센터	거주지역	per	1	ha/project	1-4.5
c) 종합병원	도시	beds/	4-5	m <sup>2</sup> /bed	(50-500
d) 산과병원	도시	1000	0.5-0.6	Beds)	30-50
		per			
3. 체조, 스포츠 시설					
a) 훈련운동장	거주단위			m <sup>2</sup> /pers.	0.5-1.0
				ha/project	0.3-0.9
b) 기초스포츠운동장	도시			m <sup>2</sup> /pers.	0.6-1.0
				ha/project	1.0-2.0
c) 경기장	도시			m <sup>2</sup> /pers.	0.8-1.0
				ha/project	2.5-4.0
d) 스포츠-체조 센터	1군, 2군			m <sup>2</sup> /pers.	0.8-1.0
	도시			ha/project	5.0-16.0
4. 문화 시설					
a) 도서관	도시			ha/project	0,5
b) 박물관	도시			ha/project	1.0-1.5
c) 전시회	도시			ha/project	1.0-1.5
d) 극장	도시	place/1000	5-8	ha/project	1.0-1.5
e) 문화 공간	도시	per	8-10	ha/project	0.5-1.0
f) 극예장	도시		3-4	ha/project	0.7-1.0
g)방과후 문화교육장	도시		2-3	ha/project	1.0-1.5
5. 시장	거주단위			ha/project	0.2-0.5
	도시			ha/project	0.8-1.5
6. 공동묘지	도시			ha/1000	0.01-0.05
				pers	

주:

거주 단위 이내의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를 위한 규정이 마련 되어야 한다 (3등급).

## 제 5.9. 조 기존 도시 지역의 개조 및 복구

5.9.1. 기존 도시 지역에서, 대지 사용 기준이 축소되거나 공공 건물의 규정된 서비스 반경이 늘어날 수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제 5.7 조 및 제 5.8 조에 주어진 값의 10%를 넘지 말아야 한다.

5.9.2. 기존 거주 구역의 개조 및 복구 설계는 실현 가능하고 각각의 현황과 맞아야 한다:

1. 다양한 종류의 대지 사용의 건축 밀도와 기준
2. 도시 경관
3. 기존 건물의 역사적인 가치, 건축적인 가치, 질적 수준
4. 물리적 인프라, 편의 시설, 환경 위생
5. 투자 가능성

5.9.3. 기존 거주 구역의 개조 및 복구를 위한 도시 계획은 다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거주 구역의 재조직화:

- a) 주택 블록의 복구;
- b) 수명이 다한 건물의 해체(철거), 건물의 기능(용도) 변화
- c)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창고나 회사를 이전, 제거하고 산림으로 뒤덮인 대지 면적을 증가시키며, 건축 밀도를 감소시킨다.

2. 공공 건물의 재조직화와 추가 건설

인구와 공공건물의 주어진 반경이 제 5.9.1항에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해결책 중 하나가 적용된다.

- a) 도시 차원에서의 거주 구역, 거주 단위 등에 인접한 다른 공공 건물을 충분히 활용한다.
- b) 거주 구역과 거주 단위에 있는 공공 건물의 위치를 재조정한다.
- c) 거주 구역과 거주 단위에 필요한 공공 시설을 보충한다.

3. 수송망의 재조정.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거리를 녹지대 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전환.

4. 기반시설시스템의 복구: 급수 및 하수 시설, 전력공급, 조명, 통신시설, 화재안전 장치

5. 공중보건 상태의 개선(예: 연못과 호수의 개조)

## 제 5.10. 조 도심부 계획

5.10.1. 1군 및 2군 도시 구역에, 도심은 도심부의 메인 프로젝트와 도시 구역의 다른 지구에 배치된 다른 특별한 프로젝트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5.10.2. 도심부는 각기 다른 행정차원 하에 있는 중심부와 편의 서비스, 대지 사용 효율, 출자금 및 도시 미관을 보장하기 위한 특화 중심부 등과 같은 여러 중심부의 조화로운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적절한 지역에 위치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주:

1) 도심부 시스템의 두 가지 유형:

a) 상이한 등급의 행정적 도심

b) 특화된 도심

2) 상이한 등급의 행정적 도심. 행정적 등급과 통일된 공공 건물의 시스템의 서비스 등급

a) 1군 및 2군 도시 지역의 3가지 등급:

i) 1등급 :(일상적 서비스) 거주 단위를 지원

ii) 2등급 :(정기적 서비스) 거주 구역을 지원

iii) 3등급 :(이례적인 서비스) 도시 구역 또는 도시 구역 일부분을 지원

b) 3군 및 4군 도시 지역의 2가지 등급:

i) 1등급 :(일상적 서비스) 거주 단위를 지원

ii) 2등급 :(단기, 장기의 정기 서비스) 도시 구역을 지원

c) 1가지 등급: 5군 도시 구역, 일상적 서비스와 정기적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 여전히 크고 작은 지역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각각의 도시 항목과 결부되어 있는 모든 도시 종류의 단기, 장기의 정기 서비스

3) 특화된 도심

도시 구역: 상이한 등급의 행정적 도심 시스템 가까이에 다음과 같은 특화된 도심 시스템도 있다: 의료, 교육, 쇼핑, 서비스, 문화, 스포츠...밀집 지역 이내의 독립성과 통일성(coherency)을 모두 제기함.

5.10.3. 전체 도시 구역의 중심

1. 전체 도시 구역의 중심은 도시 구역 안의 다른 구역과 연계된 곳에 위치해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갖추어야 한다.

2. 중심에서는, 대표적인 건축적 건물들(중요한 기관, 웅장한 문화적 작품 및 무역 전시관 등)과 광장, 주요 도로 등이 일상생활 활동과 조화를 이루어 거대한 건축학적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3. 다음을 포함한 문화 시설 및 상업 시설은 도시 구역의 공공 중심지에 위치해야 한다: 시립 극장, 영화관, 박물관, 예술품 전시센터, 클럽, 은행, 우체국, 상점, 호텔 등. 중심가에 위치한 공공 건물의 설계 규모는 다른 지방에서의 방문객을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용을 가능해야 한다.
4. 도심 광장은 반드시 다기능적이어야 하고, 주된 사회문화적이고 정책적 활동을 위한 장소이자 건축학적 존재 자체를 창조하기 위한 장소이어야 한다.

#### 5.10.4. 특화된 도심지

1. 특화된 도심지는 반드시 적절한 장소에 위치되어야 한다.
2. 과학 연구의 중심지, 문화, 교육, 체육 스포츠 중심지는 한 지역이나 도시 구역의 다른 공공 중심에 위치되어 있을 수 있다.

### 제 5.11. 조 도시의 녹지공간

5.11.1. 녹지공간은 도시 지역이 다음과 같이 최소한도로 필요한 녹지대를 갖추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표 5.11.1

최소한도의 도시 녹지대(m<sup>2</sup>/capita)

도시 분류	공공을 위한 녹지대		
	전체 도시의 녹지대	민간지역을 위한 녹지대	거주지역을 위한 녹지대
I 또는 II	10 - 15	5 - 8	3 - 4
III 또는 IV	7 - 10	7 - 8	3 - 4
V	7 - 10	12 - 14	3 - 4

주:

- 1) 지정된 리조트 도시 지역에서는, 전체 도시 지역의 녹지대가 적어도 30 -40 m<sup>2</sup>/inhabitant이어야 한다.
- 2) 도시 녹지대는 3가지 주요 그룹으로 구성된다:
  - a) 공공사용을 위한 녹지(공원, 정원, 이동식 정원)
  - b) 제한 사용을 위한 녹지(도시의 기능적 구역의 녹지대: 주거용, 산업용, 저장, 학교..)
  - c) 특화된 녹지대(완충지대, 보호구역, 과학조사구역)

5.11.2. 도시 녹지대는 연속적인 녹지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거리를 그린 밴드(green band)와 연결해야 한다. 식목을 목적으로, 빈 공간과 운하, 호수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5.11.3. 식목이 전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가령, 거리에서의 교통안전, 건물의 기초, 지하작업, 주민의 안전(큰 가지의 낙하나 나무가 원인이 됨), 혹은 환경적 위생(해로운 물질이나 해로운 벌레를 불러들이는 나무를 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등.

5.11.4. 공원

a. 1군 및 2군 도시 구역에는 지역 상황과 공원 유형에 맞는 적당한 대지 면적과 테마 파크(어린이 공원, 스포츠 공원, 동물원, 식물원, 나무 종묘장)가 있어야 한다.

b. 각종 공원의 최소한의 대지 면적

도심 공원	15ha
지역 공원	10ha
주거 공원	3ha
이동식 정원	0.5ha
도시의 공공 정원	2ha
도시 숲: 공원	50ha
나무 종묘장	1 m <sup>2</sup> /capita
꽃 종묘장	0.2 m <sup>2</sup> /capita

c. 문화공원 및 레크레이션 공원의 대지 사용 : 계획을 목적으로 표 5.11.2을 이용할 수 있다.

표 5.11.2.

문화공원 및 레크레이션 공원의 대지 사용

공원의 특화 부분	대지 사용율(%)
문화, 교육 공간	10 - 12
공연활동을 위한 공간	8 - 10
스포츠 공간	8 - 10
어린이 전용 공간	10 - 12
명상 등을 위한 조용한 공간	40 - 60
서비스 공간	2 - 5

제 5.12. 조 도시 산업 및 저장 지대의 계획

5.12.1. 도시 산업 지대

1. 공업 회사들은 산업지대 혹은 산업단지에 반드시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방문 공간과 주차 공간, 저장, 환경 보호와 물리적 인프라 시스템 활용과 생산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레이아웃
2. 산업지대나 공업단지의 건설, 개조 또는 확장을 위한 계획은 반드시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a) 환경 보호

i) 제 4.16 조, 제 4.17 조, 제 4.18조에 규정되어 환경 보호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ii) 공장의 위치는 반드시 도시 지역의 잠재되어 있는 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제 5.12.1.3 항과 제 5.12.1.4 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선정되어야 한다.

b) 기술적인 가공, 자재 조달, 폐기물 처리, 인프라 활용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고 조력할 수 있게 공장이 가동되도록, 합리적이고 편리적인 생산방식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c) 산업 지대의 구조물 배치는 반드시 지형학적, 지질학적 특성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해당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산업적 경관을 조성해야 한다. 제 4.12. 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건물들 간의 방화(fire prevention)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d) 기술 인프라 네트워크와 녹지의 합리적인 배치

e) 공장, 산업지대, 공업단지 확장용 대지 마련

3) 공업회사의 위치

공업회사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주거지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안 된다:

a) 유해물질 및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공장들은 반드시 거주 구역을 기준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쪽 (주된 풍향에 대해)과 하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b) 해당 회사에 존재하는 잠재적 독성 및 교통량 등에 따라, 다음에 위치해야 한다:

i) 도시 외곽(변두리) 지역: 강한 방사능 물질 혹은 가연성 물질, 폭발성 물질을 다루는 회사, 대규모 산업폐기물 수거센터, 혹은 위험 폐기물 다루는 회사

ii) 민간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1등급 및 2등급의 유해 공장들(부록 4.8의 공업회사 분류에 따름)

iii) 거주 구역 안: 교통량이 적고 유해방출물이 없으며 소음도 발생시키지 않는 소규모 공장들

4. 위생 완충 지대

a. 공업회사와 거주 지역 사이에 반드시 위생 완충 지대가 있어야 한다.

b. (처리 후) 방출 폐기물의 유해성, 풍향, 물이 흐르는 방향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완충 지대의 너비는 거주 구역에 대한 공업회사의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단, 완충 지대의 너비는 제 4.11 조에 규정된 최소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c. 위생 완충 지대의 대지 면적의 적어도 40%는 반드시 나무로 덮여 있어야 하고, 30% 이하는 소방서, 주차장, 창고(단, 식품류 보관창고는 제외)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다.

5. 산업폐기물 수거센터:

- a. 산업폐기물 수거센터가 인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즉, 지표수원 및 지하수원, 공기, 토양의 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 b. (화재, 폭발,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산업폐기물 수거센터는 반드시 거주 구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하고 폐기물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민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5.12.2. 도시 저장 지대

1. 도시 저장 지대 계획은 반드시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a) 저장 네트워크는 3가지 등급으로 구성될 수 있다.
    - i) 일일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매공급용 창고: 거주 구역 내에 위치함
    - ii) 유통 및 도매거래를 위한 대형 창고: 반드시 교외나 거주 구역 외곽에 위치해야 함
    - iii) 국가 저장품을 위한 창고; 의약품 혹은 가연성, 폭발성, 독성 물질: 반드시 교외에 격리되어 위치해야 함.
  - b) 저장고의 위치:
    - i) 소매상점 및 유통업체와 가까운 건조한 고지대 지역
    - ii) 교통과 운송에서 편리한 위치
    - iii) 제 4.11 조 및 제 4.12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간 지역으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화재방지 코리더를 갖춘 완충 지대
2. 각각의 저장 지대 내에 위치한 창고는 저장하고 있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특정 그룹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이러한 저장 지대 안에는 접근이 용이한 도로, 주차장, 취급장비를 위한 설비 등이 있어야 한다.

5.12.3 대지 사용

1. 대지 사용 기준

공장 및 저장소의 세부사항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우의 계획을 위해서는 표 5.12.1을 적용할 수 있다.

표 5.12.1

산업용 및 창고용 대지 사용에 관한 기준

도시 구분	산업용 대지에 관한 기준 (m <sup>2</sup> /capita)	창고용 대지에 관한 기준 (m <sup>2</sup> /capita)
I 군	25 - 30	3 - 4
II 군	20 - 25	3 - 4
III 군	15 - 20	2 - 3
IV 군 또는 V 군	10 - 15	1.5 - 1.0

## 2. 건축 밀도

산업적 저장 지대의 최대 건축 밀도는 70%이다.

## 3. 각종 산업 지대 대지의 비율.

계획을 목적으로 표 5.12.1을 사용할 수 있다.

표 5.12.2

각종 산업 지대 대지의 비율

시설	전체 지대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
시설	50-60
인프라 서비스 건물	2-5
행정, 연구, 서비스 목적의 건물	2-4
도로	15-20
녹지 공간	10-15

## 제 5.13 조 운송 시스템

도시 운송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도시외곽이나 도심으로 연결되는 교통시설
- 공장, 저장고, 항만을 위한 전용 접근 도로
- 도시 구역 내의 운송 시스템

### 5.13.1 외곽이나 도심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시설

#### 1. 주요 도로(간선도로)

- a) 도시 버스 정류장은 도심, 기차역, 항구, 시장, 이외에 인구밀집지역에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 b) 도시 수송설비를 위해 사용되는 정비소 및 주차장은 도시지역으로 이어지는 교차로에 인접하게 위치해야 한다.
- c)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의 도로( TCVN 4054-85-자동차도로-설계표준에 의거하여 분류)는 도시지역을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을 감싸는 주변을 경유해야 한다.

## 2. 철도

### a) 기차역

- i) 주요 승객환승역과 그 전면 접근로는 도심, 주거지역, 산업지역으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민간지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 1등급이나 2등급 도시 안에는, 도심에 주요 승객환승역이 위치할 수 있되, 철도와 도시 도로의 교차점 및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 화물역은 반드시 창고나 다른 점포로 접근이 용이한 공급/납품 창고에 근접해  
이어야 한다.

iii) 조차장은 반드시 도시 외곽에 위치해야 한다.

iv) 승객용 기차역과 기관차 및 화물차 조차 지역은 반드시 도시 바깥에 위치해야 한다.

b) 철도와 도로 간의 교차점

i) 철도와 도시경전철(urban tramway), 도시 주요 도로(간선도로) 간의 교차점에서의  
경로는 반드시 서로 다른 높이에서 통과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단계적인 개발 계획에  
서 이 교차점은 같은 높이가 될 수 있으나, 단 차후의 수직적 분리를 위해 충분한 대지  
가 확보되어야 한다.

ii) 모든 교차 지점에서는, 신호등 등을 이용하여 교통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c) 기차역 승강장의 면적(치수)

계획을 위해, 표 5.13.1에 제시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표 5.13.1

역 종류별 승강장 면적

역 종류	철도 발착을 위해 배치 된 유형	승강장 길이 (m)	승강장 폭 (m)
1. 교통 유형 우회역	철로를 따라	1,500-2,300	50-100
	2분 1 정도를 따라	1,300-1,700	50-100
	철로를 교차하여	900-1,300	50-100
중간역(Intermediate station)	철로를 따라, 2분의 1	1,850-2,650	100-1,500
	정도를 따라, 교차하여	1,450-1,850	100-1,500
		1,000-1,500	100-1,500
구간역(Section station)	철로를 따라, 2분의 1	2,220-3,000	250-300
	정도를 따라, 교차하여	1,900-2,350	250-300
		1,450-1,850	300-350
2. 수송기능의 종류 화물역 승객승차환승역 종착역(막다른 역) 통과역		500-800	100-300
		1,000-1,200	200-300
		1,400-1,600	100-200
3. 조차방식의 종류 화물선 조차: + 단일방향			

+ 쌍방향	연속 혼합식	4,000-5,500	200-300
	병렬 연속식	2,700-3,000	250-350
승객승차환승역조차		2,200-2,600	300-400
		2,400-2,700	700-900
		1,000-2,000	300

### 3. 항공로:

- a. 공항은 반드시 도시 외곽에 위치해야 하고 민간 지역과의 거리는(도시 지역의 확장을 위한 준비 대지 포함) 제 4.7조를 따른다.
- b. 계획을 위해서, 공항의 크기와 부지면적은 베트남 기준과 ICAO(국제민간 항공기구)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c. 1군 또는 2군에 속하는 어떤 도시에서부터 공항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그 거리가 20km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고속도로로 건설되어야 한다.

### 4. 수로

#### a) 항구는 정해진 항구분류에 따라 위치해야 한다:

- i) 승객용 항구: 도심 근처에 위치한다.
- ii) 환경 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고 도시로 직접 수송되는 물품의 운송을 위한 화물용 항구: 도시의 안쪽에 위치한다.
- iii)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수송을 위한 화물용 항구, 유류취급항(oil port) 혹은 어항(漁港): 반드시 교외에 위치해야 한다.
- iv) 하천항(river port)에 있는 액체 연료 탱크: 교외에 위치하거나 시가지 하류에 위치해야 한다.

#### b) 항구 위치:

- i) 제 4.7 조, 제 4.9조, 제 4.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자원 보호 지역 및 화재 안전 거리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 ii) 도시 지역의 하류에 위치한다.
- iii) 항해에 안전하고 편리해야 한다.
- iv) 제방 설계에 적합한 지질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v) 해당 항구 유형에 충분한 대지 면적
- vi) 도로, 철도, 산업 지대, 창고와 선박 정비소 등에 접근이 이용하도록 이에 가까이 위치해야 한다.

#### c) 항구의 면적(치수)

계획을 위해, 표 5.13.3.과 표 5.13.4.에 제시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표 5.13.3

항구 구역의 기준

항구 유형	특성	항구 면적 기준 (m <sup>2</sup> / 1m 부두길이)
해안 항구	-돌출된 부두	150-170
	-평행 부두	200-250
하천 항구	-일반 부두	250-300
	-선창(wharf)	100-150
	-특수 부두	300-400

표 5.13.4 선박의 다양한 용적톤수에 알맞은 최소 수심

용적톤수 (m 톤)	길이 (m)	폭 (m)	수심 (m)	
A- 하천 선박	2000	75	14	2.5
	1000	70	12	8
	600	58	9	1.5
	300	45	8	1.2
	100	32	5	0.9
	40	20	5	0.6
B- 해양 선박	- 유조선 60000-100000			
	- 25000 - 10000			13-15
	- 광석운반선 20000-60000			11-12.5
	- 화물선 8000-15000			11-14
	- 목재운반선 3000-5000			8-11
	- 화물선 및 여객선 겸용			5-7.5
	- 여객선			6-9
			9-13	

5.13.2 도시 구역의 교통 시스템

1. 도시의 도로망은 각종 도시기능 지역간은 물론 다른 도시 및 주거지역과의 네트워크의 신속하고 안전한 유통을 보장해야 한다.
2. 도시지역 내의 도로망은 산업용 저장 지대를 위해 사용되는 도로 및 외부 도로로부터 분리 되어야 한다.
3. 계획은 향후 운송 요건을 위한 보유 대지를 확보해야 한다. 1군 도시의 경우, 공공 운송 시스템을 위해 지하철, 겸용 철도역, 수로 및 항공로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도시 지역 내 도로의 기준

a) 1군 도시 지역

1군 도시 지역의 도시 내부 도로는 반드시 표 5.13.5.를 준수해야 한다.

b) 1군, 2군, 3군, 4군 도시 지역

표 5.13.5의 기준은 반드시 인구와 다른 도시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표 5.13.5.

1군 도시 지역을 위한 도로 설계 기준

도로 구분	설계 속도 (km/h)	차선 너비 (m)	도로 너비 (m)	2개 도로 간의 거리 (m)	도로 밀도 (km/km <sup>2</sup> )
대로(Main streets)	80-100	3.75	70-80	(*)	(*)
지역간 도로	80-100	3.75	50-60	1200-2000	1.28
지역내 도로	60-80	3.75	35-50	600-1000	2.5
하위지역내 도로	60	3.75	25-35	300-500	4.7
국지도로	40	3.75	15-20	(**)	7.8
건물 접근로	30	3.5	(**)	(**)	13.3

주:

1. (\*)도시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다름

2. (\*\*)실제 현황에 따라 다름

c) 도로포장

최소한의 도로포장 너비는 다음으로 규정되어 있다:

i) 주요 도로 6.0m

ii) 지역간 도로 4.0m

iii) 기타 도로 3.0m (도로 지역, 하위 지역, 지선, 건물 접근로)

5. 도시 내 도로는 반드시 다음의 기술규격을 따라야 한다:

“도시계획 - 설계 규격 - TCVN 4449087(Urban planning- Design standard - TCVN 4449-87)”

“도시 거리, 도로, 광장 설계 규격(Design standard for the urban streets, road, squares)-20 TCN 104-83”

## 제 5.14 조 전력공급과 조명 시스템

1. 전력공급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도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 a) 다음과 같은 민간용 전기
  - i) 주로 생활을 위한 가정용 전기
  - ii) 공공건물용 전기
  - iii) 야외 공공시설물을 위한 전기: 조명, 공원과 거리에 비치되는 장식 등
- b)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을 위한 전기

2. 전력 공급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전력 소비자 유형에 따라 신뢰를 보장해야 한다.

- a) 1등급 전력 소비자
  - i) 연속적인 전력 공급: 자동대기 전원 장치가 있어야 한다.
  - ii) 중요한 사무실, 시민회관, 응급실, 극장, 라디오 및 TV방송국, 통신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 b) 2등급 전력 소비자
  - i) 수동으로 작동이 가능한 대기 전원이어야 한다.
  - ii) 도심의 공공건물, 5층 이상의 주택지역, 급수시설, 폐기물처리장, 4000Kw 이상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다.
- c) 3 등급 전력 소비자
  - i) 허용 가능한 전력차단 시간은 4시간이며 대기전원은 필요 없다.
  - ii) 다른 모든 소비자

3. 전력공급 수요의 기준

계획을 목적으로, 표 5.14.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표 5.14.1 도시 생활의 전력 공급 기준

	1차 기간(10년)				1차 기간(10년 후)			
	도시구분							
	I	II III	IV	V	I	II III	IV	V
설계 소비량 (kwh/capita, 1년)	1000	700	350	200	2000	1500	1000	7000
최고소비량의 지속 (시간/년)	2500	2500	2000	2000	3000	3000	3000	3000
전력 소비량 (kW/1.000 capita)	400	280	170	100	670	500	330	230

4. 도시 조명

도시 조명시스템은 반드시:

- a) 표 5.14.2 의 도로, 공원에서 최소 조도를 따라야 한다
- b) 포장도로에서의 조도는 도로 조도의 1/4 이상이어야 한다.

표 5.14.2 도로와 공원에서의 최소 조도

조명을 비추는 대상	도시 지역			
	I군	II군	III군, IV군	V군
도로				
고속도로				
간선도로				
지역도로	6	2	1	0.5
주택가 내부 도로:	4	1	0.5	0.5
고층 건물 단지	2	1	0.5	0.5
저층 건물 단지	1	0.5	0.2	0.2
공원:	0.5	2	1	1
입구	3	0.5	0.2	0.2
공원 내 도로	0.5	0.2	0.1	0.1
정원, 잔디밭	0.2			

### 제 5.15 조 급수 시스템

1. 도시 급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정 용도에 적합한 수질과 수압, 유속 유건에 부합해야 한다.
  - a) 주택과 공공건물을 위한 식수
  - b) 생산과 서비스를 위한 용수
  - c) 식물 살수(급수) 및 거리청소를 위한 용수
  - d) 화재 진압용 급수

용수 수요에 대한 산출은 네트워크 누수량 추산을 포함해야 한다.
2. 식수의 수질은 반드시 제 4 장 제 4.15 조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수자원
  - a) 수자원 선택
    - i) 수자원은 반드시 그 수요 및 수질에 부합해야 한다.
    - ii) 수용가능한 도시 지역 수자원의 선택은 수요 및 수질의 조사 및 평가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급수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iii) 지하수자원 이용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 b) 수자원 위생보호
    - i) 도시지역 급수 시스템의 원수흡입시설(raw water intake)은 제4.9조에 규정된 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야 한다.
    - ii) 도시지역 급수 시스템의 지표수흡입지점은 반드시 도시지역, 공업지역, 인구 밀집지역의 상류에 위치하여야 한다.

#### 4. 수처리장

수처리장은 반드시 공업지대나 추출장소의 상류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공업지역과 수처리장 사이에는 제 4.11 조에 명시된 완충지역이 존재해야 한다.

#### 5. 도시 급수 기준

계획을 목적으로, 다음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다.

a) 식수: 표 5.15.1 주거지역 안 공공건물의 식수 포함

b) 다른 용도의 용수:

i) 공장: 제조시스템의 필요에 따라

ii) 도심지역의 공공건물: 10-20%의 식수 공급

iii) 식물 급수와 도로청소용: 8-12%의 식수 공급

iv) 누수 및 기타 용수의 개략적 산출: 도시 전체의 25-40% 급수

v) 수처리장과 다른 공급 시스템 내부의 사용을 위해 총 처리시설 수용량의 4-6%

표 5.15.1 식수 공급 기준

도시 구분	일일 소비량 (1/capita/day)			
	1차 기간(10년)		장기간2(20년)	
	급수 인구 비율 (%)	일일 소비량 (1/capita/day)	급수 인구 비율 (%)	일일 소비량 (1/capita/day)
I	75-95	130-150	85-95	160-180
II	75-85	110-130	80-90	140-150
III, IV, V	70-80	80-100	80-90	120-130

주:

수돗물만 사용하는 인구 지역의 경우, 식수량이 40(1/capita/day)이다.

### 제 5.16 조 도시 화재 예방조치

#### 5.16.1 소방서 네트워크

1. 도심 경계선을 따라서, 중앙 소방서와 지역 소방서로 구성되는 소방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단, 이 때 다음과 같은 최대 활동반경을 가져야 한다.

a) 중앙소방서: 5km

b) 지역소방서: 3km

2. 소방서의 위치와 설비들에 대한 규정은 제 7.16 조에 나와 있다.

#### 5.16.2 도시 인프라 시스템

도시 인프라 시스템 (교통망, 급수, 전력공급, 가스공급, 통신 시스템 등)은 화재안전 조치를 보장하도록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5.16.3 소방용수 공급

1.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가 항상 준비 되어있어야 한다.
  - a) 물탱크와 소방용펌프도 필요 시 공급되어야 한다.
  - b) 화재진압 시 강과 호수, 연못 등을 최대한 이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을 보장한다:
    - 충분한 용수량을 사용할 수 있다.
    - 소방용수를 이동하는 소방차에 적합한 접근통로
    - 도로면과 수위 사이의 깊이가 4m이하.
    - 0.5m 이상 수심
2. 소화전들은 다음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를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 a) 소화전들간의 최대거리
    - i) 인구밀도가 높은 I군 및 II군 도심:100m
    - ii) 다른 지역: 150m
  - b) 주택 벽면과 소화전 사이의 최소거리: 5m
  - c) 도로 가장자리와 소화전과의 최대 거리(수화전이 포장도로에 설치되어있을 경우): 2.5m
3. 소화전은 반드시 소방용수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차로 등)
4. 옥외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파이프 직경은 100mm이상이어야 한다.
5. 엄격한 화재 안전 기준을 요하는 건물의 경우, 개발자가 해당 지역의 소방기관의 요건에 부합하는 보충 소화전 및 소방용수 예비탱크, 화재진압용 펌프 등을 설치해야 한다.

### 5.16.4. 소방도로

1. 소방 도로 배치
  - a) 민간지역  
건물블록을 가로지르거나 삽입된 형태의 지역내 도로 사이의 거리는 180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b) 산업지역  
건물 너비가 18m 미만인 산업현장의 한쪽 면을 따라서, (건물 너비가 18m를 넘는 경우에는 양쪽 면을 따라서) 소방차 전용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소방차가 소방용수원(소화전, 용수저장탱크, 하천, 호수)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천이나 호수에서 용수를 추출하는 지점에는, 제 5.16.4.4항에 나와 있는 데로 소방차를 위한 방향전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 소방도로의 크기  
소방차 접근도로는 너비 3.5m 이상, 높이 4.25m 이상의 여유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4. 소방차 방향전환 면적

방향전환을 위한 접근도로는 길이 150m를 넘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최소 치수를 갖는 소방차 방향전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 한 변이 7m인 정삼각형,
- 한 변이 12m인 정사각형
- 또는 지름이 10m인 원

5.16.5. 건물 사이의 소방안전 거리는 제 4 장, 제 4.2 조에 명시되어 있다.

### 제 5.17 조 배수 시스템

#### 5.17.1. 도시 배수 시스템은:

1. 도시 지역의 각종 하수(강우, 가정하수, 산업폐수)를 배수해야 한다.
2. 도시 지역을 홍수, 환경오염(수질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수자원 및 주변지역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폐수처리에 적절한 설계를 구현해야 한다.

#### 5.17.2. 하수도 시스템의 종류 선택

1. 제안된 종류의 하수도 시스템(결합형 하수도 또는 분리형 하수도, 또는 부분 분리형 시스템)은 도시 규모에 적합해야 하며 해당 도시의 현황과 기존 하수도 시스템은 물론 자연조건(지형, 기후, 수리적 특성)에도 맞아야 한다.
2. 계획 하는데 있어서는 다음 솔루션이 허용된다.
  - a) 신축 도시지역: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분리형 하수도 시스템
  - b) 중간 규모 이상의 도시: 혼합형 시스템(결합형 하수도와 분리형 하수도)가 수용 가능
  - c) 소규모의 개조된 도시: 혼합형 하수도 시스템
  - d) 혼합형 하수도 시스템의 방류에 있어서, 모든 건천후유출(dry weather flow)은 폐수처리시설을 향해 있어야 한다.

#### 5.17.3. 우수배수시스템(storm water drainage)

1. 이 시스템은 다량의 빗물을(규정된 배수구를 통해) 도시 분지에서 하천이나 호수로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배수 유형
  - a) I군 또는 II군 도시의 경우, 지하 배관된 배수시스템이 사용되어야 한다.
  - b) III군, IV군, V군 도시의 경우, 복합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 I) 도심, 고층건물 지역의 경우와 주요 도로를 따라, 지하 배관된 배수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 II) 저층 건물이나 임시 건설 현장에는 도랑(ditch)이나 수로와 같은 개방형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다.

#### 5.17.4. 하수 배출 환경

##### 1. 산업 폐수 배출

지표수나 도시 하수도로 배출되는 산업 폐수의 수질은 제 4 장 제 4.17 조에 부합해야 한다.

##### 2. 가정 하수 및 병원 하수의 전처리:

(가정주택, 공공건물 및 산업건물 등의) 화장실 오수 및 병원 하수는 도시 배수구로 배출되기 전에, 주어진 기준에 따라 시공된 정화조를 통해 미리 처리되어야 한다.

3. 폐수 살균: 병원성 세균이 들어 있는 폐수 (가정용 오/폐수, 병원 폐수, 가축 분뇨 등)의 경우, 방출 전에 반드시 살균을 해야 한다.

##### 4. 배출구의 위치

a) 처리된 폐수는 도시 및 인구밀집지역의 하류에 있는 지표수로 방출될 수 있다.

b) 배출 장소의 선정에 앞서, 환경 영향 평가는 물론, 처리된 폐수의 수질, 폐수가 방류되는 수자원의 계획된 용도, 수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지역과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 등에 대한 사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5.17.5. 폐수처리시설 및 용수펌프장

1. 폐수처리장은 주된 풍향에 대해,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위치해야 한다.

2. 폐수처리장과 펌프장, 주택, 공공건물, 식품가공처리공장 사이에는, 제 4.10조에 규정과 같이 완충지대가 있어야 한다.

### 제 5.18. 조 지하의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

5.18.1. 도시의 지하 네트워크(급수관, 우수배수관, 폐수 하수도, 난방용 파이프, 가스공급관 및 급유관, 전선 (고압 & 저압) 케이블, 신호 케이블(전화, 전신, 방송))는 차후 확장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5.18.2. 지하 네트워크는 도로망을 따라야 한다. 중력 우수배수관이나 하수도만이 도로면 아래로 지날 수 있다. 너비가 60m이고 위쪽을 향해 있는 도로는 도로 양쪽에 각각 우수배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5.18.3. 도로 개조 시, 도로 쪽에 있는 지하 설비들은 옮겨져 다시 배치되어야 한다.

5.18.4 지하설비에서부터 다른 건축물 및 가로수까지의 가로, 세로 거리는 다른 시스템끼리 방해할 피하기 적합하여야 한다.

## 제 5.19 조 고품 폐기물 관리

5.19.1 유해 폐기물은 반드시 격리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5.19.2 쓰레기장은 반드시 도시지역 외곽이면서 인구밀집지역 및 식품제조공장을 기준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자 하류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3번 항 참조). 쓰레기장은 다른 지역과 분리되어야 한다.

5.19.3 쓰레기장에서는 공중보건 보전을 위한 설비와 함께 경제적인 쓰레기 처리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지하수원의 오염을 예방해야 한다.

주: 현재 적합한 쓰레기 처리 방법

- 1) 매립: 저렴하고 쉬운 방법이나 위생적이지 못함. 현재 작은 도시지역에만 적합. 도시지역과 멀리 떨어진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함.
- 2) 처리를 병행한 매립: 분쇄, 압축 등 간단한 처리기술과 결합된 매립방법. 2년 후, 매립부지는 한 층의 토양을 덮어 식목 지역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 방법은 경제적이며 많은 도시에 적용 가능하다. 도시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넓은 대지와 기저부의 방수층이 필요하다.
- 3) 비료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발효방법 (쓰레기 처리장): 이 방법은 쓰레기의 특성과 베트남의 기후에 알맞은 방법이지만,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특별한 방법을 필요로 하는 큰 도시에서만 설치 가능하다.
- 4) 소각(소각로): 비경제적임, 유해 물질이나 다른 처리 곤란한 폐기물을 다루는 병원용 쓰레기처리에 한해 적합.

5.19.4 쓰레기장의 완충지역은 제 4.10 조에 규정되어있다.

5.19.5 폐기물의 양

인구 1인당 발생하는 고품 폐기물량 예측치가 표 5.19.1에 나와 있다.

표 5.19.1 고품 폐기물 방출율

도시 구분	고형 폐기물 생산율 (kg/Cpaita./Day)	수거된 폐기물 비율(%)
I-III	1-1.2	90-100
IV	0.9-1	80
V	0.7-0.8	60-70

## 제 5.20 조 공중 화장실

1. 간선도로를 따라 상업 중심지, 대형 공원과 공공 모임장소 등의 지역은 반드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2. 거리에 있는 화장실들 간의 거리는 2k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제 5.21. 조 도시 개발 부지를 위한 현장 준비

5.21.1 도시개발부지와 관련하여, 홍수, 침식,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준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5.21.2 홍수와 대지 부식, 산사태를 막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강, 호수, 해변 등의 기슭에 위치한 도시들은 반드시 제방이나 성토 등을 이용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마감공사된 지면 높이 또는 제방의 최상부 높이는 수자원보존을 담당하는 당국의 계획에 따라야 하며, 홍수 시 예상되는 물 높이가 보다 높게 지어져야 한다. 추산된 높이는 다음과 같은 발생빈도를 갖는 가장 높은 높이여야 한다:

- 과거 100년 이내에 도심, 주거지역, 공업지역과 저장고 지역
- 과거 100년 이내에 공원, 실내 체육관 지역

2. 도심지역의 하천, 호수 기슭은 폭우 및 해일에 따른 산사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 및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슭의 강화조치는 휴양지로서의 활용과 접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슭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건축물은 강이나 호수 기슭에서 멀리 떨어져 세워져야 하고, 강기슭 및 호반의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3. 폭풍우로 인해 제안된 시공 현장으로 떠내려올 수 있는 진흙이나 모래는 반드시 주변에 나무를 심거나 방수제방을 쌓아 막아야 한다.

4. 자연 유수가 제안된 시공현장을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방수제방이 필요하고 영향을 받기 쉬운 지대에는 나무를 심어 지반을 강화해야 한다. 자연 수로를 메워야 하는 부지의 경우, 이러한 지역은 서비스나 수송경로, 스포츠를 위한 부속건물로서만 사용될 수 있다.

5. 산사태의 위협 아래에 있는 지역에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수계지형학적 및 지형적 조건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가령, 우수(빗물)량을 재조정하거나, 지하수 수위를 낮추거나, 경사지를 강화하거나, 식목을 하거나)

5.21.3. 도시 개발 부지를 위한 땅고르기(ground leveling)

도시 대지를 위한 땅고르기 작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우수를 신속하게 배수하여 지반 침식 및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2. 편리하고 안전한 접근로를 보장해야 한다 (도로의 필요한 경사도가 주어진 기준에 맞도록 함).
3. 기존의 표토 및 나무를 보존한다.
4. 자연 지형과 조화를 이룬다. 성토를 이용한 굴착량과의 균형을 이루고 성토 높이를 제한

## 제 6 장

### 전원 거주지역의 건설 계획

본 장은 단기간과 장기간 모두의 전원거주지역의 개조 및 개발을 최적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a. 시민들의 적절한 생활환경을 구축 및 유지하고, 생산과 서비스 산업활동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최소화 한다.
- b. 대지, 천연자원, 노동자 등의 합리적인 활용
- c. 전원지역 생산활동 주체들의 생활수준을 안정화 및 향상시키고 이로써 도시로의 이주민 수를 줄이기 위한 지역경제개발 계획과 전원지역의 생산활동(농업, 임업, 어업, 수공업)의 요건에 부합한다.

#### **제 6.1 조 적용 범위**

6.1.1 본 장의 규정들은 전원 거주지역 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이다. 각 전원지역의 특성에 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황별로 특정 추가 규정들이 필요하다.

1. 홍강(Red river) 삼각주와 북부 중앙지역의 평원
2. 메콩강 삼각주
3. 북부 내륙부
4. 서부 고지대
5. 고산지역
6. 해안 및 섬

6.1.2 전원 거주지역 계획기간은 15년이며 지방 행정국의 관할영역 안에서 적용된다.

6.1.3 승인받은 전원 거주지역계획안은 대지 관리, 투자계획의 발전과 건설작업의 기준이 된다.

#### **제 6.2 조 전원 거주지역의 계획의 내용**

전원 거주지역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제 개발, 시장, 교통, 원격통신, 전력공급, 급수를 위해 계획된 지역사회와 그 이웃 지역 간의 관계 확인.
2. 다음 요소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평가: 자연, 경제, 사회, 인구, 노동력, 물리적 인프라, 토지이용, 경관 및 환경, 등
3. 전원지역개발에 유리한 경제적 잠재력 및 요인의 측정

4. 인구 증가 및 각종 건물 시공 수요에 대한 예측
5. 초기의 건축 구획과 기반 구획.
6. 토지이용 계획과 초기 건설을 위한 대지구분, 적색 경계선 확정, 시공 경계선 확정.
7. 중요 건물의 위치 확정
8. 물리적 인프라 개발 계획
9. 지역 건설관리 규정을 기초한다.

### 제 6.3 조 거주 지역내의 시공대지

#### 6.3.1 지역사회 안에 있는 신축 및 확장 거주지역 대지

1.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지역에는 건설을 금한다:
  - a) 공업 폐수, 비위생적 기준, 병원균등에 오염된 환경.
  - b) 서쪽 언덕길과 같은 불리한 지대
  - c) 개발이 가능한 천연자원 보유지역이나 고고학적 유물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
  - d) 건설이 금지된 구역: 인프라 시설물 보호구역, 역사적/문화적 유적지 또는 미관 보호구역, 국방 보호구역 등 (제 4 장에 규정되어 있음)
  - e) 깊은 홍수 (3m 이상), 침식과 산사태 다발지역
  - f) 공항, 고속도로 완충지역

2. 경작지의 사용이 제한되며, 언덕지역, 농업생산성이 빈약한 지역을 최대 활용

6.3.2 전원 거주지역을 위한 경작지 이용의 예외의 경우는 반드시 주변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획을 목적으로, 표 6.3.1 이용 가능

표 6.3.1 전원 거주지역 대지 이용기준

	대지 유형	대지이용 기준 (m <sup>2</sup> /capita)
1	주택지(가정주택용 택지)	표 6.6.1에 의거
2	공공건물을 위한 시공부지	8-10
3	교통 및 인프라를 위한 대지	6-10
4	공공 녹지	2-3

### 제 6.4 조 땅고르기, 성토(filling), 배수

#### 6.4.1 성토

거주지역의 성토작업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건물의 1층은 반드시 홍수상황의 일반적 수위보다 높아야 하며, 저장고(특히, 화학비료, 살충제, 범시 등의 창고), 학교, 탁아소, 병원, 공동묘지 등과 같이 매우 중대한 지역사회의

자산 등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메콩강 삼각주의 경우, 지반을 성토하여 홍수로부터 건물을 보호해야 한다.

2. 폭우를 신속히 배수하여 노반과 시공현장의 침식을 막아야 한다.
3. 교통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한다.
4. 성토량을 제한하여 자연적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다.
5. 가능한 많은 옥토와 식물군을 보존, 보호한다.

#### 6.4.2 빗물, 홍수의 배수

우수배수(storm drainage)는 다른 용수의 이용과 통합되어야 한다.

1. 정기적 홍수 피해를 입는 저지대의 경우, 수로 및 도랑, 지반 성토, 육로 및 수로 교통경로, 수산물 개발 등의 계획을 조합할 필요가 있다.
2. 강이나 물줄기가 흐르는 거주 지역은 강기슭을 강화해야 한다. 목적 - 세정 및 수영을 위해 건조된 시설 및 위락시설 등을 시공해야 한다.

주:

1. 폭우 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를 메우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2. 건설 목적의 대지 (주택, 공공시설, 공장, 교통도로)만이 성토가 가능하며 나머지 대지의 자연지형은 변화 되어선 안 된다. 설계된 높이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3. 개방형 배수시스템은 벽돌이나 주변 석재로 강화된 개방 수로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4. 산허리에 위치한 거주지역의 경우, 도랑이 거주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서부터 수류(水流)가 시작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제 6.5 조 기능적 지역의 배치

6.5.1 거주지역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기능적 지역의 배치를 포함한다.

1. 주택지역은 주택단지와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2. 지역공동체 센터
3.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건축물
4. 인프라 시설

6.5.2 기능적 지역 계획은 반드시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경작지(농지) 손실의 최소화
2. 각종 시설에 효율적 접근 가능 (운송, 생산, 생활, 휴식, 여가, 공공 활동 등에 편리)
3. 환경보호
4. 특성에 맞는 설계를 위한 자연지형과 경관의 최대한 활용

5. 각 지역 특성은 다음에 따른다:

- a) 기존의 개발 상태에 따른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은 교외지역에 해당하거나 도심과 격리되어있을 수 있고, 이미 오래 전에 정착된 거주 방식을 가지고 있거나, 신흥 경제 지대 안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
- b) 지역 경제 활동과 조화되어야 한다.
- c) 문화, 풍습, 종교와 함께 조화되어야 한다.

## 제 6.6 조 거주지역 계획

6.6.1 거주지역의 계획은:

- 1. 현 인구 분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2. 충분한 인구 밀도를 위해 보육원, 학교와 가게 같이 필요한 공공 편의시설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 3. 대지 조건, 지형적, 지리적 상황에 따라 공동체 지역 구획은 길, 호수, 연못, 수로, 언덕, 산 등으로 형성된 자연적 경계에 기초할 수 있다.

6.6.2 각 주택을 위한 택지 계획 각각에 할당되는 대지기준을 규정하는 토지법에 따른다.

6.6.3 주택의 건평은 가구별 택지에 따른다.

- 1. 각 가구별 택지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대지를 소지할 수 있다:
  - a) 생활 주택(main house)과 보조 주택(취사장, 점포, 작업실)
  - b) 물탱크, 우물, 화장실, 세탁실, 칸막이 등 보조 구조물
  - c) 마당, 길, 나무, 장작, 짚 등의 보관장소, 쓰레기장, 울타리
  - d) 정원, 연못
- 2. 계획을 목적으로, 표 6.6.1에 주어진 가구당 총면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표 6.6.1

가구당 총 대지면적 (거주장소, 정원, 연못, 축사 포함)

	지방	가구별 총 대지면적
1	-홍강(Red river) 삼각주 및 북부중앙지역의 평원	200-350
2	-메콩강 삼각주	400-800
3	-북부 중앙지역	500-1000
4	-서부 고지대	500-800
5	-고원 산악지대	300-500
6	-해안지역 및 섬	200-350

- 3. 택지 내의 구성요소 배치는 가정 생활 및 생산에 편리해야 한다. 주택건물, 주방,

안뜰, 우물(급수원), 물탱크, 화장실 등 택지 안에 만들어질 건축물들은 접근이 편리한 공공 도로에 가까운 택지 코너에 가깝게 배열되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마을의 건축적 외관과 어울리게 지어야 한다. 화장실과 축사는 숨겨지게 배치하고 생활주택을 기준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위치해야 한다.

## 제 6.7 조 낮은 거주지역의 재개발

낮은 거주지역의 재개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1.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기능적 지역의 재편제 및 재조정. 공공건축물의 네트워크를 재정의하고, 그 질적 수준 및 서비스 시설을 개선, 필요에 따라 개조 또는 확대.
2. 도로망의 재편제과 재조정, 일부 짧고 불필요한 도로 및 차선 절단, 새로운 도로구간 확충.
3. 급수 및 전력공급, 배수 시설과 같은 인프라 구조물의 개조 및 확충
4. 고여 있는 연못을 메우거나 준설하고 화장실을 시공하는 등 위생 환경 증진
5. 2층 가옥 건설 장려
6. 거주지역과 도로의 녹지 확대

## 제 6.8 조 공동체 중심지 계획

6.8.1 각 공동체에는 공동체 중심지가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 (인구가 많은 공동체 지역은 주요 중심지와 2차 중심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몇몇 핵심 시설은 사람들이 행정적 업무나 거래, 여가 등을 위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중심지에 위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 행정기관의 본부: 시민의회, 시민위원회, 당 위원회, 연합회 (농민조합, 여성연합, 청소년연합, 참전용사회, 베트남 조국전선(Fatherland Front) 등).
2. 공동체 전체를 위한 공공 시설물: 문화시설, 클럽, 전통가옥, 도서관, 초등학교, 중등학교, 운동장, 시장, 가게, 우체국.

6.8.2. 계획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를 이용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본부:

a) 지역사회시민의회, 시민위원회, 당 위원회, 민간 조직의 본부는 (편리한 교류와 대지 절약 차원에서) 함께 위치해야 한다.

b) 약 1,200-1,500m<sup>2</sup>로 추산되는 총 대지면적

2-3층 건물은 자라는 나무 화원을 위한 대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한다.

2. 학교:

각 공동체마다, 학교에 다는 학생들의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거주지역에 가깝고도

조용한 곳에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있어야 한다. 학교는 TCVN 3978-84에 따라 설계된다.

### 3. 탁아소 & 유치원

주거지역 근처에 위치하며 TCVN 3907-84를 따라 설계된다.

### 4. 보건소

a) 각 공동체들은 다음과 같은 부문으로 구성된 보건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족계획, 지역사회 의학, 산부인과, 건강진단, 치료, 처방 및 투약 (간단한 테스트용, 한약,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 약초 정원 등.

b) 수자원이 양호하고 거주지역과 편리하게 연결된, 조용하고 건조하며 위생적이고 서늘한 장소에 위치해야 한다. 보건소를 위한 총 대지면적은 500-700m<sup>2</sup> (약초정원 없는 경우) 1000-1200m<sup>2</sup> (약초정원 포함)이다.

### 5. 문화 스포츠 시설

a) 다음으로 구성된다.

-문화시설, 클럽

-전통유산 전시와 안내소

-도서관

-회의실

-방송국

-운동장

b) 문화시설에는 실내 및 실외 오락시설, 문화예술 교육 및 공연장 (노래, 춤, 음악, 연극, 찌오(cheo: 역주> 베트남 전통가극), 까이루옹(cai luong; 역주> 베트남 전통연극) 등이 있다. 문화시설 총 면적: 2000m<sup>2</sup>

c) 역사, 전쟁 및 생산적 업적들을 전시한 전시실: 200-250m<sup>2</sup> 의 면적

d) 도서관은 15-20곳의 자리와 총면적이 200-250m<sup>2</sup>에 달하는 열람실을 갖추어야 한다.

e) 회의 및 예술공연이 진행되는 회의실은 300-400개의 좌석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f) 공동체 안의 운동 경기장은 대지 절약 차원에서 영화 관람 공간과 초등, 중등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결합된 형태여야 한다. 경기장 면적은 대략 4000-5000m<sup>2</sup> 이여야 한다. 강과 개울, 연못, 호수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영장 및 오락시설을 개선한다.

### 6. 시장, 서비스 점포

a) 각 공동체는 작은 시장을 운영한다.

b) 각 시장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고지대에 위치해야 한다.

c) 자전거, 오토바이, 차 등의 주차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쓰레기장, 남녀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는 공중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d) 개인 상점 이외에도, 공동체가 설립한 점포가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 7. 공동묘지

a) 건조하고 조용하며 홍수 위험이 없는 부지에, 거주 지역과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b) 구릉지대이자 불모지인 대지를 최대한 이용한다.

c) 연결 도로와 녹지대는 구분되어야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울타리를 설치한다.

d) 국립 묘지, 기념비 등은 의례적인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 제 6.9 조 수공예 생산지역 계획

1. 작업장 및 생산서비스 건축물의 건설 계획은 다음과 같은 공동체의 잠재력 개발에 적합해야 한다:

a) (벼, 작물, 과일나무 생산에 대한) 대지 잠재력과 수산물 보유

b) 전통 사업의 개발 특히, 수출품 및 소비품의 개발 가능성

c) 건설 자재(석재, 모래, 흙)의 생산 가능성, 식품가공(food processing), 소규모 기계 엔지니어링 가능성

c) 이러한 계획은 생산에 필요한 조건을 요한다. 즉, 입증된 소비시장, 증가하는 자본에 대한 수용능력, 적용가능한 기술력, 인프라(교통과 운송, 전력공급, 급수 및 하수).

주: 전원지역에 소재한 대규모 공장 건설 계획이나 농업, 임업, 어업 계획은 본 장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 2. 생산시설물의 위치

계획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를 적용할 수 있다.

a) 소규모 수공예 및 소규모 산업단위가 주거지역 내 각 가구에 있는 여유 부지에 위치할 수는 있으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b)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생산 및 생산서비스 시설물은 교통 연결지점에 가까운 거주지역 밖에 위치하여야 한다.

c) 주거지역과 생산지역 사이에 완충지대가 있어야 하며, 이 사이의 간격은 생산시설물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소한 50m 이상이어야 한다.

### 제 6.10 조 교통 시스템

공동체 교통망 계획은 반드시:

1. 해당 지역(지구, 지방)의 종합계획에 따라야 한다. 현재와 미래의 교통 수요 및 수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도로망을 활용 및 개발한다.

2. 관개망, 거주지역 계획, 전원건설 레이아웃 및 논 농지 레이아웃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3. 기초적인 교통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운송수단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자동차 운송수단의 발전을 도모한다.
4. 완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통일된 하나의 전체로서 지역의 교통 시설과 융화되어야 한다.
5. 중심지와의 간편하고 신속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고 생산 지역과 거주지역 간은 물론, 거주지역끼리도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한다.
6. 지형을 최대한 살려 토목공사량 및 도로주변 공사(교량 및 하수도)의 수를 최소화한다.
7.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각 공동체의 경제적 현황과 전원도로의 일반적 기준에 따른다. 향후 도로 설계를 위한 대지는 미리 보호 되어야 한다. 도로 구조는 우천 시나 폭우 시에도 소달구지와 같은 차량 이동이 편리할 수 있게 하고, 양호한 배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8. 하천 및 수로가 많은 지역은 승객 및 화물 수송이 가능한 수로를 계획해야 한다.

## 제 6.11 조 전력공급체계

- 6.11.1 지역사회의 주거지역에 공급하는 전력은 각 지역별 전기수요에 근거하여 계획 되어야 한다. 태양열, 풍력발전 특히 소규모 수력발전계획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 6.11.2 지역사회 주거지역의 전력공급망 계획은 교통계획, 건축물계획과 밀접히 연계 되어야 한다. 전력선은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 위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
- 6.11.3 계획목적상 다음과 같은 계획수립이 적용될 수 있다.

1. 지역사회 주거지역의 지역활동을 지원하는 전력수요는 V군 도시지역 수요의 60~80%로 계산 할 수 있으며, 지역별, 지역사회별 전력사용량에 따라 다르다. 전력발전을 위한 전력소비수요의 산출은 각 발전 설비별 수요에 준해야 한다.
2. 저전압 변전소는 전력을 소비하는 가구들의 중앙부나 가장 사용량이 많은 곳에서 가까이, 생산이나 생활에 위험이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로통과를 최소화하면서 편리하게 배선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변압기가 나무가 많은 곳에 설치 되었다면 보호철망으로부터 최소한 2m 이상의 개활지를 확보하여 철저히 격리시켜야 한다 (나뭇가지의 낙하로 인해 설비에 가해질 수 있는 손상을 막기 위해).
3. 6KV, 10KV, 15KV, 20KV의 고압선은 연못, 호수, 대로, 주택가를 거의 통과하지 않도록 주요 도로를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공공시설, 생산시설, 주택들의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수로나 논 위를 통과 할 경우는 흙의 붕괴나 물에 의한 침식으로부터 전주 기초부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제 6.12 조 급수

### 6.12.1 급수 수요

1. 지역사회 주거지역의 급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한다.

- a) 유치원, 학교, 병원, 문화시설, 사무실 등 공공시설용 용수를 포함한 식수 및 가정용 정수
- b) 가축이나 가금류 사육용 용수
- c) 식품가공과 다른 공업용수

2. 식수와 실생활에 적합한 용수 기준

계획목적상, 식수와 생활용수에 적용되는 용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정수시설(lavatory complex)을 거친 식수가 공급되고 배수시설이 있는 주택: 100~120 l/per/day
- b) 수도관과 수도꼭지로만 식수가 공급되는 주택: 60~80 l/per/day
- c) 공동수도로 용수를 공급받는 곳: 40 l/per/day

### 6.12.2 수원(水源)

1. 표층샘물, 심층샘물 등 지하수, 우수, (강, 시내, 침투수 우물 등) 표층수 등 각기 다른 용수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2. 용수원의 수질이 제 4.8 조에 명기된 식용수 기준치에 미달한 경우, 농촌지역에 적합하도록 간단한 수처리를 위해 반드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에서 공표한 표본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용수원의 위생상 보호책

a) 지하용수원

i) 우물(급수원)에서 반경 20m 이내에서는 용수원을 오염시키는 작업 일체 금지.

ii) 각 가정용 개별 급수원은 주방, 개수대와 가까이 있어야 하며, 화장실, 외양간 등 사육시설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iii) 공동급수원의 경우, 양질의 용수원이 선정 되어야 하며, 보호벽이 높이 설치되고, 우물 주위는 반드시 포장공사가 되어 있어야 한다.

b) 표층수 수원: 취수장소로부터 상류 측으로 200m, 하류 측으로 100m 이내에서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작업 일체 금지.

## 제 6.13 조 배수처리 및 공중위생

6.13.1 지역사회 주거지역 내에는 폐수 및 우수(빗물)를 위한 배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연못, 호수와 수로 등에 의한 자연배수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들은 배수가 모여 고이지 않도록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있어야 한다.

6.13.2 공업지역 폐수가 연못이나 호수로 흘러 들기전에 처리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6.13.3 배설물 및 쓰레기 처리

1. 적절한 위생적 처리시설이 공급되어야 한다.
2. 배설물을 호수나 연못(양식장)으로 직접 배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축사나 농장에서는 배설물을 연못, 호수 또는 수로로 직접 배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Bio-Gas Tank(미생물가스 정화조)를 퇴비혼합과 가스수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6.13.4 (정화조를 제외한) 각종 화장실과 축사는 주택이나 일반공용도로로부터 반드시 5m 이상 떨어져 설치되어야 하며, 나무들에 의해 시각적으로 가리워져 있어야 한다.

### 6.13.5 분리 거리

가축사육 및 생산 지역은 의 이각거리와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시킬 공장(생산)지역은 제 4.11조에 의거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 제 6.14 조림(식목)

6.14.1 주민 정착지역에서의 조림은 반드시:

1. 경제적 이득(채소재배, 유실수, 건축자재용 조림, 보호수 등), 국가방위 및 생태학적 환경 개선요건과 밀접히 연계되어야 한다.
2. 해안가에서의 모래 침식 억제, 지역사회 내의 녹지 조성 차원에서의 보호수 조림과 연계되어야 한다.

주: 주거지역내에의 조림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경제수림, 유실수림, 약용수림, 묘목장 등 특화된 수림지
2. 중심지역, 공공건물, 문화시설 주위의 꽃밭, 상록수(Green Tree)조림
3. 공업(생산)단지나 공업(생산)활동 밀집지역 주위로 격리를 위한 조림
4. 마을 외곽 경계나 도로변, 관개수로변, 호수와 연못 주변의 육림
5. 각 가구 부지 내에서의 육림

6.14.2 조림계획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중심지역과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상징물 앞에는 꽃밭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유독성 수지를 가진 나무, 파리, 모기를 유도하는 과일이나 꽃을 재배하지 못하며, 보건소, 학교, 요양소와 유치원 내에서는 가시가 있는 나무를 조림할 수 없다. 상기 지역에서는 그늘을 많이 제공하고 공기정화(녹나무, 유칼리나무 등)가 가능하도록 수간이 높은 나무들을 조림하여야 한다.
3. 보건소 부지 내에서는 약용식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교육목적의 나무들을 재배하여야 한다.

4. 분진, 악취 또는 소음을 유발하는 공업(생산)단지나 공업(생산)활동 밀집지역은 띠 모양을 한 조림구역으로 격리시켜야 한다.

6.14.3 각 지역사회는 그늘이 없고, 비옥한 토질과 관개수로 없이도 살수용 용수가 조달 가능한 지역과 묘목들을 재배장소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고 묘목장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여러 묘목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 7 장**

### **도시 건축에 관한 규정**

본 장에서는 다음을 목적으로 도시 지역 건축물을 위한 건축학적 요건을 명기하였다.

1. 도시 내부에 지어지는 모든 건물은 승인된 계획도에 따라 시공된다.
2. 건축물 시공을 통해 도시 환경 및 경관이 조성 및 보호되어야 한다.
  - a) 거리에 자유공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 b) 환경, 질서, 도시 미관, 역사적/전통적 유산들이 보호되어야 하는 동시에 현대화와 산업화를 이루어야 한다.
  - c) 주변 주민들이나 건축물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d) 도시의 물리적 인프라 시설물이 보호되어야 한다.
  - e) 도시 구역 각각의 특색을 살려야 한다.

#### **제 7.1 조 적용 범위**

1. 본 장에 나와있는 규정들은 상세 계획과 계획된 장소의 “건설관리규칙 (Construction management Rules)”을 규정하고 있다.
2. 상세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장소는 BVC를 기초로 도시와 지방위원회가 지역 환경에 맞추어 결정해야 한다.
  - a) 건축법규는 시공법만을 다룬다. 도시 활동 (통신 안전 및 질서 준수, 수목 보호, 소음 공해 대책) 관리의 문제점은 다른 법적 규정에 명기되어 있다.
  - b) 본 장은 도시 건축 및 계획 요건만을 규정한다. 이외의 규정들은(구조, 방화, 위생, 안전성) 파트 HI에 규정되어 있다.
  - c) 도시의 물리적 인프라 시설물에 관한 규정은 제 5 장에 나와 있다.

#### **제 7.2 조 도시 건축물의 일반적인 요건**

- 7.2.1. 모든 도시 개발은 사전에 계획되어야 한다.
  1. 시공은 미리 계획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건설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물은 해당 계획인증서 및 발급받은 허가증에 적혀진 규정에 따라,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3. 건축물 철거(해체)의 경우, 특별한 면제 사례를 제외하고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 7.2.2. 현장 시공에 적용되는 요건

1. 현장: 시공용으로 지정된 택지는 제7.3 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모든 건축물은 택지 경계선 안에 지어져야 한다. 거리와 접하는 택지의 경우, 제 7.4 조 및 제 7.5 조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 경계선 안에 지어져야 한다.
3. 모든 건축물들은 제 7.2.1.조에 나온 건축 계획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맞게 그리고 BCV 파트 III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맞게 지어져야 한다.

### 제 7.3 조 구분지역 건설의 기술적 요구사항

건설부지는 다음에 부합해야 한다.

#### 7.3.1. 건설 현장

건설 현장은:

1. 건설이 금지된 곳, 예를 들어 유적지, 미관지구, 인프라 시설물, 수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제 4 장 참조)에서는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2. 제 5 장에 유형별 건축물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위치, 위생 및 안전을 위한 분리 거리 요건을 충족하도록, 건설 계획에 맞는 적절한 부지에 위치해야 한다.

주:

적절한 부지란:

#### 1. 가정주택

- a) 거주지역은 주요 도로에서 떨어진 조용한 곳이어야 한다.
- b) 주택블록은 주택유형별로 명확하게 분류되어야 하고, 각 블록의 총면적과 블록간 거리에 대한 적합한 척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i) 상업지역에는 빌라 대신 서로 붙어있는 주택(링크 하우스) 형태가 알맞다.
  - ii) 빌라 지역에는 링크 하우스, 콘도, 상업적 건물, 공장 등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
  - iii) 빌라와 링크 하우스는 기존 콘도 지역에 지어지지 말아야 한다.

#### 2. 공공 빌딩

- a) 유치원, 학교, 병원, 박물관, 도서관, 연구소와 같은 공공 빌딩은 조용하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이나 공연장, 버스 정류장, 공항, 메인 도로 등과 같은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b) 인파가 몰리는 대형 샵이나, 예술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백화점등은

인구밀집지역에 인접해 있어야 하고 접근도로가 편리해야 한다.

c) 학교는 교통이 혼잡하지 않으면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지어져야 한다.

3. 환경 오염, 빈번한 교통혼잡을 야기할 수 있는 건물들(공장, 창고, 병원, 용수펌프장, 수처리장, 가축도살장, 공동묘지, 등),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높은 건물들(연료 및 폭약 저장고, 화학약품 창고, 주유소)은 다음과 같이 위치해야 한다.

a) 거주지역, 공공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 제 5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녹지대와 안전한 분리거리를 보장하도록

b) 강 하류나 바람이 부는 쪽으로 향하게 지어져야 한다.

### 7.3.2. 접근 도로

주택지에는 구급차 및 소방차가 출입할 수 있게 건물 사이의 골목과 도로를 연결하는 접근도로가 있어야 한다.

### 7.3.3. 안전성:

해당 부지는 홍수위험, 오염위험, 화재 및 폭발 또는 교통사고 위험이 없도록,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7.3.4. 부지 면적:

1. 부지의 최소 면적은 승인된 계획도 또는 관할 지역의 건설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유형의 건물에 적합해야 한다.
2. 계획을 목적으로 표 7.3.1.에 나와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표 7.3.1 주택시공을 위한 택지 최소면적

주택종류	최소 치수 BxL (m)	최소 면적 F (m <sup>2</sup> )
서로 붙어 있는 주택 (벽이 연결되어 있고, 거리에 있는 주택)	3 X 12	36
정원 및 안뜰이 있는 링크 하우스 (1)	4.5 X 16	72
떨어져 있는 빌라	14 X 18	250
이중 빌라	10 X 14	140
연속 빌라	7 X 15	105

주

1. 마당과 화단이 있는 링크 하우스는 최소 앞 마당이 2.4m 뒷마당이 2m이어야 한다.
2. 링크 하우스의 길이는 24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7.3.5. 땅 고르기와 메움(성토)

마감공사가 완료된 택지 지면은 승인된 계획도 또는 관할구역의 건설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땅 고르기 및 메움 공사는 인근 주택에 피해를 주지 않은 채 우수나 폐수의 배수가 별도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 7.4 조 적색 경계선 밖에 허용 가능한 시공

시공 경계선과 적색 경계선이 일치하는 경우, 일부 시공은 적색 경계선 밖으로 돌출되는 것이 허용된다.

7.4.1. 주택의 고정 요소

1. 지면에서부터 최대 3.5m 높이: 다음을 제외하고, 적색 경계선 밖으로 어떠한 구성요소도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 a) 계단, 오토바이 진입로: 0.3m 이하로 돌출
  - b) 빗물 배수를 위해 집 전면에 부착되어있는 수직 파이프: 적색 경계선에서부터 0.2m 이하로 돌출하고 외관상 보기 좋아야 함.
  - c) 1m 이상 높이부터는, 굽도리널(skirting), 문턱(sill), 장식이 0.2m가 넘지 않는 범위로 적색 경계선 밖으로 돌출되는 것이 허용 된다.
2. 지면에서 3.5m부터는 주택의 고정요소(발코니, 햇볕 가리개, 처마, 간판, 지붕)는 다음 상황에서는 적색 경계선을 넘을 수 있다.
  - a) (적색 경계선에서부터 돌출부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까지 측정된) 돌출정도는 도로의 너비를 고려하여 표 7.4.1.에 규정되어 있는 허용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동시에, 포장도로의 너비는 적어도 1m가 되어야 한다.
  - b) 발코니의 높이와 돌출정도는 관할지역의 건설관리 규정에 따르되, 주택단지별 통일성을 보장해야 한다.
  - c) 발코니를 로지아(loggia; 역주> 한쪽 벽이 없이 트인 복도)나 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표 7.4.1

발코니, 처마, 차양의 최대 허용 연장

도로 경계폭 (m)	최대 연장 (m)
<4	0
4-6	0.6
>6-12	0.9
>12-16	1.2
15	1.4

### 3. 지하 시공

어떠한 지하 시공도 적색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

### 4. 지붕 있는 출입구 및 상업용 차폐물:

- a) 지역 규정을 따라 통일성을 보장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 b) 소방 시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 c) 포장 도로 위로 3.5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 d) 적색 경계선 밖으로는 돌출정도는 포장도로의 너비보다 0.6m 적어야 한다.
- e) 2시간 이상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성 자재가 사용되어야 한다.
- f) 지붕 있는 출입구와 상업용 차폐물은 본래 이외의 다른 용도(발코니, 테라스, 나무 놓는 곳)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
  - 1) 지붕 있는 출입구: 문 위에 지붕이 있는 것으로 바깥쪽 벽에 붙어있으며 포장도로로부터의 경로 일부분을 가린다.
  - 2) 포장 지붕은 가옥의 바깥벽에 붙어 있으며 포장도로의 길이를 가린다.
  - 3) 상업용 차폐물은 상업용 또는 서비스용에만 적용될 수 있다.

### 7.4.2. 임시 구조물:

1. 파라솔 지붕(canvas roof)은 건설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음 사항들을 따라야 한다.

- a) 포장도로 보다 2.5m 높아야 하며 포장도로 모퉁이에서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b) 건물이 붕괴되었을 때 건물 입구를 막으면 안 된다.

### 2. 출입구:

열거나 닫았을 때, 문이나 창문(단, 공공건물의 비상탈출구는 제외)의 장식이 적색 경계선 밖으로 돌출되어서는 안 된다.

주:

1. 파라솔 지붕은 접이식 지붕이며 바깥 벽에 붙어 있으며, 대개 금속 프레임과 직물 커버로 구성되어 있다.
2. 제 7.4 조의 규정이 부록 7.1에 설명되어 있고 표 7.4.2.에 요약 되어있다.

## 제 7.5 조 세트백 시공 경계선을 넘는 돌출

### 7.5.1. 적색 경계선을 넘는 돌출

주택의 어떤 구성요소도 경계선 밖을 넘을 수 없다.

### 7.5.2. 시공 경계선을 넘는 돌출

- a) 계단, 오토바이 진입로, 굽도리널, 문턱, 출입문 장식, 차양, 처마, 최하부 등에는 제약이 없다.

- b) 발코니는 시공 경계선에서 1.4m까지 벗어날 수 있지만, 방이나 한쪽 벽이 있는 복도를 막거나 분할해선 안 된다.

표 7.4.2. 밖으로 돌출되는 것이 허용되는 구성요소

포장도로 면에서부터의 높이 (m)	돌출 요소	최대허용연장(m)	포장도로 가장자리로부터의 최대거리 (m)
0	- 계단, 오토바이 진입로	0.3	
0-1.0	- 우수배수용 수직파이프	0.2	
	- 우수배수용 수직파이프 - 문턱, 굽도리널, 장식	0.2	
	- 이동 요소: 파라솔 지방, 문 장식		1.0
	고정 구조 (지역 규정에 따라): - 발코니, 처마, 물받이, 수로 - 출입구 지붕, 상업용 차폐물	표 7.4.1 참조	1.0 0.6

## 제 7.6 조 토지 사용: 세트백 공간, 수목 밀도, 건축 밀도

### 7.6.1. 세트백 공간

1. 상업 지역을 제외하고, 주택의 시공 경계선은 도시 녹지공간 조성권과 함께 주차 공간 및 시민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적색 경계선으로부터 단형 후퇴해야 한다.
2. 최소 세트백 공간
  - a) 빌라: 최소 세트백은 표 7.6.1에 나와 있는 데로 도로 경계선의 너비에 따라 달라진다.
  - b) 공공 빌딩, 공장의 최소 세트백은 3m이다.

표 7.6.1 빌라를 위한 최소 세트백 공간

도로 경계 너비 (m)	세트백
<6	2.4
6-16	3.0
16-24	4.5
>24	6.0

### 7.6.2. 수목 밀도와 건축 밀도

1. 건축물들은 해당 지역의 규정에 따라 최소 수목 밀도와 최대 건축 밀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권장 기술 솔루션  
표 7.6.2에 나와 있는 최대 건축 밀도와 최소 나무 밀도를 적용해야 한다.

표 7.6.2 건물의 최대 건축밀도 및 최소 수목밀도

건물 종류	밀도 (%)	
	건축물 (최대)	수목 (최소)
1. 주택:		
- 빌라	30	40
- 콘도	50	20
2. 공공 건물:		
- 유치원, 학교	35	40
- 병원	30	40
- 문화시설	30	30
- 종교 건축물	25	40
3. 공장		
- 산재된 건축물	50	20
- 결합된 블록	70	20

### 제 7.7 조 건물 높이 관리

7.7.1. 건물의 높이는 지역 건설관리 규정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7.7.2. 도시 건축공간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선택된 건물이나 특별하게 계획된 거리를 제외하곤 다음 요소들에 의거하여 건물 높이가 제약되어야 한다.

1. 경계 도로의 너비
2. 주위 건물의 높이
3. 건물 자체의 너비
4. 소방활동이 가능한 높이

주:

경계 도로에 따라 건물 높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임계각을 규정한다. 이것이 시야의 한계선을 설정한다. (부록 7.2의 설명 참조) 폭이 넓은 거리에 적용.  
이 임계각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
2. 경계 도로의 가로, 세로폭에 맞춰서 적절한 건물의 높이를 정한다.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거리가 있는 지역에도 적용

### 제 7.8 조 도시 위생 설비

7.8.1 배수

1. 빗물 및 폐수는 포장도로나 거리로 직접 방출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지하 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구로부터 도시 배수 시스템으로 방출되어야 한다.

2. 가정 폐수는 도시 하수도로 방출되기 전에 승인된 기준에 따라 설치된 정화조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3. 공장이나 상업활동에서 발생한 폐수는 제 4 장에 기술되어 있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도시 하수도에 버려지기 전에 처리 되어야 한다.

#### 7.8.2. 대기오염 예방

1.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거나 폐를 끼칠 수 있는 유해 가스를 외부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 굴뚝이나 공기통에서 배출되는 연기들은 거리나 주택가 쪽으로 퍼지면 안 된다.
2. 제 4 장에 명시한 대로, 배출가스 속에 포함된 먼지나 다른 불순물들의 농도는 정해진 한계값 이내여야 한다.

#### 7.8.3. 에어컨 설치

에어컨이 적색 경계선에 가까운 주택 정면에 있는 경우, 2.7m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고, 에어컨 응결물이바로 포장도로나 거리로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7.8.4. 주택 전면이나 광고판은 반사율이 70%이하인 자재를 원료로 해야 한다.

### 제 7.9. 조 도시 미관

#### 7.9.1. 조화가 안된 건축과 임시 자재

1. 관할 기관이 발급하는 건축 허가증을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구조물 (예를 들어, 짚이나 대나무 등으로 지어진 구조물)이 도시의 중요한 부분에 지어지는 것을 금지한다.
2. 영구적인 건물에 임시 자재로 확장공사하는 것을 금한다.

#### 7.9.2. 주택정면 장식

주택정면은 어두운 색으로 칠해져서는 안 되고 미적 감각이 떨어지는 장식을 피해야 한다.

#### 7.9.3. 빨래 널기

집 정면이나 주요 도로에서는 빨래를 널 수 없다.

7.9.4. 울타리는 지역 규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밝고 가벼운 느낌을 줘야 한다. 단, 특별보호가 필요한 사무실이나 경찰서, 감옥 같은 건물들은 제외 한다.

## 제 7.10 조 전기 안전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전기 안전 수칙들을 보장해야 한다.

7.10.1 고전압 전기 네트워크 및 지하케이블의 경우, 제 4 장에 따라 안전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7.10.2 저전압 전주의 경우: 전주에서부터 건물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까지의 최단 거리는 0.75m여야 한다.

7.10.3 저전압 전선:

1. 옥외 전선은 인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절연되어 있어야 한다.
2. 건축물을 따라 배선된 절연되지 않은 전선은 다음과 같이 최소 안전거리르 보장해야 한다.

a) 수직 방향으로:

- i) 발코니나 지붕보다 2.5m 높게
- ii) 창문 위 모서리보다 0.5m 높게
- iii) 발코니의 아래쪽 모서리보다 1m 낮게

b) 수평 방향으로:

- i) 발코니에서 1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
- ii) 창문에서 0.75m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제 7.11. 조 도시 교통 안전

7.11.1 가시성(시야확보)

건축물이나 나무들은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가려선 안 된다. (도로의 보호 코리더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키가 작은 것들이어야 한다).

7.11.2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공 건물이나 거리에 매점, 광고 간판이나 나무 등이 교통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제7.13조 및 제7.14조에 나와있는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한다.

7.11.3 교차로의 모서리면

1. 건물 코너 부근에서 안전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차로에는 모서리면(chamfer)이 있어야 하며 울타리는 차량 주행속도와 도로 설계 기준에 따라 지역 계획 규정에 맞게 설계 되어야 한다.

2. 권장 기술 솔루션

교차로에서 집이나 울타리 벽의 모서리면을 결정할 때는 7.11.1을 참고한다.

표 7.11.1 교차로의 모서리면

교차로의 모서리면 (도)	모서리면 치수 (m)
0-30	20x20
30-40	15x15
40-50	12x12
50-60	10x10
60-80	7x7
80-110	5x5
110-140	3x3
140-160	2x2
160-200	0x0

주:

- a) 모서리면 치수는 2가지 적색 경계선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 b) 곡선형 모서리면은 건물 코너에 적용될 수 있다.

7.11.4 교통량이 많은 상황을 대비하여 국제규격의 고가다리 및 터널 설계가 허용되며, 이는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12 조 주변 건물들과의 관계

7.12.1. 건물 구조나 택지의 경계선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1. 부대시설, 배관, 지하시설물 등고 같은 건물의 어떤 부분도 합법적으로 지정된 부지 경계선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2. 빗물, 오폐수, 먼지, 가스 등 (에어컨 응결물 포함)이 주변 건물들로 방출되어서는 안 된다.

7.12.2. 창문, 발코니, 환기구

1. 1층에서부터 위로 2m까지 문, 창문, 배출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면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벽에서만 허용 된다. 주변 건물 안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게 설계 되어야 한다.
2. 가장 바깥쪽의 발코니 면은 주변 건물의 경계선에서 적어도 2m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주변 건물 사용자의 허가 하에 창문과 같은 시설이 2m 이내에 지어질 수 있지만 화재 시에 이웃 건물에 옮겨 지지 않을 정도 여야 한다. 창문은 고정된 창이어야 하며 아랫면이 적어도 바닥 면에서 2m 위에 위치해야 한다. 이러한 창문 개방구는 이웃 건물이 원치 않을 시에는 추가 질충이나 지연없이 바로 막아야 한다.

4. 만약 건물 벽이 공공 장소(예를 들어, 주차장, 공원)에 이웃해 있을 시에는 건설관리기관의 허가 하에 고정 창을 달거나 장식을 설치 할 수 있다.

**제 7.13. 조 공공 건물: 정문, 안뜰, 주차장, 위생 편의시설**

7.13.1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공공 건물 (학교,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은:

1.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출입 시에 교통혼잡이 없어야 한다:
  - A. 정문은 교통이 혼잡한 거리와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된다.
  - B. 가로, 세로 4m 이상의 집회 및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2. 안전과 편의를 위한 넉넉한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한다:
  - A. 예를 들어, 학교는 전교생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 B. 방문자들이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하다.
  - C.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장소나, 양호실, 교무실 등에 기다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 하다.
  - D. 오토바이, 자전거를 위한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다.
3. 제 12 장에 나온 대로, 보기 좋고 깨끗한 위생시설이 필요 하다.

7.13.2. 주차장

1. 표 7.1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충분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2. 차 1대의 주차공간으로 산출된 면적은 25m<sup>2</sup>이다.

표 7.13.1. 주차장

건물 종류	차 1대당 주차공간 기준
- 별 3개 이상의 호텔.	1곳당 5개 객실
- 고급 사무실, 외교사무실	1곳당 150 m <sup>2</sup> 바닥공간
- 슈퍼마켓, 대형 샵, 회담센터, 전시실, 박람회,	1곳당 75 m <sup>2</sup> 바닥면적
- 고급 콘도	1곳당 1개 아파트

주:

1. 다른 건물들 (별2개 이상의 호텔, 사무실, 식당, 공공건물)의 각 경우에 따라, 주차장 면적을 위 표의 반으로 줄일 수도 있다.
2. 건설부의 승인 하에 해외 규격에 따른 주차 빌딩이나 지하 주차장을 지을 수 있다.

#### 제 7.14. 조 간이건축물(가판대), 안내판, 광고판, 나무

간이건축물, 안내판, 광고판, 포장도로에 심어진 가로수 등의 설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7.14.1 교통안전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 시야를 방해하거나 운전자를 산만하게 해선 안 된다.

7.14.2 소화 및 화재진압 활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7.14.3 건축물의 미관 및 도시 경관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7.14.4 권력자의 사진, 정치 슬로건, 나라의 중요 인물, 행사 구역, 도시 광장, 미술관, 학교, 유물, 군사령부들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7.14.5 미관

간이건축물은 눈길을 끄는 밝은 색상의 자재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 내부 화장실 배치는 제한되어야 한다. 포장도로에 있는 간이건축물간의 간격은 40m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하며 남은 포장도로의 너비는 적어도 2m이어야 한다.

#### 제 7.15 조 도시지역의 주유소

도시지역에서의 주유소 위치는:

7.15.1 교통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1. 도로 경계선(적색 경계선)에서 7m 이상 뒤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2. 교차로에서는 적어도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인도교와 같이 잘 안 보이는 곳에서는 2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7.15.2 화재 예방과 경관 보호

1. 사람 많은 곳(학교, 시장, 등)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2. 다른 주유소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미관지구에서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제 7.16 조 도시 소방 시설과 소방서

7.16.1 소방서의 위치

소방서의 위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제 5.16조의 규정에 따라 유형별 소방서의 특정 반경을 활동무대로 해야 한다.
2. 소방차 및 소방시설은 민첩하고 안전하게 소방서를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방서의 위치는:

- a. 제 7.16.2 항에 나온 대로 지상에 위치해야 하며 앞마당이 있어야 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알맞은 장소여야 한다.
- b. 도로와 편리하게 연결 되어야 한다.
- c. 인파가 몰리거나 차가 막히는 장소와 인접해 있어서는 안 된다.

#### 7.16.2 소방서 내부

소방서의 내부 레이아웃 설계는 다음 사항들을 갖추어야 한다.

1. 소방 당국이 발표한 규정에 따라, 화재 정보 접수 및 수집, 감시, 화재진압 명령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화재 예방책과 소방관들의 체제가 잘 갖추어 져야 한다.
2. 소방차 및 소방시설이 관리되기에 알맞은 장소여야 하고 빠른 출입이 가능해야 한다.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숙련된 소방관들이 상주해 있어야 한다.
3. 화재관련 공급품들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급수, 소방차 급유, 소방차 관리용품들)
4. 소방관들이 훈련할 충분한 공간(적어도 40x125m)이 필요하다.

# 베트남건설법

---

종합병원 설계가이드



# 종합 병원 - 설계 가이드라인

## General hospital - Guideline

### 1. 적용 범위:

이 수준은 TCVN 4470-1995 - 종합 병원 - 설계요구를 대신한다.

1.1. 이 수준은 종합병원을 새로운 설계 및 개조 설계에 적용한다.

1.2. 전문병원, 한의 병원, 요양원, 의료센터, 보건 진료소를 설계할 때 이 수준을 참고할 수 있다.

### 주석:

- 1) 개조 설계할 때 면적, 건물 밀도, 각 과들의 간격, 성분에 대한 규정에 대해 건설부의 승인을 받게 되며 보건부와 협의해야하고 진료활동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것을 보증해야한다.
- 2) 종합 병원은 특성 요건이 있는 경우 투자보고서에 명기해야하며 권한이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3) 종합병원을 설계할 때 이 수준을 준수하는 것 외에 다른 관련된 현행 법규 및 수준을 준수해야한다.

### 2. 참고 서류:

병원규제, 보건부의 1997년 09월 19일 제 1895/1997/BYT-QD 호의 결정서.

52 TCN-CTYT 39:2005 응급과 - 집중치료-방독과 - 설계수준.

52 TCN-CTYT 38:2005 수술과 - 설계수준.

52 TCN-CTYT 37:2005 검사과 - 설계수준.

52 TCN-CTYT 40:2005 영상진단과 - 설계수준.

2005-2008 단계의 지역종합병원 향상시킨 제안을 실현 안내서.

TCVN 4470 : 1995 보건부 - 종합병원에 적용한 설계요청.

베트남 건설수준.

TCXDVN 276:2003 공공공사 - 설계통칙

TCVN 2737:1995 하중 및 충격 - 설계수준.

TCVN 2622:1995 주택 및 공공공사 소방. 설계 요구.

TCVN 5687:1992 통풍 - 공기조절 및 난방 - 설계수준.

TCVN 4474:1987 옥내 배수 - 설계수준.

TCVN 4513:1988 옥내 급수 - 설계수준

TCVN 16:1986 민간공사의 인공조명

TCVN 29:1991 민간공사의 자연조명.

TCVN 25:1991 주택 및 공공공사의 옥내배선 - 설계수준

### 3. 통칙

- 3.1. 종합병원은 최소의 다음과 같은 과가 있어야한다: 내과치료과, 외과치료과, 산부인과, 소아과, 전염과, 임상공학과.
- 3.2. 종합병원은 보건부 장관의 19/9/1997 제 1895/1997/BYT-QD 호의 결정서에 따른 발행된 병원규제를 바탕으로 설계하게 된다.

**주석:**

종합병원의 규모는 지역 인구에 근거하며 보건부가 승인된 병원네트워크에 적당해야한다. 병원의 규모는 병원등급에 따라하지 않는다.

- 3.3 종합병원은 공사품질관리에 대한 제 209/2004/ND-CP 호의 decree 에 따라 적당한 등급으로 설계한다.

### 4. 토지 및 지상 레이아웃

- 4.1 종합병원을 건설토지는 다음의 요구를 대응해야한다:

- 승인된 기획에 적당하며 미래에 확장을 가능하다.
- 통풍 및 조용한다. 오염된 토지를 피한다. 병원을 건설 및 사용하는 과정에 주변의 환경을 오염되지 않게 해야한다.
- 환자가 병원의 각 과들에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도시의 총 기획에 결정된 기능지역의 위치에 적당해야한다.

- 4.2 종합병원을 건설하는 토지면적은 병상수량에 따라 계산하며 제 1 표에 정한다.

**제 1 표. 종합병원을 건설하는 토지면적**

규모 (병상수량)	토지면적	
	(m2) 병상	허용되는 최소의 요구
병상수 500 - 200 개 (지구병원)	100 - 150	0.75
병상수 250 - 350 개 (규모 1)	70 - 90	2.7
병상수 400 - 500 개 (규모 2)	65 - 85	3.6
병상수 550 개이상 (규모 3)	60 - 80	4.0

**주석:**

- 1) 위에 규정된 토지면적은 병원의 직원을 위한 주택 및 공중복지 공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공사들은 병원을 건설하는 토지밖에 건설된다.

- 2) 건설토지면적은 호수, 연못, 개울 등과 건설할 수 없는 가파른 토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 3) 도시내의 건설토지가 제 1 표의 면적규정을 대응할 수 없는 경우 고층병원을 건설 할 수 있지만 병원활동을 보증해야한다.
- 4) 토지면적은 미래에 병월을 확장할 수 있는 예정지를 포함해야한다.

4.3 병원 건설토지에 전염과를 위한 별도의 면적이 있어야하며 건설밀도, 수목밀도, 격리나무선들을 보장해야한다.

4.4 허용된 건설밀도는 토지면적의 30% ~ 35%이다.

4.5 red-line 에서 다음의 위치까지의 허용된 간격:

- a) 건물벽의 외면:
  - 환자가 쉬는 건물, 진료건물 및 업무기술건물: 15m 이상.
  - 행정, 관리 및 서비스건물: 10m 이상
- b) 박공벽의 외면:
  - 환자가 쉬는 건물, 진료건물 및 업무기술건물: 10m 이상.

4.6 환자가 쉬는 건물에서 다른 별도로 건설된 건물까지의 최소의 위생간격은 제 2 표에서 정한다.

**제 2 표. 환자가 쉬는 건물에서 다른 별도로 건설된 건물까지의 최소의 위생간격**

건물	최소의 위생간격 (m)	비고
- 25 병상 이상의 전염과	20	격리 나무선이 있다
- 송전소나 변전소, 급수시스템, 세탁실, 옷을 씻는 공간	15	
- 소독실, 보일러실, 온수제공실.	15	
- 차고, 창고, 소규모 workshop, 가연성 물질의 창고.	20	
- 시체 안치소, 병리해부실, 봉대를 태우실, 쓰레기장, 동물키우장, 실험실, 폐수처리소.	20	격리 나무선이 있다.

**주석:** 위에 규정된 위생간격을 보증하는 것외에 “TCVN 2622:1995 주택 및 공공 공사 소방 설계 요구”에 따른 소방간격을 보증해야한다. 특별한 기후 경우에는 이 간격이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4.7 허용된 나무밀도는 건설토지 총 면적의 40% ~ 50% 이다.

4.8 보호나무선 및 격리나무선의 최소의 너비가 다음과 같다:

- 토지 보소 나무선: 5m.
- 격리 나무선: 10m.

4.9 병원에서 모기, 파리, 곤충 등을 끌을 수 있는 나무, 튼튼하지 않은 나무 및 독성이 있는 나무를 재배금지한다.

4.10 병원안의 통로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하며 상세한 안내지도가 있어야한다.

다음과 같은 대상들에게의 통로를 따로설계해야한다:

- 직원 및 방문객.
- 환자.
- 25 개의 병상이 있는 전염과 및 전염병을 걸리는 환자.
- 청결한 식품, 용품.
- 쓰레기, 시체, 불결한 물건.
- 소방차 (사고난 경우)

4.11 병원안에서 다음과 같은 통로가 있어야한다:

- 구급차, 소방차, 운반차, 특별한 환자, 장애인을 위한 통로.
- 내주, 업무기술-준임상 및 진료 건물들을 연결한 통로.
- 환자를 위한 산책길.

## 5. 공사내용 및 설계해법

5.1 종합병원의 지상 레이아웃을 설계해법은 다음의 요구를 대응해야한다:

- 합리적이며 각 부분들, 부분 내용들을 겹치지 않는다.
- 내주 진료건물에 최상의 위생 및 병실.
- 미래에 병원의 확장가능성.
- 게이트 및 대합실에서 각 과에 가는길의 상세한 안내지도가 있어야한다.
- 각 과에서 각 실들에 가는길의 상세한 안내지도가 있어야한다.

5.2 종합병원안의 각 건물, 각 부분들의 레이아웃은 다음의 요구를 보증해야한다:

- 병실은 남녀 따로 설계해야한다. 무균활동은 다른 활동과 별도의 장소에서 해야한다.

- 전염과에서 병에 따른 전염환자를 걸리한다.
- 청결하는 약, 식품, 용품은 부결하는 것, 쓰레기, 시체 등과 별도로 저장해야한다.

5.3 병원에서 각 방들의 안의 높이는 규정에 따라 3.6m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X-ray 실 (설비에 따라), 수술실 (조명등의 종류에 따라) 에서 4.2m 까지 올릴 수 있다.
- 생활실, 행정실, 주방, 창고, 소규모 workshop, 세탁실, garage, 시체 안치소에서 3.30m 까지 감소할 수 있다.
- 목욕실, 화장실, 부결한 용품을 저장한 창고에서 2.4m 까지 감소할 수 있다.

**주석:**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높이를 감소할 수 있다.

5.4 병원의 복도, 문, 계단의 안의 너비는 다음의 규정과 같다:

a) 내주건물 및 진료건물:

- 대합실포함: 2.7m ~ 3.0m
- 대합실포함하지 않음: 2.1 ~ 2.4 (결복도), 2.4m ~ 2.7m (속복도)
- 직원을 위한 복도: 1.5m 이상.

b) 문:

- 병상이나 들것을 경과할 수 있는 문: 1.2m 이상
- 병상이나 들것을 경과하지 않는 문: 1.0m 이상

c) 계단 및 가파른 길의 너비를 제 3 표에서 규정한다.

**제 3 표. 계단의 너비 및 경사**

계단	안의 너비 (m)	경사	계단참 (m)
정계단	1.5 이상	1:2 이하	2.4 이상
이차계단	1.2 이상	1:1 이하	1.4 이상
가파르길	-	1:0 이하	1.9 이상

**주석:**

3 개층이상이 있는 진료건물이나 150 개이상의 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중병환자, 걸을 수 없는 환자, 장애인 환자를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를 장비해야한다.

d) 입구, 복도, 출구, 진료구역, 병실, 화장실 및 공중서비스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 “TCXDVN 264 : 2002 – 주택 및 공사 – 장애인은 사용할 수 있게 설계의 기본원칙”

e) 병원에서 특히 검사과, 수술과, 병리해부과에서 자동문을 설계하는 것을 요청한다.

5.5 종합병원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6) 종합진료동, 외주치료동.
- (5.7) 내주치료동.
- (5.8) 업무기술 - 준임상 - 기능검토.
- (5.9) 행정관리, 종합 서비스 동
- (5.10) 기술 - 병참기지 및 보조공사.

5.6 다과진료부분 및 외주진료 (부록 B)

5.6.1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제일 먼저 접촉한 곳은 외주진료 및 치료부분이로서 이 부분은 정문 근처에 위치하며 업무기술 - 준임상 특히 응급실, 검사과, 영상진단과, 기능검토과 및 내주진료 및 치료부분에 편하게 연락할 수 있게 설계해야한다.

5.6.1.1 종합진료 및 외주치료부분의 기능:

- 진료, 내주 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를 지정, 외주진료, 건강관리 안내.
- 정기적으로 진료, 지역의 역병을 지켜보고 역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 임무에 따라 건강 진료.
- 진료과는 규정에 따라 설계하게 되며 병원의 등급에 따라 의료기계를 충분히 마련되고 정사원을 고용한다.

5.6.1.2 조직: 종합진료과 및 외주치료의 규모, 구조, 진료실에 대한 규정은 제 4 표에 정한다.

5.6.1.3 다음과 같은 위치를 설계해야한다:

- 대합실, 진료번호 발급.
- 진료, 응급
- 전문 치료실.
- 진료실을 편리하게 설계해야하며 전염진료실을 별도로 마련되고 별도의 통로가 있다. 대합실은 적당한 면적이 있어야하며 환자의 동반자를 위해 면적은 2 ~ 2.5 계수로 추가할 수 있다.

제 4 표. 병상규모에 따른 진료실 수량

전문	진료실의 수량				비율 (%)	비고
	지구병원 병상수 500 - 200 개	규모 1 병상수 250 - 350 개	규모 2 병상수 400 - 500 개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III 급	III 급	II 급	I 급		
1.내	2 - 5 실	6 - 8 실	9 - 11 실	12 실이상	20	4 개실씩 1 개의 전문치료실을 마련한다.

1. 외	1 - 2 실	4 - 6 실	7 - 8 실	9 실 이상	15	4 개실식 1 개의 전문치료실을 마련한다.
2. 산	1 실	2 - 3 실	3 - 5 실	6 실이상	12	산부인과에서 설계한다.
3. 부인	1 실	1 실	2 실	3 실이상		
4. 소아	1 실	4 - 6 실	7 - 8 실	9 실이상	14	4 개실식 1 개의 전문치료실을 마련한다.
5. 치	1 - 2 실	2 - 3 실	3 실	4 실이상	6	진료 및 치료 결합
6. 이비인후	1 실	2 - 3 실	3 실	4 실이상	6	진료 및 치료 결합
7. 안	1 실	2 - 3 실	3 실	4 실이상	6	3 개실식 1 개의 전문치료실을 마련한다.
8. 전염	1 실	2 실	3 - 4 실	5 실이상	7	진료실, 치료실을 격리해야한다
9. 고전의학	1 실	2 - 3 실	3 실	4 실이상	6	고전의학과에 서 설계한다
10. 다른 전문	1 실	2 실	3 - 4 실	5 실이상	7	
<b>집계</b>	<b>12 - 17 실</b>	<b>29 - 41 실</b>	<b>47 - 59 실</b>	<b>65 실이상</b>	<b>100</b>	

**비고:** 고전의학 진료 및 산부인 진료는 과의 치료부분에 마련된다.

5.6.2 진료실 및 외주치료실의 면적은 하루의 진료번에 따라 설계하며 제 5 표에 정한다.

**제 5 표. 외주 진료실 및 치료실들의 면적**

방의 종류	방의 면적 (m2)				비고
	하루 50 - 150 번의 진료 (병상수 50:200 개) 지구병원 (III 급)	하루 150 - 400 번의 진료(병상수 250 :350 개) 규모 I (III 급)	하루 200 - 400 번의 진료 (병상수 400:500 개) 규모 II (II 급)	하루 500 번이상의 진료 (병상수 550 개 이상) 규모 III (I 급)	
<b>I.보조실</b>					
-공중 대합실	5.6.3 조를 참고				Lobby 과 결합한다.
-분포된 대합실에서의 좌석	5.6.3 조를 참고				

-번호발급소	5 - 6				
-화장실	5.6.4 조를 참고	12-15	15-18	18-24	
<b>11. 외주 진료실 및 치료실</b>					
1)내					
-진료실	(1:2)x(9:12)	(2:3)x(9:12)	(3:4)x(12:15)	(4:5)x(12:15)	
-치료실	2x(9:12)	(1:2)x(9:12)	(2:3)x(9:12)	(2:3)x(9:12)	
12. 신경					
-진료실	9- 12	12 - 15	12 - 15	12 - 15	
13. 피부과학					
-진료실	9 - 12	9 - 12	9 - 12	9 - 12	
-치료실	9 - 12	9 - 12	9 - 12	9 - 12	
14. 한의					
-진료실	9 - 12	(1:2) x(9:12)	2 x (9:12)	2 x (9:12)	
-침술실	(1:2) x(9:12)	2 x (9:12)	2 x (9:12)	2 x (9:12)	
15. 전염병					
-진료실	12 - 15	12 - 15	12 - 15	12 - 15	10 개이하의 병상이 있는 경우 내과의 진료실을 같이 사용
16. 소아					
-Waiting 좌석	5.6.3 조를 참고				
-일반 진료실	9 -12	(1:2)x(9:12)	(2:3)x(9:12)	(2:3)x(9:12)	
-전염 진료실	전염과의 진료실을 같이 사용.				
-화장실	5.6.4 조를 참고				
17. 외					
-진료실	9 -12	(1:2)x (9:12)	(2:3)x (9:12)	(2:3)x (9:12)	
-치료실	-	-	-	-	
-무균실	9 -12	12 -15	15 - 18	15 -18	
-유균실	9 -12	9 -12	9 -12	9 -12	
-의료기기를 부시다, 찌다 및 준비한 공간.	9 -12	9 -12	9 - 12	9 - 12	
18. 산부인과					
-별도의 대합실	5.6.3 조를 참고				
-산과 진료실	12 - 15	12 - 15	(1:2)x 12:15)	(1:2)x (12:15)	
-부인과 진료실	12 - 15	12 - 15	(1:2)x 12:15)	(1:2)x (12:15)	
-화장실	5.6.4 조를 참고				
19. 안					
-진료실					
+ 조명된 부분	15 - 18	15 - 18	(1:2)x(15:18)	(1:2)x 15:18)	

+ 어두운 부분	-	12 - 15	12 -15	12 -15	
-치료실	12 - 15	18 -24	18 - 24	18 -24	
20. 이비인후					
-진료실	12 -15	12 -15	(1:2)x(12:15)	(1:2)x(12:15)	
-치료실	-	-	15 - 18	15 -18	
21. 치					
-진료실 (의자 1 개)	9 - 12	9 - 12	9 - 12	9 - 12	용구를 부시 및 찌는 공간이 있으며 면적이 4 : 5m2. 대합실에서 임시 쉬는 공간이 있다.
-소수술실	-	-	12 -15	12 -15	
-정형실	-	9 - 12	9 - 12	9 - 12	
-틀니작업장	-	24 - 30	24 - 30	24 - 30	
<b>22. 응급부분.</b>					
5.8.1.15 조의 기능실의 면적 규정에 따라.					
<b>23. 업무부분</b>					
-약을 발급실 (약 창고 및 약국)	9 -12	12 - 15	12 - 15	12 - 15	
-약국	12 - 15	12 -15	12 -15	12 - 15	
-Waiting 공간	5.6.3 조를 참고				
-일반 실험실					
+ waiting 공간	5.6.3 조를 참고				
+ 표본 간색한 곳	6 - 9	6 - 9	12 - 16	12 - 16	
+ X-ray 실	-	20 - 24	24 - 36	24 - 36	
+ X-ray waiting 공간	-	6 - 9	9 - 12	9 - 12	
+ X-ray 의사의 실 (서류저장실겸)	-	9 - 12	12 - 16	12 - 16	
-진료실의 서류저장실	12 - 15	15 - 18	18 - 24	18 - 24	
-의과평가실	-	12 - 15	15 - 18	15 - 18	
-청결물품의 창고	6 - 9	9 - 12	12 - 15	12 - 15	
-설비, 장비 관리실	9 - 12	12 - 15	15 - 18	15 - 18	
-화학물질의 창고	6 - 9	9 - 12	12 - 16	12 - 16	
-불결한물품의 창고	4 - 6	6 - 9	6 - 9	6 - 9	
<b>24. 받은 부분</b>					
-탈의 실	6 - 9	6 - 9	6 - 9	6 - 9	
-받은 실	9 - 12	9 - 12	9 - 12	9 - 12	
-의복, 용품 창고					
+ 환자의 청결한 물품	4 - 6	4 - 6	4 - 6	9 - 12	
+ 환자가 맡기는 물품	4 - 6	4 - 6	6 - 9	9 - 12	

25. 행정부분 - 직원의 생활부분					
-주임실	9 - 12	12 - 15	15 - 18	15 - 18	
-생활실	12 - 15	15 - 18	15 - 18	15 - 18	
-탈의 실	제 18 표를 참고				
-화장실	5.6.4 조를 참고				

**주석:**

임시 쉬는 병상은 받은 부분에서 마련한다. 2 개의 병상이며 5m2:6m2/병상. 진료건물에서 역병 지켜보는 실은 필요한 경우 면적 및 방의 수량은 투자보고서에서 적어야한다.

한 건물에 모두 과를 포함한 병원에 응급과, 영상진단과, 소아과, 안과가 순서로 지상층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병리상담실은 1 주에 9 번의 상담을 할 수 있다.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한다:

상담실 =

5.6.3 진료건물에서의 공중 대합실 및 각 진료실의 waiting 좌석은 다음과 같다:

- 어른의 좌석: 1.00m2 - 1.20m2
- 어린이의 좌석: 1.50m2 - 1.80m2
- waiting 좌석의 수량은 하루의 진료번의 12% - 15%이다.

**주석:** waiting 좌석은 각 과에 따라 집중하거나 분단시킬 수 있지만 공중의 면적을 넘어갈 수가 없다.

5.6.4 진료과에서의 화장실의 설비수량은 제 6 표에 정한다.

**제 6 표. 화장실의 설비의 수량**

진료실의 규모 (진료번/하루)	설비					
	세면기		대변기		소변기	
	남	여	남	여	남	여
50 번 - 150 번	2	2	3	3	2	2
150 번 - 400 번	2 - 3	2 - 3	4 - 5	4 - 5	3	3
400 번 - 500 번	3	3	5 - 6	5 - 6	3	3

5.6.5 진료실들:

5.6.5.1 내과진료

외주진료 및 치료과에 속하며 외주 진료 및 치료, 선택검사, 내과병 환자를 받고 내주치료를 마련한다. 각 진료실은 1개의 데스크 및 1개의 병상을 위한 충분한 면적이 있어야한다. 각 2 - 4 개의 진료실마다 전문치료실을 있어야한다.

#### 5.6.5.2 외과진료

외주진료 및 치료과에 속하며 외상, 부스럼, 염증 응급처치, 소수술, 주사하는 등을 책임한다. 대합실, 진료실들 밖에 약실, 준비실, 전문치료실도 있다.

5.6.5.3 소아진료실은 별도의 출입구를 있고 응급실 및 회복실과 잘 연락할 수 있게 설계해야한다.

5.6.5.4 부인진료 및 치료실은 산과진료실과 별도로 위치해야한다. 같은 실은 사용한 경우 부인진료공간을 따로 마련해야한다.

5.6.5.5 산부인진료실에서 산 및 부인의 따로의 화장실이 있어야한다.

*주석: 별도의 실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출입구도 설계해야한다.*

#### 5.6.5.6 치과진료

치과진료실은 전용의자가 있으며 넓은 공간을 마련해야한다. 각 의자의 면적은 의사 및 간호사들이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만족시켜야한다.

#### 5.6.5.7 이비인후과진료

환자가 들어가는 방향 및 기기를 설치하는 향을 주의해야한다. 귀검사는 전문적 요구에 따라 방음실을 필요하다. 목진료는 급수, 배수 시스템을 주의한다 (환자가 내뿜을 때). 도면서는 B 부록을 참고.

#### 5.6.5.8 안과진료

안과진료실은 진료건물의 1 층에 위치하면 좋다.

안과진료실은 외주진료 및 치료과의 제일 편한 곳에 위치한다.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한다:

환자를 받다 (시력은 재다, 안경을 검사) => 전문치료 (이물을 뽑다, 다래끼를 치료...) => 어두운 실 (난지검사, 쌍안경을 검사). 도면서는 B 부록 - B12 사진.

#### 5.7 내주치료부분 (C 부록 - C1, C2 사진)

내주치료과들은 임상과이며, 관리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으로 독립과들로 나뉜다.

전문의 특성에 따라 진료 및 치료.

의사훈련, 과학연구, 하급병원을 지도.

전염과에서: 격리, 감염 방지에 대한 규칙을 보증해야하며, 원룸의 병실을 사용하며 환자를 위한 별도의 출입구가 있다. 환자 및 환자를 접한 사람들을 위한 소독 설비가 있어야한다.

산부인과: 출산을 돕고 신생아, 산모의 건강을 돌보고 분인병을 진료 및 치료. 산부인과에서 전문, 기술 업무를 보증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설계해야한다.

고전외학과: 한의학은 현대의학과 결합하며 내위주 진료 및 치료활동을 한다. 한약을 사용한다.

내주환자가 있는 전문과들은 의료센터의 규모에 따라하며 등급들을 준수하고 각급의 전문적 규정에 따라해야한다.

5.7.1 내주치료부분은 병실들, 행정실, 과장실, 부과장실, 창고, 화장실-탈의 실, 전문치료실, 진료실, 의사근무실, 간호사, 간호보조사의 실이 있다.

5.7.2 종합병원의 내주치료부분은 각 과의 요구에 따라 25 - 30 개의 병상 규모의 치료단원을 설계해야한다. 전문과의 병상의 비율은 제 7 표에 정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별도의 단원을 설계할 수 있다:

15 개의 병상이 있는 소아과.

10 개의 병상이 있는 산과.

20 개이 병상이 있는 이비인후과, 치과, 신경과, 피부과.

10 개의 병상이 있는 전염과에서 별도의 단원을 설계해야 되지만 단원당 12 개의 병상을 넘어지면 않된다.

**주석: 소규모 병원에 한 치료단원에서 2 -3 과를 포함할 수 있다.**

5.7.3 내주치료단원은 다음의 부분을 포함한다:

- 환자의 병실 및 생활실.
- 직원의 작업실 및 생활실.
- 단원의 업무실.

**주석: 내주환자가 독립 전문과으로 나뉜다. 한과에서 병실의 단원으로 조직한다. 한 단원은 25 - 30 개의 병상이 있다. C 부록 - C1 사진을 참고.**

**제 7 표. 각 전문과의 병실 수량**

전문과	병상의 수량				비율 (%)
	지구병원 50-200 개의 병상	규모 1 250 - 300 개의 병상	규모 2 병상수 400 - 500 개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III 급	III 급	II 급	I 급	
1.내과	17 - 68	57 - 80	92 - 115	120 이상	23
+ 내과 1	내과 + 고전외학과	30 - 38	30 - 38	40 이상	
+ 내과 2		30 - 38	30 - 38	40 이상	

+ 내과 3			30 - 38	40 이상	
+ 내과 4					
26. 외과	11 - 44	45 - 63	72 - 90	100 이상	18
+ 외과 1		20 - 30	30 - 36	40 이상	
+외과 2		20 - 30	30 - 36	40 이상	
+외과 3					
27. 부인과	7 - 28	18 - 24	28 - 35	40 이상	7
28. 산과		18 - 24	28 - 35	40 이상	7
29. 소아과	6 - 24	22 - 31	36 - 45	50 이상	9
30. 치과	3 - 12	8 - 10	12 - 15	20 이상	3
31. 이비인후과		8 - 10	12 - 15	20 이상	3
32. 안과		8 - 10	12 - 15	20 이상	3
33. 전염과	3 - 12	15 - 21	24 - 30	35 이상	6
34. 응급 및 회복과	3 - 12	15 - 21	24 - 30	35 이상	6
35. 고전외학과		18 - 24	28 - 35	40 이상	7
36. 다른 전문과		20 - 28	30 - 40	40 이상	8
<b>합계</b>	<b>50 - 200</b>	<b>250 - 350</b>	<b>400 - 500</b>	<b>550 이상</b>	<b>100</b>

5.7.4 병실의 면적은 제 8 표에서 정한다.

**제 8 표. 병실의 면적**

병실의 종류	면적 (m2/병상)
1 개의 병상	9 - 12
2 개의 병상	15 - 18
3 개의 병상	18 - 20
4 개의 병상	24 - 28
5 개의 병상	32 - 36

**주석:** 윗표의 면적은 보조공사의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목욕실, 화장실, 세탁실)

5.7.5 신생아과의 병상면적 및 병사수량은 다음과 같다:

- 신생아의 병상의 면적은 3m<sup>2</sup> - 4m<sup>2</sup> 이며 한 방에서 8 개이하의 병상이 있다.
- 어린이의 병상의 면적은 5m<sup>2</sup> - 6m<sup>2</sup> 이며 한 방에서 6 개이하의 병상이 있다.

**주석:** 병원은 어머니에게 쉬는 공간을 마련할 경우 보건부나 권한이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7.6 전염과의 단원은 병에 따라 방을 나눈다. 한 방에서 3개이하의 병상을 있고 한 병상의 면적이 7m<sup>2</sup> - 8m<sup>2</sup> 이다 (매트리스의 면적 별도).

5.7.7 환자 생활실들의 면적은 제 9 표에 정한다.

**제 9 표. 환자 생활실들의 면적**

방의 종류	면적 (m <sup>2</sup> )		비고
	방	좌석	
식사하는 룸	-	0.8 - 1.0	병상수량의 80%이하
식사 준비 룸	6 - 8	-	병상수량의 50%이하
손님을 맞은 룸	-	1.0 - 1.2	
청결한 물건 저장 창고	4 - 6	-	
화장실	-	-	5.6.4 조를 참고
불결한 물건의 창고	4 - 6	-	전염환자의 물건을 위한 6 - 9m <sup>2</sup>

**주석:** 환자의 손님을 맞은 룸은 각 층의 로비나 병실들의 복도와 결합할 수 있지만 로비 및 복도의 확대한 면적이 규정된 면적을 넘어질 수 없다.

내주치료단원들의 보조공사가 다음의 요구를 보증해야한다:

1 - 2 방마다 세면대 1 개, 대변기 1 개 및 세탁실을 포함한 보조공사가 있다.

다른 경우: 12 - 15 명마다 세면기 1 개, 대변기 1 개 및 목욕실, 세탁실을 포함한 보조공사가 있다.

환자를 위한 보조공사가 병원의 조건 및 구체적인 사용요구에 따라 각 병실에서 설계할 수 있거나 여러 병실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다.

5.7.8 25 - 30 개의 병상이 있는 소아과의 단원은 제 10 표에 따른 생활실을 설계해야한다.

**제 10 표. 소아과의 생활실들의 면적**

방의 종류	요청한 면적 (m <sup>2</sup> )	
	1 명의 신생아를 위해	어린이를 위해
1.우유준비실	4 - 6	-
37. 수유실	9 - 12	-
38. 식사준비실	-	15 - 18
39. Playground	12 - 15	15 - 18
40. 목욕실	9 - 12	9 - 12
41. 화장실	9 - 12	9 - 12
42. 세탁실	9 - 12	9 - 12
43. 청결한 창고	6 - 9	6 - 9

44. 불결한 창고	6	6
------------	---	---

**주석:** 소아과단원의 옷 겹은 곳의 면적은 30m<sup>2</sup> 이상해야한다.

5.7.9 전염과 환자의 생활실들의 면적은 제 11 표에 정한다.

**제 11 표. 전염과 생활실들의 면적**

방의 종류	면적 (m <sup>2</sup> )	비고
식사준비 및 식사용구를 소독한 곳	9 - 12	에비의 소독
청결한 창고	4 - 6	천의 물건, 용구
불결한 창고 및 예비소독한 곳	6 - 9	청결하게 만들
화장실	병실에 따라 설계한다 (5.6.4 조, 제 6 표를 참고)	

5.7.10 내주치료단원의 업무실은 제 12 표에 정한다.

**제 12 표. 내주치료단원의 업무실들의 면적**

방의 종류	면적 (m <sup>2</sup> )			
	지구병원 병상수 500 - 200 개	규모 1 250 - 300 개의 병상	규모 2 병상수 400 - 500 개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Ⅲ급	Ⅲ급	Ⅱ급	Ⅰ급
치료실	24 - 33	27 - 36	36 - 45	36 - 45
무균전문치료실	9 - 12	12 - 15	18 - 24	18 - 24
유균전문치료실	9 - 12	9 - 12	9 - 12	9 - 12
용구준비, 씻고 찌는룸	6 - 9	6 - 9	6 - 9	6 - 9
의사의 실	12	12 - 18	18 - 24	18 - 24
간호사의 실	12	12 - 18	18 - 24	18 - 24
수간호원의 실 (간호보조사 수장)	15	18 - 21	21 - 24	21 - 24
남의사의 숙직실	12	15	15	15
여의사의 숙직실	12	15	15	15
남자 탈의 실	9	12	16	16
여자 탈의 실	9	12	16	16
남, 여 화장실	5.6.4 조 - 제 6 표를 참고			
교실 (학생, 이턴...)	16	24	28	36

**주석:**

대규모의 치료실을 다음의 경우에는 설계한다:

같은 과의 2 개의 단원은 같이 사용.  
 소수술, 기능검토 활동을 결합.  
 의사의 실은 같은 과의 2 -3 개의 단원이 공용.  
 숙직실은 병실들을 포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위치한다.

5.7.11 용구를 준비, 씻고 찌는 룸은 무균전문치료실 및 유균전문치료실 사이에 설계한다.

5.7.12 전염병치료단원에서 다음의 치료실을 있어야한다:

- 치료준비실: 9m<sup>2</sup> - 12m<sup>2</sup>
- 전염병 응급실: 15m<sup>2</sup> - 18m<sup>2</sup>.

**주석:** 10 개의 병상이 있는 단원에 치료준비실은 과의 응급실과 결합할 수 있다.

5.7.13 내주단원에서 다음의 업무실을 설계해야한다:

- 응급실:
- + 1 - 2 개의 병상: 15m<sup>2</sup> - 18m<sup>2</sup>
- + 3 - 4 개의 병상: 24m<sup>2</sup> - 32m<sup>2</sup>
- 일반 실험실은 다음의 부분을 포함한다:
- + 준비 공간.
- + 검사공간: 15m<sup>2</sup>:18m<sup>2</sup>/실이나 5m<sup>2</sup>:6m<sup>2</sup>/직원.

5.7.14 산부인과에서 병리있는 산부, 격리해야하는 산부를 위한 별도의 병실이 있어야한다.

5.7.15 산부인과의 출산 돕은 부분의 방들의 면적 및 성분이 제 13 표에 정한다. C 부록 - C4 사진을 참고.

5.7.16 200 개의 병상이 있는 산과에서 신생아를 위한 부분이 있다. 100 개의 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조산유아 및 격리해야한 신생아를 위한 별도의 실이 있어야한다. 신생아과의 방면적 및 성분을 제 14 표에 정한다.

**제 13 표. 산부인과의 방면적 및 성분**

방의 종류	면적 (m <sup>2</sup> )	비고
<b>A.청결공간</b>		
1.임신검사	12 - 15	3 개이하의 의자/방
45. 각 추가한 의자마다	8 - 9	일반 출산용 의자마다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한다
46. 출산대합실 (2 개의 병상)	9 - 12	
47. 각 추가한 병상마다	4 - 6	

48. 출산전 위생	6 - 9	
49. 낙태 후 쉬는 실	9 - 12	2 - 3 개의 병상/낙태 테이블
<b>50. 출산공간</b>		
a. 무균공간		
1. 손씻는 실, 탈의 실	6 - 9	
51. 무균출산 (1 - 2 개의 의자)	15 - 24	격리한 산부에게 한 방에 2 개이하의 의자
52. 병리출산 (1 개의 의자)	12 - 15	
53. 수술실, 보조실	제 31 표를 참고	50 - 100 개의 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수술과의 수술실과 결합한다.
54. 낙태실, IUD 삽입	12 - 15	
55. 유균공간 (별도의 위치)		
1. 출산전 위생실	6 - 9	병상수 400 - 500 개가 있는 병원에서 방음설비, 열을 감소하는 설비가 있다.
56. 유균출산 (1 개의 의자)	12 - 15	병상수 400 - 500 개가 있는 병원에서 방음설비, 열을 감소하는 설비가 있다.
<b>57. 보조공간</b>		
1. 청결한 창고	6 - 9	
58. 용구준비, 씻고 찌는 곳	9 - 12	
59. 불결한 창고	4 - 6	

제 14 표. 신생아과 방면적 및 성분

방의 종류	면적(m <sup>2</sup> )	비고
A. 신생아의 실		
-조산유아의 실	3 - 4	1 개의 병상을 위한
-격리한 신생아의 실	3 - 4	1 개의 병상을 위한
60. 보조실		
-신생아 목욕실	6 - 9 - 12	25 - 30 개의 병상마다
-옷 세탁실	6 - 9	
-우유준비실	6 - 9	
-조산사의 숙직실	6 - 9	
-수유실	12 - 15	
-퇴원 신생아를 받은 실	6 - 9	
-청결한 창고	6 - 9	
-불결한 창고	6 - 9	

**주석:**

신생아의 단원은 C5 의 부록을 참고.

신생아를 위한 병상수량이 산부를 위한 병상수량과 같다. 조산유아 및 격리신생아의 실은 별도의 위치하며 칸막이를 사용하여 각 2 개의 병상을 1 block 으로 나뉜다.

신생아를 치료실에서 신생아를 볼 수 있도록 넓은 문이나 유리벽이 있어야한다.

부인과 단원 업무실의 면적 및 성분은 제 15 표에 정한다.

제 15 표. 부인과 업무실의 면적 및 성분

방의 종류	면적 (m2)	비고
-부인과진료	12 - 15	3 개이하의 의자/방
-각 추가한 의자	8 - 9	
-전문치료실:		
+ 약으로 치료공간	18 - 24	
+ 전기응고 공간	18 - 24	
+ 용구 준비, 씻고 찌는공간	24	
-부인과 수술실 및 보조	제 31 표를 참고	

안과: 안과에서 치료실의 면적은 제 16 표에 정한다.

제 16 표. 안과에서 치료실의 면적

방의 종류	면적 (m2)			
	지구병원 50-200 개의 병상	규모 1 병상수 250 - 350 개	규모 2 병상수 400 - 500 개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III 급	III 급	II 급	I 급
<b>1.안과진료실:</b>				
-빛나는 부분	진료부분의	18 - 24	24 - 30	36 - 39
-어두운 부분	안과진료실과 결합한다	9 - 12	12 - 15	15 - 18
<b>61. 치료실:</b>				
-붕대를 갈아냄, 점안, 소수술, 용구 준비, 씻고 찌다.	18 - 24	24 - 30	30 - 36	36 - 38

주석: 시력검사 곳의 길이는 5m 이상해야한다.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의 치료실의 면적을 제 17 표에 정한다.

제 17 표. 이비인후과 치료실의 면적

방의 종류	면적 (m2)			
	지구병원 50-200 개의 병상	규모 1 병상수 250 - 350 개	규모 2 병상수 400 - 500 개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III 급	III 급	II 급	I 급
진료실 (1 개의 의자)	치료실과 결합	9 - 12	12 - 15	≥15
수색실	-	15 - 18	18 - 24	≥24
소, 중수술	12 - 18	18 - 24	24 - 36	≥36
치료실: 붕대를 갈아냄, 약흡입, 용구 준비, 씻고 찌다.	18 - 24	24 - 30	30 - 35	≥ 38

**주석:** 듣기능력시험실을 필요할 경우 요구한 면적은 사업의 경제-기술보고서에 적어야하며 보건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치과 치료실의 면적은 전용 의자, 주사하는 곳, 약 준비하는 곳, 붓대를 갈아대는 곳, 용구를 준비, 씻고 찌는 곳을 포함한다.

치과 치료실의 규모에 따른 면적:

50-250 개의 병상이 있는 병원: 12m<sup>2</sup> - 15m<sup>2</sup>

250-500 개의 병상이 있는 병원: 24m<sup>2</sup> - 30m<sup>2</sup>

병원의 치료단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인턴을 위한 근무실, 생활실들의 면적은 제 18 표에 정한다.

**제 18 표. 병원의 치료단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인턴을 위한 근무실, 생활실들의 면적**

방의 종류	면적 (m <sup>2</sup> )	비고
과장실:		
대규모 병원	12 - 15	
중소규모 병원	9 - 12	
의사의 실	9 - 12	결합하면 6m <sup>2</sup> /desk, 진단서를 저장하면 2m <sup>2</sup> : 3m <sup>2</sup> 를 추가
간호사의 실	9 - 12	
숙직실	9 - 12	
직원의 실	18 - 24	50 개의 병상이나 2 개의 단원, 0.8m <sup>2</sup> : 1m <sup>2</sup> /명이지만 24m <sup>2</sup> 를 넘어지면 안된다.
과의 생활실	15 - 18	
단원의 생활실, 인턴안내실	-	
탈의 실 (인턴를 포함)		
남	4 - 6	0.2m <sup>2</sup> : 0.3m <sup>2</sup> /옷걸이든곳, 0.35m <sup>2</sup> : 0.45m <sup>2</sup> /개인옷걸이든곳.
여	4 - 6	
화장실	5.6.4 조를 참고	

**주석:** 10 개이하의 병상이 있는 전염과는 내과를 결합할 수 있지만 격리병 및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야한다.

고전의학과: 외주 및 내주 진료, 치료를 포함하며 공간이 다음의 내용으로 나뉜다:

- + 환자를 받으며 진료 처방을 쓰는 공간: waiting 좌석, 한약 고르는 테이블, 약장, 맥을 짚은 실.
- + 치료공간: 반사 요법실, 침술실, 준비실, 용구소독실.
- + 환자의 공간: 병실, 환자의 생활실
- + 행정, 보조공간: 행정실, 과장실, 약창고, 용구창고.

C 부록 - C8 사진을 참고.

물리치료 - 기능회복과: 임상과 이며 병원의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장애인이 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한다.

임무:

환자를 진료, 치료 및 기능회복.

보조, 정형 용구를 생산 및 사용안내.

공동체에 의존한 기능회복활동 및 기술적 지도.

과에서 치료운동에 필요한 기본용구를 충분히 장비해야하며 물리치료, 치료언어의 필요한 설비를 있어야한다.

조직:

규모 2 (400-500 개의 병상) - II 급병원 및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 I 급병원에서 물리치료 - 기능회복과가 있어야한다.

공간을 설계.

물리치료-기능회복과는 내외주 치료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전문분야에 따라 한다 (운동, 전기치료, 수치료..). 과의 공간은 massage, 수치료전문탕, 재활운동처방실, 반사요법실...등의 실을 포함한다. D 부록을 참고.

물리치료-기능회복과는 의학치료법, 심리치료법 등 여러방법을 결합하여 환자가 공동체에 재가입할 수 있게 도와준다.

기능회복실들의 치료석수량은 제 19 표에 정한다.

제 19 표. 병상수량규모에 따른 치료자리

설계의 내용 및 성분	병상수량규모에 따른 치료자리			
	지구병원 50-200 개의 병상	규모 1 병상수 250 - 350 개	규모 2 병상수 400 - 500 개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III 급	III 급	II 급	I 급
<b>1 - 전기치료:</b>				
-적외선 치료	2	2	3	3
-자외선 치료	1	1	2	2
-전기치료	1	1	2	2
-다른 기기로 치료	-	-		
<b>2 - 열치료</b>				
-파라핀, 뜸썩을 묶음	2	2	3	3
-사우나	1	1	2	2
<b>3 - 재활운동처방실</b>				
-운동실	1	1	2	2
-반사용법실	2	2	3	3
<b>4 - 수치료</b>				
-물치료	3	4	5	5
-진흙치료	4	8	10	10

물리치료-기능회복과의 치료석의 면적은 제 20 표에 정한다.

제 20 표. 물리치료-기능회복과의 치료석의 면적

치료석의 종류	면적 (m2)	비고
환자의 waiting 좌석	1 - 1.2	치료석의 60 - 80%에 의한다
치료후 쉬는 공간, 1개의 병상의 기준	2 - 2.5	치료석의 30 - 50%에 의한다
앉은 자세로 치료	2 - 3	
드러누운자세로 치료	4 - 5	옷 갈아입은 공간이 있다

물리치료- 기능회복과의 방들의면적을 제 21 표에 정한다.

제 21 표. 물리치료-기능회복과 방들의 면적

방의 종류	규모에 따른 면적 (m2)				비고
	지구병원 50-200 개의 병상	규모 1 250 - 300 개의 병상	규모 2 병상수 400 - 500 개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Ⅲ급	Ⅲ급	Ⅱ급	Ⅰ급	
<b>A. 행정 - 환자를 받다</b>					
-과장 의사	6 - 9	6 - 9			
-행정	6 - 9	6 - 9			
-직원 및 처으로 만든 물건의 창고	제 18 표를 참고				
-waiting 공간	5.6.3 조를 참고				
-화장실	5.6.4 조를 참고				
<b>62. 전기치료</b>					
-간호사 근무공간	6 - 9			6 - 9	
-치료실	12 - 15			12 - 15	
<b>63. 열치료</b>					
-간호사 근무공간	6 - 9	6 - 9	6 - 9	6 - 9	
-파라핀을 묶은 실	12 - 15	12 - 15	15 - 18	15 - 18	
-사우나실	6 - 9	6 - 9	9 - 12	9 - 12	
<b>64. 재활운동처방실</b>					
-연습실	18	18 - 24	24 - 36	24 - 36	운동장이나 복도과 결합할 수 있다.
-반사요법실	-	9 - 12	12 - 16	12 - 16	
-탈의 실 및 용구창고	6 - 9	6 - 9	9 - 12	9 - 12	
-운동장	50	50	60	60	
<b>65. 수치료</b>					
-물치료	18	24	24	24	
-진흙치료	18	24	24	24	

주석: 연습실은 조건이 있으면 복도나 지붕이 있는 운동장을 설계할 수 있다. 이 면적은 위치 및 병원의 건설가능과 설비에 따라한다.

핵의학 및 종양치료과.

기능

핵의학 및 종양치료과는 방사물 및 다른 방사선으로 진료 및 치료한다.

방사선으로 인한 합병증을 진단, 치료 및 지켜본다.

과의 인프라는 방사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해야하며 직원 및 환자, 환경의 안전을 보증해야한다.

조직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 I 급병원에서 핵의학 및 종양치료과가 있어야한다.

규모 2 (400-500 개의 병상) - II 급병원에서 종양치료과만을 설립한다.

공간설계

핵의학 및 종양치료과는 1 층에 위치한다. 공간은 진료-치료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2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뉜다:

기술부분: 진료실, vivo 진단실, 방사선 분배설비의 실, 방사선의 강도를 측정설비의 실, 약화학의 실, 물리 및 핵전자의 실, 방사물약을 주사-마시는 실, 흑연 몰드 및 선반 준비실, 시뮬레이션의 실, control 실, 근접치료실.

보조부분: 환자를 받은 공간, 환자의 waiting 공간, 치료계획을 세운실, 준비실, 환자가 임시 쉬는 실, 방사물약저장실, 보호 연색관...E 부록 - E2 시진을 참고.

종양병을 걸리는 환자가 환자수량의 최소 1%를 차지한 경우 종양치료과를 설립한다. 과의 구조를 제 22 표에 정한다.

핵의학-종양치료과에서 다음의 실을 포함해야한다:

종양진료실: 진료, 종양 조기진단 및 치료 후 지켜보다.

외주치료단위.

내주치료단위: 30 - 90 개의 병상이 있는 암 방지하는 과나 센터를 설립한다.

제 22 표. 전문병원의 핵의학 및 종양치료과의 구조

활동		종양과
1. 활동조직	독립단위	종합병원에 속한다
66. 병상수량	100 - 1,000	30 - 90
67. 수술	2 - 10 개의 수술실	1 개의 수술실
68. 방사치료	1 - 6 개의 기기	
-선형가속기	1 - 2 개	1 개
-시뮬레이터	1 - 6 개	0 - 1 개
-고선량을 근접치료기		0 - 1 개
69. 화학치료	1 - 3 과	01 단위
70. 6PB 진단설비	전문	최소는 일반기준으로있어야한다.
71. 전과지도, 치료, 병방지, 조기발견	적극적으로 활동	지구급 암을 방지 및 조기발견을 지도.

방사치료실은 전용설비를 사용하여 방사선 및 동위방사로 암을 걸리는 화자를 치료한다.

방사치료실을 설계는 다음의 요구에 의한다:

기기의 디자인

방사선의 강도

위치

마루, 벽, 천장을 덮이는 구조.  
지지구조

**주석:** 방사치료실을 설계할 때 catalogue 의 설비의 요구를 준수해야한다.

방사치료실의 위치:

1 층이나 지하층

탈의 실, 화장실, 실험실, 진료실 및 업무실을 직접연락한 위치.

5.27.26.9 방사치료실은 제조업체의 설비의 사이즈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일반사이즈는 4.5m x 4.5m.

- 유일한 두꺼운 문짝이 있는 입구를 설계한다. 문짝은 방사선 방지벽이 있다.
- 방면적은 기기가 운행할 때 돌 수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해야한다.
- 방사치료실은 기기실옆에 위치해야하지만 방사선을 방지벽구조로 설계해야한다.
- 건설완성 후 방사안전검토하는 기관이 안전확인을 받아야한다.
- 통풍창, 급열관, 출구, 창문 등을 모두 덮여야하며 최소의 틈이라도 없어야한다.

5.27.26.10 출입구 (문과 복도)의 높이 및 너비는 설비를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방의 모든 구석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해야한다.

## 5.8 준임상업무기술부분

다음의 과를 포함한다:

- a) 응급과, 집중치료-방독과
- b) 수술-마취회복과.
- c) 영상진단과.
- d) 검사과 (생화학 검사, 미생물 검사, 수혈검사, 기생충 검사)
- e) 병리해부과
- f) 기능검토과
- g) 내시경과
- h) 양과

### 5.8.1 응급과, 집중치료-방독과

#### 5.8.1.1 기능

- 응급활동
- 24/24 시간 활동, 환자를 받고 상태로 분류, 진단에 따라 검사를 한다. 환자를 전문과나 상급병원에 옮기 전에 24-48 시간동안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킨다.
- 집중치료-방독과는 현대 전용 설비를 사용하여 다른 전문과의 환자의 약한 기능을 치료 및 적극 보조한다.

#### 5.8.1.2 조직

- 규모 1 의 종합병원: 응급과는 집중치료-방독과를 결합하며 응급부분 및 회복부분 (집중치료 및 방독)이 있는 응급-회복과를 설립한다.
- 규모 2, 규모 3 의 종합병원: 따로 조직한다: 응급과, 집중치료-방독과.

#### 5.8.1.3 응급과의 부분:

- 기술부분: 환자를 받고 분류, 응급공간 (응급 치료, 상처를 싸매다), 진단공간 (신속한 검사, 이동 x-ray), 전문치료공간.
- 보조부분: 용구, 약실, 용구소독실, 창고 (청결 및 불결), 행정실, 맞교대실, 훈련실, 숙직실, 화장실, 목욕실, 탈의 실, 과장실.

G 부록 - G1 - G5 사진을 참고.

5.8.1.4 처음 응급 부분은 1 층, 병원 정문 근처, 준임상과옆에 위치하며 응급차가 있다. 종합병원의 응급과는 환자 받은 부분 및 응급 임시 저장 (10 - 20 개의 병상). 1 응급팀의 숙직실이 있다. 환자 받은 공간 옆에 환자 분류실 및 환자 가족의 대합실이다.

#### 5.8.1.5 저극치료 및 방독과는 다음의 부분을 포함한다:

- 기술부분: 환자를 받은 공간, 집중치료 및 지켜보는 공간, 전문치료공간, 소독 및 위세척, 위독환자의 실, 용구 및 약실, 용구 소독실, 창고 (청결 및 불결)
- 보조부분: 환자가족의 대합실, 행정실, 맞교대실, 숙직실, 직원의 실, 화장실, 목욕실, 탈의 실, 과장실.

G 부록 - G6 - G8 사진을 참고.

5.8.1.6 저극치료 및 방독과는 넓은 lobby 가 있어야한다 (재난 응급 할 때), 특히 화학물의 사고를 응급 할 때 공중 목욕실을 있어야한다. 과학연구실, 하급병원의 직원한테 응급, 집중치료 및 방독에 대해 전문훈련실이 있어야한다.

5.8.1.7 집중치료-방독과의 병상수량은 종합병원 병상수량의 5% - 8%를 차지한다. 그중에는 응급실의 병상수량은 40%, 집중치료-방독과의 병상수량이 60%.

5.8.1.8 지구급병원에서 집중치료-방독과는 응급부분과 회복, 방독부분 (집중치료)을 포함한 응급회복과로 조직한다.

5.8.1.9 집중치료-방독과는 1 층에서 위치하며 별도의 출입구 및 문이 있다. 진료과에 근처하며 업무기술, 검사 및 영상진단과에 편하게 연락할 수 있다.

5.8.1.10 집중치료-방독과는 응급과과 별도로 설계하며 응급과 및 업무기술부분 옆에 위치한다. 병원의 제일 좋은 환경 및 인프라가 있는 중심에서 위치한다. 설비를 잘 운반과 설치할 수 있으며 의료용 가스 제공시스템, 급전, 급수 부분근처에 위치한다.

5.8.1.11 집중치료-방독과에서 청결부분 및 불결부분을 별도로 설계하며 응급, 집중치료활동에 적시의 응할 수 있도록 한다. 2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 청결부분 (청결환경을 요구)
- + 집중치료공간, 숙직한 간호사 있다.
- + 전문치료실.

    보조공간:

- + lobby, 환자를 받고 분류
- + 환자가족의 대합실.
- + 응급 임시 저장 공간
- + 약실
- + 용구소독실
- + 청결창고
- + 불결창고
- + 보조기술 (X-ray, 초음파 검사의 실, 신속실험실)
- + 행정실들 (의사실, 간호보조사실, 맞교대실, 훈련실)
- + 화장실 (목욕/ 옷 갈아입다)

5.8.1.12 지켜보아야하는 환자가 있는 병실을 유리벽이 있어야한다. 유리벽은 다음의 요구를 보증해야한다:

- 100%병실을 관찰할 수 있다.
- 환자 특히 어린이를 통제할 수 있다.
- 환자의 가족 및 손님을 통제, 화자과 유리벽, micro 로 접촉.
- 허용된 잡음 수준을 보증:
  - + 낮에 40dB - 45dB
  - + 밤에 30dB - 40dB.

    너스 콜 설비가 있다. 심각한 환자를 24/24 시간 지켜보아야한다.

5.8.1.13 응급실 및 집중치료실의 방 높이는 다음과 같다:

    방 및 복도의 안의 높이:

(설비를 설치요청에 따라)     3m 이상

    기술층의 안의 높이:

(청장에서 보구조의 하한까지)     0.2m 이하

    출입문의 높이:     2.1m 이상

    출입문의 너비:

- +병상을 위한 문: 1.6m 이상
- + 일반문: 0.8m 이상
- 계단, 가파른 길 (있는 경우)의 너비:
- + 계단의 너비 1.8m 이상
- + 계단참의 너비 2.4m 이상
- 복도의 너비:
- + 외길복도: 2.1m 이상
- + 속 복도: 3.0m 이상
- 엘리베이터 cabin 의 사이즈:
- +환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1.1m x 2.3m 이상
- + 직원을 위한 엘리베이터: 1.1m x 1.4m 이상

5.8.1.14 응급과의 방의 최소면적은 제 23 표에 정한다.

**제 23 표. 응급과의 방의 최소면적**

순서	방의 종류	면적 (m2)				비고
		지구병원 병상수 500 - 200 개	규모 1 병상수 250 - 350 개	규모 2 400 - 500 개의 병원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Ⅲ급	Ⅲ급	Ⅱ급	Ⅰ급	
1	Lobby	16	18 - 24	24	36	
2	구급요법실	18	24 - 36	36	36	
3	응급 임시저장실	36	60 - 120	120	180	
4	환자를 목욕, 소독실	12	12	12	18	
5	영상진단실, 신속실험실	24	24	24	24	control 실과 결합
6	용구소독실	12	12	18	24	
7	과장실	16	18	18	24	
8	의사의 실	12	12	18	24	숙직실과 결합
9	간호사의 실	12	12	18	24	숙직실과 결합
10	맞교대, 훈련실	18	24 - 48	48	54	25 - 31 명의 직원이나 인턴
11	청결창고	12	12 - 18	18	24	
12	불결창고	9	9 - 18	18	27	
13	직원의 탈의 실	16	18 - 36	36	48	최소 1.0m2/사람
<b>합계</b>		<b>211</b>	<b>255 - 408</b>	<b>408</b>	<b>543</b>	

5.8.1.15 집중치료-방독과의 방의 최소면적은 제 24 표에 정한다.

**제 24 표. 집중치료-방독과의 방의 최소면적**

순서	방의 종류	면적 (m2)				비고
		지구병원	규모 1	규모 2	규모 3	

		병상수 500 - 200 개	병상수 250 - 350 개	400 - 500 개의 병원	병상수 550 개 이상	
		Ⅲ급	Ⅲ급	Ⅱ급	Ⅰ급	
1	환자가족의 waiting 실	16	18	24	36	
2	집중치료실	120	150 - 300	300	450	최소 15m2/명
3	전문치료실	18	28	28	56	수술실과 같다
4	기기실	12	12	24	36	
5	치료진단실	12	12	12	24	control 실과 결합
6	용구소독실	12	12	12	24	
7	청결창고	12	12	18	24	
8	불결창고	6	6	9	12	
9	과장실	16	18	18	24	
10	의사실	12	12 - 24	24	36	숙직실과 결합
11	간호사실	12	12 - 24	24	36	숙직실과 결합
12	맞교대, 훈련실	24	36 - 48	48	56	
13	직원의 탈의 실	18	24 - 48	48	56	최소 1.0m2/사람
<b>합계</b>		<b>290</b>	<b>352 - 589</b>	<b>589</b>	<b>870</b>	

**주석:**

무균공간은 내과 및 외과으로 나뉜다.

집중치료실은 환자를 지켜볼 수 있도록 유리벽이 있어야한다.

5.8.1.16 응급과 및 집중치료-방독과에서의 조명시스템은 다음의 요구를 대응해야 한다:

- 보조공간: 자연조명 우선.
- 청결공간: 자연조명은 인공조명과 결합.

5.8.1.17 응급실 및 집중치료-방독과에서의 최저조명도는 제 25 표에 정한다.

**제 25 표. 집중치료-방독과에서의 최저조명도**

순서	방의 종류	최저조 명도	비고
1	환자받은, waiting, 분류실	140	
2	화장실, 탈의 실	140	창문은 1.8m 이상의 위치에 설계한다.
3	응급 임시 저장, 집중치료-방독실	500/250	광수준은 2 level 를 조정가능
4	전문치료실, 실험실, X-ray, 초음파 검사의실	750/300	광수준은 2 level 를 조정가능
5	용구소독실	250	
6	행정실, 과장실, 생활실 (사무실부분)	140	
7	창고 (설비, 용구, 의료물품, 약품, 불건물건)	140	수직의 평면, 높이 1.0m 이상
8	복도, 통로	100	

**주석:** 최저조명도는 1 단위의 면적에서의 최소의 빛의 양이다 (수평의 평면, 마루에서 0.8m high)

5.8.1.18 응급실 및 집중치료-방독실은 조명 및 설비사용 요구를 대응 할 수 있도록 24/24 시간 급전되어야한다.

급전시스템은 다음의 요구를 보증해야한다:

조명시스템은 전기동력시스템과 독립한다.

조명시스템은 제 25 표에 규정한 최저조명도를 보증해야한다.

전기선시스템 및 급전설비들은 안전을 보증하며 각 설비의 기술정보에 적당해야한다.

정전된 때부터 예방전기제공할 때까지 15 초를 넘어서면 안된다.

5.8.1.19 응급과 및 집중치료-방독과는 다음의 환기에 대한 요구를 보증해야한다.

- 보조공간: 자연환기 방법을 우선.

- 청결공간: 자연환기는 보건부의 clean room 수준으로 설계한 에어컨과 결합한다.

5.8.1.20 각 실의 온도, 습도 및 공기순환의 수준은 제 26 표에 정한다.

**제 26 표. 응급과 및 집중치료-방독과에서의 온도, 습도와 공기순환의 수준**

방이름	온도 (°C)	습도 (%)	공기순환 (번/h)	1m <sup>3</sup> 공기속에 0.5µm > 티끌의 수량
집중치료	21 - 24	≤70	10 - 15	≤3 x 10 <sup>6</sup>
전문치료실	20 - 24	≤70	10 - 15	≤3 x 10 <sup>6</sup>
X-ray, 초음파 검사	21 - 26	≤70	3 - 5	

5.8.1.21 응급과 및 집중치료-방독과에서 전문활동을 보증하기 위해 하루 연속적으로 무균 생수를 제공하게 된다.

응급임시저장실, 전문치료실, 준비실들에 1 방에서 최소 1 개의 세면기를 마련해야한다.

5.8.1.22 응급과 및 집중치료과의 배수시스템은 폐쇄시스템이며 환경을 오염하지 않게 해야한다. 폐수는 병원의 공중 배수시스템에 흐른다.

5.8.1.23 폐기물은 보건부 장관의 1999년 08월 27일 제 2575/1999/QD-BYT 의 결정문과 같이 발행된 의료폐기물관리규제에 따라 수집, 분류되며 병원의 공중 쓰레기 처리부분에 옮긴다.

5.8.1.24 응급과 및 집중치료-방독과는 “TCVN 2622:1995 주택 및 공공공사 소방. 설계 요구”에 따라 설계된다.

방들의 문에서 제일 가까운 탈출구까지의 최고 간격은 제 27 표에 정한다.

**제 27 표. 방들의 문에서 제일 가까운 탈출구까지의 최고 간격**

내화 등급	허용된 최고의 간격 (m)	
	2 탈출구 사이의 방들에서	복도에 향한 방들에서
I	30	25
II	30	25

**주석:** 넓은 공간, 긴 복도는 요구에 따라 방화문을 설계되어야한다.

5.8.1.25 응급과 및 집중치료-방독과에서 각 부분들, 병원의 다른과들, 병원외에 다른기관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 PBX 등 연락시스템이 있어야한다.

**주석:** 집중치료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해야한다.

5.8.1.26 의료용 가스는 중심시스템에서 제공하게 된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전문치료실에서의 의료 가스 공급 장치의 수량은 제 28, 29 표에 정한다.

**제 28 표. 의료 가스 공급 장치의 수량**

순서	가스의 종류	가스 공급 장치수량/병상		주석
		응급과	집중치료-방독과	
1	산소 (O <sub>2</sub> )	01	02	예방 장치 1 개
2	압축 공기 (AIR)	01	02	예방 장치 1 개
3	(VAC)	01	02	예방 장치 1 개

**제 29 표. 의료 가스 배출구의 수량**

순서	방이름	가스 배출구의 수량/병상,수술대			주석
		중심 산소기	중심 압축공기 (AIR)	중심 VAC	
1	수술실	02	02	02	예방 배출구 1 개
2	마취시키며 회복실	01	01	01	
3	응급구역	응급 병상 수량에 따라			
4	집중치료구역	01	01	01	
5	병실	01	-	01	

5.8.1.27 응급과 및 집중치료-방독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나 골조구조를 사용하여 안전과 견고성을 보증해야한다.

5.8.1.28 마루는 평평함, 미끄럽지 않음, 화학저항성, 방수성, 항균성, 정전기 감소를 보증해야한다.

마루과 벽의 인접부분이 방진이며 쉽게 청소할 수 있다.

5.8.1.29 응급과 및 집중치료-방독과의 안의 벽은 평평하며 향균성이 있다. 고품질의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응급 입시 저장 구역, 저극치료-방독 구역, 전문치료실의 안의 벽은 방수, 화학저항성, 향균성이 있으며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한다.

복도 및 휠체어, 바퀴 있는 병상이 옮길 수 있는 방의 안의 벽은 마루에서 0.7 - 0.9m 높은 위치에 복도 handrail 을 조립해야한다.

5.8.1.30 응급과 및 집중치료-방독과에서 방과 복도의 안의 천장은 평평하며 방진, 향균성, 방수 및 열절연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한다.

천장은 옅은 색의 페인트로 칠게 된다.

방과 복도에 조명설비, 소방설비, 에어컨과 드른 기술설비를 설치된 기술천장이 있어야한다.

5.8.1.31 문은 프레임이 있으며 문짝이 합성 재재물이나 금속으로 만들어되고 유리나 젓빛 유리를 조립한다.

Lobby, 분류실의 문은 자동문이다.

휠체어, 바퀴 있는 병상이 옮길 수 있는 주요 문들은 양방향으로 열릴 수 있는 문이다.

5.8.1.32 창문은 프레임이 있으며 문짝이 합성 재재물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유리나 젓빛 유리를 조립한다. 곤충방지망을 붙여야한다.

5.8.1.33 기술 설비, 파이프 시스템, 의료 가스 공급 장치, 투과사진의 관찰기, 용구 보관장 등을 설치할 때 관련된 현행 규정에 따라하며 기술과 심미를 보증해야한다.

## 5.8.2 수술-마취회복과 (H 부록을 참고)

5.8.2.1 수술-마취회복과는 업무기술부분에 속하며 전문치료실, 수술실들을 포함한다.

수술-마취회복과는 높은 기술, 편도 청결-불결 시스템을 요구한다.

5.8.2.2 수술-마취회복과는 다음의 기능 구역이 있다:

- 수술 전 기술 실현 (진료, 진단협의, 마취시킴)
- 수술
- 수술 후 기술 실현 (의식 회복)및 환자를 계속 치료하기 위해 다른 과에 옮긴다.
- 환자에게 수술 안전을 보증한다.

- 과학연구, 외과수술전문에 대해 훈련.
- 무균환경을 보증.

5.8.2.3 수술-마취회복과는 병상수량에 따라 (55 - 65 개의 병상/수술실) 설립되며 수술실 수량이 제 30 표에 정한다.

제 30 표. 병원에서 수술실의 수량

순서	수술실 이름	수술단위			
		지구병원 병상수 500 - 200 개 Ⅲ급	규모 1 병상수 250 - 350 개 Ⅲ급	규모 2 병상수 400 - 500 개 Ⅱ급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Ⅰ급
		1	종합 수술	01	01
2	유근 수술	01	01	01	02
3	외상 수술	01	01	01	01
4	긴급 수술	-	01	01	01
5	출산 수술	01	01	01	01
6	다른 전문 수술	-	-	01	02
<b>합계</b>		<b>04</b>	<b>05</b>	<b>06</b>	<b>09</b>

5.8.2.4 수술-마취회복과는 최고의 환경,무균 요구 및 인프라가 있는 병원의 중심 구역에서 위치한다.

- 집중치료과에 근처하며 외과치료과, 검사과, 영상진단과에 편하게 연락할 수 있다.
- 교통이 없고 출입 통제할 수 있도록 막다른 길끝에 위치한다.
- 설비들을 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기술, 급전, 급수, 에어컨, 의료 가스 공급 자치 시스템 근처에 위치한다.

5.8.2.5 응급과의 활동은 편도 청결-불결에 대한 요구를 보증해야하며 3 구역에 따라 청결급을 나뉜다:

무균구역:

- + 수술실들
- + 무균복도
- + 소모품 제공 창고

청결구역: 일반의 무균 수준, 무균구역과 보조구역의 중간구역

- + 마취전
- + 청결복도
- + 소독실 (용구를 소독)
- + 보조기술 (전용설비)
- + 쉬는 실
- + 수술 서류실

보조구역:

- + 환자를 받다
- + 의식을 회복
- + 행정, 맞교대, 훈련
- + 직원의 탈의 실, 화장실
- + 과장실
- + 의사실
- + 간호사, 간호보조사실
- + Lobby
- + 환자가족의 waiting 실.

5.8.2.6 수술과에서 공간설계해법은 다음의 요구를 보증해야한다:

- 무균구역, 청결구역 및 보조구역은 clean room, 무균에 대한 요구를 보증해야한다.
- 필요한 설비를 설치 및 운행하기에 적당해야한다.

5.8.2.7 각 공간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 무균공간, 청결공간 (무루에서 천장까지): 3.1m 이상
- 보조공간의 높이: 3.0m 이상
- 기술층 (천장에서 슬래브-보 구조 하한까지): 0.2m 이상

5.8.2.8 복도, 통로의 너비는 병상 (들것)을 옮길 수 있는 것을 보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 외길복도:
  - + 너비: 1.8m 이상
  - + 병상을 옮길 수 있는 복도: 2.4m 이상
- 속복도:
  - + 너비: 2.4m 이상
  - + 병상을 옮길 수 있는 복도: 3.0m 이상
  - 문높이:
    - + 문짝 1 개: 0.9m 이상
    - + 문짝 2 개: 1.2m 이상
    - + 수술실의 정문: 1.6m 이상

5.8.2.9 수술-마취회복과에서의 수술실은 전문과으로 나뉘고 면적, 수량이 제 31 표에 정한다.

제 31 표. 수술-마취회복과에서의 수술실의 면적

순	방이름	면적 (m <sup>2</sup> )	비고
---	-----	----------------------	----

서		지구병원 병상수 500 - 200 개	규모 1 병상수 250 - 350 개	규모 2 병상수 400 - 500 개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Ⅲ급	Ⅲ급	Ⅱ급	Ⅰ급	
1	종합수술	36 x 1 실	36 x 1 실	36 x 1 실	36 x 2 실	
2	유근수술	-	36 x 1 실	36 x 1 실	36 x 2 실	
3	외상수술	-	36 x 1 실	36 x 1 실	36 x 1 실	
4	긴급수술	36 x 1 실	36 x 1 실	36 x 1 실	36 x 1 실	
5	출산수술	36 x 1 실	36 x 1 실	36 x 1 실	36 x 1 실	
6	전문과수술	-	36 x 1 실	36 x 1 실	36 x 2 실	
7	무균 손 씻다	15	18	36	42	복도과 결합
8	소모품제공창고	15	18	36	42	
9	무균 복도			36	42	소모품제공창고과 결합

5.8.2.10 청결구역의 기능실들의 최소 면적은 제 32 표에 정한다.

제 32 표. 청결구역의 기능실들의 최소 면적

순서	방이름	면적 (m <sup>2</sup> )				비고
		지구병원 병상수 500 - 200 개	규모 1 병상수 250 - 350 개	규모 2 병상수 400 - 500 개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Ⅲ급	Ⅲ급	Ⅱ급	Ⅰ급	
1	마 취 전 (수술실수량 의 50%)	16	18 - 27	27	45	최소 9m <sup>2</sup> /병상, 청결복도과 결합할 수 있다
2	청결복도	18	24 - 36	36	48	
3	쉬는 실	16	18 - 24	24	24	화장실이 있다
4	수술서류실	9	9	9	12	청결복도과 결합할 수 있다
5	소독실	12	12 - 24	24	36	
6	폐물창고	12	12 - 18	18	24	
7	설비창고	18	18 - 24	24	36	
합계		102	111 - 162	162	235	

5.8.2.11 보조구역에서의 기능실들의 최소면적은 제 33 표에 정한다.

제 33 표. 보조구역에서의 기능실들의 최소면적

순서	방이름	면적 (m <sup>2</sup> )				비고
		지구병원 병상수 500 - 200 개	규모 1 병상수 250 - 350 개	규모 2 병상수 400 - 500 개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Ⅲ급	Ⅲ급	Ⅱ급	I급	
1	환자를 받은 실	24	24 - 36	36	48	
2	의식 회복실 (수술실 수량의 50%)	12	24 - 36	36	60	최소 12m <sup>2</sup> /병상
3	행정, 숙직실	12	12 - 18	18	24	
4	진 단 회 의 , 훈련실	12	12 - 18	36	48	
5	탈의 실, 화장실	18 x 2 실	24 x 2 실	24 x 2 실	36 x 2 실	
6	과장실	12	12	12	12 x 2 실	
7	의사실	18	18 x 2 실	18 x 2 실	18 x 3 실	
8	간호사실	18	18 x 2 실	18 x 2 실	18 x 3 실	
<b>합계</b>		132	174 - 264	264	372	

5.8.2.12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수술-마취회복과에서는 각 구역의 요구에 따라 조명을 보증해야한다. 무균구역에서 인공조명을 우선한다.  
최저조명도는 제 34 표에 정한다.

**제 34 표. 수술-마취회복과에서의 최저조명도**

방이름	최저조명도 (lux)	비고
환자를 받은 lobby	140	
화장실, 탈의 실	140	창문을 1.8m 높은 위치에 조립
소독실, 무균기술제공실, 무균복도	300	
수술실	700/300	광수준은 2 level 를 조정가능
마취전, 의식 회복실	500/250	
쉬는 실	140	
행정실, 과장실, 맞교대, 훈련실 (사무실부분)	140	
창고 (용구, 설비, 의료용품, 약, 불건품)	140	1.0m 의 높이있는 수직 평면
복도, 통로	100	

**주석:** 최저조명도는 1 단위의 면적에서의 최소의 빛의 양이다 (수평의 평면, 마루에서 0.8m high)

5.8.2.13 수술실과 무균복도들의 온도, 습도 수준은 제 35 표에 정한다.

**제 35 표.온도, 습도 수준**

방이름	온도 (°C)	습도 (%)	공기순화번/h	1m <sup>3</sup> 공기속에 0.5µm > 티끌의 수량
-----	---------	--------	---------	--

수술실, 의식회복실, 무균복도	21 - 24	60 - 70	15 - 20	< 3 x 10 <sup>6</sup>
마취전, 청결복도	21 - 26	< 70	5 - 15	

5.8.2.14 수술-마취회복과에서 하루 24/24 시간 동안 충분히 급전하게 되며 예방전원이 있어야한다.

수술-마취회복과의 급전시스템은 다음의 요구를 보증해야한다:

조명시스템은 전기동력시스템과 독립한다.

조명시스템은 제 25 표에 규정한 최저조명도를 보증해야한다.

전기설비는 II 급 독립 접지계통이 있어야한다.

전기선시스템 및 급전설비들은 안전을 보증하며 각 설비의 기술정보에 적당해야 하며 수술실에서 three-pin socket 들이 습기를 피하기 위해 마루에서 0.6m 높여야 한다.

5.8.2.15 수술-마취회복과에서 전문활동을 보증하기 위해 하루 24/24 시간 연속적으로 무균 생수를 제공하게 되어야한다. 환경을 위해 화학폐수와 생활폐수는 병원의 폐수처리 및 배수계통에 합류하기 전에 처리하게 되어야한다.

5.8.2.16 응급과 및 집중치료-방독과에서 각 부분들, 병원의 다른과들, 병원외에 다른기관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 PBX 등 연락시스템이 있어야한다.

*주석: 수술실안에 요구에 따라 과학연구, 인턴 훈련을 위해 외부부분, 행정실, 훈련실에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계통 (영상, 자료 전송)을 설치한다.*

5.8.2.17 수술실에서 소독부분에 연결시스템이 있으며 잘라 된 부분이 현행 폐물관리규제에 따라 분류하며 처리되어야한다.

5.8.2.18 의료 가스를 중심시스템에서 부터 제공하게 된다.

5.8.2.19 수술-마취회복과에서의 마루는 평평함, 미끄럽지 않음, 화학 저항성, 방수, antistick 및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해야한다.

5.8.2.20 수술-마취회복과에서의 벽은 평평해야하며 방수, 화학 저항성, 방진과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해야한다.

5.8.2.21 복도안의 벽은 마루에서 0.7 - 0.9m 높은 위치에 복도 handrail 을 조립해야 한다.

5.8.2.22 수술-마취회복과안의 천장은 하얗게 칠하게 되며 평평함, 방진, 방수, 항균, 열절연, 방음이 있다.

5.8.2.23 창문은 프레임이 있으며 문짝이 합성 재재물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지고 유리나 젓빛 유리를 조립한다.

5.8.2.24 문의 너비는 휠체어, 병상을 옮길 수 있는 것을 보증하며 양방향으로 열릴 수 있는 문이나 자동문이어야하며 잠금장치를 장비되어야한다.

5.8.2.25 Passbox 을 마루에서 최소 0.9m high 위치에 설치하며 각 구역들 사이의 막고 찬 공기 및 차압식 레벨을 떼어 놓는 것을 보증해야한다.

*주석: Passbox 은 전용 물건 전송 box 이다.*

5.8.2.26 기술설비 (control cabinet, 투과 사진의 관찰기, pass box, 옹구...)를 설치시 기술뿐만 아니라 심미성을 보증해야하며 더러운 공기나 먼지를 들어가는 것을 피한다.

### 5.8.3 영상진단과 (K 부록을 참고)

5.8.3.1 영상진단과는 다음의 실을 포함한다:

- a) 분류실, 어두운 실.
- b) X-ray 실 (일반 X-ray, 간섭 X-ray, GI X-ray).
- c) 초음파 검사 - 진단실.
- d) 현관 촬영실, 골밀도 실험실, 유방암검진실.
- e) CT - Scanner 실
- f) MRI 실.

5.8.3.2 영상진단과는 다음의 기능공간이 있다:

- 임상과, 진료과의 요구에 따라 X-ray 기계, CT - Scanner, MRI 기계로 환자 몸의 영상으로 진단기술을 한다.
- 진단결과 (영상, video)들을 수집하며 요구에 따라 임상과, 진료과에 보낸다.
- 환자, 직원에게 안전과 전리 방사선을 control.
- 과학연구.
- 하급 병원의 직원을 영상진단전문에 대해 훈련.

5.8.3.3 영상진단과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 조직하며 촬영실의 수량이 제 36 표에 정한다.

제 36 표. 영상진단과 촬영실의 수량

기계의 종류	촬영실 수량
--------	--------

	지구병원 50-200 개의 병상 Ⅲ급	규모 1 병상수 250 - 350 개 Ⅲ급	규모 2 병상수 400 - 500 개 Ⅱ급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Ⅰ급
	1.X-ray	02	03 - 05	05
72. 초음파 검사	02	03 - 05	05	07 - 09
73. CT-Scanner	-	01	01	01
74. MRI	-	-	01	01
<b>합계</b>	<b>04</b>	<b>07 - 11</b>	<b>12</b>	<b>16 - 20</b>

5.8.3.4 영상진단과는 TCVN 6561 - 1999 규정에 따라 방사선의 영향을 control 해야 한다.

5.8.3.5 영상진단과는 기능으로 나뉘며 다음의 구역이 있다:

a) 업무기술구역:

- 준비실 (탈의실, 환자준비실)
- 시술실 (관장, 마취시킴)
- 진단기계실
- control 실
- 영상처리 및 투과 사진의 관찰실.
- X-ray film 처리 및 분류실

b) 행정, 보조, 훈련 구역:

- Lobby 는 waiting 실과 결합.
- 진료번호 등록 및 결과받은 실.
- 행정실, 맞교대/훈련 실.
- 과장실.
- 직원의 숙직실.
- 환자가 쉬는 실.
- 용구, 설비 창고.
- Film, 화학물 창고.
- 탈의 실, 직원의 화장실.
- 환자의 화장실.

5.8.3.6 영상진단과는 병원의 중심과 준임상과안에 위치한다. 외주 진료-치료과 및 내주치료과에 편하게 연락할 수 있다. 공중 기술 시스템 (급전, 용구, 용품 제공..) 과 연결되어야한다.

5.8.3.7 영상진단과는 별도의 위치에 위치하며 다른 지역에 연결된 통로를 설치하지 않는다.

5.8.3.8 설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환자를 이동, 전리 방사선의 안전을 control 하기 위해 영상진단과는 1 층에 위치해야하며 초음파 검사로 진단구역외에 다른 구역들의 마루를 높여야한다.

5.8.3.9 영상진단과에서의 공간설계가 다음의 요구를 보증해야한다:

- 기계를 위한 면적, 환자 및 직원을 위한 면적을 충분히 설계하며 영상진단과의 기능순서도에 적합해야한다.
- 환자의 구역은 직원의 구역과 별도: 일방 활동체계, 전리 방사선의 안전을 control.

5.8.3.10 영상진단과에서의 실의 사이즈는 다음과 같다:

a) 기능실:

- 방안의 높이 (마루에서 천장까지, 설비의 요구에 따라) 3.1m 이상
- 보조구역의 높이 (마루에서 천장까지) 2.8m 이상
- 기술층의 높이, 청장에서 보구조의 하한까지 (튜브 시스템, 기술설비를 위해) 0.2m 이상

b) 계단, 가파른 길 (있는 경우):

- 계단의 너비: 1.8m 이상
- 계단참의 너비: 2.0m 이상

c) 엘리베이터:

- 직원의 엘리베이터: 1.1m x 1.4m 이상
- 환자의 엘리베이터: 1.1m x 2.3m 이상

d) 복도:

- 외길복도의 너비: 1.8m 이상
- 외길복도겸 waiting 구역의 너비: 2.4m 이상
- 속복도의 너비: 2.4m 이상
- 속복도겸 waiting 구역의 너비: 3.0m 이상
- 복도의 높이: 2.8m 이상

e) 문:

- 1 개의 문짝의 문의 너비: 0.9m 이상
- 2 개의 문짝의 문의 너비: 1.2m 이상
- 전문실 정문의 너비: 1.4m 이상
- 높이: 2.1m 이상

5.8.3.11 X-ray 기계로 영상진단 단위는 다음의 규정으로 설계한다:

- 준비실:

- + 간섭 X-ray 를 위한 준비실 (관장, 씻기), (대변기 1 개, 세면기 1 개).
- + 요구에 따른 환자를 위한 쉬는 실 (1 -2 개의 병상)

X-ray 실:

- +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충분한 면적이 있다.
- + 문의 너비가 환자를 휠체어나 바퀴 병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Control 실:

- + X-ray 실과 Film processing 실 옆에 위치한다.
- + 별도의 입구, 문짝은 방사선 저항 자재물로 만들며 lead glass window, film 을 내는 문이 있어야한다.
- + Control 실들은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공중복도로 연결할 수 있다.

5.8.3.12 초음파 검사 기계로 영상진단 단위는 다음의 규정으로 설계한다:

- 간섭이 있는 초음파 검사는 최소 1 단위가 있어야한다.
- 한 단위는 1 개의 병상과 1 개의 초음파 검사 기계를 위한 충분한 면적이 있다.
- 환자를 위한 별도의 통로가 있다 (walking, wheelchair or 바퀴병상), 각 단위들을 칸막이, curtain 으로 분리하게 된다.

5.8.3.13 CT-Scanner 로 영상진단 단위:

- 준비실: 환자가 옷 갈아입거나 필요한 경우 준비.
- 기계실.
- 컴퓨터, 프린터가 있는 control 실

각 실들에서 1 개의 CT-Scanner 가 있다 (관찰문과 입구의 문은 방사선 저항 자재물로 만듦)

5.8.3.14 MRI 기계로 영상진단 단위:

- 준비실: 환자가 옷 갈아입거나 필요한 경우 준비.
- MRI 기계의 실 (각 실에서 1 개의 MRI 기계 및 보조설비가 있다)
- Control 실은 MRI 기계의 실 옆에 위치한다. (관찰문과 입구의 문은 전자파를 혼란시킴 저항 및 안전을 보증)

5.8.3.15 병원규모에 따라 영상진단과의 기술구역들의 최소면적은 제 37 표에 정한다.

제 37 표. 영상진단과의 기술구역들의 최소면적

기계의 종류	규모				비고
	병상 수량				
	지구병원 병상수 500 - 200 개 III 급	규모 1 병상수 250 - 350 개 III 급	규모 2 병상수 400 - 500 개 II 급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I 급	
X-ray	02 단위 96	03 단위 96 - 157	05 단위 157	09 단위 279	
기계설치구역					
전문실	2 단위 x	3 단위 x	5 단위 x	9 단위 x	최소 20m <sup>2</sup> /실

	20m <sup>2</sup> /단위	20m <sup>2</sup> /단위	20m <sup>2</sup> /단위	20m <sup>2</sup> /단위	
Control 실	2 단위 x 6m <sup>2</sup> /단위	3 단위 x 6m <sup>2</sup> /단위	3 단위 x 6m <sup>2</sup> /단위	3 단위 x 6m <sup>2</sup> /단위	
준비구역					
관장실	9	9	9	9	
환자가 쉬는 실	1 개 의 병상 x 9m <sup>2</sup>	2 개 의 병상 x 9m <sup>2</sup>	2 개 의 병상 x 9m <sup>2</sup>	4 개 의 병상 x 9m <sup>2</sup>	
초음파 검사기	2 단위 24	03-05 단위 34	05 단위 54	09 단위 90	
초음파 실험실	2 단위 x9m <sup>2</sup>	3-5 단위 x9m <sup>2</sup>	5 단위 x9m <sup>2</sup>	9 단위 x9m <sup>2</sup>	최소 9m <sup>2</sup> /실
간섭 초음파 검사 준비실	9	9	9	9	
<b>CT-Scanner</b>			01 단위 60	01 단위 60	
기계설치구역:					
전문실	-	-	30	30	최소 30m <sup>2</sup> /실
Control 실	-	-	12	12	최소 12m <sup>2</sup> /실
준비구역					
준비실	-	-	18m <sup>2</sup> /단위	18m <sup>2</sup> /단위	
<b>MRI 기계</b>	-	-	60	60	
기계설치구역:					
전문실	-	-	30	30	최소 30m <sup>2</sup> /실
Control 실	-	-	12	12	
준비구역					
준비실	-	-	18m <sup>2</sup> /단위	18m <sup>2</sup> /단위	
투과 사진을 관찰 및 영상처리	24	24	36	48	
<b>Film 처리 및 분류실</b>	18	18	18	24	

5.8.3.16 행정, 보조구역은 다음의 요구를 보증해야한다:

a) Lobby:

- 좌석을 마련하며 통신장치를 설치해야한다 (Monitor, speaker, board)
- 탈의 실 겸 화장실(남녀 따로)
- waiting 좌석 수량은 하루에 진료번의 8 - 12%로 한다.

*어른의 좌석의 면적은 최소 1.2m<sup>2</sup>/좌석*

*어린이의 좌석의 면적은 최소 1.8m<sup>2</sup>/좌석*

b) 진료번호 등록 및 결과받은 구역: 행정실, film classifying 실과 편하게 연락할 수 있음.

5.8.3.17 영상진단과의 행정구역, 보조구역의 최소 면적은 제 38 표에 정한다.

5.8.3.18 영상진단과는 TCVN 5674 - 1992 수준에 따라 공사구조, 외장과 내장, 토목공사 등 모두 고품질로 설계하고 완료한다.

5.8.3.19 영상진단과에서의 벽은 미장공사, 지속 가능한 재료로 덮이는 것이나 silicat 페인트를 치는 것으로 완료되어야한다. 벽의 표면은 평평하며 미끄럽고 방수하는 것을 보증해야한다.

- 전문실안의 벽은 방사선 저항 재료를 사용해야한다 (납박판, barite mortar, 납고무).
- 복도 및 들 것, 휠체어, 바퀴병상을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의 벽은 바닥에서 0.7 - 0.9m 높은 위치에 handrail 을 조립해야한다.
- 영상진단과 외벽의 색깔이 병원의 벽색깔을 맞춰야한다.

**제 38 표. 영상진단과의 행정, 보조구역의 최소 면적**

진료규모 영상진단단위	병상수				비고
	지구병원 병상수 500 - 200 개	규모 1 병상수 250 - 350 개	규모 2 병상수 400 - 500 개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III 급	III 급	II 급	I 급	
진료번호등록 및 결과받은 실	14	18 - 36	36	54	
환자의 화장실 (남, 여)	2 실 x 12m <sup>2</sup>	2 실 x 24m <sup>2</sup>	2 실 x 24m <sup>2</sup>	2 실 x 36m <sup>2</sup>	
Waiting 실	18	36 - 60	60	108	최소 1.2m <sup>2</sup> /좌석/단위
과장실	16	18	18	18	위와 같다
행정, 맞교대실	18	24 - 36	36	48	0.8 - 1.0m <sup>2</sup> /좌석
직원의 숙직실	12	12 - 18	18	18	위와 같다
용구창고	12	12 - 18	18	18	위와 같다
Film, 화학물창고	12	12 - 18	18	24	위와 같다
직원의 화장실 겸 탈의 실 (남, 여)	12	12 - 18	18	24	위와 같다

5.8.3.20 영상진단과 내벽의 표면은 평평하며 (방진) 방수, 방열해야한다.

- 각 방들과 복도의 천장에 조명장비, 방화장비, 에어컨 및 기술장비들 설치한다. (천장 구조는 장비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해야함)
- 촬영실내 천장 미장공사가 barite 모르타르를 사용해야하며 윗층이 있는 경우 방사선 저항 재료를 덮혀야된다.

5.8.3.21 영상진단과의 실에서 현관의 층층대가 없어지고 마루가 ceramic, granit, vinyl 등 다일로 덮히거나 특성한 페인트로 치게 되어야한다. 마루의 정전기와 청소 편리함을 보증해야한다.

영상진단과는 윗층에 위치하는 경우 아랫층이 방사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5.8.3.22 출입구: 영상진단과의 출입구의 종류 2 가지가 있다:

- 일반 출입구
- 방사선 저항 출입구.

방사선 저항 출입구는 다음의 요구를 보증해야한다:

문짝이 방사선 저항 자재로 덮힌다 (납박판, 납고무...)

실외에 잘 보일 수 있는 방사선징후가 있어야한다.

문짝이 쉽게 열리고 기계운행과정에 방사선을 밖에 나올 수 없도록 설계해야한다.

5.8.3.23 창문은 다음의 요구를 보증해야한다:

- 창과 문짝이 나무나 금속 (알루미늄, 철강)으로 만들게 된다. 유리는 일반유리나 젓빛유리를 사용한다. 걸쇠, 잠금장치가 있어야한다.
- X-ray 기계, CT 스캐너, MRI 기계가 있는 방에서 방사선 저항을 위해 창문을 설계하지 않는다.

5.8.3.24 기계가 있는 방에서 기술적 요구 및 안전을 보증해야한다. (방사선은 밖에 나올 수 없음, 어두운 방에서 (film processing room) 햇빛이 들어갈 수 없음)

5.8.3.25 어두운 방에서 설치된 pass box 은 기능부분과 연결된다. 관찰유리는 다음의 요구를 보증해야 한다:

- 방사선 저항 가능 납유리.
- X-ray 실, CT-Scanner 실 벽에서 붙은 관찰유리는 기계의 규모에 따라 마루에서 0,9 ~ 1,2m 를 떨어진다. 최소의 사이즈 (폭이 x 높이): X-ray 실: (600mm x 400mm), CT-Scanner 실 (1200m x 800mm).

5.8.3.26 영상진단과에서의 모든 방들은 조명과 통풍조건을 사용기능과 적합하게 설계되어야한다.

5.8.3.27 인공조명과 인공통풍은 자연조명과 자연통풍과 결합한 지역:

- Lobby, 환자받은 공간, 번호등록 지역, 결과 주/받은 지역.
- 보조지역 및 복도.

5.8.3.28 인공조명과 인공통풍은 무조건 사용해야하는 지역:

- 준비실, 탈의 실, 소수술 실.
- 초음파 검사 실, X-ray 찍는 실, CT-Scanner, MRI 기계의 실.
- Control 실, 어두운 방.

5.8.3.29 영상진단과에서의 최저 조명도는 제 39 표에서 정한다.

### 제 39 표.영상진단과에서의 최저 조명도

방의 종류	최저 조명도 (lux)	비고
Lobby	140	
등록지역 (번호등록 및 결과 주/받음)	200	
준비 실, 탈의 실, 관장 실 직원의 탈의 실	140	창문은 바닥마루에서 2,0m 를 떨어짐.
X-ray, 초음파, CT-Scanner, MRI 의 실	140/140	고정한 조명도 2 level 조정가능
Control 실, 영상처리실	300	Glaring 을 제한
Film processing room	75	
행정실, 과장실, 생활실, 투과사진관찰실	140	
복도, 통로	100	

주석: 최저조명도는 1 단위의 면적에서의 최소의 빛의 양이다 (수평의 평면, 마루에서 0.8m high)

5.8.3.30 영상진단과에서의 온도, 습도, 통풍은 다음의 요구를 보증해야한다:

- 각 방들의 온도는 21-26<sup>0</sup>C(설비, 화학물들을 보관요구에 따라)
- 습도는 70% 이하.
- 공기 순환 6 번/1 시간.

5.8.3.31 영상진단과에서의 소방은 “TCVN 2622:1995 주택 및 공공공사 소방. 설계 요구”에 따라 설계된다.

5.8.3.32 건물의 각 부분들은 (벽, 천장, 출입구, 창문 등) 방사선 및 이온화 저항을 보증해야 한다.

5.8.3.33 영상진단과에서 조명과 설비들을 운행할 수 있도록 주요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예방 전원 공급 장치) 는 전기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조명 시스템은 전기 동력 시스템과 무관되어야 한다.
- 배선 시스템과 전원 공급 장치들은 안전을 보증해야 하며 기술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 모든 전기 시스템은 접지되어야 한다.

5.8.3.34 영상 진단과에서 intercom, telecom, intra NET 등 연락 시스템으로 병원의 다른 부분 및 외부의 기관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5.8.3.35 영상 진단과에서 전문활동, 일반 생활을 위해 하루에 연속적으로 급수되어야 한다.

- 급수 수준은 (수량, 수질...) 병원의 규준에 따라 해야 한다.
- 화학 배수는 병원의 배수 시스템에 합류하기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
- 생활 배수는 병원의 배수 시스템에 합류하게 된다.

5.8.3.36 영상 진단과에서의 생활, 의료폐기물은 분류 후 병원의 폐기물 처리 부분에 보내되며 1999년 8월 27일 보건부의 제 2575/1999/QD-BY 호 결정서와 같이 발행된 의료폐기물 관리 규제에 따라 해야 한다.

#### 5.8.4. 실험과들 (L 부록을 참고)

5.8.4.1 실험과들은 업무기술 - 준임상 부분에서 마련된다.

5.8.4.2 신속 실험실들을 내외주 치료 부분에서 마련된다.

**주석: 150 개 병상 이하의 규모의 병원은 치료과에서 실험실을 마련하지 않고 업무기술 - 준임상 부분에서만 모인다.**

5.8.4.3 실험실들을 다음과에서 마련한다:

- 미생물과
- 화생과
- 기생충 실험과
- 혈액학과

5.8.4.4 실험실에서는 기술자 및 staff,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게 안전을 보증해야 하며 병원에서 감염 관리요구에 대한 제일 높은 수준으로 해야한다.

기구관리는 의료기구관리규제에 따라하며 의료 폐기물 관리는 1999년 8월 27일에 발행된 보건부의 제 2575/1999/QD-BYT 호의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5.8.4.5 실험과가 업무기술부분에서 위치하며 제일 좋은 환경을 가지고 내외주 환자에게 편한다.

공동 전기 시스템, 수계, 에어컨 시스템 등과 편하게 연결된다.

5.8.4.6 실험실에서 청결한 것은 다러운 것과 따로 구분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청결급도가 구분된다.

5.8.4.7 업무기술부분에서의 환경에 대한 요구가 일반수준으로 하면 된다. 이 부분이 실험과들의 주요 활동공간이며 다음의 무균지역과 보조지역 사이의 중간공간이다.

- 실험실들 (미생 실험실, 화생 실험실, 혈액학 실험실, 병리 해부 실험실)
- 기계실.
- 샘플, 화학물질을 준비실.
- 각 과의 전문에 따른 기능실 (혈창고, 시체해부실...)
- 물품, 용구 창고
- 소독실.

5.8.4.8 보조지역은 직원들이 근무공간이다:

- Lobby, 결과 주/받음.
- 각 과마다의 요구에 따른 보조실 (환자 쉬는 실, 샘플 갖기 위한 소수술실)
- 행정실, 맞교대실, 훈련실 (의사실, 실험 기술자실)
- 과장실.
- 창고 (화학물질, 의료 물품, 용구)
-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5.8.4.9 실험과는 업무기술부분에 속하며 제일 좋은 환경을 있으며 내외주 환자에게 편한다.

5.8.4.10 실험과에서의 공간 설계해법은 다음의 요구를 보증해야 한다:

- 각 실험실들이 독립하게 활동함.
- 통일한 모듈으로 건축설계.
- 소독공간은 보조공간과 따로하며 청결한 것은 다러운 것과 따로 구분되어야 한다.

5.8.4.11 각 과들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a) 미생과 (L 부록 - L3 시진을 참고)

미생과에서의 기능실들의 최소 면적은 제 40 표에서 정한다.

**제 40 표. 미생과에서의 기능실의 최소 면적**

순서	방이름	병상수				비고
		지구 병원 50-200 개의 병상 III 급	규모 1 250-350 개 의 병상 III 급	규모 2 400-500 개 의 병상 II 급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I 급	
		<b>업무기술부분</b>				
1	미생실험	30	40	52	70	
2	무균실	9	9	9	9	Lamina HOT
3	준비실	18	18	24	32	
4	소독실	12	12	18	24	
<b>보조지역</b>						
5	숙직 + 결과 주/받은 실	12	12	18	24	다른 실험과과 결합가능
6	샘플 갖는 실	6	9	12	18	등록실 옆에 위치
7	공동 창고	12	18	24	36	위와 같다
8	행정실, 맞교대실, 훈련실	18	24	24	36	다른 실험과과 결합가능
9	과장실, 최소	12	18	18	24	
10	직원의 실,	12	18	24	36	

	숙직실, 최소 화장실, 직원 탈의 실	2 x 9	2 x 12	2 x 18	2 x 34	다른 실험과과 결합가능
--	----------------------------	-------	--------	--------	--------	-----------------

b) 화생과 (L 부록 - L2 사진을 참고)

화생과의 방들의 최소 면적이 제 41 표에서 정한다.

제 41 표. 화생과에서의 기능방들의 최소 면적

순서	방이름	병상수				비고
		지구 병원 50-200 개의 병상 III 급	규모 1 250-350 개 의 병상 III 급	규모 2 400-500 개 의 병상 II 급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I 급	
		업무기술지역				
		업무기술지역				
1	화생실험	40	52	70	80	
2	준비	18	24	32	36	
3	무균	12	18	24	36	
4	보조기술	12	18	24	36	
5	화학물질	12	18	24	36	
		보조지역				
		보조지역				
6	결과반/주	12	18	24	36	다른실험과과 결합 가능
7	샘플갖는실	6	9	12	18	등록실옆에 위치함
8	행정, 맞교대, 훈련실	18	24	32	36	
9	과장실, 최소	12	18	24	36	
10	직원의실	12	18	24	36	
11	공동 창고	12	18	18	24	
12	화장실, 직원 탈의 실	2 x 9	2 x 12	2 x 18	2 x 24	다른실험과과 결합 가능

혈액학과 (L 부록 - L4 사진을 참고)

혈액학과에서의 기능실들의 최소면적은 제 42 표에서 정한다.

제 42 표. 혈액학과에서의 기능실들의 최소면적

순서	방이름	병상수				비고
		지구 병원 50-200 개 의 병상	규모 1 250-350 개 의 병상	규모 2 400-500 개 의 병상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Ⅲ급	Ⅲ급	Ⅱ급	Ⅰ급	
<b>업무기술지역</b>						
1	혈액학 실험	40	52	70	80	
2	혈창고	12	18	24	36	
3	무균실	12	18	24	36	
4	창고	12	18	18	24	
<b>보조지역</b>						
5	결과 주/받음	18	24	24	36	다른실험과과 결합가능
6	행정, 맞교대, 훈련	18	24	32	36	위와 같다
7	과장실	12	18	18	24	
8	직원의 실	18	24	32	36	
9	공동창고	12	18	24	36	
10	화장실, 직원의 탈의 실	2 x 9		2 x 12	2 x 18	다른실험과과 결합가능

5.8.4.12 실험과에서 각 지역마다 요구에 따라 충분히 조명되어야한다.

- 보조지역: 자연조명은 인공조명과 결합.
- 실험실: 인공조명.

5.8.4.13 실험과에서의 실들의 최저조명도를 제 43 표에서 정한다.

제 43 표. 최저조명도에 대한 요구

방이름	최저조명도 (lux)	비고
Lobby	140	
행정실, 과장실, 맞교대, 훈련 (Office)	140	
화장실, 탈의 실	140	창문은 1.8m 이상
무균실, 보조실	300	
창고 (용구, 의료설비, 약품, 불결품)	140	수직의 평면 대상, 높이가 1.0m 이상
실험실, 준비실, 샘플준비실	750/300	조명도 2 급도 조정가능
복도, 통로	100	

**주석:** 최저조명도는 1 단위의 면적에서의 최소의 빛의 양이다 (수평의 평면, 마루에서 0.8m high)

5.8.4.14 실험과에서 지역마다 통풍을 보증해야 한다:

- 행정지역, 보조지역에서 자연 통풍을 설계한다.
- 청결지역 (랩실, 기술실)에서 자연 통풍을 인공 통풍과 결합한다.
- lamina HOT 에서 국부 공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인공 통풍으로 한다.

5.8.4.15 온도, 습도, 공기순환에 대한 수준을 제 44 표에서 정한다.

**제 44 표. 공기수준**

방이름	습도 (%)	온도 (%)	공기순환/시간	비고
LAMINA HOT		19 - 22	20	10.000 - 100.000* 급도의 clean room 을 보증
청결지역		21 - 26	1 - 2	탈의 실에 적용 안 함

주석: FED 209B & 209D 수준 (미국의 수준)에 따라:

- (\*) 1000  $\text{ft}^3$ : +  $\text{Ift}^3$ 에서  $0.5\mu\text{m}$  이상의 지름이 있는 먼지량이  $\leq 1000$   
 +  $\text{Ift}^3$ 에서  $5.0\mu\text{m}$  이상의 지름이 있는 먼지량이  $\leq 7$

5.8.4.16 실험과에서 조명과 기계 운행하기 위해 24/24 시간 동안 충분하게 급전되어야 한다.

5.8.4.17 실험과에서의 급전시스템이 다음의 요구를 보증해야 한다:

- 조명을 위한 급전시스템은 기계를 위한 급전시스템과 분리된다.
- 조명설비는 요구에 따른 최저조명도를 보증해야 한다.
- 전선 및 전기설비들은 안전과 기술정보 (능력, 품질)를 보증해야 한다.
- 모든 전기 시스템은 접지되어야 한다.

5.8.4.18 실험과에서 전문적 활동과 일반생활을 위해 하루 24/24 시간안에 정수 및 탈이온수를 연속적으로 급수되어야 한다.

5.8.4.19 실험과에서 배수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유독한 폐수 및 RIA 폐수는 병원 공동 배수시스템에 합류하기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

5.8.4.20 실험과에서 생활, 의료폐기물은 분류 후 병원의 폐기물 처리 부분에 보내 되며 1999년 8월 27일 보건부의 제 2575/1999/QD-BY 호 결정서와 같이 발행된 의료폐기물 관리 규제에 따라 해야 한다.

주석: 실험, 연구하기 위한 신체 부위를 분류하고 따로 파괴되어야 한다.

5.8.4.21 실험과에서 intercom, telecom, intra NET 등 연락 시스템으로 병원의 다른 부분 및 외부의 기관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5.8.4.22 혈액은행은 수술과, 응급회복과 및 혈액실험실과 편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주석:** 혈액은행 필요성을 각 병원의 규모에 따라한다.

5.8.4.23 혈액은행에서의 실들의 면적은 제 45 표에서 정한다.

**제 45 표. 혈액은행에서의 실들의 면적**

방이름	규모에 따른 면적 (m <sup>2</sup> )				비고
	지구 병원 50-200 개의 병상	규모 1 250-350 개의 병상	규모 2 400-500 개의 병상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III 급	III 급	II 급	I 급	
Waiting lobby	9 - 12	12 - 16	16 - 20	16 - 20	혈액학 실험실과 결합가능
헌혈인의 휴게실	9 - 12	12 - 16	16 - 20	16 - 20	
혈액학 실험실	6 - 9	9 - 12	12 - 15	12 - 20	보조실 4 - 6m <sup>2</sup>
혈액 갖은 실	18 - 24	24 - 36	36 - 42	36 - 42	
혈창고					
용구 무균지역	9 - 12	12 - 15	12 - 20	12 - 20	혈액학 실험실과 결합가능
숙직실	6 - 9	9 - 12	12 - 15	12 - 15	병원의 숙직실과 결합가능
화학물질 준비실	6 - 9	6 - 9	6 - 9	6 - 9	약과에서 진행가능

**주석:** 소규모 병원에서 (50 - 150 개의 병상) 혈액은행은 실험과에 속한 혈액실험실에서 위치가능하다.

5.8.4.24 채혈공간은 혈액 저장고와 별도로 위치하며 진동기기들과 떼어놓어야 되고 완전히 무균되어야 한다.

혈액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경우 적당한 설계하기 위해 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5.8.5 실험의학부서:

실험의학부서의 실면적은 병원규모를 바탕으로 하며 제 46 표에서 정한다.

**제 46 표. 실험의학부서의 실면적**

방의 종류	면적 규모 (m <sup>2</sup> )
-------	-------------------------

	지구 병원 50-200 개의 병상	규모 1 250-350 개의 병상	규모 2 400-500 개의 병상	규모 3 병상수 550 개 이상
	Ⅲ급	Ⅲ급	Ⅱ급	Ⅰ급
1. 동물수 술실	12 - 15	15 - 18	18 - 24	18 - 24
75. 동물 관찰실	15 - 18	15 - 18	15 - 18	15 - 18
76. 준비 및 기기실	9 - 12	9 - 12	9 - 12	9 - 12

**주석:** 지방에서 실험동물 키우는 구역이 없는 경우 실험의학부서는 병원에 영향 미칠 수 없는 구역에서 실험동물을 키워야 한다.

### 5.8.6 병리해부학과 (N 부록을 참고)

#### 5.8.6.1 기능:

- 병리해부학과는 생체검사, 세포학, 부검을 하는 부서이다.
- 병리해부학과에서 통풍되어야 하며 조명, 생수 따위 충분하게 제공하게 되고 병원의 폐수 처리 시스템과 연결된 배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 5.8.6.2 조직:

- 병리해부학과는 규모 1, 규모 2 병원들에서 정리한다. 병리해부학과는 전문적 생체검사, 세포학, 부검을 하기 위해서 전공으로 조직하게 된다. 병리해부학과는 지방에서 과학연구 및 전문교육하는 기관이다.
- 규모 1 병원에서 병리해부학과는 실험과에 속한다.

#### 5.8.6.3 공간마련:

- 2 지역을 분리.
- 지역 1: 병원에서의 다른 실험실 근처에서 위치한다. 생체검사, 세포학검사 따위 하는 지역이며 인프라는 실험과처럼 설계한다.
- 지역 2: 장례식장과 결합한다. 이 지역에서 병리해부, 사체안치소, 장례식 등 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떨어져 있으며 바람향 끝에 위치하고 장례식을 위한 별도의 정문이 있어야 된다.

#### 5.8.6.4 병리해부학과에서의 실들의 최소면적은 제 47 표에서 정한다.

제 47 표. 병리해부학과에서의 실들의 최소면적

순서	방이름	규모에 따른 면적 (m <sup>2</sup> )			비고
		지구 병원	규모 1	규모 2	

		50-200 개의 병상 Ⅲ급	250-350 개 의 병상 Ⅲ급	400-500 개의 병상 Ⅱ급	병상수 550 개 이상 Ⅰ급	
<b>병리해부실험실</b>						
<b>업무기술지역</b>						
1	병리해부 Labo	40	46	52	60	
2	암실	9	12	24	36	
3	샘플자르고염색 실	12	18	24	36	
4	화학물질 준비실	18	24	30	36	
5	무균실	12	12	18	24	
6	창고	12	18	18	24	
<b>보조지역</b>						
7	샘플처리실	9	12	18	24	
8	과학	12	18	24	36	
9	직원의 사무실	18	24	30	36	
10	과장의 사무실	12	18	18	18	
11	화장실, 탈의 실	2 x 9	2 x 12	2 x 18	2 x 24	다른 실험실과 결합가능 필요성에 따라 설계
12	장례식장 (있는 경우)	36	48	48	54	
13	서비스실	12	18	24	36	
14	시체 안치소	12	18	18	24	
15	부검실	18	18	18	18	
16	샘플저장실	12	18	24	36	
17	창고	12	18	24	36	
18	소독실	12	18	18	24	
19	행정실	18	24	24		

5.8.6.5 병리해부학과에서 다음의 요구를 보증해야 한다:

- 시체 안치소는 부검실 및 장례식장과 (있는 경우) 연결된 문이 있어야 된다.
- 시체 안치소 및 부검실은 통풍하게 되며 곤충, 쥐를 방지망을 설계해야 한다.
- 창문은 건물외부의 바닥에서 최소 1.6m 로 높여야 하며 시체안치소의 마루가 옆 방들과 복도의 마루보다 최소 20mm 로 낮여야 한다.
- 시체 안치소에서의 폐수는 공동 배수시스템에 합류하기 전에 병원의 국부 폐수 처리시스템에 합류해서 처리해야 된다.

### 5.8.7 기능검사과 (M 부록을 참고)

5.8.7.1 기능검사과에서 의료설비들을 사용하여 인체의 부분들의 기능을 검사한다:  
심전도, 뇌전도, 근전도, 뇌혈류....

- 진료실은 깨끗하며 의료설비들을 의료설비관리 및 사용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임상과 및 진료과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5.8.7.2 기능검사과는 규모 2 (병상수 400 – 500) – II 급 병원 및 규모 3 (병상수 550 이상) – I 급 병원에서 마련한다. 지구병원들에서 기능검사과를 마련하지 않는다.

5.8.7.3 기능검사과는 업무기술지역에서 환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한다.

5.8.7.4 공간이 2 지역으로 분리된다: 대합실 및 기술지역. 대합실은 진료실처럼 마련하고 기술지역이 설비창고 옆에 위치하며 기능검사지역이다. 인프라에 대한 설치는 설비의 정확성을 위해 (접지, 급전...) 엄격하게 해야 한다.

5.8.7.5 여러 기능검사 진료실의 면적이 다음과 같은 제 48 표에 명시되어 있다:

**제 48 표 : 여러기능검사진료실의면적**

방종류	면적, 규모 ( m2)			
	지구병원병상 5 0~200 개	규모 1 : 병 상 : 250~300 개	규모 2 : 병상: 400~450 개	규모 3 : 병상: 500 개이상
	III 급	III 급	II 급	I 급
1. 소화기능검사진료실은 별군팁및준비장소가있다.		30-36	40-48	40-48
2.비뇨기기능검사진료실은별군 팁및준비장소가있다.		30-36	40-48	40-48
3.심장혈관기능검사진료실		18-24	24-36	24-36
4.뇌파도실		18-24	24-36	24-36
5. 근전도 검사 실		18-24	24-36	24-36
6. 뇌혈류 검사실		18-24	24-36	24-36
7. 호흡기능검사진료실, 기본전화및도량형		18-24	24-36	24-36
8.비뇨기신장		18-24	24-36	24-36
9.소변, 혈액측정및검사		18-24	24-36	24-36
10.신경		18-24	24-36	24-36
11.면역알레르기		18-24	24-36	24-36
12.행정과- 수습생		30-36	40-48	

**주석:**

- 1)기능검사진료실에 심장삽입 수술해 필요할 장소가 있으면 가능한 계획서에 표시해야 된다.
- 2)다른 기능 프로브 진료실이 더 추가할 경우에 보건부는 승인해야 되고 가능한 계획서에 표시해야 된다.
- 3)기능 프로브과 라인약도는 M1-M2-M 부록 그림에서 표시하게 된다.
- 4)병원 규모는 침대 50~200 개이며(규정이 없고) 더필요하면 보건부, 지방보건 사무소가 승인해야 된다.

### 5.8.8.소혈과

#### 5.8.8.1.총규정:

- 소혈과는 응급 환자에게 항상 충분한 혈액형이 있다.
- 수혈이 절대 안전하게 보장해야 된다.
- 수혈이 지정으로 맞아야하고 환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로 수혈이 제한한다.
- 인도적인 혈액기부에 자동으로 많이 사름을 동원해야한다.

#### 5.8.8.2.조직 :소혈과는 3 규모 병원에 있다( 병원침대 550 개) 병원 I 급

#### 5.8.8.3.공간배치: 3 구역으로 나눈다

- 혈액샘플링, 시험 및 분류구역
- 혈액보관구역 및 혈액주는 구역
- 행정구역, 헌혈프로그램

#### 5.8.8.4.소혈과의약도 ( M3 그림, M 부록에 참고)

### 5.8.9.혈액투석여과

#### 5.8.9.1.총규정

- 혈액 투석여과는 여러가지 기술이 포함한다: 복막투석, 혈액삼투, 혈액 투석, 수혈교환, 혈액 플라스마 교환, 급성신부전, 만성신장질환, 급성 간부전, 중독 환자에게 혈액투석여과를 시행할때 지정으로 맞아야 되고 병원의 기술으로 맞아야 된다.
  - 액 투석여과 업무에 대해 공구,수 단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설비 사용하는 것은 관리규제 및 보건설비, 자재를 사용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 절대적으로 무균 보증해야 되고 투석환자 및 혈액투석여과 직원사이의 교차 감염 하지 않다.

#### 5.8.9.2. 조직:소혈과는 3 규모병원에 개최된다( 병원의병상 550 개이상) 병원 I 급

#### 5.8.9.3. 공간배치: 혈액투석여과과는 기술전문 단위로 구성되어있다. 진단혈액투석 여과를 쉽게 촉진하고 과의 공능라인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 구역으로 분배한다:

- 기술구역: 혈액투석 여과설비를 넣어두는 방, 병에 진단방, 준비방
- 보조구역 포함 :환자리셉션 장소, 환자대기 공간, 환자의 임시숙박, 설비무균실 협실 , 물-여과액을 처리장비, 설비, 부품 보관창고, 소모품창고...
- 혈액투석여과의 공능약도는 M4 사진- M 부록에 참고

### 5.8.10. 내시경과 (M5, M6 그림- 부록 M에참고)

#### 5.8.10.1. 총규정:

내시경과는 환자의 몸에 들어온 설비, 공구로 병에 치료 및 진단하기 위해 내시경 절차를 수행하는 장소이다.

- 내시경업무는 면적 및 하부구조에 대해 보증하는 기술 챔버에서 수행하게 된다.

5.8.10.2. 조직: 내시경과는 2 규모로 병원에 개최된다(침대 400-500 개가 있는병원) - II 급병원, 규모 3 ( 병상 550 개가 있는병원)- I 급병원

#### 5.8.10.3. 공간배치:

-연속배치, 합리, 전문작업보증, 충분한 내시경 공간 보장, 마무리 재료의 요구사항, 수술실에 대한 무균을 보장한다.

- 청결의 요구수준을 보장하고 살균이 필요하다.

•업무기술구역에서 배치하는 것이 2 구역으로 나눈다:기술구역및보조구역이다.기술구역은내시경실+수술을포함하고보조구역은준비실,세척,살균,창고및교육공간을포함한다.완성및기술인프라 (전기, 수도)에 대한 요구사항은 외과 동일으로 매우 엄격한다.

### 5.8.11.약과 (F 부록에 참고)

#### 5.8.11.1. 직능:

계획제공하고거주환자및비거주의환자에게기존약물과전문약품,화학,의료기기및소모품의수량과품질보존:면,붕대,알코올,거즈의수량,품질을공급및보관하고 적절한치료를 요청할 부응한다.

-병원에서 안전 및 합리적인 약을 사용하는 것을 체크한다. 같은 종류약을 대체할 수 있다.

-약경비를 관리참가하고 환자를 섬긴 업무에 비용절감하고 고효율이 있다.

과학연구, 약물정보에 대해 참여한다.

#### 5.8.11.2. 조직:

약과는 건강시설에서 건강관리 규모에 따라 개최하게 되고 노선을 준수하고 각 노선의 전문 규정한다.

#### 5.8.11.3. 공간배치:

전문기술분야에서 배치되어 현재 새로운 메커니즘에 의해 자동으로 약품을 제조 및 화학, 유체를 믹스부분이 없애버린다. 과의 임무는 병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작은 수량으로 의약품을 저축한다. 약물을 소매판매부분, 의료기기, 통합서비스와 같이 개발한다.

-약과에 여러방의 공간 및 내용은 제 49 표에 규정하게 된다.

5.8.11.4. 의학클리닉의 카운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어있다:

- 병원규모는 50÷ 250 병상                    9m2 ÷12m2;
  - 병원규모는 250÷500 병상이상            12m2÷15m2;
  - 병원규모는 400÷500 병상이상            15m2 ÷18m2;
  - 병원규모는 550 병상이상                 18m2 ÷24m2.
- 병원마다에 약국이 있는데공 9m2 ÷12m2 으로 비거주의 환자에게 공급한다.

**제 49 표: 약과에 방의공간**

설계 내용	면적, 규모 ( m2)				비고
	지구병원 병상 50~200 개	규모 1 : 병상 250~300 개	규모 2 : 병상 400~450 개	규모 3 : 병상 550 개이상	
	Ⅲ 급	Ⅲ 급	Ⅱ 급	Ⅰ 급	
-찌고 씻는 장소					
-약의 수집장소	9-12	12-15	16-18	18-24	
-씻고, 담그는장소	15-18	18-24	18-24	18-24	
-찌고 건조시키는 장소	6-9	9-12	12-15	15-18	
신약을섞는실					
-수도를 끓는 실	6-9	6-9	6-9	9-12	
-약물을 섞는 실	15-18	15-18	15-18	18-24	
다른약을섞는 실	6-9	6-9	9-12	12-18	
-감사실	9	12	15	18	
-약의 표시를 붙이는 실	9-12	9-12	9-12	9-12	
동약을조제실신약					
생자재실	18-24	24-30	24-30	30-36	
-담그, 씻,끓는 장소	-	-	-	-	가공장소가있다
씻, 말린 장소	-	-	-	-	햇빛에 말린공간
-말린약을가공실					
-가공	-	-	-	-	
-적어 갈는 장소	6-9	6-9	9-12	12-15	다로배치
-포장, 조제	15-18	18-24	24-30	30-36	
-한약을 달여내는 부엌	6-9	6-9	9-12	12-15	
-임시 완제품 창고	6-9	6-9	9-12	12-15	
B- 약을보관, 발급구역					
-1.발급장소					
-대기장소	4-6	4-6	4-6	6-9	
-약을발급장소	15-18	15-18	15-18	18-24	
2- 부창고					
3- 주창고	15-18	18-24	18-24	18-24	
창고 - 냉실					
면, 의료기기창고	15-18	18-24	24-3-	30-36	

의료기기비축하는창고	15-18	15-18	8-24	24-30	물 품 을 점 검 , 짐을내린장소가 있다.
폭발물질창고	-	-	-	-	
8-가연성물질창고					
폐기물창고	6-9	9-12	9-12	12-15	창 고 밖 에 넣어둔다.
<b>C- 행정실, 생활실</b>					
과장실	9-12	9-12	12-15	15-18	
통계실, 회계실	9-12	9-12	12-15	18-24	
생활실	9-12	12-15	15-18	18-24	
탈의 실	18 표에 보기				
화장실	제 5.6.4 조에 참고				

### 5.9 관리행정 및 총합서비스 분야 ( P 부록에 참고)

5.9.1 관리행정 및 총합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은 여러까지 과, 실이 있다:

총합계획실, 간호사의 실, 지도실(전문 및 병원관리 업무에 대한), 의료기기, 의료  
가구의 실, 관리행정-접수실, 공무원회의실, 재정- 회계실, 도서관실- 통계전자통  
신, 영양과, 유지실.

5.9.2 행정, 관리 및 총합서비스 분야 따로 있어야 되지만 치료구역, 업무구역이랑  
편리하게 연락할 필요하다. 조용하기, 환경위생 또는 병에서 치료하는 과정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다.

5.9.3 관리, 행정실의공간이 50 표에 규정하게 된다.

**제 50 표: 종합병원에 기능방들의공간**

방종류	면적, 규모 ( m2)			
	지구병원병상 50~200 개	규모 1 : 병상 250~350 개	규모 2 : 병상 400~500 개	규모 3 : 병상 550 개이상
	III 급	III 급	II 급	I 급
1.병원사장의실 - 객실	12-15 12-15	12-15 12-18	15-15 12-18	18-24 12-18
2. 병원 부사장의 실	12-15	2 x (9 - 12)	2 x (9 - 12)	2 x (9 - 12)
3.공무원,당세포의 조직실	9 - 12	9 - 12	12 - 15	15-18
4.권중단체	6 - 9	9 - 12	9 - 12	12-15
5. 행정실	15 - 18	15-18	18-24	24-36

6. 교환대	6 - 9	6 - 9	6 - 9	9-12
7.관리	12 - 15	12 - 15	15-18	18-24
8.회계 재무	12 - 15	12 - 15	15-18	18-24
9. 총합계획	12 - 15	15-18	18-20	20-24
10.저축	9-12	12-15	15-18	18-24
11.도서관	15 - 18	15-18	18-24	24-36
12.간호사의 실	12-15	15-18	18-24	24-36
13. 선의 지도실	9-12	12-15	15-18	18-24
14. 의료기기,가구의 실	9-12	12-15	30-36	36-48
15. 통신- 전자센터 (공부, 연구할 요구하기가 있는 작은병원, 큰병원에서만 배치하며 특히, 의학대학교속에 각 병원)	12	18	15-18	18-24
16. 원무과업무의실	15	24	30	36
17. 인계회의실	18	24	39	42

**주석:** 병원사장님 및 부사장님은 치료업무를 겸하면 근무실 면적이 4m<sup>2</sup> ÷ 6m<sup>2</sup> 까지 더 추가한다.

5.9.4. 큰회의를 설계할 필요하는 경우에 회의실의면적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자리/ 0,8m<sup>2</sup>( 병원에 총직원의 40% ÷ 60%자릿수)

5.9.5.병원의 영양과는 환자에게 부합, 안전하는 음식, 식품을 공급할 보증하기 위해 충분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P1 그림, P 부록에 참고)

5.9.6 영양과에 병원 부역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보증이 있어야 된다:

- 각 환자실에 까지 짧은길로 음식을 편리하게 배달한다.
- 병원에 식품을 쉽게 들어오고 밖에 쓰레기를 버리기를 편리한다.

규정된 부역을 설계면적 및 내용은 51 표에 표시된다:

5.9.7 직능:

- 병원의 영양과는 환자에 대한 사서비스를 개최하는 의무가 있고 식품위생안전하고 품질, 수량을 보증하고 병리에 따라 식대제도를 긴밀하게 관리한다.
- 영양과의 기초는 환자를 제공하기 위한 편리한 멋진 위생을 보증하는 기준으로 건설된다. 보장하기 위해 내장되어 있다.
- 전무가를훈련참가하고환자에대한영양제도에대해과학적으로연구한다.

5.9.8.영양과는 건강시설에서 임상치료를 각 규모으로 개최되고 노선을 준수하고 각 노선의 전문을 규정한다.

5.9.9 영양과는 기술전문 구역의 일부이며 각전문과의 영양 제도를 연구하는 기능하는 것으로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하는 기능이다. 다른 기능은 일반 서비스 구역에서 개발된다. 그 위치는 음식을 운반하는 것이 편리하고 밖에 쓰레기를 쉽게 꺼낸다. 합리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요리하는 렌지는 깨끗한 연료로 사용한다. (그림 P2-부록 P.에설명선에 참고)

제 51 표. 주방에 부품면적

제 51 표: 약과에방의공간

설계 내용	병상수				비고
	지구병원 병상 50~200 개	규모 1 : 병상 250~300 개	규모 2 : 병상 400~500 개	규모 3 : 병상 550 개이상	
	III 급	III 급	II 급	I 급	
생산장소	18-24			24-36	
탱크	6-8			10-12	
	12-18	18-24	15-18	24-45	
스토브장소	18-24	24-30	27-30	30-45	
가스공간	6-9	9-18	12-15	18-24	
어플라이언스를배치한다.	6-9	6-15	9-12	15-18	
수식숙박시설및 우유유통	6-12	9-15	12-15	15-18	
음식배달	15-18	18-24	18-21	24-45	
음식을받는장소, 음식을치움	15-18	18-36	15-18	36-45	
냉장고와소매상점	12-15	15-24	12-15	24-36	
접시, 트롤리를세척하는장소	18-24	24-36	12-15	36-45	
<b>B.참고및행정구역</b>					
참고수입, 수출장소	12-15	15-18	9-12	18-24	병원공간 의크기에 따라 냉창고, 냉장고를
식품	15-18	18-24	12-15	24-45	
말린식품, 향신료	12-15	15-24	12-15	24-36	

그릇, 접사, 기구	12-15	15-24	9-12	24-36	넣는장소를추가설계
사무관리, 의사, 간호사,영양, 통계및회계실	12-15	15-24	15-18	24-36	
생활실	15-18	18-24	12-15	24-36	
숙직실 및 쉬는 실	12	12-15	9-12	18-24	
탈의 실	18 표에 참고				
화장실구역	제 5.6.4 조에 참고				

**주석 :** 현재 경제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가스, 전기기기 및 현대적인 조리기구 동기화와 함께 요리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은 요리공간과 상세한 엔지니어링 디자인의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요리기구 제조업체의 카탈로그에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5.9.10.병원직원과 환자의 집사람을 서비스 경우, 병원은 많은 부역을 추가 설계 될 것이다:

- 작은규모가 있는 병원 : 4m<sup>2</sup> ÷ 6m<sup>2</sup> 면적
- 중간 및 대규모병원 : 6m<sup>2</sup> ÷ 9m<sup>2</sup> 면적
- 식당이 2÷ 3 회/ 번. 직원을위한 0.8 m<sup>2</sup> ÷ 1m<sup>2</sup>/자리, 환자의 집사람을 위한 0.7 m<sup>2</sup> ÷0.8 m<sup>2</sup>/자리

### 5.10.병참기술과 부수적공사

5.10.1. 창고 및 워크숍 공간의 면적은 제 52 표에 규정하게 된다

**제 52 표. 창고 및 워크숍 공간의 면적**

방종류	병상수			
	지구병원 병상 50~200 개	규모 1 : 병상 250~350 개	규모 2 : 병상 400~500 개	규모 3 : 병상 550 개이상
	III 급	III 급	II 급	I 급
1.리넨비축창고, 사무용품, 환자, 직원의일상생활용품	36-45	45-65	27-30	65-80
2. 옛가구, 포장창고	24-36	36-45	15-18	45-60
3.작은수리점	24-36			

-전기제품	-	15-18	12-15	-
-금속가구	-	15-24	-	24-36
-물장비	-	18-24	-	-
-목제품	-	-	-	-
-주택장비	-	18-24	15-18	24-36

**주석 :** 종종 병원에서, 자재창고, 일반 의료 기기 및 담요, 커튼, 매트리스 요금을 계산 하면 : 20m<sup>2</sup>/100 침대이다.

5.10.2. 병원의 주차장면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주차 공간: 15m<sup>2</sup>÷18m<sup>2</sup>/대
- 부속품, 기름을 넣는 장소: 9m<sup>2</sup> ÷ 12m<sup>2</sup>/ 대
- 운전기사의숙박실 : 9m<sup>2</sup> ÷ 12m<sup>2</sup>

**주석:**

최소한 각 병원은 구급차 한대, 대형 트럭 한대, 작은 트럭 한대가 있어야한다. 400 침대 병원에 규모가 세차장을 추가해야한다.

5.10.3. 병원에서 손님의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의 주차장을 설계해야한다.

- 차량 주차 공간 : 25m<sup>2</sup>/대 공간 표준
- 오토바이, 자전거를 위한 숙박 시설 : 2.5 m<sup>2</sup>/개÷ 3.0 m<sup>2</sup> / 개 공간 표준을 갖춘  
자전거: 0.9 m<sup>2</sup> / 개

5.10.4. 병원에 엔진, 전기, 물을 수리하기위해 작은 공장을 배치해야되고 특히, 예방 발전기가 있고 일반적인 기계수리하는 팀명이 있어야된다.

5.11. 감염 제어 및 폐기물 처리과 (그림 N2-부록 N에 참조).

5.11.1. 세탁 부분 : 세탁소의 내용 및 공간 설계는 제 53 표에 지정된 규모에 따라한다.

**제 53 표 . 세탁 부분의 설계 공간이 병원의 규모에 따라함**

방종류	병상 수량			
	지구 병원 병상 50~200 개	규모 1 : 병상 2 50~350 개	규모 2 : 병상 400~500 개	규모 3 : 병상 550 개이상
	Ⅲ급	Ⅲ급	Ⅱ급	Ⅰ급
1.인증 장소	6-9	9-12	12-156	15-18
2.세탁 구역이 있는:				
-일반 담그는 탱크	4-6	6-9	9-12	12-15
-지우 담그는 탱크	4-6	6-9	9-12	12-15
-세탁, 추출, 건조시킨 공간	20-24	24-36	36-28	48-54
3.실내 찌는 실	20-24	24-36	36-28	48-54
4.찌는 마당	36-48	48-54	54-60	60-72
5.옷, 바지를 다리고 접는 실	12-15	12-15	15-18	18-24
6.재봉	6-9	6-9	9-12	12-15
7. 클린 할당 스토리지	6-9	9-12	12-15	15-18
8.탈의 실	4-6	4-6	6-9	9-12
9.직원의 쉬는 장소	9-12	12-15	15-18	18-24
10.화장실 구역	제 5.6.4 조에 참고			

**주석 :** 허용하는 조건에서 지속적인 세탁기, 추출기, 찌는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 설계할때 세탁실, 짜내는 실, 건조시키는 실, 찌는 실의 공간 용역을 계산하기 위해 용량 및 기계 종류의 카탈로그에 기초해야 된다.

#### 5.11.2. 쓰레기수집 부분 - 환경 폐기물 및 환경 위생.

a) 종합병원에서 환경 위생, 폐기물을 수집 및 처리 업무는 다음과 같이 포함:

- 쓰레기를 수집하고 표본을 처리하고 수집 시스템
- 병원의 폐수를 처리하는 시스템

b) 봉대를 화상하는 화로 및 작은 고체 폐기물은 각 병원의 요구에 따라 설계하게 되고 바람의 방향 끝에 넣어 두고 주변 지역을 오염하지 않다.

c) 치료 영역에서 멀리고 바람의 방향의 끝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위치이다.

밖에 쓰레기를 꺼내주는 도로는 메인 입구에서 독립해야된다.

d) 의료 폐기물은 보건부 장관의 1999/08/27 일에 2575/1999/QD - BYT 호 결정과 같이 발행된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제의 규정에 따라 준수할 수 있는 병원의 일반적인 처리하는 부분으로 전송할 동시에 집중하고 분류해야 된다.

#### 5.11.3. 의료 기구 및 의료 기기를 살균 센터

살균 스테이션이 재사용을 하기위한 소독 장소, 의료 기구, 의료 기기를 살균하는 장소이다.

살균 스테이션은 여러까지 부분으로 설계되었다 :

보일러 공간: 장비에 따라 면적  
 배달 장소 : 9m<sup>2</sup> ÷ 12m<sup>2</sup>.

5.11.4. 경비실

경비실의 표준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게 된다:

50~200 병상까지 규모가 있는 병원: 9 m<sup>2</sup> ÷ 12 m<sup>2</sup>

250-300 병상까지 규모가 있는 병원: 15 m<sup>2</sup> ÷ 18m<sup>2</sup>

- 400-500 병상까지 규모가 있는 병원: 18 m<sup>2</sup> ÷ 21m<sup>2</sup>

5.11.5. 일반 서비스 구역

a) 종합 병원 영역에서 병원의 고객 및 환자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기위해 면적이 6m<sup>2</sup>/ 매점으로 공중 전화 매점, 환전 사무소 및 식료품 매점을 배치할 필요 있다.

b) 일반 서비스에 공사 부분의 공간과 내용은 제 54 표 에 표시된다

**제 54 표 . 일반 서비스에 공사 부분의 공간과 내용**

방종류	병상수			
	지구 병원병상 50~200 개	규모 1 : 병상 250~350 개	규모 2 : 병상 400~500 개	규모 3 : 병상 550 개이상
	III 급	III 급	II 급	I 급
1.식수 매점	9-12	12-15	15-18	18-24
2.식료품 매점	9-12	12-15	15-18	18-24
3.잡지매점	6-9	9-12	12-15	15-18
4.환자의 집사람위한 숙박 시설	심한 환자 + 응급 환자의 비율으로 계산함 6m <sup>2</sup> /침대로 면적 표준			
5.가계, 식당 ( 있으면)	식당 표준에 따라			

## 6. 기술 시스템 설계 요구 사항

### 6.1. 화재 예방에 대한 요구 사항

종합 병원을 설계할때 다음과 같은 현재의 기준에따라 화재 안전에대한 요구사항을 보증해야된다.

등급 내화물

안전 거리

규모와 층수 (등급 내화의 수준에 따라);

탈출 도로

전기 공학 시스템, 물, 조명, 환기, 번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책

화재 경보기, 소방 솔루션

*주석 : 장애인에게 출구와 탈출 도로, 수단 및 유독, 많은 위험한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창고에 대한 화재 방지할 필요있는 경우에는 기술 경제 보고서에서 잘 적어야되고 소방서 경찰국(공안부)은 합의해야한다.*

### 6.2. 자연 채광과 통풍에대한 요구사항

6.2.1. 병원에서 주 객실에게 철저하게 자연 채광 및 자연 환기해야한다. 병원에 있는 각 방의 자연 조명은 이 표준의 A 부록에 따라 잡는다.

6.2.2. 병원에서 객실의 장문을 열린 향이 이 표준의 부록 B에 참고 .

6.2.3. 병원에서는 조건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방에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수술실(대수술의 실과 수술후의 실);

-조산 및 소아 간호

-무균 교반

-높은 정확도가 있는 기계를 넣어두는실및귀한약 창고

-응급 회복 과에 환자의 실

6.2.4.계산하는 온도, 방에있는 수번 또는 공기 교환 용량 ( 이표준의 C 부록에서 참고)

### 6.3. 전기-물에대한 기술 요구 사항

#### 전기 기술

6.3.1. 병원은 조명, 의료장비용 및 통보장비들 전기를 충분히 제공한다.

6.3.2. 병원에 예비전원이 준비해 야 하고 아래와 같은 부서에서 전원이 항상 있어야 된다.

- 수술실, 수술후의실, 응급실, 출산실, 인큐베이터;
- 시험실의 냉장고;
- 혈액은행의 혈액보관실;
- 소방 급수 펌프;
- 비상 조명시스템 및 비상 유도등;
- 비상 및 소방하기위한 특별엘리베이터;

6.3.3. 병원에 전기망은 아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조명시스템은 기계 및 강력한 장비보다 다로 설치해야 한다.

- 전기선은 구리선을 사용해야 하고 알루미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수술실, 수술준비실 및 소독실에서 선은 커버이 있어야 된다.

6.3.4. 조도레벨(lux)은 현행 기준인 “건물 및 일반 건축에 인공조명”을 이행해 야 한다.

6.3.5. 환자실들에서 경보, 경종을 설치해 야 한다.

## 급수

6.3.6. 병원에서 생활, 치료, 소방을 위하여 낮과 밤에 물을 공급한다. 병원에 급수 기준은 “내부 급수기준- TCVN 4513 – 1988”.

6.3.7. 온수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지만 시술경제 보고서에 설명하고 기술요청 및 안전을 담보해 야 한다.

6.3.8. 병원에서는 급수, 배수시스템을 설치해 야 하고 일반적인 폐수 시스템에 배출하기 전에 폐수처리 시스템을 설계해 야 한다. 병원에 배수기준은 “내부 배수기준- TCVN 4474 – 1987”에 따라 시행해 야 한다.

**주석: 비물은 캡이 있는 하수도를 설계할 수 있다.**

## 6.4 .완료 업무를 요구 사항

6.4.1. 병원은 높은 품질으로 구조, 인테리어 및 정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식목하는 위치, 식물 종류, 좌석, 탱크, 카펫의 위치는 디자인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4.2. 객실의 벽은 살균 위생 요구하는 사항은 적절한 자료를 사용한다. 환자실의 벽은 페인트를 칠하게 된다.

객실 내에 석회 페인트를 칠할때 보증해야한다:

환자실의 부드러운 색상

- 직업 활동실의 밝은 색상

6.4.3. 객실의 마루 바닥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되고 방수 소재로 세탁이 용이하여야한다.

수술 객실, 태양광 치료, 방사선 치료, X-레이 실은 전기에 대해 안전하게 사용기준에 따라 절연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6.4.4. 산을 사용하는방, 마루 바닥과 테이블 테스트, 세면대와 탱크는 내산성 재료로 만들어야한다./.

-----

# 부록

## 부록 A

### A1 - 병원에서의 각 실들의 자연조명계수

방종류	최소 자연조명계수 (%)
수술실	1.4
마취실, 수술준비실, 소독실, 진료실, 분만실, 소아 수유실, 내시경검사실, 도량형실, 치료실.	1.0
병실, 수술후, 격리, 쉬는실, 오락실, 약과의 생산실, 물리치료, 환자를 위한 약을 준비실, 산부실, 용구소독실, 행정실...	0.7
X-ray 실, 복도, 화장실, 대합실, 주차장, 창고	0.5

### A2 - 병원에서의 주요실들의 창문방향

방종류	창문의 방향		
	좋다	가능하다	안된다
수술실, 내시경검사실, 정확한 도량형실	북쪽	북쪽 인근의 30°	다른 쪽들
치료실, 소수술실, 검사실	남, 동남쪽	북쪽	다른 쪽들
병실, 오락실	남쪽	동남쪽	다른 쪽들
보조실, 행정지역	남, 동남쪽	서쪽제외 모두 가능하다	서쪽 및 서쪽 인근
탈의 실, 계단, 복도, 화장실, 불견창고	모든 쪽.		

### A3 - 온도의 수준, 공기순환

방종류	온도 (°C)	1 시간내에 공기순환	
		In	Out
병실 (1 병상)	20	10 번	8 번
소아 병실 (1 병상)	22 - 26	10 번	8 번
조산아실	30 - 32	12 번	10 번
유아실 (1 병상)	22 - 26	10 번	8 번
수술실, 분만실	22 - 26	10 번	8 번
진료실, 치료실, 업무실 (약과, X-ray)	18 - 20	1 - 3 번	3 - 5 번
병리해부실	16 - 18	1 번	1 번

# 베트남건설법

---

직업훈련원 설계가이드



## 직업 훈련원 - 설계가이드

SCHOOL OF VOCATIONAL TRAINING - DESIGN STANDARDS

## 직업훈련원 - 설계가이드

### *School of Vocational Training - Design Standards*

#### 1. 적용범위:

이 수준은 전국적으로 중앙이나 지방 또는 국가관리 밑에 있는 경제조직에 속한 정규 직업훈련원, 단기 및 장기적인 직업훈련센터를 건설 및 개조하기 위한 수준이다.

**주석:** 이 수준은 직업훈련교수 교육원 설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2. 인용한 수준:

- TCVN 2748-1991            건설공사분급. 통칙
- TCVN 4450-1987         주택. 설계 기본 원칙
- TCXD 13-1991            주택 및 민간용 공사 분급. 통칙
- TCVN 4601-1988         사무소. 설계수준
- TCVN 4513-1988         옥내 급수. 설계수준
- TCVN 4474-1987         옥내 배수. 설계수준
- TCXD 33-1985            급수. 옥외 시스템 및 공사.
- TCXD 51-1984            배수. 옥외 시스템 및 공사.
- TCXD 16-1986            민간용 공사의 인공조명. 설계수준.
- TCXD 29-1991            민간용 공사의 자연조명. 설계수준.
- TCXD 25-1991            주택 및 공공공사 안에 가선공사. 설계수준.
- TCXD 27-1991            주택 및 공공공사 안에 전기설비 설치. 설계수준.
- TCVN 2622-1995         주택 및 공공공사 소방. 설계 요구.
- TCVN 5674-1992         건설마감. 공사점검수준.

#### 3. 일반 규정:

3.1 직업 훈련원 학생들은 반으로 나누게 되고 각 반이 35명이 있다. 직업 훈련원 학생수량이 다음과 같은 규모로 정한다:

- 소규모: 300 - 600 명
- 중규모: 600 - 1000 명
- 대규모: 1000 - 1500 명

**주석:**

- 1) 직업 훈련원 규모는 장기적 정규프로그램에 참가한 최고의 학생수량에 근거 한다.
- 2) 특별한 경우에는 직업 훈련원 학생수량은 제 3.1 조에서 규정한 수량을 넘어 갈 수 있다.

3.2 직업 훈련원은 1급 ~ 4급의 공사로 설계하게 된다. 각 공사급의 구체적 내용은 베트남의 수준 “건설공사분급 - 통칙” - TCVN 2748-1991“에서 들어가 있다.

3.3 훈련원에서 항목들을 여러급으로 설계 할 수 있지만 3급을 넘어지면 안되고 강의 건물에 고급설계를 우선해야한다.

**주석:** 4급의 주택이나 공사들은 계획이 없는 지역이나 직업훈련원의 보조공사에 설계하게 된다.

**4. 공사토지 및 총 지면 계획에 대한 요구:**

4.1 직업 훈련원 공사 지역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대응해야한다:

- 주택구역 계획 및 직업 훈련원 조직망에 적합.
- 직업 훈련원에서 교육한 직업에 따라 공업단지, 건설현장, 농장, 항구 등과 같은 지역에 가깝다.

4.2 공사토지에 대한 요구:

- 조용한 공간이 있음.
- 교통 편리하고 안전함.
- 급수, 전기 편리함
- 건조 및 좋은 질의 토지이다.
- 유독성 폐기물을 배출한 공업단지와 안전간격이 보증함.

**제1표. 안전간격**

공업단지, 공장의 유해한 계급	최소의 안전간격 (m)
1급	1,000
2급	500
3급	300
4급	100
5급	50

4.3 직업 훈련원의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은 3공간으로 나뉜다:

- a. 학습공간: 교실, 강의실, 실험실, 실행실, 근무실.
- b. 체육공간: 운동장.
- c. 학생 생활용 공간.

4.4 건축물의 면적은 20% ~ 40% .

제2표. 건축토지수준 (m<sup>2</sup>/학생)

학생수량	전학교		학습공간		체육공간		학생생활용공간	
	평지	산골	평지	산골	평지	산골	평지	산골
300 - 500	35-40	45-62	15-20	20-30	8	10-12	12	15-20
600 - 1000	33-36	46-52	14-16	25	7-8	8-12	12	13-15
1000 - 1500	27-30	12-14	12-14	25	5-6	8-10	10	12

**주석:**

1. 제2표에서의 면적은 실험실, 실행실 및 운전연습장, 실험재배장, 실험농장 등 포함하지 않는다.
2. 훈련원에서 교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승인 받은 설계으로 제2표에서 가치를 증가할 수 있다.
3. 훈련원은 식물산출량이 높은 땅에 건설해야하는 경우 제2표에서 규정한 면적의 15% ~ 20%를 감소할 수 있다.
4. 비축용 토지가 20% ~ 25%.

4.5 공사경계가 red-line에서 최소 1.5m를 떨어져야한다. 주요 교통 노선에 가까운 경우 그 간격이 50m이상 해야한다.

4.6 초목재배면적은 총 토지면적의 30% ~ 40%를 차지한다.

**주석:** 공사가 숲, 정원이나 들판안에 위치하는 경우 초목재배면적은 감소할 수 있지만 20%이상 해야한다.

4.7 학생 생활용 공간은 학습공간과 운동장이나 tree line으로 분리하게 되며 별개의 통로가 있어야한다.

4.8 공사토지는 울타리로 보호해야하며 울타리의 높이는 1.5m이상해야한다. 울타리의 자재는 건설지점에 따라 선택하게 되지만 안전상 또는 미관상을 보증해야한다.

## 5. 공사내용 및 설계해법유형:

5.1 직업 훈련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공사를 포함한다

- 학습공사
- 실행공사
- 학습보조공사
- 체육공사
- 행정, 관리 및 보조 공사.
- 생활용 공사 (기숙사 있는 경우)

5.2 직업 훈련원 설계는 기술적, 지방기후, 지방 건설 계획(도시, town, 농장,...)또는 교육 목적에 적합해야하며 학습 및 생활을 잘 보조할 수 있도록 공사간의 긴밀한 연결을 보증해야한다.

5.3 학교의 교실들의 성분, 구조 및 면적은 각 직업 훈련원 마다의 규모, 조직고주, 훈련 직업, 교육계획에 따라 정하다.

**주석:** 각 교실의 사용능력이 75%이상해야 하며 실행장에 85%이상해야한다.

5.4 학습건물안의 계단 및 복도의 폭이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설계한다:

- 주요 계단: 학생수량에 따라 2.1m ~ 2.4m
- 주요 복도: 학생수량에 따라 1.8m ~ 2.4m

5.5 교실 및 실험실의 높이: 3.6m 이상

### 학습건물:

5.5 공동교실이나 전문교실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설계한다:

- a. 같은 학년, 학과 또는 전공의 반들의 교실 사이의 간격은 가깝게 해야한다.
- b. 공동교실은 교실그룹 가운데에 위치한다.
- c. 시끄럽거나 냄새나는 방에 떨어져야한다 (실행장,화학실험실, 식당, 주방...)

5.6 교실은 지하층, 반지하층 또는 다락에서 설계하면 안된다. 무거운 설비가 있는 실

험실은 최하층에서 위치할 수 있으며 장고, 보조실, 기술실 등은 지하층에 위치할 수 있다.

학습공간안의 교실면적은 3표에 규정한다.

제3표. 교실 면적

교실	반의 규모	반의 규모에 따른 교실 면적
기본과학, 기초기술, 실험, 전문교실	1 반	48m <sup>2</sup> : 60m <sup>2</sup>
공동교실	2반	1.4 : 1.5 (m <sup>2</sup> /좌석)
기술도면작업실	1/2 반	42m <sup>2</sup> : 60m <sup>2</sup>
실험준비실	2 반	12m <sup>2</sup> : 18m <sup>2</sup>
프린터 및 영상 슬라이드 실	전학교	18m <sup>2</sup> : 24m <sup>2</sup>

**주석:**

- 1) 보조실은 양쪽 옆에 있는 2교실 (실험실)을 보조한다.
- 2) 전문교실, 실험실 및 기술도면작업실의 면적은 공능 및 설비조건에 따라 확인한다.
- 3) 기술도면작업실은 2교대에 사용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9 학습건물 각 층에 교수 휴게실이 있어야된다. 휴게실 면적은 교실당 2.4m<sup>2</sup> ~ 3.0m<sup>2</sup> 이며 15m<sup>2</sup>이상해야한다.

5.10 학습건물 교실안의 설비 사이의 간격은 4표로 정한다.

제4표. 교실안의 설비 사이의 간격

기후	간격이름	간격사이즈 (m)
b	교실의 폭 (이상)	6.0
n1	교탁줄 사이의 간격 (이상)	0.60
n2	교탁줄 및 교실벽 사이의 간격 (이상)	0.50
y	최종의 교탁에서 칠판까지 (이하)	10.0
y1	최초의 교탁에서 칠판까지 (이상)	
	- 전문교실 - 공동교실	2.0 1.6

y2	같은 줄에서 있는 교탁 사이의 간격 (이상)	0.60
y3	최종의 교탁줄에서 뒷벽까지 (이상)	0.70
y4	교수교탁에서 칠판까지 (이상)	0.80
α	구석에서 있는 최초의 교탁에서 칠판의 입가까지의 광각은 (이상)	30°

5.11 400명 이상의 학생수량이 있는 직업훈련원은 큰 교실을 (강의실) 건설할 수 있다. 강의실의 규모는 학생수량, 교육 프로그램, 교육 목표, 장비 기능 및 설계임무에 근거한다. 강의실의 사용 역량은 60% 이상 해야한다.

5.12 강의실의 면적은 5표로 정한다.

제5표. 강의실면적의 수준

강의실의 좌석량	1 좌석의 면적 (m <sup>2</sup> )
200 - 350	1 : 1.1
120 - 150	1.2
80 - 100	1.3

**주석:**

- 1) 강의실의 길이는 21m 이하하며 너비는 좌석수량에 따라 정한다.
- 2) 10m의 길이 있는 강의실에서 강단이 바닥에 비해 0.3m를 높여야한다.
- 3) 강의실 안에 영사기나 서치라이트를 장비해야한다.

5.13 훈련직업요구에 따라 모형실, 수업교재, 어두운방 (사진술을 위해) 등을 설계할 수 있다. 기술요구를 설계임무가 규정한다.

5.14 각 교실에서 적어도 2개의 문이 있어야하며 하나는 앞쪽에 위치하며 하나는 뒤쪽에 위치한다. 문이 2개의 문짝있고 복도향에 열리게 된다.

5.15 학습건물안에 각 교실에서 학생의 모자, 비옷, 우산 등을 보관하는 자리를 설계해야한다.

**실행건물:**

5.15 실행장은 2개의 교육임무를 보증해야한다: 기초 실행 및 생산 실행.

5.16 직업훈련원의 실험장의 내용 및 규모는 훈련직업 (공업, 농업, 상업, 산림업...)의 필요한 장비, 설비 조건에 따라 설계한다.

**주석:**

- 1) 지방의 생산공장을 (공장, 농장, 공사현장...) 이용해서 학생은 실행하게 한다. 지방에서 학생을 직업실행할 수 있는 생산공장이 있으면 학교에서 기초실행실만 설계한다.
- 2) 실행장을 설계할 때 장비, 설비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해야한다. 장비, 기계를 변화할 경우 실행장을 많은 개조하지 않게 해야한다.
- 3) 실행장설계가 훈련직업에 따라 관련된 현행수준을 준수해야한다.

5.17 실행장들에서 다음의 항목들을 설계해야한다:

- a. 실행장 담당자의 근무공간.
- b. 기구, 자재물 등을 보관실 (창고)
- c. 실행하기 전에 학생을 모이는 공간.
- d. 로커룸, 목욕실, 화장실.
- e. 장비, 기계를 둔 공간, 실행공간.
- f. 실행의 필요한 자재물 준비공간.
- g. 기계고치 또는 상품완성 공간.

**주석:** 장비, 기계를 둔 공간의 면적은 설계임무에 따라 장비된 기계, 장비의 수량에 따라 정한다. 기계 운반통로의 면적을 충분하게 설계해야한다. 구경, 견학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필요할 경우 설계임무에서 규정해야한다.

5.19 실행장들을 한 공간으로 설계해야하며 다른 건물들과 필요한 간격으로 떨어져야 하고 주요 바람향 끝에 위치한다.

**학습보조공간:**

5.20 직업 훈련원의 휴은 회의, 문화활동, 영화보기, 정치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해야한다. 휴의 규모는 밑에 규격으로 정한다:

- a. 평지구역: 전학생수량의 20% : 30%.
- b. 산골구역: 전학생수량의 30% : 50%

**주석:** 소중규모의 직업 훈련원에서 강의실을 휴으로 사용할 수 있다.

5.21 휴안에 방들의 면적은 6표에서 규정한다:

제6표. 홀안에 방들의 면적수준

방의 이름	단위	면적 (m <sup>2</sup> )
- 관객실	좌석	0.7 : 0.75
- 설비, 기구 창고	좌석	0.02
- 화상실	일반 규정에 따라	
- 무대	좌석	0.15 : 0.18
- 기술방	방	15 : 18
- 무대용 기구 창고	방	12 : 15
- 배우들의 waiting room	방	24 : 36
- 무대옆에 화장실, 목욕실	방	2 : 4
- 복도	좌석	0.20 : 0.25

5.22 홀의 벽 또는 설비들을 여러활동을 맞출수 있게 설계해야한다.

5.23 훈련원의 동아리는 각 학교의 조건에 따라 기숙사에서 설계할 수 있거나 홀이랑 결합할 수 있지만 공사 부분들의 사용 독립성을 보증해야한다.

동아리의 방들의 면적은 7표에 규정한다.

5.24 도서관은 책을 보관 창고, 교사의 reading room, 학생의 reading room을 포함한다. 도서관의 방들의 면적은 8표에 규정한다.

제7표. 동아리안의 방의 면적수준

방의 이름	면적 (m <sup>2</sup> )	
	학생수량 1000명 이하	학생수량 1000명 이상
공연연습실	18 : 24	24 : 30
노래연습실	15 : 18	18 : 24
텔레비전 보는 실	36 : 42	45 : 65
운동실	28 - 42	42 - 65

*주석: 소규모의 직업 훈련원에서 동아리는 홀이랑 결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제8표. 도서관의 방의 면적수준

방의 이름	단위	면적 (m <sup>2</sup> )
- 책을 보관 창고	1000권	2.2
- 학생의 reading room	좌석	1.5 : 1.8
- 교사의 reading room	좌석	2.0 : 2.4

5.25 도서관 reading room의 좌석수량이 다음규격으로 한다:

- a. 전학교 학생수량의 3%이상.
- b. 교사수량의 20%.

**주석:**

- 1) 도서관의 책수량은 25권/학생의 수준으로 정한다.
- 2) reading room 및 책을 보관 창고를 교차하는 통로를 설계하지 않는다.

5.26 직업 훈련원의 전통실은 36m<sup>2</sup> 이상의 면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5.27 학습공간, 실험공간 및 실행공간의 각 층에서 toilet, 소변기 및 세면장이 충분하게 장비된 화장실이 설계해야하며 교수, 남, 녀 구분해야한다. 화장실의 장비수량은 40명당 toilet 1개, 소변기 2개, 세면장 1개로 정한다.

5.28 더러움이나 먼지가 잘 타는 실행장에서 공공 목욕실을 설계해야 하며 8명당 샤워기 1개, 라커룸의 면적 0.25m<sup>2</sup> - 0.3m<sup>2</sup>/명의 수준으로 설계한다. 사람수는 제일 많은 학생이 있는 수업의 학생수량에 근거한다.

**주석:**

- 1) 실행장은 기숙사에 200m를 떨어지는 경우 목욕실을 설계할 필요가 없다.
- 2) 화장실은 교실의 정반대쪽으로 설계하지 않는다.

**체육공간:**

5.29 직업훈련원의 규모 및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체육관을 설계할 수 있다. 면적수준은 학생당 0.13 - 0.17m<sup>2</sup> 이며 주된 사이즈는 24m x 12m; 36m x 18m.

**주석:** 동아리의 스포츠실은 체육관에서 설계해야한다.

5.30 옥외 체육공간에서 경기장, 농구장, 배구장, 배트민턴장을 포함해야한다.

조건이 있으면 축구장, 국방교육공간, 간단한 수영장도 설계할 수 있다.

**주석:**

- 1) 체육공간은 교실문앞에 설계하지 않고 운동장들이 학습건물에 최소의 20m를 떨어져야한다.
- 2) 운동장들의 사이즈는 현행수준에 따라 한다.
- 3) 체력 훈련을 요구한 직업의 운동장을 학생수량에 따라 별도로 설계할 수 있다.
- 4) 같은 지역에서 여러 직업 훈련원이 있으면 공공 체육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

**행정 및 보조건물**

5.31 학장실, 업무부 등의 면적이 9표에 정한다.

제9표. 업무실의 면적수준

방의 이름	단위	면적 (m <sup>2</sup> )
학장실	방	20 : 25
부학장실	방	12 : 15
교수실	교수	5 : 6
행정, 업무, 관리실	명	4 : 4.5
회의실: - 학생수량 500명 이하	방	18 : 24
- 학생수량 600명 이상	방	24 : 36
전통실 (설계업무에 따라)	방	36 : 54
수업준비실	교수	1.2 : 1.5

**주석:**

- 1) 각 실은 한명당 10m<sup>2</sup> : 12m<sup>2</sup>의 면적수준으로 설계한다.
- 2) 공산당 사무실, 노동조합실, 청년조합, 여성조합 등을 별도로 설계할 수 있으며 학생수량이 500명 이하하면 각 실의 면적을 15m<sup>2</sup> 이하, 학생수량이 500명 이상하면 각 실의 면적을 18m<sup>2</sup> 이하한다.
- 3) 교수실은 과목에 따라 설계할 수 있거나 교수수량에 따라 여러 큰 방으로 집중할 수가 있다.
- 4) 수업준비실은 과목에 따라 설계하며 면적은 18m<sup>2</sup> 이상해야한다.

5) 주요 회의실은 주요 학습 건물에서 위치한다.

5.32 직업 훈련원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창고, 변전소, 급수소, garage 등 필요한 공사를 설계할 수 있으며 이런 공사의 수량 및 규모가 설계임무에서 규정하게 되고 현행 수준에 따라 한다.

#### 학생 생활용 공간:

5.33 직업 훈련원 학생의 내주생활용 공간은 기숙사, 학생식당 및 다른 공사를 포함한다.

5.34 기숙사규모는 모든 학생들은 거주할 수 있게 설계한다. 기숙사에서 남녀지역으로 나눈다.

**주석:** 학생관리필요할 경우 요구에 따라 기숙사안에서 학생관리실을 설계할 수 있다.

5.35 학생당 거주면적은 10표에서 정한다.

제10표. 학생의 거주면적수준

성분	면적 (m <sup>2</sup> )	비고
남학생	3.5	2개층 침대
여학생	4.0	1개층 침대
외국인학생	6 : 7	1개층 침대

#### 주석:

1) 각 기숙사실의 학생수량은 2명 ~ 6명이다. 2개층 침대가 사용하면 8명까지만 설계한다.

2) 2개층 침대를 사용하는 방의 높이는 3.3m까지 높힐 수 있다.

5.35 2방이나 한방당 화장실은 설계하며 toilet, 소변기, 세면장 등 충분히 장비해야한다. 각 층에서 공공화장실을 설계하는 것을 피한다.

집단주택을 설계할 경우 공공 화장실의 설비수량은 11표에 정한다.

제11표. 집단주택의 공공화장실

성분 및 학생수량	수준 (여지)					
	샤워	세면	세탁	toilet	소변기	생리 위생
남학생 (12 : 16 명)	1	1	1	1	1	-
여학생 (12 : 16 명)	1	1	1	1	1	1

5.36 직업 훈련원의 교수 및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을 설계요청이 있을 경우 면적수준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승인한 설계임무 및 TCVN 4450-1987 "주택 - 설계 기본 원칙"에 따라해야 한다.

5.37 직업 훈련원안에 학생 및 학교의 공무원을 위한 공동 식당을 설계한다.

5.38 공동 식당을 설계할 때 학교의 다른 생활을 결합하며 관련된 현행 수준에 따라한다.

5.39 공동 식당의 규모는 기숙사에 거주한 학생수량에 따라하며 2교대/식사를 설계한다.

5.40 식당안의 큰룸 및 다른 방의 면적은 12표에 정한다.

제12표. 식당안의 방의 면적수준

룸	면적 (m <sup>2</sup> /좌석)	
	300개의 좌석	500개의 좌석
주방, 창고 (미가공, 꼼꼼하게 가공, 주방, 창고)	0.88	0.63
큰룸 (식사하는 룸, 로비, 화장실, 물마시는 공간, 설거지 하는 공간)	1.12	0.99
행정실, 카운터, 보조창고	0.25	0.16

5.41 식당은 별도로 설계해야하는데 학급건물 및 기숙사와 편리한 간격을 지켜야한다. 최고의 간격은 500m.

5.42 학생 기숙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성분 및 면적으로 여러 매점을 마련할 수 있다.

- 생활용품가게: 15m<sup>2</sup> - 18m<sup>2</sup>
- 음료수가게: 12m<sup>2</sup> - 18m<sup>2</sup>
- 다른 서비스 (이발소, 서점, 우체국...): 24m<sup>2</sup> - 30m<sup>2</sup>

*주석: 생활용품가게, 음료수가게의 면적은 판매공간 및 창고를 포함한것이다.*

5.43 각 직업 훈련원의 특징 및 실제 요구에 따라 보건소를 설계할 수 있다. 보건소의 방들의 면적은 13표에 정한다.

5.44 도시나 주택단지에 떨어져있는 직업 훈련원에서 규모에 따라 36m<sup>2</sup> - 54m<sup>2</sup>의 면적의 guest house를 설계할 수 있다.

제13표. 보건소 방의 면적수준

방이름	단위	면적 (m <sup>2</sup> )
보건소소장실, 간호사실	방	9 : 12
진료실	방	12
서류, 약 저장실	방	12
주사 및 소수술실 (1:2개의 침대)	방	12 : 18
환자 실	1개의 침대/ 100학생	4 : 6
창고	자리	6 : 9

**주석:**

- 1) 학생수량이 800명이하의 학교는 진료, 약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보통적인 보건소가 하나만 설계하면 된다.
- 2) 보건소는 조용하고 주요 바람향 끝에 위치해야하며 자동차용 길 및 출구를 별도로 설계한다.

## 6. 조명, 전기기술 및 약전 설비에 대한 요구:

### 자연 조명

6.1 직업 훈련원의 방들의 자연 조명은 TCXD 29-1991 “민간용 공사의 자연조명. 설계수준”을 적용한다. 교실, 실험실의 자연 조명의 수준계수는 작업의 정확수준에 따라 한다.

6.2 교실에서 직접 자연 조명이 있어야한다. 교실, 강의실의 창문들을 학생좌석 좌측에

서 설계해야한다. 칠판을 내걸은 벽에 창문을 설계하지 않는다.

6.3 Drawing room에서 창문은 북, 서북쪽으로 설계하며 교실들에서 창문이 동서쪽으로 설계하는 것을 피한다.

6.4 사이의 복도를 설계할 때 다음의 항목들을 보증해야한다:

- a. 복도의 길이 20m를 넘지않는 경우 한 끝에 자연조명을 설계한다.
- b. 복도의 길이 40m를 넘지않는 경우 양 끝에 자연조명을 설계한다.
- c. 복도의 길이 40m를 넘는 경우 최소 3m의 너비 있으며 자연조명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한다. 이 공간들 사이의 간격이나 마지막 공간에서 건물 박공벽까지의 간격은 20m - 25m이다.

**주석:** Các buồng thang hờ cũng được coi là khoang lấy ánh sáng.

6.5 교실의 물건 및 cover표면의 반사율은 다음과 같은 지수를 넘어가야 한다.

- 천장, 셔터, 문 : 0.70
- 벽의 윗부분 : 0.60
- 벽 : 0.50
- 가구 (나무가구) : 0.35
- 바닥 : 0.25

#### 인공조명 - 전기기술 및 약전 설비

6.6 직업 훈련원에서 인공조명 설계가 TCXD 16-1986 “민간용 공사의 인공조명. 설계 수준”를 준수해야 한다. 각 공간의 조명요구는 14표에 정한다.

제14표. 표면의 최저조명도

공간	최저조명도(lux)		조명표면
	형광등	백열 전구	
학습실, 실험실, drawing 실			
- 학생 책상	300	150	수평 0.8m
- 칠판	300	150	수직 - 칠판표면
- 실행장	300	150	수평 0.8m
- 업무실	150	75	수평 0.8m
- 독서실	300	150	수평 0.8m

- 책빌려주는실	150	75	수평 0.8m
-회의실, 객실	150	75	수평 0.8m
- 식사하는실, 주방	100	50	수평 0.8m
- 복도, 계단, 화장실	-	30	수평 0.8m

**주석:**

- 1) 교실, 강의실, 독서실에서 아무점의 최저조명도는 그 방의 평균 조명도의 2/3를 이상해야 한다.
- 2) 실험실 및 실험실의 조명도는 업무의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해 (설계임무에서 규정한다) 즉석에서 조명추가함으로 14표의 규정보다 높힐 수 있다.

6.7 칠판의 조명은 형광등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한다. 백열 전구들은 조명을 학생얼굴에 향하지않고 칠판에 향하게 만든 등피가 있어야한다.

6.8 직업 훈련원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220/380 이나 127/220V의 3-phase AC이다.

6.9 약전 설비들이 다음과 같다:

- a. 전화기.
- b. 강의실, 홀에서의 음성 장치
- c. 벨, 전기시계
- d. 보호신호.

6.10 직업 훈련원에서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배선은 TCXD 25-1991, TCXD 27-1991 "주택 및 공공공사에서 전기설비 설치 및 배선 설계수준"

6.11 직업 훈련원 따위의 피뢰는 건설공사의 피뢰 설계 및 시공에 관련된 현행수준에 따라 해야한다.

직업 훈련원들의 피뢰는 제3급이며 항상 많은 사람을 집중한 공사의 피뢰수준으로 해야 한다.

**7. 소방요구**

7.1 직업 훈련원을 설계할 때 TCVN 2622-1995 "주택 및 공공공사 소방. 설계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7.2 교실들을 허용한계의 내화등급으로 설계하며 층 수량 및 길이는 15표에 정한다.

제15표. 공사에 소방에 대한 규정

공사등급	내화등급	층 수량	최고의 길이 (m)	
			방화벽있음	방화벽없음
I	I	규정 없음	110	규정 없음
	II	1 - 8	110	규정 없음
II	III	1 - 5	90	규정 없음
III	IV	2	50	100
		1	70	140
IV	IV	1	70	140
	V	1	50	100

**주석:** 방화벽이 있는 건물안에 방화벽들 사이의 간격은 방화벽이 없으며 같은 내화등급이 있는 건물의 길이를 넘지 못 한다.

7.3 각 실의 문에서 (화장실, 목욕실 및 보조실 제외) 최근의 통로나 계단까지의 최고 간격은 16표에 정한다.

제16표. 각 실에서 최근의 계단까지의 간격

내화등급	허용한계의 최고의 간격 (m)	
	계단들이나 통로들 가운데에 위치한 방에서	복도 끝에 위치한 방에서
I - II	40	25
III	30	15
IV	25	12
V	20	10

7.4 다른 내화등급이 있는 건물들의 간격은 17에 정하는 간격을 똑같거나 높여야한다.

제17표. 다른 내화등급이 있는 건물들의 방화간격

첫 번째 건물의 내화등급	두 번째 건물까지의 간격, 내화등급이 있음 (m)			
	I - II	III	IV	V
I - II	6	8	10	10

III	8	8	10	10
IV	10	10	12	15
V	10	10	15	15

7.5 100개의 좌석이 있는 교실, 강의실 및 회의실에서 최소 2개의 비상구를 설계해야 한다.

7.6 100개의 좌석이 있는 교실, 강의실들의 의자가 바닥에 고정하게 해야한다.

7.7 비상구의 너비는 1.4m이상해야하며 복도의 너비가 1.5m이상해야한다.

7.8 비상구의 밖으로 향해 열려야한다.

7.9 주요 학습건물안에 타기 쉬운 자재물을 저장한 창고를 설계하지 않는다.

7.10 폐기물은 독하거나 타기 쉬운 혼합물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 한방의 최고 2개의 흡수캐비닛이 1개의 흡수시스템으로 결합할 수 있다.

## 8. 급수 - 배수에 대한 요구 및 위생기술

### 급수

8.1 직업 훈련원에서 학습과 생활을 위한 공중의 급수시스템을 “TCXD 33-1985 급수, 옥외 시스템 및 공사 및 TCVN 4513 - 1988 옥내 급수 시스템 설계수준”에 따라 설계해야한다.

8.2 급수시스템이 없는 지역에 위치한 직업 훈련원은 우물 및 간단한 여과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방화수는 자연수를 (호수, 연못) 이용하거나 물 탱크를 마련한다.

8.3 학습 및 실행을 위한 수량을 승인된 설계임무의 기술요구에 따라 한다.

**주석:** 실험용 수량을 18표에 따른 동시 사용한 수도꼭지 수량으로 계산한다.

제18표. 동시 사용한 수도꼭지

수도꼭지 총 수량 (개)	동시 사용한 수도꼭지 (%)
100이하	30
100 - 200	25
200 - 500	20
500 - 1000	15-18
1000이상	10

8.4 생활 및 실행을 위한 수량을 19표에 정한다.

제19표. 물 사용 수준

공사	사용 단위	수준 (l)
학습건물	1명 (학생, 교사), 하루안에	15 - 20
실행장	1명, 1교대	25
목욕실	1명, 하루안에	100 - 120
보조직원	1명, 근무 1 교대	25

## 배수

8.5 직업 훈련원에서 생활, 실험 및 실행을 위한 공중 배수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배수시스템을 설계할 때 TCXD 51-1984 “배수, 옥외 시스템 및 공사“ 와 TCVN 4474-1987 ”옥내 배수, 설계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8.6 실험실 및 실행장에서 폐수량 및 성분은 기술설계임무에 규정한다. 산이나 알칼리가 들어가 있는 폐수를 (산: pH < 6.5; 알칼리: pH > 8.5) 공중 배수시스템에 방출하기 전에 중화해야 한다.

## 환기

8.7 직업 훈련원에서 학습건물 및 주요 공사에 자연환기를 보증해야하며 창문을 여름의 주요 풍향에 열려야한다.

8.8 교실, 도서관, 열과 가스를 나는 실험실, 동아리에서 항상 직접환기하게 해야된다.

8.9 독가스 나는 실험실, 주조 실행장에서 기계환기를 설계한다.

**주석:**

- 1) 독가스를 나는 실험실에서 즉석 흡수하기 위해 흡수캐비닛을 마련해야한다. 흡수캐비닛은 통풍 및 사람에게 영향 미치지 않는 위치에 설계해야한다.
- 2) 실험실의 환기빈도는 독가스의 허용한계의 농도나 초과 열량으로 계산한다.

8.10 회의실, 홀, 교실, 실험실, 동아리, 독서실, 도서관, 식당, 근무실에서 천장의 선풍기를 사용한다.

**방열**

- 8.11 교실들과 생활실을 적당한 기술해법으로 방열하게 해야한다.
- 8.12 빈터에서 나무나 잔디를 심어야한다.
- 8.13 겨울이 있는 지역에서의 직업 훈련원은 교실 창문이 차가운 풍향에 향하면 유리문짝이 있어야 한다.

**9. 미장업무에 대한 요구:**

9.1 시멘트 석음, 페인트 칩 등을 포함한 공사미장업무는 사용목적에 대응하며 지방의 자재물을 사용해야한다. 미장업무는 TCVN 5674-1992 “건설마감. 공사점검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9.2 교실의 벽, 천장 및 문들이 민트해야하며 색깔이 밝고 필요없는 꾸밈을 피한다.

**9.3 바닥에 대한 요구:**

- a. 미끄럽지 않고 틈이 없으며 딱는 것은 힘들지 않게 한다.
- b. 실험실, 실행장에서 바닥은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야 하며 방수, 방습을 보증, 기계의 진동을 견딜 수 있게 해야한다.
- c. 모든방에서의 바닥은 소독하거나 더러움을 제거할 때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9.4 실험실, 실행장에서 특별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적당한 일부의 보호방법을 마련해야한다.

9.5 물을 많이 사용하거나 습기가 많고 자주 청소해야하는 방에서 (화장실을 포함) 벽을 granito나 착색시멘트로 미장하게 되거나 1.0 ~ 1.2m를 세라믹 타일로 덮여야한다.

# 베트남투자법



# 투 자 법

2001년 12월 25일 제10대 국회 제 10차 회의 결의안 No.51/2001/QH10에 따라 개정된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은 투자활동에 대해 규정한다.

## 가. 제 1 장 총 칙

### 2. 제1조 규정 범위

본 법은 경영 목적의 투자 활동,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 투자 우대 및 장려 분야, 베트남에서의 투자 및 베트남의 해외 투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방침에 대해 규정한다.

### 제2조 적용 대상

1. 베트남 영토 내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국내투자자, 외국투자자 및 베트남의 해외투자자
2. 투자활동에 관련된 개인 혹은 단체

### 3. 제3조 용어 설명

본 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투자**는 투자자가 본법 및 관련 법의 규정들에 따라 투자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각종 유형 또는 무형자산으로 자본을 출자하는 것이다.
2.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투자자본을 출자하여 투자활동 관리에 참여하는 투자형식이다.
3. **간접투자**는 투자자가 지분, 주식, 채권, 각종 유가증권, 증권투자기금의 매입 또는 기타 금융중개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통한 투자로, 투자자가 투자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투자형식이다.
4. **투자자**는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 혹은 단체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각 경제구성원에 속한 기업
  - b) 합작법에 따라 설립된 합작사, 합작사 연합
  - c) 본 법이 발효되기 전에 설립된 외국투자자본 기업
  - d) 가정기업, 개인기업
  - e) 외국의 개인 혹은 단체, 재외 베트남 교포,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
  - f)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각 단체

5. **외국투자자**는 베트남에서 자본을 출자하여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외국의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외국투자자본기업**은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기업과 외국투자자가 지분의 매입, 합병, 인수한 베트남 기업으로 구성된다.
7. **투자활동**은 투자 준비, 투자 진행 및 투자프로젝트 관리로 이루어지는 투자 과정에서의 투자자의 활동을 말한다.
8. **투자프로젝트**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지역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중장기 자본 투자 제안서 모음을 말한다.
9. **투자자본**은 직접 또는 간접 투자형식에 따른 투자활동들을 실행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금과 기타 자산들을 말한다.
10. **국가자본**은 국가 예산에서 출현된 개발투자자본,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자본, 국가개발 투자금융 및 기타 국가투자자본을 말한다.
11. **투자주**는 자본을 소유한 개인 및 단체 혹은 자본 소유주를 대리한 자 및 자본을 차입한 자, 투자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자본을 직접 사용,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2. **외국투자**는 외국투자자가 합법적인 자금과 기타 자산을 출자하여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국내투자**는 국내 투자자가 합법적인 자금과 기타 자산을 출자하여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해외투자**는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베트남에서 외국으로 자금과 기타 자산을 반출하여 투자활동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조건부 투자분야**는 법률이 규정하는 구체적 조건들에 근거하여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16. **경영협력계약**(이하 BCC계약으로 칭함)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형식을 말한다.
17. **건설-운영-양도계약**(이하 BOT계약으로 칭함)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투자자가 특정한 기간 내에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경영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무상으로 베트남에 양도하는 투자 형식을 말한다.
18. **건설-양도-운영계약**(이하 BTO 계약으로 칭함)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시간 동안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투자 형식을 말한다.
19. **건설-양도 계약**(이하 BT라 칭함)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건설이 완료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주거나, BT계약서상의 합의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비용을 계산하여 주는 투자형식을 말한다.

20. **공업단지**는 공업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거나 공업생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확정된 경계가 있는 특정지역으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이다. 21. **수출가공단지**는 수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수출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이행하는 확정된 지리적 경계가 있는 특정지역으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이다.
22. **첨단기술단지**는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 및 응용, 첨단기술 기업 양성, 첨단기술 인력 교육, 첨단기술 제품의 생산 및 경영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확정된 지리적 경계가 있는 특정지역으로, 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을 말한다.
23. **경제특구**는 투자자들의 투자 및 경영에 특별히 유리한 여건이 주어진 독립된 경제 공간으로 확정된 지리적 경계가 있으며, 정부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을 말한다.

#### 4. 제4조 투자 관련 정책

1. 투자자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분야, 산업, 무역에 투자할 수 있고, 베트남 법률에 따라 투자활동에 대한 자율권과 독립적인 결정권을 갖는다.
2. 국가는 모든 경제 분야의 모든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 및 외국투자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투자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3. 국가는 투자자의 자산, 투자 자본, 소득, 법적 권리, 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투자활동의 장기적 존재 및 발전을 인정한다.
4. 국가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투자관련 국제 조약들을 이행한다.
5. 국가는 투자 우대 분야 및 우대 지역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우대정책을 시행한다.

#### 5. 제5조 투자법, 국제조약, 외국법률, 국제투자 관행 적용

1.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은 본법의 규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2.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투자활동의 경우 해당 법의 규정들을 적용한다.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 조약에서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시에는 해당 국제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외국 투자활동에 대해서, 외국 법률과 국제 투자 관습이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각 측은 외국법률 및 국제투자 관행의 적용에 대해 계약서 상에서 합의할 수 있다.

### 가. 제 2 장 투자 보장

#### 6. 제6조 자본과 자산에 대한 보장

1. 투자자의 합법적인 자산과 투자 자본은 국유화되지 않으며 행정조치로 압류되지 않는다.

2. 국방, 안보,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목적으로 국가가 투자자의 자산을 강제적으로 획득하거나 징발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시점의 시장가격에 따라 보상받거나 피해를 배상 받는다. 보상 또는 배상 지급은 투자자의 합법적인 이자를 보장하고 투자자간 차별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지불할 어떠한 보상 또는 배상은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통화로 이루어질 것이며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4. 강제적인 인수와 사용의 절차 및 조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제7조 지적재산권 보호

국가는 투자활동 기간 중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의 기술이전에 관한 투자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 8. 제8조 시장 개방 및 무역에 관한 투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들의 규정에 따르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다음 규정들의 이행을 보장한다.

1. 국제조약에서 약속한 일정에 따른 투자 시장의 개방

2. 투자자들에게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 요건들

a) 베트남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우선적 구매 또는 사용; 특정 국내 제조사 또는 서비스 제공사로부터의 의무적 구매

b) 상품 또는 서비스 수출에 대한 일정 비율 유지, 국내에서 생산, 공급되거나 수출되는 상품의 수량, 가치, 종류 및 서비스에 대한 제한

c) 수출 상품의 수량 및 가치에 상응하는 수량 및 가치의 상품 수입; 수입에 필요한 외환 수요를 맞추기 위한 상품 수출을 통한 외환 균형 유지

d) 상품 생산시 국산화에 대한 일정 비율 유지

e) 베트남 내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의 일정 수준 및 가치 달성

f) 국내 또는 외국의 특정 장소에서의 상품 공급 또는 서비스 제공

g) 특정 장소에의 본사 설립

#### 9. 제9조 자본과 자산 해외 송금

1.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정부의 재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에는, 다음의 항목들에 대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a) 경영활동에 따른 이윤

b) 기술, 서비스 그리고 지적재산권에 따라 받은 보수

c) 해외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d) 투자 자본 및 투자 청산 후의 자금

e)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기타 현금 및 자산

2.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각종 투자프로젝트를 위해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베트남 정부에 재

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후에는 자신의 합법적인 소득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3. 상기 자금의 송금은 투자자가 선택한 상업은행(시중은행)이 제시한 환율에 따른 국제통용 통화로 이루어진다.
4. 투자활동 관련 자금의 해외 송금 절차는 외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10. 제10조 가격, 수수료 및 요금의 동일 적용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는 국가가 관리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한 가격, 수수료 및 요금을 적용 받는다.

#### 11. 제11조 법률 및 정책 변화의 경우 투자 보장

1. 새로운 법률, 정책에서 규정된 혜택과 인센티브가 투자자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혜택과 인센티브 보다 더 나은 경우, 투자자는 그 새로운 법률 또는 정책이 발효되는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법률, 정책에 따른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2. 새로운 법률,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기존에 투자자가 누리고 있던 합법적인 혜택에 대한 침해가 새로운 법률 또는 정책의 발효일 보다 먼저 발생한다면, 투자자는 투자증명서 상에 규정된 우대혜택(인센티브)들을 보장받을 수 있거나, 다음의 조치들 중 하나, 일부 또는 전체에 의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 a) 혜택 및 인센티브의 계속적 향유
  - b) 과세 소득의 손실 부분 공제
  - c) 투자프로젝트 운영 목표의 변경
  - d) 필요한 경우 보상 심사 실시
3. 법 규정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조약의 이행 약속에 근거하여, 법과 정책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투자자의 이익 침해에 대해 정부는 투자자의 이익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한다.

#### 12. 제12조 분쟁 해결

1. 베트남에서의 투자활동과 관련된 분쟁은 법의 규정에 따라 협상, 화해, 중재 또는 법원에서 해결한다.
2.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과 관련하여 국내 기업들 간 혹은 국내 기업과 베트남 국가기관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베트남 중재위원회 혹은 베트남 법원에서 이를 해결한다.
3. 분쟁의 한 당사자가 외국 투자자이거나 외국투자자본기업인 경우, 또는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법원 혹은 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한다.
  - a) 베트남 법원
  - b) 베트남 중재기관
  - c) 외국 중재기관

- d) 국제 중재기관
  - e) 양측의 합의로 설치된 중재기관
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에서 특정한 조항이 있는 경우 혹은 외국 투자자와 베트남 국가기관 대표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상 특정한 조항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영토에서 이루어진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자와 베트남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은 베트남 중재기관 또는 베트남 법원에서 해결한다.

가. 제 3 장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13. 제13조 투자 및 경영의 자율권

투자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투자 분야, 투자 형식, 자본 동원 방식, 투자 지역, 투자 규모, 투자 파트너 및 프로젝트의 운영 기한에 대한 선택권
2. 개 혹은 여러 분야와 직종에 대한 사업자 등록, 법 규정에 다른 기업 설립, 등록을 마친 투자 및 경영 활동에 대한 결정권

14. 제14조 투자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사용권

투자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각종 금융, 지원기금에 대한 접근 및 사용, 법 규정에 따른 토지 및 천연자원 사용에 대한 동등한 권리
2.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국내외로부터의 기계, 설비의 임대 혹은 구매
3. 국내 인력의 고용, 경영상 혹은 생산에 필요에 따른 외국 관리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15. 제15조 투자 활동과 관련한 수출입, 마케팅 및 광고, 가공 및 재가공 권리

투자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투자활동을 위한 장비, 기계, 원료, 자재, 상품에 대한 직접 수입 및 위탁 수입, 또는 상품의 직접 혹은 위탁 수출 및 상품의 판매 권한
2. 자신의 상품, 서비스에 대한 광고 및 마케팅 권한, 광고 사업권을 가진 단체와 직접적 광고 계약 권한
3. 상품의 가공 및 재가공, 가공 및 재가공에 대한 국내에서의 발주, 무역법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의 가공 발주 권한

16. 제16조 외국환 매입권

1. 투자자는 외환관리법상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 업무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서 외환 거

래, 자본 거래 및 기타 거래를 위해 외국환을 매입할 수 있다.

2. 정부는 에너지, 교통 기반시설, 폐기물처리 분야의 중요한 프로젝트들의 외환 균형을 보장하거나 지원한다.

#### 제17조 자본 혹은 투자프로젝트의 양도 또는 조정 권리

1. 투자자는 자본 혹은 투자프로젝트의 양도 또는 조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만일 양도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자는 법률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자본 및 투자프로젝트의 양도 및 조정에 대한 특정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조건들을 규정한다.

#### 제18조 토지 사용권 및 토지 관련 자산에 대한 담보 설정

투자프로젝트를 보유한 투자자나 기업은 투자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자본을 차입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이 허가된 금융기관에 토지사용권과 토지 관련 자산에 대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17. 제19조 투자자의 기타 권리

투자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자 우대혜택을 받을 권리
2. 차별대우 금지 원칙에 따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사용 권리
3. 투자 관련 정책, 법률 자료, 투자활동 관련 국가경제 데이터, 각 경제 분야에 대한 데이터, 투자활동 관련 기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투자 관련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4. 법의 규정에 따른 투자에 대하여 개인 혹은 조직의 법률 침해 행위에 대한 청원, 고소 또는 제소 권리
5.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 행사

#### 18. 제20조 투자자의 의무

1. 투자 절차 관련 법 규정 준수, 투자증명서에 규정된 내용 및 투자 등록 내용과 일치하는 투자활동의 이행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 관련 서류, 투자 등록 내용의 성실성, 정확성 및 각종 인증 서류들에 대한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법이 규정하는 재정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
3. 회계, 감사, 통계에 대한 법 규정의 준수
4. 법에 규정된 보험, 노동자에 대한 의무 이행, 노동자의 인품과 명예 존중,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 보장
5. 노동자의 정치사회단체 설립, 참여에 대한 존중 및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

6. 환경보호법의 규정 준수
7.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

#### 가. 제 4 장 투자 형식

##### 19. 제21조 직접투자 형식

1. 국내 또는 외국투자자의 100% 자본 출자로 경제단체 설립
2.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 사이의 합작 경제단체 설립
  - 3 CC,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
4. 경영개발투자
  5. 지분의 매입 혹은 자본 출자를 통해 투자활동 관리 참여
  6. 기업의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7. 기타 형태의 직접적 투자

##### 20. 제22조 경제단체 설립 투자

1. 본 법 21조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 형식들에 근거하여,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경제단체들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 a) 기업법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하는 기업
  - b) 금융단체, 보험사, 투자기금, 법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기타 금융단체
  - c) 의료,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및 기타 수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시설
  - d) 법 규정에 따른 기타 경제 단체들
2. 본 조 1항에 규정된 경제단체들 이외에, 국내 투자자는 합작법에 따라 조직, 활동하는 합작, 합작사 연합의 설립과 법률 규정에 따른 가정기업 설립에 투자할 수 있다.

##### 21. 제23조 계약에 따른 투자

1. 투자자는 이윤, 생산품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협력을 위해 BCC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경영협력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력 대상 및 내용, 경영 기간, 각 측의 권리, 의무, 책임, 각 측의 협력 관계, 관리조직에 대해서는 각 측이 협의하여 계약서 상에 명기한다.  
 유전의 탐사, 조사, 개발을 위한 BCC 계약 및 일부 천연자원에 대한 생산물 분배 형식의 계약은 본법 및 기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투자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BOT, BTO, BT 계약을 체결하여 교통, 전력의 생산과 경영, 배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및 기타 수상이 정하는 분야들에서 기반시설의 신축, 확장, 현대화 프로젝트 및 기반시설 운영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  
 정부는 BOT, BTO, BT 계약 형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 분야, 투자프로젝트 진행 조

건, 절차, 수속, 투자프로젝트 진행 방식 및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각측의 권리,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 제24조 경영 개발 투자

투자자는 다음 형식들을 통해 경영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1. 경영 규모의 확대, 생산 및 경영 능력 향상
2. 기술 혁신, 생산품의 품질 향상, 환경 오염 축소 제25조 자본 출자, 지분 매입 및 인수 합병 1. 투자자는 베트남 소재 기업 및 지사에 자본을 출자하거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일부 분야, 부문, 업종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자본 출자, 지분 매입 비율은 정부가 정한다.
2. 투자자는 기업 및 지사를 인수, 합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기업 및 지사의 인수, 합병에 대한 조건은 본법, 경쟁에 관한 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26조 간접투자

1. 다음의 형식들에 따라 투자자들은 베트남에서 간접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 a) 지분의 매입, 주식의 매입,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권의 매입을 통해
  - b) 증권 투자 기금을 통해
  - c) 금융중개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통해
2. 간접투자는 개인 혹은 단체의 지분, 주식, 채권 및 기타 각종 유가증권의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간접투자 활동 진행 수속은 증권법 및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

### 가. 제 5 장 투자 분야, 지역, 투자 우대 및 지원

#### 1) 제 1 절 투자 분야 및 지역

#### 제27조 투자 우대 분야

1. 소재,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 첨단기술 상품 생산, 생명공학, 정보통신, 기계 제조 분야
2. 농림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 제염, 새로운 인공 종(種)의 개발, 새로운 수종(樹種) 및 가축 종자의 개발
3. 단 및 현대적 기술 사용, 환경생태 보호, 첨단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4.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5. 대규모 프로젝트, 중요성을 띤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및 개발 분야
6.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발전 사업 분야
7. 전통 분야 및 업종의 개발
8. 기타 장려가 필요한 생산, 서비스 분야

#### 22. 제28조 투자 우대 지역

1.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
2.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 제29조 조건부 투자 분야

1. 조건부 투자분야의 구성;
  - a) 국가 안보, 국방, 사회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b) 금융 및 은행 분야
  - c)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d)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e)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f) 부동산 사업
  - g)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h)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i) 법률에 규정된 일부 기타 분야
2. 본 조의 1항에 규정된 분야들 이외에,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들에서 이행 약속한 조항에 속한 투자 분야들이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조건부 투자 분야에 추가로 포함된다.
3. 외국 투자자본 기업이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분야들에 이미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활동 과정 중에 이미 투자한 분야가 조건부 투자 분야의 목록에 새로이 포함될 경우, 투자자는 그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4. 베트남 투자자들이 51% 이상의 설립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 투자자와 같은 투자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5. 각 시기별 경제사회 개발 요구에 근거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국제 조약에서 이행을 약속한 조항들과 부합되도록, 정부는 외국 투자에 대한 조건부 투자 분야 목록과 경제단체의 설립, 투자 형식 관련 각 조건들 및 일부 분야의 시장 개방에 대해 규정한다.

#### 23. 제30조 투자 금지 분야

1. 국가의 안보, 국방 및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프로젝트
2. 베트남의 교육, 문화, 도덕, 미풍약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프로젝트
3.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거나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하는 프로젝트
4.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반입한 유독성 폐기물 프로젝트, 국제 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독성 화학 물질 혹은 독극물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 24. 제31조 우대 투자 분야 및 지역, 조건부 투자 분야에 대한 목록 공포

1. 각 시기별 경제사회 개발 방향 및 계획,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국제 조약에서 이행을 약속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정부는 투자우대 분야, 투자우대 지역, 조건부 투자 분야, 투자금지 분야의 목록을 공포 혹은 개정, 보완한다.

2. 각 부(部) 및 부급 기관, 성(省)인민위원회, 중앙 직할시(市) 인민위원회 (이하 성급 인민위원회라 칭함)는 법률의 규정을 벗어난 투자 금지 분야, 조건부 투자 분야, 투자 우대 분야 관련 규정을 확정, 공포할 수 없다.

## 1) 제 2 절 투자 우대

### 25. 제32조 투자 우대 대상 및 조건

1. 본 법 제27조와 28조에 규정된 투자 우대지역 및 분야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하는 투자자는 본법과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 본 조의 1항에 규정된 투자 우대 사항은 새로운 투자프로젝트, 규모 확장, 경영 및 생산 능력 향상, 기술 혁신, 상품 품질 향상, 환경 오염 축소 관련 투자프로젝트에도 적용된다.

### 제3조 세금 우대

1. 본 법의 32조에서 규정한 대상에 속한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우대세율 적용 혜택을 받으며, 우대 세율의 적용 기간, 면세 기간, 세금 감면 기간은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경제단체가 법인세를 충실히 납부하였다면, 투자자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기 경제단체의 지분 매입, 자본 출자로부터의 배당된 수익에 대해 우대 세율 혜택을 받는다.
3.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투자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설비, 자재, 운송수단,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된다.
4. 투자 우대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들에서 기술이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다.

### 26. 제34조 손실 이월

투자자는 세관의 세금 결산 결과,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손실의 이월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27. 제35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투자우대 분야 및 지역에 속한 투자프로젝트와 파급 효과가 큰 경영프로젝트는 고정자산에 대해 높은 감가상각률을 적용 받으며, 고정자산 감가상각 제도에 따른 감가상각률 보다 최대 2배의 감가상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8. 제36조 토지 사용에 대한 우대

1. 투자프로젝트의 토지 사용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투자된 자본이 큰 반면 자본 회수가 늦은 프로젝트,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되거나 특별히 낙후된 지역에서 실행된 프로젝트에서 보다 장기적인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7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토지를 교부, 임대할 수 있다.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투자자가 토지법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계속적인 사용을 원한다면, 관할 국가기관은 확정된 토지사용 개발 계획에 맞추어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해 연장을 검토한다.

2. 투자우대 분야 혹은 투자우대 지역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토지 임대료,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세를 세법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면제, 감면 받을 수 있다.

29. 제37조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우대

각 시기별 경제사회 발전 상황 및 본법에 규정된 원칙들에 근거하여, 정부는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우대 혜택들을 규정한다.

제38조 투자우대 시행 수속

1. 본 법의 제45조에 규정된 투자 등록이 필요한 프로젝트 및 투자 등록이 불필요한 프로젝트에 속하는 국내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자는 자신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투자우대 조건 및 사항들을 검토, 확인하고 관할 국가기관에 투자 우대 혜택 신청을 할 수 있다

투자자가 투자우대 사항에 대 인증을 요구할 경우 투자등록 수속을 밟아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투자증명서에 우대사항을 명기하도록 한다.

2. 본법의 47, 48, 49조에 규정된 투자심사 분야에 속하며,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우대사항을 투자증명서에 명기한다.
3.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외국 투자자본을 가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투자증명서에 투자 우대 사항을 명기한다.

30. 제39조 우대 혜택 확대 적용의 경우

특별히 중요한 어느 분야 혹은 특정한 지역, 경제특구의 개발에 대한 장려가 필요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법에 규정된 투자 우대 정책들 이외의 기타 투자 우대 혜택들에 대한 결정을 한다.

제 3 절 투자지원

31. 제40조 기술이전 지원

1. 국가는 기술이전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투자프로젝트들을 진행하기 위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기술로 자본을 출자하는 각 측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이를 위한 원활한 여건을 조성한다.
2. 국가는 선진기술 및 원천기술, 신상품의 생산, 상품의 생산성·경쟁력·품질의 향상과 원료, 연료, 에너지, 천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의 베트남 이전을 장려한다.

#### 제1조 교육 지원

1. 국가는 국내외 개인과 단체의 자본 출자,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인력교육지원기금의 설립을 장려한다.  
기업의 교육경비는 합리적 경비로 계산되고 법인세 산출시 근거로 활용된다.
2. 국가는 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을 통해 기업들의 노동자 교육활동의 예산을 지원한다.

#### 제42조 투자관련 서비스 장려 및 지원

국가는 다음과 같은 투자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인 혹은 단체들을 지원, 장려한다.

1. 투자 자문, 관리 자문
2. 지적재산권 자문, 기술 이전 자문
3. 직업 교육, 기술 교육, 관리 노하우 교육
4.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시장에 대한 정보, 과학기술 정보, 기타 기술 및 경제, 사회 정보의 공급
5. 마케팅, 투자 및 무역 촉진
6. 사회단체, 사회-직업 단체의 설립, 참여
7.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 실험 센터의 설립

#### 32. 제43조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1. 정부에 의해 승인된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관련 종합개발 계획에 근거하여, 각 부, 각 부급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역 내의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외부 지역에 기술 기반시설과 사회기반 시설망을 건설한다.
2.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과 경제, 사회가 특별히 어려운 지역은 국가가 일부 자본을 지방에 지원하여, 정부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투자자와 함께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내의 기반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가는 국가 예산 및 우대금융에서 출현한 자본으로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내의 기술 기반 시설과 사회기반 시설망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의 기반시설 개발투자를 위해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일부 조치를 강구한다.

#### 33. 제44조 입국 및 출국 비자

베트남에서 상시적으로 투자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 투자자, 전문가, 기술자와 가

죽은 출입국을 위한 복수 비자를 발급하며, 이때 비자의 최장 발급기간은 5년이다.

가. 제 6 장 직접투자활동

1) 제 1 절 투자수속

34. 제45조 국내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등록 수속

1. 투자자본 규모 150억 베트남동(VDN) 이하로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는 투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2. 자자본 규모 150억 베트남동 이상 3,000억 베트남동 이하로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성급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투자증명서를 발급한다.
3. 투자등록 내용의 구성;
  - a) 투자자의 법적 자격
  - b)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및 진행 장소
  - c) 투자 자본, 프로젝트 시행 계획
  - d) 토지 사용 면적 및 환경보호에 대한 약속
  - e) 투자 우대건의 사항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4.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이전에 투자등록을 해야 한다

35. 제46조 외국 투자 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등록 수속

1. 외국 투자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로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베트남동 이하,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성급 투자관리 국가기관에서 투자등록 수속을 진행하여 투자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2. 투자등록 서류의 구성
  - a) 본법의 45조 3항에 규정된 서류 및 내용
  - b)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고서
  - c) 합작 계약서 혹은 BCC 계약서, 회사 정관 (있는 경우)
3. 성급 투자관리 국가기관은 충분한 양식을 갖춘 투자등록 관련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증명서를 발급한다.

36. 제47조 투자프로젝트의 심사

1.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베트남동 이상인 국내의 투자프로젝트 혹은 외국 투자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와,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한 프로젝트는 투자심사 수속을 진행하여 투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투자심사는 충분한 양식을 갖춘 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단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는 있으나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가적 중요성을 지니는 프로젝트는 국회가 프로젝트의 투자 방향 및 기준을 결정하며, 정부는 투자프로젝트 심사 수속, 절차 및 투자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4. 정부는 투자증명서 심사 및 발급 관련 권한 위임에 대해 규정한다.

37. 제48조 투자자본 규모 3,000억 베트남동 이상이며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38. 않는 프로젝트 심사 절차

1. 투자 심사 서류

a) 투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b) 투자자의 법적 자격 확인서

c) 투자자의 재정 능력 보고서

d) 프로젝트의 목적, 투자 장소, 투자 규모, 투자 자본, 투자 이행 계획, 기술설명서, 환경설명서로 구성된 경제기술 설명서

e) 외국투자자는 위 항목의 서류와 더불어 합작계약서 또는 BCC 계약서, 기업정관 (있을 경우) 등이 필요하다.

2. 심사 내용

- a) 기술 기반시설 계획, 토지사용 개발 계획, 건설개발 계획, 광산 및 기타 자연자원 이용 개발 계획과의 적합성    b) 토지사용 면적
- c) 프로젝트 이행 계획
- d) 환경문제 관련 해결책

39. 제49조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한 투자프로젝트의 심사 절차

1. 투자자본 3,000억 베트남동 이하의 조건부 프로젝트 심사 절차
  - a) 투자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설명서, 국내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본법 45조 3항에 규정된 투자등록 관련 서류, 외국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의 경우 본법 46조 2항에 규정된 투자등록 관련 서류
  - b) 투자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 하는 각 조건들에 대한 심사
2. 투자자본 3,000억 베트남동 이상의 조건부 프로젝트 심사 절차
  - a) 투자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설명서, 본법 48조 1항에 규정된 심사 서류
  - b) 투자프로젝트가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 및 본법의 48조 2항에 규정된 내용 심사

40. 제50조 경제단체 설립 관련 투자 절차

1. 베트남에 처음 투자하는 외국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투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투자관리 국가기관에서 투자 심사 또는 투자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투자증명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2. 베트남에서 외국투자자본이 출자되어 이미 설립된 경제단체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추가로 투자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경제단체를 설립할 필요 없이 해당 프로젝트 실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경제단체의 설립과 관련된 투자프로젝트를 가진 국내투자자는 기업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며, 본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절차를 진행한다.

#### 41. 제51조 투자프로젝트의 변경

1.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장소, 형식, 자본, 기간 관련 투자프로젝트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a) 투자등록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독립적으로 변경 내용을 결정하고, 변경 결정이 있을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성급 투자관리 국가기관에 등록한다.

b) 투자심사 대상에 속한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해당 관할 투자관리 국가기관별로 투자 프로젝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한다.

투자프로젝트 변경 신청서는 프로젝트 실행 상황, 변경 사유, 기(既) 심사 내용과 변경 신청 내용상의 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 투자관리 국가기관은 충분한 양식을 구비한 서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증명 변경에 대해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3. 투자프로젝트의 변경은 투자증명서의 내용을 변경,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된다.

#### 제52조 외국투자 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의 활동 기한

외국 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의 활동 기한은 프로젝트 활동 내용에 부합하되,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프로젝트 활동 기한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으나,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투자증명서 상에 프로젝트의 활동 기한을 명기한다.

42. 제53조 프로젝트 수립, 투자 결정, 투자 심사에 대한 책임 1. 투자자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독립적 결정을 하며, 투자 등록 내용 및 투자 관련 서류의 성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등록된 투자 관련 약속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진다.
2. 프로젝트의 수립, 투자 결정, 검토, 투자 증명 관련 권리를 가진 개인 또는 단체는 자신의 제안과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제54조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 선정 개발 계획의 시행이 확정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둘 이상의 투자자가 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 입찰법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프로젝트 실행 투자자를 선정한다.

## 제 2 절 투자프로젝트의 진행

### 43. 제55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토지 임대, 교부 및 인수

1. 토지 사용의 요구가 있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시 지역 관할 토지 관리 기관과 접촉하여 토지 교부, 임대 절차를 진행한다.  
토지의 교부, 임대 관련 절차와 수속은 토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2. 투자자가 토지를 이미 교부 받았으나 규정된 시한 내에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고 투자증명서도 회수한다.

### 44. 제56조 건설 부지의 준비

1.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의 교부 혹은 투자자에 토지를 임대하기 전에 관할 국가기관이 토지의 수용, 보상 및 부지정리의 책임을 진다.  
토지의 수용, 보상 및 부지 정리는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2. 가가 토지를 교부, 임대하여 특정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투자자가 재임대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력으로 보상 및 부지 정리를 진행해야 한다.  
투자자가 토지 사용자와 보상 및 부지 정리 방안에 이미 합의한 바 있으나 토지 사용자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 프로젝트 소재 법적 해결권이 있는 인민위원회는 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부지를 교부하기 전에 부지 정리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관할 국가기관이 이미 승인한 토지사용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별도로 토지 수용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투자자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양도 받거나, 토지 사용권의 임대가 가능하고, 개인 또는 세대 또는 경제단

체의 토지 사용권을 자본을 출자 받을 수 있다.

45. 제57조 자연자원, 광산의 개발 및 사용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  
자연자원, 광산의 개발 및 사용 관련 투자프로젝트는 자연자원, 광산법 규정을 따른다.

제58조 건설을 포함하는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1. 건설을 포함하는 투자프로젝트는 기술 설계, 예산, 총 예산에 대한 수립, 심사 및 승인은 건축법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2. 투자자는 환경 보호 및 시설물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46. 제59조 기계, 설비의 감정

투자자는 스스로 투자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고정자산으로 납입되는 수입 기계, 설비의 가치 및 품질을 감정할 책임을 진다. 제60조 베트남 시장에서 상품의 소비(판매) 1. 투자자는 직접적으로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베트남에서 상품을 소비(판매)할 수 있고, 베트남 내의 동종의 상품을 생산하는 개인 혹은 단체들의 상품을 소비(판매)하는 대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투자자는 독립적으로 자신이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만일 국가가 가격을 관리하는 상품과 서비스인 경우, 판매 가격은 국가 관계 기관이 공포하는 가격 체계에 따른다.

47. 제61조 외환계좌, 베트남동(VND) 계좌

1.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활동 허가 받은 은행에서 외환 계좌 및 베트남동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베트남 국가은행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소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2. 국내 은행 및 외국 은행에서 계좌의 개설, 사용, 폐쇄는 베트남 국가은행의 규정을 따른다.

제62조 보험

투자자는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보험 사업자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산 보험과 기타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8. 제63조 관리 단체에 대한 용역

1. 투자자는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관리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들에 대해 투자 활동 및 경영활동 관리를 관리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투자자는 계약서 내에 명기된 관리 활동 제반 문제들과 연관된 관리업체의 모든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3. 관리업체는 투자 관리와 경영활동 관리에 대해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며, 계약서 상에 규정된 자신의 권리 및 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베트남 법률의 준수해야 하고, 계약서 범위 밖의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49. 제64조 투자프로젝트의 일시 정지, 투자증명서의 회수

1.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를 일시 중지하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투자관리 국가기관에 통보하여 프로젝트 일시 정지 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의 면제, 감면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2. 투자증명서가 발급된 지 1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한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능력이 없다면 투자증명서를 회수한다.

#### 제65조 투자프로젝트 활동의 종결

투자프로젝트 활동의 종결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따라 이행된다.

1. 투자증명서 상 명기된 활동 기한이 종결된 경우
2. 계약서, 기업정관에 명기된 활동 종결의 조건 혹은 투자 이행 계획에 관한 각 투자자들 사이의 합의, 약속에 따라 종결된 경우
3. 투자자의 결정으로 프로젝트를 종결하는 경우
4. 법률 위반으로 인한 투자관리 국가기관의 결정 혹은 법원, 중재기관의 결정, 판결에 따른 활동 종결의 경우

#### 50. 제66조 중요한 일부 프로젝트와 시설에 대한 국가의 보증

본법에 규정된 원칙들에 의거하여, 정부는 중요한 투자프로젝트들을 선정하고 차입자본, 원자재의 공급, 상품의 소비(판매), 지불, 프로젝트 관련 각종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대한 보증을 결정하며, 보증을 담당할 관할 국가기관을 지정한다.

#### 제 7 장 국가자본의 투자 및 경영(운영)

#### 51. 제67조 국가자본의 투자 및 운영 관리

1. 국가자본의 투자 및 운영은 시기별 경제사회 개발 계획 및 전략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국가자본의 투자 및 운영은 반드시 사용 목적이 분명하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자본 및 투자프로젝트 종류별로 적합한 관리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고, 투자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3. 법 규정에 따라 국가자본을 투자 또는 기타 경제 구성원들과의 합자, 제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국가기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국가는 투자 단계별로 각 기관, 단체 및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시키며, 국

- 가자본 사용 투자 및 운용에 대한 국가 관리의 권리 위임 및 업무 분장을 시행한다.
5. 투자는 법률 및 이행 진도 계획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투자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하며, 낭비, 비공개, 손실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

#### 제68조 경제단체에 대한 국가자본의 투자 및 경영(운영)

- 1 가 예산에서 출현한 투자자본의 경제단체에 대한 출자는 국가자본 투자운영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2. 국가자본 투자운영회사는 국영기업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며, 1인의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전환한 국영기업 혹은 신설 주식회사에서 국가자본의 소유권을 대리한다.
3. 정부는 국가자본 투자운영회사의 활동, 조직을 규정한다.

#### 52. 제69조 공익 활동에 대한 국가자본의 투자

1. 국가는 계획의 배정, 상품의 발주 또는 입찰 실시를 통해 공익 상품, 서비스의 공급 및 생산에 투자한다.
2. 정부가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 구성원에 속한 모든 개인, 단체는 공익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 생산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각종 공익 활동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공익 상품 및 공익 서비스 관련 목록을 작성, 공포한다.

#### 제70조 국가 개발 투자 금융자본을 통한 투자

1. 국가개발 투자금융 자본이 사용되는 대상은 경제사회적으로 높은 효과가 기대되고, 대출 자본 회수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경제 프로그램 또는 일부 중요한 분야와 부문에 속하는 투자프로젝트들이다.  
국가개발 투자금융자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재정 방안, 차입 자본 상환 방안에 대해 대출 담당기관의 심사 및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정부는 국가의 개발투자 금융자본으로부터 지원되는 투자지원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시기별 금융지원 수혜 대상 및 대출 조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53. 제71조 국가자본이 사용되는 투자프로젝트의 관리를 위임 받은 개인, 단체 국가자본의 소유 대리권을 위임 받은 개인과 단체는 자본의 효과적 사용, 자본의 보전 및 증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가자본의 소유 대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업에서 국가의 지분을 대리하는 개인, 단체는 국가자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활동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54. 제72조 투자프로젝트 내용의 변경, 연기, 정지, 파기

1. 투자프로젝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주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변경 사유 및 변경 사항을 밝히고 관할 국가기관에 보고하여 이에 대해 심사, 결정하도록 하며, 만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경우 투자주는 반드시 프로젝트 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문서로 프로젝트 내용 변경 승인을 받은 이후에 투자주는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검토하고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 신청을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 투자프로젝트는 연기, 정지, 파기될 수 있다. a) 투자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였으나 투자주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고, 관할 국가기관이 문서로 승인하지 않은 경우  
b) 프로젝트 목적을 변경하였으나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문서상으로 통보 받지 못한 경우
4. 투자프로젝트를 연기, 정지 혹은 파기를 결정하는 관할 국가기관은 해당 결정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밝혀야 하며,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55. 제73조 프로젝트 진행 입찰자의 선정

국가의 자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입찰법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프로젝트의 자문, 물품의 구매, 건설을 담당할 입찰자를 선정해야 한다.

가. 제 8 장 해외투자

56. 제74조 해외투자

1. 베트남 법 및 투자국의 법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해외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2. 국가는 해외투자 활동에 원활한 여건을 조성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따라 해외 베트남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한다.
3. 모든 경제구성원에 대한 평등, 동등 대우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는 각종 금융자본들에 대한 투자자의 원활한 접근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 특별장려 분야에 속한 해외투자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자본 차입을 보증한다.

57. 제75조 해외투자 장려 분야, 투자 금지 분야

1. 국가는 노동자 송출 수요가 큰 분야, 베트남 전통 분야와 업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 투자국의 자연자원개발 분야, 수출 가능성 및 외화 획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베트남의 경제단체들의 해외투자를 장려한다.
2. 국가기밀, 안보, 국방, 역사, 문화, 미풍양속을 현저히 침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는 해외투자를 허가하지 않는다.

## 제6조 해외투자 조건

1. 직접투자 형식으로 해외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 a) 해외 투자프로젝트
  - b) 국가에 대한 재정의무의 충실한 이행
  - c)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발급한 투자증명서
2. 간접투자 형식에 따른 해외투자는 은행법, 증권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들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3. 국가자본을 사용하여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자본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58. 제77조 해외투자자의 권리

1. 투자국 및 투자지역의 관할 국가기관으로부터 투자프로젝트를 승인 받은 후, 투자자는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자금 및 합법적인 자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투자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2.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 우대 사항 관련 혜택을 받는다
3. 투자자는 자신이 해외에 설립한 기업 및 생산시설에서 근무할 베트남 노동자를 선발·채용할 수 있다.

### 59. 제78조 해외투자자의 의무

1. 투자국의 법률 준수
2. 해외투자자로 발생한 소득 및 이익의 법 규정에 따른 본국 송금
3. 해외투자 활동 및 재정에 관한 정기보고 이행
4. 본국에 대한 재정의무의 충실한 이행
5. 해외투자 종결시 법 규정에 따라 모든 자본 및 합법적 자산의 본국 이전
6. 투자자가 본 조의 2항과 5항에 규정된 해외투자로부터 발생한 각종 소득, 이윤, 자산, 자본의 본국 이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관할 국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60. 제79조 해외투자 수속

1. 해외투자의 구성
  - a) 투자자본 규모 150억 베트남 동 이하의 프로젝트로 투자등록 프로젝트
  - b) 투자자본 규모 150억 베트남 동 이상의 프로젝트로 투자심사 프로젝트
2. 투자 등록 및 투자 심사 신청
  - a) 투자 등록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

수속을 진행하여 투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b) 투자 심사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자는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증명서 발급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해외투자 관련 장려, 금지, 제한 분야, 투자 조건, 해외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우대 정책 및 해외투자의 절차, 수속, 관리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가. 제 9 장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 제80조 투자에 대한 국가관리 내용

1. 개발 투자에 관한 전략, 계획,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지도
2. 투자 관련 법률 규범 문건들의 공포 및 이행
3.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투자자에 대한 지원 및 안내, 투자자의 요구 사항 및 장애사항 해결
4. 투자증명서 발급 및 회수
5. 투자활동 안내, 평가, 감독, 감사 및 청원, 고소의 해결, 투자활동에 대한 포상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리
6. 투자활동과 관련된 인력자원 교육 활동
7. 투자 촉진 활동

##### 제1조 투자 관련 국가 관리의 책임

1. 정부는 투자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를 국가 전체 범위에서 통일 적용한다.
2. 계획투자부는 정부의 투자활동 관련 국가관리 업무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각 부처, 부급 기관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의 범위 내에서 투자관련 국가관리 담당 업무를 책임지고 실행한다. 4. 각급 인민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투자관련 국가 관리의 책임을 진다.

##### 61. 제82조 개발 계획에 따른 투자관리

1. 정부는 개발 계획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개발 계획의 수립, 보고, 승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2. 투자프로젝트는 기술-산업기반시설 개발 계획, 토지사용 개발계획, 건설 개발계획, 광산 및 자연자원 이용 개발계획을 준수해야만 한다.  
지역 개발 계획, 분야별 개발 계획, 생산품 개발 계획은 본법 27, 28, 29, 30조에 각각 규정된 투자우대 분야, 투자우대 지역, 조건부 투자 분야 및 투자 금지 분야와 부합되어야 하며 이는 투자자가 투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침의 역할을 한다.
3. 개발 계획 관련 관할 국가기관은 매스컴을 통해 투자활동과 관련된 기본 계획들을 공개하고 공포할 책임이 있다.
4. 본 조에 규정된 기본 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중개자로서 개발계획 관련 관할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투자자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통보해 줄 책임을 진다.

## 62. 제83조 투자 촉진

1. 각급 국가기관들의 투자 촉진 활동은 정부 규정을 따른다.
2. 투자 촉진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는 국가예산에서 지급한다.

## 제84조 투자 활동에 관한 감독 및 평가

1. 각 급 투자관련 국가 관리기관은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활동에 대한 감독, 평가 및 보고를 시행한다.
2. 투자활동 감독, 평가의 내용 구성
  - a) 법적 권한에 따른 법률 안내 문건 공포 및 투자 관련 법의 규정의 이행
  - b) 투자증명서의 규정에 따른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상황
  - c) 국가, 각 부처, 각 지부, 각 지방 및 각 위임된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결과

d) 투자 장애요소 해결, 투자법 위반 행위 처리방안에 대한 건의 및 투자 평가 결과에 대한 동급 국가관리기관과 상급 투자관리 국가기관에 대한 보고

#### 63. 제85조 투자활동 감사

1. 투자활동 감사 업무는 다음과 같다. a) 투자 관련 법, 정책 시행에 대한 감사  
b) 투자 관련 법 위반행위의 적발 및 방지, 법적 권한에 따른 처리 또는 관할 국가기관에 위반 행위 처리 건의  
c) 투자 관련 청원, 고소에 대한 조사, 관할 국가기관에 투자관련 청원, 고소 해결 건의
2. 투자 감사의 조직과 활동은 감사법의 규정에 따른다.

#### 64. 제86조 청원, 고소, 제소

1. 법 규정에 따라 개인은 청원, 고소, 제소의 권리를, 단체는 청원, 제소의 권리를 가지며, 투자활동의 과정에서 청원, 고소, 제소의 신청 및 청원, 고소, 제소의 해결은 법 규정을 따른다.
2. 청원, 고소, 제소가 진행 중이라도 개인 또는 단체는 관할 투자관리 국가기관의 행정결정을 시행해야만 하며, 관할 투자관리 국가기관이 고소, 청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법원의 판결, 결정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결정과 판결에 따른다.
3. 관할 각급 투자관리 국가기관은 자신의 관할권에 속한 각 단체, 개인의 청원, 고소를 해결할 책임을 진다. 자신의 법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청원, 고소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법적 해결 권한을 가진 관할 국가기관으로 이를 적시에 송부하며 고소, 청원자에게 문서로 이를 통보해야 한다.

65. 제87조 위법 처리 1. 본 법 및 투자관련 법의 규정들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반 정도와 질에 따라 경고 조치, 행정 조치 또는 형사상 기소 처리된다. 만일 어떤 손실을 끼쳤다면 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배상해야 한다.
2.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투자활동을 방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어려움과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투자자의 요구를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해결해 주지 않거나 또는 법에 규정된 기타 각종 공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정도와 질에 따라 경고 조치 또는 형사 기소한다.

#### 가. 제 10 장 부 칙

제88조 본법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법 적용

1. 본 법이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외국 투자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로 투자허가서를 이미 발급 받은 경우, 투자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만일 투자자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재투자등록을 원하는 경우 투자증명서 교환 교부 수속을 밟으면 된다.
2. 본 법의 효력을 가지기 이전에 이미 완료한 국내 프로젝트는 투자등록 수속 또는 투자심사 수속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만일 투자자가 투자증명서 발급을 원한다면 관할 국가투자 관리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66. 제89조 시행 효력

본 법은 2006년 7월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법은 1996년 베트남 외국투자법, 2000년 일부 보충 및 개정된 외국투자법과 1998년 국내투자 촉진법을 대체한다.

정부는 본 법의 시행령 및 이에 대한 안내 규정을 마련한다.

본 법은 2005년 11월29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제11대 국회 No.59/2005/ QH11 제8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베트남기업법



# 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

2001년 12월 25일자 정부 조직법,  
2005년 11월 29일자 기업법(문서번호 60/2005/QH11)에 근거하며,  
계획투자부<sup>1)</sup> 장관의 제안에 따른다.

## 제 1 장 총 칙

### 제1조 조정 범위

본 시행령은 기업법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기관과 사업자등록서류, 수속 절차 및 사업자등록 내용변경 등록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 제2조 적용 대상

다음과 같은 대상에 본 시행령을 적용한다.

1. 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시행할 국내외 단체 및 개인
2.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그 밖의 기타 단체 및 개인

### 제3조 용어 해석

1. 사업자등록 권한과 사업자등록에 대한 기업 설립자의 의무1. 법률규정에 근거한 기업의 설립과 사업자 등록은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개인과 단체의 권리이다.
2. 기업 설립자는 본 시행령과 관련 법률 규범문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행할의무가 있다.
3. 사업자 등록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은 사업자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사업자등록 내용변경을 해결하고 등록하는데 있어서 개인 또는 조직에 불편을 끼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엄금한다.
4. 각 부, 처, 각 급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이나 해당 분야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할 수 없다.
5. 기업 설립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기재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법에 근거한 책임을 진다.

### 제4조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은 기업법에 따라 경제활동 중인 기업과 영세기업에 발급된다.
2.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은 기업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며, 기업 설립자가 기재한 사업자등록서류 상의 내용 및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하며 법에 근거한 책임을 진다. 계획투자부가 규정한 사업자등록 양식에 따르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이 적용된다.

---

1) 베트남 중앙 정부의 투자유치 담당 부처로 영문명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이다. 동 부처에 대한 한글명이 자료에 따라 투자계획부, 계획투자부, 기획투자부 등으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본 법령집에서는 영문명을 그대로 따라 「계획투자부」로 사용한다

3. 본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기업은 재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등록 내용변경 등록 시 새로운 양식에 따른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4. 사업자 등록기관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은 전국적인 효력을 가진다.

### 제5조 사업자 등록에 적용되는 사업 분야 및 업종

1. 사업자등록증에 적용되는 사업분야 및 업종은 금지 분야 및 업목을 제외한 국민경제분야(National Economy)에 속한 분야 및 업종이다.
2. 국민경제분야에는 속하지 않으나 관련 법률 규범문서에는 규정된 사업 분야 및 업종의 경우 해당 법률 규범 문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상에 명확히 기입한다.
3. 국민경제분야에는 속하지 않고 관련 법률 규범이 규정하지 않은 사업 분야 및 업종의 경우 관련 사업자등록기관은 해당사항의 기재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신규 코드번호(일련번호)로 보충하기 위해 상기 사실을 계획투자부와 통계청에 신고한다.
4. 직업증명서가 필요한 사업분야 및 업종의 경우, 직업증명서는 개인 당 오직 한 기업의 사업자등록에만 사용된다.
5. 조건부 사업 분야 및 업종은 법률 및 법령 혹은 정부 시행령에서 규정하며 미관련 기관의 조건부 사업 분야 및 업종에 규정 및 공포 행위를 엄금한다.

## 제 2 장    사업자 등록기관과 관련 국가관리 기관의 임무, 권한

### 제6조 사업자 등록기관

1. 사업자 등록기관은 각 성·중앙 직할시(이하 성급 단위라 함.), 현, 군, 티 싸(thi xa), 성 직할시(이하 현급 단위라 함.)에 아래와 같이 설치된다.
  - a) 성급 단위: 계획투자국<sup>2)</sup> 산하 사업자등록소(이하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이라 함)하노이와 호치민시의 경우,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을 1개 혹은 2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은 순서에 따라 숫자를 매김으로 구분한다.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의 관할범위 및 수는 내무부와 계획투자부의 합의에 따라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위치한 인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b) 현급 단위 : 최근 2년간 협동조합과 영세기업의 등록수가 연간 500개 이상의 군, 현, 티 싸, 성 직할시에 사업자등록소를 설치한다.현급 사업자등록소를 설치 않은 경우, 계획·재정국이 본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자 등록 임무를 수행하며, 본 공무를 위한 개별 직인을 가진다.(이하 현급 사업자등록기관이라 함.)
2. 성급 사업자등록기관과 현급 사업자등록소는 별도의 계좌와 직인을 갖는다.
3. 성급 인민위원회는 수상에 의해 설립 결정된 경제특구관리위원회(이하 경제특구라 한다.)와 경제특구 내에 사업자등록소 설치에 대해 합의한다.

2) 베트남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담당 부서로 영문명은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이다

### 제7조 성급 사업자 등록기관의 임무, 권한, 책임

1.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사업자등록서류를 직접 접수하며, 서류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기업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2. 지방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관리, 운영 업무에 협력하며 성급 인민위원회, 지방 세무서, 관련기관, 그리고 중소기업개발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기업법 제163조 1-c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경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연간보고제도 시행을 적극 장려한다.
4. 사업자등록 내용에 따라 기업에 대한 검사·감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국가기관에 감사·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기업과 기업 설립자에게 사업자등록 수속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5. 법률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을 적발하였을 경우, 조건부 사업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6. 기업법 제165조 2항에서 명시한 경우에 근거하여,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다.
7.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기타 기업형태의 사업자등록을 승인한다.

### 제8조 현급 사업자 등록기관의 임무, 권한, 책임

1. 영세기업의 사업자등록서류를 직접 접수, 서류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2. 해당지역의 영세기업 활동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관리, 운영 등의 업무에 협력하며, 정기적으로 현급 인민위원회, 성급 사업자등록기관, 현급 지방 세무서에 해당지역의 영세기업,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과 관련한 내용을 정기 보고한다.
3. 해당지역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 내용에 따라 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국가기관에 관리·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지역의 기업, 지사, 대표사무소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확인한다.
4. 필요시, 경영현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영세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5. 법률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영세기업을 적발하였을 경우, 조건부 사업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영세기업의 사업활동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6. 본 시행령 제47조에서 명시한 경우에 근거해,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다.
7. 법률 규정에 따라 기타 기업형태의 사업자 등록을 시행한다.

### 제9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국가관리

1. 계획투자부의 책임, 권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 a) 계획투자부는 권한 내, 사업자등록에 관한 법률규범 문서와 전문분야, 업무, 양식, 사업자등록 업무 서비스 보고 제도 등을 안내하는 문건을 제정·공포하거나, 해당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 b) 사업자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사업자 등록 업무를 지도, 교육, 안내한다.
  - c) 사업자등록에 관한 전국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며, 사업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에 대한 범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단계별 형성하고, 사업자등록에 관한 전국적인 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한다. 또한, 정부의 관련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d) 내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자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과 사업자등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자격(standard)을 규정한다.

e) 사업자등록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변경 중인 기업, 지사·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기업, 기업의 해산·파산, 그리고 기업의 위반사건 등을 수록한 기업에 대한 관보를 전국적으로 발행한다.

f) 사업자등록 분야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2. 내무부는 계획투자부와 협력하여 성급, 현급 사업자등록기관 및 경제특구 내 사업자등록소의 조직, 편제를 안내한다.

3. 재정부부는 계획투자부와 연계하여 사업자 등록료의 징수 및 사용제도, 사업자등록 내용변경 등록, 지사·대표사무소·사업장 설치 등을 안내한다.

4. 공안부는 자신의 기능 및 임무 범위 내에서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기업 설립자 및 관리자의 신분 확인을 안내한다.

5. 각 부처(Ministry),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기관은 각각의 임무와 기능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 사업 분야 및 업종과 해당 사업 분야 및 업종의 조건에 관한 안내에 대해 책임을 진다.

6. 성,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기업법 제162조 3항 b, d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제 3 장 기 업 상 호

### 제10조 기업 상호

1. 기업의 상호는 베트남어로 써야 하며 숫자, 기호 발음을 포함 할 수 있고 다음의 두가지 요소로 형성되어야 한다.

a) 첫 번째 요소: 유한책임회사(약자로 TNH), 주식회사(약자로 CP), 합작회사<sup>3)</sup>(약자로 HD), 개인기업(약자로 TN) 등의 기업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한다.

b) 두 번째 요소: 기업의 개별 상호외국투자기업에 한하여 상호의 일부 혹은 전체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기업은 사업 분야 및 업종을 등록하였거나, 투자형식 또는 그 밖의 부요소 등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때, 이들 요소들을 사용하여 기업의 상호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개별 상호를 위해 사용된 투자형식이나 사업 분야 및 업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상호를 변경해야 한다.

3. 만일 기업의 상호가 원산지, 제품품질, 서비스 등을 묘사하는 성격의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 제11조 기업 상호에 관한 금지 사항

1. 성·중앙 직할시 범위에서 이미 사업자 등록된 상호와 중복되거나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호는 금지한다. 본 규정은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Partnership을 의미하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포괄하는 「합작회사」로 번역한

2. 국가기관, 인민군대 단위,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직업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 조직의 명칭을 기업의 일부 혹은 전체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해당기관, 단위 또는 조직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베트남 역사, 문화, 도덕, 그리고 민족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단어나 기호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기업은 이미 등록을 마친 타 조직 및 개인의 무역 거래명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업의 상호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거래명의 소유주가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 규정 위반 시, 해당 기업은 법적 책임을 진다.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에 위반하는 상호의 경우 위반 상호는 상호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중복 상호 및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호**

1. 중복 상호란 베트남어로 읽혀지고 기재된 등록 예정 상호가 이미 등록된 다른 기업의 상호와 완전히 동일함을 의미한다.
2. 이미 등록한 기업상호와의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호는 다음과 같다.
  - a) 베트남어로 된 기업상호의 발음이 이미 등록된 타기업 상호와 동일한 경우
  - b) 베트남어로 된 기업상호가 이미 등록된 타기업의 상호와 단지 기호 “&”, 기호 “-“, 단어 “va(and)”만이 상이한 경우
  - c) 약자로 기재된 등록 예정 기업 상호가 이미 등록된 타기업 상호와 중복될 경우
  - d) 외국어로 기재된 등록 예정 기업 상호가 이미 등록된 타기업 상호와 중복될 경우
  - e) 등록 예정 상호가 이미 등록된 기업의 상호 마지막에 숫자 혹은 서수, 베트남 알파벳 (A, B, C, …) 등 만이 상이한 경우. 단, 등록 예정 기업이 이미 상호를 등록한 기업의 자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 f) 등록 예정 상호가 기존의 상호에 “신(New),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었을 경우
  - g) 등록 예정 상호가 이미 등록된 기업상호와 단지 “북부”, “중부”, “서부”, “남부”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만이 다를 경우. 단, 등록 예정 기업이 이미 상호를 등록한 기업의 자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 h) 기업의 상호는 이미 등록된 기업의 상호와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제13조 기업 상호 설정과 관련한 문제**

1. 본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등록한 기업이 본 시행령 제12조에서 명시한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상호와 중복되거나 혼동을 야기시키는 경우, 상호변경을 강제하지 않는다. 대신, 중복 또는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기업간의 협상을 통해 기업 상호 변경 등록을 유도, 권장하고,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2. 기업법 제 31, 32, 33, 34조와 본 장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의 등록 예정 상호의 등록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등록기관의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한다.
3. 기업 상호를 등록하기 이전에 기업은 본사 소재지의 관할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현재 활동 중인 기업의 상호를 참고한다.

## 제 4 장 기업, 기업의 지사 및 대표사무소 등의 설립을 위한 사업자 등록 서류, 절차 및 수속

### 제14조 개인기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 서류

1. 계획투자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
2. 본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 기업주의 공인된 개인신분증 중 하나의 사본
3. 법정자본금 필수 사업 분야 및 업종 등을 규정한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정부의 법률규범 문서에 따른 기업에 대한 해당 기관 및 조직의 법정자본금 확인서
4. 전문자격증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사업 분야 및 업종 등을 규정한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정부의 법률규범 문서에 따른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법 제4조 13항에서 규정한 사장 혹은 기타 개인의 전문자격증 사본

### 제15조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에 관한 사업자 등록 서류

1. 계획투자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
2. 회사정관 초안. 회사정관 초안에는 합작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정 대리인, 사원, 수임 대표자(authorized representative) 전체,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주주, 창립주주의 수임 대표자 전체의 서명이 날인이 필요하다.
3. 계획투자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른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와 합작회사의 경우 사원명단,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주주명단. 사원명단 또는 창립주주명단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a) 본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 창립멤버 또는 창립주주의 공인된 개인신분증 중 하나의 사본

b) 회사설립결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기타 자료, 정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자료, 본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임 대표자의 공인된 개인신분증 중 하나의 사본과 법인으로써의 창립사원 또는 창립주주의 위임 결정서 사본사원이 외국조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사업자 등록한 해당 기관의 공증(공인)이 필요하며, 본 공증은 사업자등록서류 접수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 법정자본금 필수 사업 분야 및 업종 등을 규정한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정부의 법률규범 문서에 따른 기업에 대한 해당 기관 및 조직의 법정자본금 확인서
5. 전문자격증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사업 분야 및 업종 등을 규정한 정부의 법률규범 문서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경우, 기업법 제4조 13항에서 규정한 사장 Director(총사장General Director) 혹은 기타 개인의 전문자격증 사본, 합작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전문자격증 사본

### 제16조 1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사업자 등록 서류

1. 계획투자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
2. 회사정관 초안. 회사정관 초안에는 회사 소유주와 법정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3. 개인이 회사의 소유주인 경우, 본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회사 소유주의 공인된 개인신분증 중 하나의 사본 또는 회사설립 결정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서류, 정관 또는 조직이 회사의 소유주인 경우(회사 소유주가 국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  
기 서류 및 그 밖의 정관에 상응하는 서류

4. 기업법 제67조 3항에 따라 조직된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계획투자부가 규정한 양식  
에 따른 수입 대표자 명단. 본 명단과 함께 본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수입  
대표자의 공인된 개인신분증 중 하나의 사본기업법 제67조 4항에 근거해 조직된 1인 유한  
책임회사의 경우, 본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수입 대표자의 공인된 개인신분  
증 중 하나의 사본

5. 회사 소유주가 조직일 경우 수입 대표자에 대한 소유주의 위임장

6. 법정자본금 필수 사업 분야 및 업종 등을 규정한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정부의 법률규범  
문서에 따른 기업에 대한 해당 기관 및 조직의 법정자본금 확인서

7. 전문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분야 및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법 제4조  
13항에서 규정한 사장(회장) 혹은 기타 개인의 전문자격증 사본

### **제17조 기업 분할, 독립, 전환, 인수합병 회사에 관한 사업자 등록 서류**

1.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동종의 여러 회사로 분할할 경우, 본 시행령 제15조에서 규  
정한 서류 외에도, 사업자등록서류에는 기업법 제150조에 따른 회사 분할 결정서, 유한책임  
회사의 경우 회사 분할에 관한 사원총회의 회의록,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분할에 관한 주주  
총회의 회의록과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2.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를 동종의 신규회사로 전환 할 경우, 본 시행령 제15, 16조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도, 사업자등록서류에는 기업법 제151조에 따른 회사 분리 결정서, 2인 이  
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회사 전  
환에 관한 회의록, 그리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3. 2개 이상의 동종회사를 신설 합병하여 1개의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본 시행령 제  
15조, 제16조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도, 기업법 제152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 서류에는 합병  
계약서,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회의록, 주식회사의 경  
우 주주총회의 의사록과 피 합병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종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내용 보충 및 변경 등  
록에 관한 본 시행령 제5(V)장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도, 합병회사의 서류에는 기업법 제  
153조에 따른 회사의 합병계약서,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  
총회 회의록,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사록과 피 인수사와 인수사의 사업자등록증 사  
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되는 경우, 본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  
한 서류 외에도, 전환회사의 사업자등록서류에는 기업법 제154조에 따른 회사 전환 결정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전환에 관한 사원총회의 회의록,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전환에  
관한 주주총회의 회의록과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신규 사업자등록  
증을 발급 받을 시에 해당기업의 舊 사업자등록증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신규 기업 설  
립을 공고함과 동시에 기존 기업의 영업활동 정지 및 관련 권한과 의무의 해결 등을 공고  
한다.

### **제18조 사업자등록 서류 내의 개인 신분 자격증명 서류**

1. 국내 베트남 국민 : 주민등록증 혹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사본
2. 해외거주 베트남인 : 다음과 같은 효력을 지닌 증서 사본
  - a) 베트남 여권
  - b) 외국 여권(혹은 여권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과 효력이 남은 아래와 같은 서류 중 하나
    - 베트남 국적 확인서
    - 베트남 국적 상실 확인서
    - 시민권 등록 확인서
    - 베트남 출신 확인서
    - 친인척 중 베트남 출신 확인서
    - 베트남 혈통관계 확인서
    -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관련 서류
3. 베트남 거주 외국인 : 베트남의 담당기관이 발급한 거주증(resident card)과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사본
4.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사본

#### **제19조 사업자등록 서류 접수**

1. 기업 설립자 혹은 수임 대표자는 기업의 소재지가 위치할 성급 사업자 등록기관에 본 시행령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한다.
2. 창립사원, 창립주주, 회사 소유주, 개인기업 소유주, 무한책임사원, 기업의 법적대리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적법한 사업자등록서류를 제출하며, 이에 연대 책임진다.
3. 서류 접수 후, 사업자등록기관은 서류 접수자에게 서류 접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법 제4조 3항에 따라 서류의 적법성에 대해서만 책임지며,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한 기업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제20조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1.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신청기업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만일 근무일 10일 경과 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 수정 및 보완을 요청 받지 못한 경우, 기업 설립자는 사업자등록서류를 접수한 사업자등록기관을 법률 규정에 따라 제소·진정할 수 있다.
3. 기업의 법적대리인은 사업자등록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직접 서명날인 한다.

#### **제21조 사업자등록증 발급**

1. 기업은 기업법의 제24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2. 서류가 적법하지 않거나 기업 상호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서류 접수 후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수정·보완사항을 기업 설립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3. 조건부 사업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은 제외하고 그 밖의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영업활동권을 가진다.

## 제22조 사업자등록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1. 사업자등록기관에 보관된 자료와 정보는 원정보와 같은 법적인 가치를 가진다.
2.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매월 2주차에 정기적으로 전월(前月) 신규사업자등록 기업, 등록 내용 변경, 해산, 파산 에 관한 세부 정보 등이 포함된 명부를 세무서, 통계청, 기술경제분야 관리기관, 현금 사업자등록기관과 기업의 본사 주소지가 싸(xa), 프엉(phuong), 티 쩐(thi tran)<sup>4)</sup> 경우 해당 인민위원회에 송부한다.

## 제23조 사업자등록 비용

- 사업자등록 비용은 사업자등록 분야 및 업종 수에 따라 결정된다.
- 사업자등록 분야 및 업종 수 산정과 사업자 등록 비용 징수는 국민일반경제시스템 분야에 근거한다.

## 제24조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 활동 등록

1.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 설치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기업은 지사, 대표사무소 활동 등록신청서를 지사, 대표사무소의 경우, 설치 예정지의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하며,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시행한 사업자등록기관에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다. 지사, 대표사무소 활동 등록신청서와 사업장 설치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a) 기업의 상호 및 본사 소재지 주소

b) 기업의 사업 분야 및 업종

c) 설치 예정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 상호.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 상호는 기업의 상호를 따르는 동시에 지사 설치를 등록하는 경우 “지사”, 대표사무소 설치를 등록하는 경우 “대표사무소”, 신규사업장 설치를 등록하는 경우, 신규사업장의 조직형태 등이 첨가되어야 한다.

d) 지사, 대표사무소 주소

e) 지사, 대표사무소 영업 활동 내용 및 범위

f) 지사, 대표사무소의 대표자 성명,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서명날인, 현주소

g) 기업 법적 대리인의 성명, 서명본 조의 활동등록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의 경우 회사정관 사본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또는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합작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 설치에 관한 회의록 및 서면 결정서

- 지사, 대표사무소 대표자 임명 결의안의 사본사업자등록하기 이전 전문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지사의 경우, 대표 혹은 부대표의 전문자격증 사본만약 기업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주소지가 중앙 직속 성 혹은 시에 설치되는 경우 영업 등록 서류에 사업등록증, 기업 정관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베트남의 행정단위 : 읍, 면, 동에 해당함.

2. 사업장 신고기업은 기업 주소지 외에서 영업 활동이 가능하고 기업 지사 혹은 본사 영업 주소지가 성 혹은 시일 경우는 영업 지역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영업 지역 신고를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a) 기업 본사 영업 주소, 사업장이 지사에 속할 경우 지사 주소
  - b) 사업장 명 및 주소. 사업장 명은 기업의 상호를 따를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조직 형태도 나타나야 한다.
  - c) 사업장 활동 영역
  - d) 사업장,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증 혹은 여권이나 본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공인된 개인 법적 자격증명서 본호
  - e) 기업법에 따른 대리인 기명날인
3.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지사 활동 등록 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수정보충, 대표사무소 혹은 지사의 활동 등록확인서에 관한 적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4. 기업이 본사 소재지가 아닌 다른 성·시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지사, 대표사무소 활동승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기업의 사업자등록서류를 보완하고, 사업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위해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설립한 해당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서면 통보한다.
5. 해외 지점 및 대표사무실 개설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법률규정에 따른다.
6. 해외 지점 및 대표사무실 정식 개설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재발급과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의 보충 수정을 위하여 해당 지점 혹은 대표사무소의 활동등록증명서 사본 혹은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본사 주소지 사업자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 5 장    사업자등록 내용 보충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사업자 등록 수속, 절차 및 서류**

### **제25조 사업 분야 및 업종 보충, 변경등록**

1. 사업 분야 및 업종의 보충·변경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기업은 당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 a) 기업 상호, 본사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발급일
  - b) 보완 또는 변경할 사업 분야 및 업종
  - c) 기업의 법적 대리인의 서명 날인법정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분야 및 업종을 보충 혹은 변경할 경우, 해당기관의 법정자본금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전문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분야 및 업종의 보충 혹은 변경의 경우, 기업은 기업법 제4조 13항에 따라 사장(회장) 또는 기업 관리자 중 1인의 전문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신고서에는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합작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수정 회사정관 사본, 사업 분야 및 업종의 보충·변경에 관한 회의록과 서면 결의안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수정 혹은 보완된각 결정서 및 회의 결의 사항은 정확히 기업정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기업의 사업 분야 및 업종 보충·변경 등록 신고서 접수 시, 사업자등록기관은 접수확인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기업이 신규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시에는 반드시 구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26조 기업의 본사 소재지 변경등록

1. 본사 소재지를 다른 성·중앙직할시 등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은 본사 소재지 이전 결정일로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신고서를 송부한다.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b) 기업의 본사 예정 주소지
  - c) 기업의 법적 대리인의 기명날인신고서에는 수정 회사정관 사본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합작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기업의 본사 소재지 이전 등록에 관한 회의록과 서면 결의안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수정 혹은 보완된 각 결정서 및 회의 결의 사항은 기업정관에 기록하여야 한다.기업의 사업 분야 및 업종 보충·변경 등록 신고서 접수 시, 사업자등록기관은 접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기업은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할 시에는 반드시 구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납하여야 한다.
2. 본사 소재지를 다른 성·중앙직할시 등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은 본사 소재지 이전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과 본사 이전 예정지역의 사업자등록기관에 신고서를 전달한다.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주소지, 사업자등록증 발급 지역
  - b) 기업 본사 이전 예정 주소
  - c) 기업의 법적 대리인의 서명날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른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새로운 본사 예정 소재지의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수정 회사정관 사본 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명단,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수임 대표자의 명단,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주주 명단, 합작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명단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합작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서면 결의안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본사 이전 예정지의 사업자등록기관은 본 조 2항에 근거해 합법적인 기업의 본사 소재지 이전 등록 신청서류가 모두 구비된 경우,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본사 소재지 이전을 등록하며, 기업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한다.기업은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수령 시, 새로운 본사 소재지의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이전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납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기업은 사업자 등록한 이전 지역의 사업자등록기관에 신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발송해야 한다.
3. 기업의 본사 소재지 이전은 기업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 없다.

### 제27조 기업 상호 변경등록

1. 기업 상호 변경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기업은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상기 사실을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기업의 현재 상호, 기업의 본사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b) 변경 예정 상호

c) 기업의 법적 대리인의 서명날인 신고서 상에는 수정 회사정관 사본과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합작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기업상호 변경에 대한 서면 결의안과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수정 혹은 보완된 각 결정서 및 회의 결의 사항은 정확히 기업정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기관은 신고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를 발급하고, 만일 기업의 변경 예정 상호가 법률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경우,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기업의 상호 변경등록을 시행한다.

3. 기업의 상호를 변경하여도 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 제28조 무한책임사원 변경등록

합작회사가 기업법 제138조 1, 2항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을 신규가입 받거나, 제명하거나 사원이 탈퇴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신규가입 또는 제명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합작회사는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상기 사실을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1. 회사 상호, 회사의 본사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2. 신규, 제명, 탈퇴한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 3. 모든 무한책임사원 혹은 수임 무한책임사원의 서명 날인
- 4. 수정 보완된 기업정관의 내용회사가 무한책임사원 변경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 제출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신고서 접수 시 접수증을 발급하고,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합작회사 상임위원 변경등록을 시행한다.

### 제29조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법적대리인 변경등록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법적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기업은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상기 사실을 신고한다. 신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회사 상호, 회사의 본사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2. 기업의 현 법적대리인과 대체 예정 법적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 3.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의장,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장의 성명과 서명날인. 회사의 사원총회 의장, 대표이사 혹은 이사회장이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수감 중이거나, 정신병 또는 인식불가능 질환 등의 정신장애로 투병 중이거나, 신고서 서명을 거부한 경우, 회사의 법적대리인 변경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원총회의 사원, 회사소유주 또는 이사회 임원 의 서명을 날인한다. 신고서에는 수정 회사정관 사본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회의록, 서면결의안을 첨부해야 한다.사업자등록기관은 신고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회사가 법적대리인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을 경우,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회사의 법적대리인 변경등록을 시행한다.

### 제30조 개인 기업 사주의 투자자본금 변경등록

개인기업은 등록 투자자본금의 증·감자를 결정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상기 사실을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1. 회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업 본사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2. 사업 분야 및 업종
3. 등록된 투자자본금액, 변경 예정 투자자본금액, 투자자본금 변경일
4. 본 시행령 18조에 따른 기업 대표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기타 개인 신분증명원과 거주지 및 기명날인모든 합법적인 서류가 접수되었을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신고서 접수 시 접수확인서를 발급하고,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투자자본금 변경등록을 시행한다.신규 사업자 등록증 수령시 기업은 반드시 구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31조 기업 정관자본금 변경등록

1. 회사는 정관자본금을 증·감자하거나 출자자본비율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신고서를 송부한다.

- a) 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b)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 전체,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혹은 회사설립결정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c)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각 사원,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주주의 출자지분비율, 기업법 제67조 3항에 따라 조직된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각 수입 대표자의 위임된 보유비율
- d) 등록 정관 자본금, 증 감자 예정 정관 자본금, 시행기간 및 증 감자 방식
- e) 회사의 법적 대리인, 합작회사의 경우 수입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의장,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이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신고서에는 수정 회사정관 사본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합작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회의록과 서면 결의안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수정 혹은 보완된 각 결정서 및 회의 결의 사항은 정확히 기업정관에 기록하여야 한다.정관 자본금의 감자의 경우, 정관 자본금 감자 결정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작성한 회사의 회계보고서를 첨부한다.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회계보고서는 독립된 회계감사기관의 공증(공인)이 필요하다.사업자등록기관은 신고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회사의 증자·감자를 시행한다.

2. 1인 구성원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정관 자본금의 감자는 시행하지 않는다.
3. 법정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감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기관은 감자된 등록자본금이 법정자본금보다 낮지 않을 경우, 투자자본금 혹은 정관자본금의 감자를 등록한다.

### 제32조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변경등록

1. 기업법 제84조 3항에 적용되는 경우 주식회사 창립주주의 변경 등록을 한다. :변경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회사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본 사실을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b) 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창립주주가 개인일 경우 성명,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조직일 경우 조직명, 본사 주소, 사업자등록증 번호
  - c) 보상 출자 수혜자가 개인일 경우 성명,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있을 경우),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조직일 경우 조직명, 본사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d) 회사의 법적대리인의 성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신고서와 함께 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창립주주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회의록 사본과 결정서, 그리고 변경 이후 창립주주명단 및 수정 회사정관을 첨부해야 한다.사업자등록기관은 신고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를 발급하고,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창립주주의 변경을 등록한다. 신규 사업자 등록증 수령시 기업은 반드시 구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납하여야 한다.
2. 기업법 제84조 5항에 적용되는 경우 주식회사 창립주주의 변경 등록을 한다. :변경 결정일로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회사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본 사실을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b) 창립주주가 경제단체일 경우 창립주주의 상호, 본사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설립 결정서 혹은 개인일 경우 본 시행령 18조에 따른 창립주주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기타 개인 신분 증명원 ; 소유지분 이전자의 자본금과 소유지분 인수자의 자본금
  - c) 회사의 법적대리인의 성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신고서와 함께 창립주주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회의록 사본과 결정서, 그리고 변경 이후 창립주주명단 및 수정 회사정관을 첨부해야 한다.사업자등록 기관은 신고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를 발급하고,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창립주주의 변경을 등록한다. 신규 사업자 등록증 수령시 기업은 반드시 구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33조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성원 변경등록

1. 신규 성원의 가입으로 인한 변경등록 시, 변경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본 사실을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

재되어 있어야 한다.

- a)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b) 신규사원이 조직일 경우, 조직의 명칭, 소재지 주소, 개인일 경우, 사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출자자본의 가치 및 출자지분, 출자일, 출자 자산종류, 신규사원이 출자할 각 자산의 수 및 가치
- c) 신규사원 가입 이후, 기존 사원의 변경된 출자지분
- d) 신규사원 가입 이후, 회사의 정관 자본금
- e) 회사의 법정대리인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서명날인신고서와 함께 신규사원 가입에 관한 사원총회의 회의록과 결의안, 수정 회사정관, 신규사원의 출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신규사원이 외국 조직인 경우, 회사설립 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이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문서의 합법적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며, 신규사원이 외국 개인일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한다. 사업자등록기관은 신고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를 발급하고,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회사의 정관 자본금의 변경을 등록한다.

2.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신규성원 등록의 경우, 변경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는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본 사실을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a)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b) 양도사원이 조직일 경우, 조직의 명칭, 소재지 주소, 개인일 경우, 사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양도사원의 출자자본지분
- c) 양도 이후 각 사원의 출자지분
- d) 양도 일자(시기)

e) 기업 법적 대리인의 서명날인신고서와 함께 수정 회사정관, 양도계약서, 양도 완료 증서, 회사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신고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사원변경을 등록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성원변경등록의 경우, 변경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는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본 사실을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a)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b)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국적, 출자지분
- c) 상속 일자(시기)

d) 회사의 법정대리인의 서명날인신고서와 함께 수정 회사정관, 상속 증서의 합법적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신고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를 발급하고,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사원변경을 등록한다.

4. 기업법 제39조 3항에 따라 자본 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원으로 인한 성원변경등록의 경우, 변경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는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a)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b) 자본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원이 조직일 경우, 조직의 명칭, 소재지 주소, 개인일 경우, 사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출자지분회사사원 또는 기타 출자자가 상기 사원을 대신하여 보상출자하기로 한 경우, 해당 출자자의 성명,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있을 경우),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국적, 서명날인, 보상출자 이후의 출자지분

c) 회사 법정대리인의 성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신고서와 함께 수정 회사정관, 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원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회의록 사본과 결정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사업자등록기관은 신고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를 발급하고,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사원변경을 등록한다.신규 사업자 등록증 수령시 기업은 반드시 구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34조 법원의 결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내용 변경 등록 및 영업활동 등록

법원의 결정에 의해 사업자등록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은 내용변경을 등록한다. 사업자등록 내용 변경등록 서류에는 본 장에서 규정한 각종 서류 외에도 법적 효력을 가진 법원의 결정서와 판결문을 첨부해야 한다.

#### 제35조 기업의 제소권

사업자등록기관이 사업자등록내용 보충·변경 통지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후, 기업이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내용 보충·변경등록을 할 수 없거나 사업자등록기관으로부터 사업자등록내용 보충·변경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제소할 수 있다.

## 제 6 장 영세기업의 사업자 등록

#### 제36조 영세기업

1. 한 명의 베트남국민 또는 한 조직, 가족 경영체가 기업주로서 한 장소에 한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영세기업은 1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회사직인이 없으며 경영활동에 대해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2. 농림어업, 염전을 생산하는 가족 경영체, 노점상 또는 저소득 서비스 업종은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 단, 조건부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성·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에 적용할 저소득의 기준을 규정하며, 이에 따라 규정치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는 가족 경영체 혹은 서비스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저소득의 기준은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기업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

### 제37조 영세 사업자의 설립권과 사업자 등록 의무사업자 등록권

1. 민사행위 능력을 충분히 갖춘 만 18세 이상의 베트남인과 영세기업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할 권리가 있다.
2.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한 개인 또는 가족 경영체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영세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 제38조 영세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절차 및 수속

1. 개인 혹은 가족 경영체의 대표자는 영세기업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장을 설치할 해당 현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개인 혹은 가족 경영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합법적 사본을 첨부, 제출한다.
2. 영세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영세기업 상호, 사업장 주소
  - b) 사업 분야 및 업종
  - c) 경영 자본금
  - d) 개인 또는 영세기업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증 발급일 및 주민등록번호, 서명날인, 거주지법률, 법령, 시행령이 규정한 전문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 및 업종의 경우, 본 조 1항에 명시한 문서 외에도, 개인 혹은 영세기업 대표자의 전문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률, 법령, 시행령이 규정한 법정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 및 업종의 경우, 본 조 1항에 명시한 문서 외에도,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법정 자본금 확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3. 현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서류 접수 후,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영세기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 a) 사업 금지 분야 및 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 분야 및 업종
  - b) 영세기업의 상호는 본 시행령 42조 규정에 부합하여 신청
  - c)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비용 완납법률, 법령, 시행령에 적합하지 않는 서류일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발급기관은 영세기업주에게 서류 수정, 보완 요구한다.
4. 사업자등록서류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5일이 경과되었으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자등록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 받지 않았을 경우, 영세기업 등록자는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소송할 권리가 있다.
5. 매월 첫째 주, 현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전월 등록한 영세기업 명부를 성급 사업자등록소, 동급 사무서와 관련기관에 송부한다.

### 제39조 사업 시점

영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경영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단, 조건부 사업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0조 영세기업의 사업장

노점상 등을 경영하는 영세기업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고정 장소를 선택해야만 한다. 본 장소는 주민 등록상 주소나 현재 거주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장소, 또는 주로 사업을 하는 장소 또는 거래 등이 일어나는 장소를 말한다. 노점상 등을 경영하는 영세기업은 사업자등록기관에 등록한 장소 외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 세무서, 소재지와 영업활동지로 등록한 해당 지역의 시장관리기관에 상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41조 사업자등록증 내용변경 신청

1. 이미 등록된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영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현급 사업자등록 기관에 상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30일 이상 경영활동을 일시 정지할 경우, 영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현급 사업자등록기관과 관할 세무서에 상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단, 영업 일시 정지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3. 경영활동을 종료할 경우, 영세기업은 해당 현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함과 동시에 세금 및 기타 미 이행한 재정적 의무 등을 포함한 채무를 완제한다.

#### 제42조 영세기업 상호 설정

1. 영세기업은 개별 상호를 설정할 수 있다. 영세기업의 상호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 a) 첫째 요소 : 영세기업
  - b) 둘째 요소 : 영세기업의 개별 상호영세기업의 상호는 베트남어로 기재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며, 숫자 또는 기호가 첨부될 수 있다.
2. 영세기업의 상호로 베트남 역사, 문화, 도덕, 그리고 민족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단어나 기호를 사용할 수 없다.
3. 영세기업의 상호는 현급 범위 내에서 이미 등록된 기타 영세기업의 상호와 중복되어선 안 된다.

## 제 7 장 사업 일시정지 절차·수속,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및 회수

#### 제43조 사업 일시정지

활동을 일시 정지하는 기업은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업자등록기관과 세무서에 사업활동 정지 최소 15일 이전에 서면으로 본 사실을 통보한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기업 상호, 본사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2. 사업 분야 및 업종
3. 활동 정지 기간, 정지일과 재개일, 신고서에 기재될 일시 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활동 정지일로부터 1년 후, 기업이 경영활동을 계속하여 정지해야 할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에 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경영활동 일시정지 총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활동 정지 사유
5. 기업의 대표자의 기명 날인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1인 유한책임회

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합작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경영활동 정지 결의안 및 회의록을 신고서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기관은 신고서를 접수하고 기업관리장부에 본 사실을 기록한다.

#### 제44조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1.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한다.
  - a)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분실 지역 공안기관,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분실신고하며, 신문·방송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해 연속 3번 공고(공시)한다.
  - b) 공고일로부터 30일 이후, 만일 기업이 분실한 사업자등록증을 찾지 못하면, 기업은 당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분실신고에 관한 공안기관의 확인서
    -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분실 공고에 관한 신문·방송사의 확인서 또는 상기 사실을 공고 중인 신문
2. 사업자등록증이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불에 타는 등 훼손되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한다.이 경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소에 제출한다.
3. 상기 1, 2항의 경우에 대해 기업의 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접수확인증(영수증)을 발부한다.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한다. 재발급된 사업자등록번호는 분실되거나 훼손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번호를 그대로 따른다. 단, 재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에 재발급 사실을 정확히 기재한다.
4.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불에 타는 등 훼손된 지사, 대표사무소의 활동등록 증명서에 관한 재발급은 본 조 1, 2, 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5.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또는 규정절차가 올바르지 않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사업자등록소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재검토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서류 내용을 수정, 보완하도록 기업에게 통보한다.

#### 제45조 사업자등록증 회수

1. 기업법 165조 2항에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한다.
2. 사업자등록증 회수 절차 및 수속절차는 정부기관의 안내에 따라 실행한다.(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 제46조 사업자등록증 회수 절차 및 수속

1. 사업자등록기관이 사업자등록서류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임을 적발한 경우.만약 사업자등록기관이 사업자등록서류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임을 적발한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의 위반행위를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서를 발행·공포한다. 만약 사업자등록기관이 사업자등록서류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임을 적발한 경우, 우선 사업자등록 위반행위에 대해 담당기관에 행정위반 처벌을 요청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내용을 삭제 또는 변

경한다.

2. 기업법 제13조 2항에 따라 기업설립 및 경영 금지대상에 속한 개인 기업주,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합작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a) 개인기업 경우, 해당 지역의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의 위반행위를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서를 발행·공포한다.

b)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설립 및 경영 금지 대상 속하는 사원 또는 주주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원 및 주주의 변경등록을 시행한다. 상기 기간 이후에도, 기업이 사원 또는 주주 변경등록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에 위반행위 신고서를 송부하고,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서를 발행·공포한다.

3. 기업법 제165조 2항 c, d, e를 위반한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서면으로 위반행위를 통보하고, 본 기관 소재지에 법적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한다. 출두 약속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후까지 해당 법적대리인이 출두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서를 발행한다.

4. 기업법 제163조 1항 g에 따라 보고서를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 제출 요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은 본 기관 소재지에 법적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한다. 출두 약속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후까지 해당 법적대리인이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서를 발행한다.

5. 기업이 금지 사업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것을 사업자등록기관이 적발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위반행위에 관한 통보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서를 발행·공포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사실을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국가관리기관에 통보한다.

6.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서를 수령한 후 기업은 기업법 158조에 따라 해산한다.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일로부터 6개월 후, 기업의 해산서류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업은 해산을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등록기업 명부에서 기업 상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적대리인과 전 사원,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주식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전 사원, 합작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해산된 기업이 변제하지 않은 채무(있다면), 미납 세금 또는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 **제47조 영세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회수**

영세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수된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6개월 동안 경영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자 등록한 현금 사업자등록기관에 6개월 동안 통보 없이 경영활동을 일시 정지한 경우
3. 다른 군·현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4. 금지 사업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한 경우

## 제 8 장 부 직

### 제48조 위반 처리 및 포상

1. 해당 국가공무원 및 공직자는 기업 설립자에게 본 시행령과 부합되는 사업자등록 조건, 수속절차를 첨가하고,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사업자 등록을 해결하거나 사업자등록 내용 검사·검토시, 조직 및 개인 등의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고, 트집을 잡거나, 위압적, 권위적인 태도로 민원인을 대한 국가공무원은 법률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2. 조건이 충족된 조직 및 개인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않은 조직 및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국가공무원 및 공직자는 위반 정도 및 성격에 따라 법률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되거나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사업자등록 업무를 올바르게 시행하고 완성한 사업자등록기관과 사업자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포상된다.

### 제49조 시행효력

1. 본 시행령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15일 이후에 효력을 가진다. 본 시행령과 위배되는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2. 본 시행령은 2004년 4월 2일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시행령(문서번호 109/ 2004/ND-CP)을 대체한다.

### 제50조 시행령 시행안내 책임

각 부 장관, 부처 동급 기관장, 정부 산하기관장,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본 시행령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계획투자부, 내무부, 재정부, 사법부, 공안부 장관은 본 시행령을 안내할 책임이 있다.



# 기 업 법

제10차 10회기 국회의 2001년 12월 25일자 의결서(문서번호 51/2001/QH10)에 따라 개정·보완된 1992년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한다.  
본 법은 기업에 대해 규정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1조 적용 범위

본 법은 모든 경제 구성요소(이하, 기업이라 함.)에 속하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 합작회사<sup>1)</sup>(partnership) 그리고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와 기업집단(corporate group)에 대해 규정한다.

### 제2조 적용 대상

1. 모든 경제 구성요소에 속하는 기업
2. 기업의 설립, 관리조직, 활동과 관련 있는 개인 및 조직

### 제3조 기업법, 국제조약, 관련법의 적용

1. 모든 경제 구성요소에 속하는 기업의 설립, 관리조직, 활동은 본 법 또는 기타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기업의 설립, 조직, 활동과 관련한 특별한 예외가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의 규정에 따른다.
3.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과 본 법의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 용어 설명

본 법에서, 아래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기업이란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유의 상호와 자산, 안정된 거래 사무소를 소유하고 사업등록을 완료한 경제조직을 말한다.
2. 경영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생산에서부터 생산품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 등으로 이루어지는 투자과정의 하나 또는 일부 또는 전체 단계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합법적 서류란 법이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하고, 충실하게 작성되고,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구비된 서류를 의미한다.
4. 자본출자란 기업의 소유주 또는 공동 소유주가 되기 위해 자산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 출자는 기업의 자본형성을 위해 사원이 자산을 출자하는 것으로, 베트남 통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국 통화, 금, 토지 사용권, 지적 재산권, 과학기술, 기술 노하우

---

1) Partnership을 의미하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포괄하는 「합작회사」로 번역한다

또는 기업 정관에 기록된 기타 자산 등이 포함된다.

5. 출자지분이란 회사 소유주 또는 공동소유주가 법정자본금에 출자한 자본 비율을 의미한다.

6. 정관자본금<sup>2)</sup>이란 기업의 정관에 명기된 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가 출자하기로 합의한 자본총액이다.

7. 법정자본금이란 법률이 요구하는 기업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자본금을 말한다.

8. 의결권 자본이란 출자자본 지분 또는 주식지분을 통한 소유주가 사원총회나 주주총회 결정심사권에 속하는 문제에 대한 투표권을 의미한다.

9. 배당금이란 기업이 재정적 의무를 수행한 후 남은 이윤을 통해 발생한 현금 및 기타 자산으로 각각의 지분에 지급된 순이익을 말한다. 10. 창립멤버란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최초 정관을 수립, 승인, 서명날인한 자본 출자자이다.

11. 주주란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최소 한 주 이상 소유한 사람을 말한다. 창립주주란 주식회사의 최초 정관을 수립, 승인, 서명날인하는 등의 일에 참여한 주주를 의미한다.

12. 무한책임사원은 자신의 재산으로 합작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파트너를 말한다.

13. 기업관리자란 개인기업의 소유주, 합작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사원총회의 사원, 기업의 회장, 이사회 임원, 이사(대표이사) 등을 말하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 명시된 중요 경영직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14. 수임대표자란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sup>3)</sup>으로부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개인을 말한다.

15. 다음과 같은 경우, 다른 회사의 모회사로 간주한다.

a) 회사의 법정자본금 또는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의 50% 이상을 소유할 경우

b) 회사의 이사회 임원, 사장, 또는 회장 다수 또는 모두를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c) 회사 정관의 개정, 보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경우

16. 기업의 조직개편이란 기업의 분리, 흡수, 인수합병, 기업변경 등을 의미한다.

17. 관계인(related person)이란 아래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회사와 관련 있는 개인 및 조직을 의미한다.

a) 모회사, 모회사 경영자, 자회사의 경영자 선임권을 가진 자

b) 모회사와 관련된 자회사

c) 기업의 관리조직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조직

d) 기업 경영자

e) 기업의 경영자, 사원, 출자 지분이나 지배지분 보유주주의 배우자(남편, 아내), 부모, 양부모, 자식, 입양된 자식, 형제·자매

f) 본 항 a, b, c, d, e에서 명시한 사람들에 의한 수임 대표자

g) 기업 관리조직의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본 항 a, b, c, d, e, f, g, h에서 규정된 이들에 의한 기업

h) 기업의 주식지분이나, 지분, 이익을 공동 보유하거나 기업의 의결 및 결정 과정을 통제하기로 합의한 사람들의 집단

2) 정관에 명기된 자본금이란 의미를 살리기 위해 영문의 Charter Capital을 직역하여 사용한다.

3) 여기서 사원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member)를 의미한다.

18. 국가보유 출자지분이란 국가예산 또는 국가기관이나 국가대리 경제조직의 기타 자본으로 납입된 출자지분을 말한다. 국가보유 주식지분이란 국가예산 또는 국가기관이나 국가대리 경제조직의 기타 자본으로 납입된 주식지분을 말한다.
19. 출자자본 또는 주식지분의 시장가 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또는 가격 확정 전문기관에 의한 가격을 의미한다.
20. 기업의 국적은 기업이 설립되거나 사업 등록된 지역, 영토, 국가의 국적을 말한다.
21. 소재지 주소란 조직이 등록한 본사주소, 기업의 연락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permanent address)<sup>4)</sup> 또는 근무지 주소를 말한다.
22. 국영기업은 국가가 기업의 법정자본금의 50%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의미한다.

### 제5조 기업과 기업 소유주에 대한 국가의 보장(state guaranty)

1. 국가는 본 법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이 장기간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을 인정하며, 각 기업의 법률상 평등을 보장하고, 소유형식에 대해 구분하지 않으며, 경영활동의 합법적 이익을 인정한다.
2. 국가는 기업과 기업 소유주의 재산소유권, 투자자본, 수입을 비롯한 기업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인정하고, 보호한다.
3. 기업과 기업 소유주의 합법적 재산 및 투자자본금은 행정상의 조치로 인해 국유화되거나 몰수되지 않는다.

### 제6조 기업의 정치조직 및 정치-사회조직

1. 기업의 정치조직 및 정치-사회조직은 헌법, 법률 및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 정관에 따라 활동한다.
2. 기업은 근로자가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존중하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 제7조 경영 분야 및 조건

1. 기업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경영권을 가진다.
2. 투자법과 관련법에서 조건부로 규정한 분야는 기업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경영 및 사업이 가능하다.경영조건이란 기업이 구체적인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고 사업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필수요건으로써 사업허가서, 사업조건 충족서, 전문자격증, 직업책임 보험 확인서, 그리고 법적자본 요건 및 기타 요건 등에 의해 구체화된다.
3. 국방, 국가안보, 질서, 사회안전, 역사·문화·도덕적 전통, 베트남의 미풍양속,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자원과 환경을 파괴하는 경영활동은 금지한다. 정부는 금지 사업 목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4. 정부는 정기적으로 경영조건 전체 또는 일부를 재평가, 재심의하며, 적합하지 않는 조건을 삭제하거나 삭제 건의하고, 불합리한 조건을 수정하거나 수정 건의한다. 또한 국가관리의 요청에 따라 경영조건을 제정·공포하거나 제정·공포를 제안한다.
5. 각 부, 부처, 각급 인민위원회는 조건부 경영 분야 및 경영조건에 대해 규정할 수 없다.

### 제8조 기업의 권리

4) permanent address : 확정된 거주지 주소

1. 사업 운영, 경영 분야, 지역, 형식 및 투자형식, 경영분야 및 규모 확장 등에 대한 자율권, 공익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공급 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은 국가 장려, 우대혜택 및 편리한 조건 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
2. 자본 동원, 분배, 사용 방식 및 형식을 선택할 권리
3. 능동적으로 시장과 고객을 발굴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리
4. 수출입 사업
5. 기업의 요구에 맞게 근로자를 선발·고용할 권리
6. 경영효과 및 경쟁력의 능동적 향상을 위해 최신 과학기술을 응용할 권리
7. 경영 업무 및 내부 관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8. 기업의 재산을 소유, 사용, 배치할 권리
9.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자원의 공급 요청을 거부할 권리
10.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소·제소·진정할 권리
11. 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에 참가할 권리
12. 그 외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

### 제9조 기업의 의무

1.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한 분야 및 업종에 따라 경영활동을 시행해야 하고, 조건부 분야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른 경영조건을 담보할 의무가 있다.
2. 회계 업무를 조직하고, 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재무제표를 회계기간에 맞춰 수립하고, 제출할 의무
3. 세금 코드를 등록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며 법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재정적 의무를 수행할 의무
4. 노동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보험법의 규정에 의거해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료보험 그리고 그 밖의 보험제도를 시행할 의무
5. 기등록 되거나, 공시된 표준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할 의무
6. 통계법의 규정을 준수한 통계제도를 시행하고, 기업정보와 기업의 재정현황을 규정 양식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에 성실히 보고할 의무, 보고서 또는 신고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적시에 수정·보완할 의무
7. 국방, 국가안보, 질서, 사회안전, 자원 및 환경 보호, 역사·문화 유적보존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할 의무
8. 그 외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

### 제10조 공공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의 권리와 의무

1. 본 법 제8조, 9조 및 기타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권리와 의무
2. 기업은 입찰 시행가에 따른 금액을 보상 받거나, 담당 국가기관의 규정에 맞는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수할 수 있다.
3. 투자자금 회수 및 합리적인 이익창출을 위해,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한 기간을 보장 받는다.
4. 담당 국가기관의 규정을 준수한 가격 또는 비용에 따라 약속기한에 맞춰 적절한 수량과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공급한다.
5. 모든 고객에게 편의를 공평히 제공하고, 동등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6. 공급한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수량, 품질, 조건과 가격 및 비용에 대해 법과 고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그 외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와 의무

### 제11조 금지 행위

1.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조건이 불충분한 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조건이 충분한 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기업의 경영활동 등을 지연시키거나, 불편을 끼치거나, 장애요소를 유발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경영활동을 수행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사업자등록 서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을 위배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서류 상에 변경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에 위배되거나,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4. 등록 자본을 허위 기재하거나, 등록된 내용에 따른 기한과 액수로 출자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실제 가치와 다르게 출자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위법적, 허위적인 활동을 하거나, 사업 금지 분야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6. 법률규정 상의 경영조건이 불충분 상태에서 조건부 사업분야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7. 기업의 소유주, 사원, 주주가 본 법과 회사정관의 규정에 의거한 권리 행사를 차단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8. 그 외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금지 행위

### 제12조 기업의 문서보관 제도

1. 기업은 그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 a) 회사 정관, 회사정관 개정·보완본, 회사의 내부관리 규제서, 사원명부 또는 주주 명부
- b) 사업자등록증, 지적재산권 보호 인증서, 상품품질등록 확인서, 각종 허가서 및 확인서
- c) 회사의 재산 소유권 확인서 및 관련서류
- d) 사원총회, 주주총회, 이사회회의 회의 기록 및 기업의 각종 결의서
- e) 증권 발행을 위한 사업설명서
- f) 심의위원회의 보고서, 감사기관의 결론서, 독립회계조직의 결론서
- g) 회계장부, 회계증서, 연간 재무제표
- h)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자료

2. 기업은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문서들을 기업의 본사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제 2 장    기업의 설립과 사업자 등록

### 제13조 기업 설립, 출자, 주식 매입, 관리권

1. 베트남 조직 및 개인, 외국조직 및 개인은 본 법의 규정에 의거해 베트남에서 기업을 설

립하고 경영할 권리를 가진다. 단, 본 조 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다음의 경우, 조직 및 개인은 기업을 설립·경영할 권리가 없다.

a) 기관이나 단위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국가자산을 사용한 국가 기관과 인민군대 단위

b) 국가관리 및 공무원 관련법에 명시된 국가관리 및 공무원

c) 인민군대 기관이나 단위 소속 사관, 하사관, 직업군인, 국가방위 근로자, 또는 인민경찰 기관이나 단위 소속 전문 사관 및 하사관

d) 타기업의 국가 소유지분을 관리하기 위한 수임 대표자를 제외한 100% 국영기업의 경영인 및 총수

e) 미성년자, 민사상 행위능력을 제한·상실한 성인

f) 복역 중이거나 법원에 의해 영업권이 취소된 자

g) 파산법의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3. 조직 및 개인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작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단, 본 조 4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 조직 및 개인은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유한책임회사 또는 합작회사에 출자할 수 없다.

a) 기관이나 단위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에 국가자산을 이용하여 출자한 국가기관과 인민군대 단위

b) 국가관리 및 공무원 관련법에 명시된 기업에 출자할 수 없는 대상

#### **제14조 사업자등록 이전의 계약**

1. 창립주주, 창립멤버 또는 수임 대표자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기업의 설립 및 활동을 목적으로 한 각종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2. 기업을 설립한 경우, 기업은 본 조 제1항에서 명시한 체결계약서 상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3. 기업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서 체결자는 계약서 이행에 대한 재산상 책임을 각자 또는 연대하여 진다.

#### **제15조 사업자등록 절차**

1. 기업 창립자는 본 법에서 규정한 모든 사업자등록 서류를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서류를 작성한다.

2. 사업자등록기관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서류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절된 경우, 기업 창립자에게 그 사유를 서류상으로 통보해야 한다. 통보서에는 반드시 사유 및 수정·보완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3. 사업자등록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서류의 합법성을 검토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본 법에 규정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은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따라 결정이 되며, 이는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 **제16조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 서류**

1. 사업자등록 담당기관이 규정한 표준양식에 따른 사업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사본
3. 법정자본금이 필요한 업종을 경영하려는 기업의 경우, 해당기관 또는 조직의 법정자본금 확인서
4. 전문자격증(Professional certificate)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사장 또는 기타 개인의 전문자격증

**제17조 합작회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1. 사업자등록 담당기관이 규정한 표준양식에 따른 사업등록신청서
2. 회사정관 초안
3. 무한책임사원명부, 무한책임사원의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사본
4. 법률규정 상 법정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합작회사의 경우, 해당기관 또는 조직의 법정자본금 확인서
5. 전문자격증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합작회사의 경우, 법률규정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또는 기타 개인의 전문자격증

**제18조 유한책임회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1. 사업자등록 담당기관이 규정한 표준양식에 따른 사업등록신청서
2. 회사정관 초안
3. 사원명부 및 기타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 만일 개인이 사원일 경우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사본
  - b) 만일 조직이 사원일 경우 : 설립 결정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서류, 위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사본 만일 외국조직이 사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에 등록된 지역기관의 공증이 필요하며, 기관의 공증은 서류제출일 이전 최대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법률규정 상 법정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기관 또는 조직의 법정자본금 확인서
5. 전문자격증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법률규정에 따른 사장·회장 또는 기타 개인의 전문자격증 사본

**제19조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1. 사업자등록 담당기관이 규정한 표준양식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
2. 회사정관 초안
3. 창립주주명부에 첨부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a) 개인주주의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사본
  - b) 기관주주의 경우, 설립 결정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서류 사본, 위임장,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사본 만일 외국조직이 사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에 해당 조직이 등록된 지역기관의 공증이 필요하며, 기관의 공증은 서류제출일 이전 최대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법률규정상 법정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기관 또는 조직의 법정자본금 확인서
5. 전문자격증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법률규정에

따른 사장·회장 또는 기타 개인의 전문자격증 사본

## **제20조 베트남에 최초로 투자하는 외국투자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절차, 조건 및 내용**

베트남에 최초로 투자하는 외국투자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절차, 조건 및 내용은 본 법과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투자승인 확인서는 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이다.

### **제21조 사업자등록 신청서 내용**

1. 기업의 상호
2. 기업 본사의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주소(있는 경우)
3. 사업분야 및 업종
4. 회사의 정관자본금,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주의 최초 투자금
5. 유한책임회사나 합작회사의 경우 각 사원의 출자자본,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주주들에 의해 출자된 주식의 수, 발행예정 주식 총수<sup>5)</sup>, 종류, 액면 가치
6.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 소유주의 성명, 서명날인, 본적,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의 경우, 기업 소유주의 법적대리인 또는 회사소유주의 성명, 서명날인, 본적,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합작회사의 경우, 모든 무한책임사원들의 성명, 서명날인, 본적,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 **제22조 회사정관의 내용** 1. 상호,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 주소

2. 사업분야 및 업종
3. 법정자본금, 법정자본금의 증·감자 방식
4. 합작회사의 경우, 모든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주소, 국적 및 기타 기본사항.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의 성명, 주소, 국적 및 기타 밖의 기본사항.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주주들의 성명, 주소, 국적 및 기타 기본사항
5. 유한책임회사와 합작회사의 경우, 각 사원의 출자지분과 그 가치.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주주들에 의해 출자된 주식의 수,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종류, 가치
6. 유한책임회사와 합작회사의 경우 사원의 권리와 의무,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권리와 의무
7. 관리조직 구조
8.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 법적대리인
9. 회사의 결의안 통과 방식, 내부분쟁 해결 원칙
10. 경영자와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의 수당, 급여, 상여금 확정 근거 및 방식
11. 유한책임회사에서 사원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주식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12. 과세·제세 이후 이윤의 분배와 경영상 손실 처리에 대한 원칙
13. 해산의 경우, 해산 절차, 회사재산 청산 절차
14. 회사정관의 개정·보완 방식
15. 합작회사의 경우, 모든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및 서명날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모든

5) 발행예정 주식 총수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수권자본을 의미한다.

사원과 기업 소유주, 그리고 법적대리인 성명 및 서명날인.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주주, 기업 소유주, 그리고 법적대리인 성명 및 서명날인

16.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사원과 주주의 기타 합의 사항

### **제23조 유한책임회사, 합작회사의 사원명부, 주식회사의 창립주주명부**

유한책임회사와 합작회사의 사원명부, 주식회사의 창립주주명부는 사업자등록기관이 규정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유한책임회사와 합작회사의 경우 모든 사원,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주주의 성명, 주소, 국적, 본적 주소 및 기타 개인사항
2. 유한책임회사와 합작회사의 경우, 사원의 출자지분, 가치, 자산의 종류, 출자자산의 수, 가치, 각의 사원의 출자기간.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과 자산의 수와 종류, 각의 주주의 주식으로 출자한 자산의 가치
3.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 사원, 창립주주 또는 그들의 법적대리인과의 성명과 서명날인. 합작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성명과 서명날인

### **제24조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

기업은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이후 사업자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1. 사업 금지 분야에 해당하지 않은 분야 및 업종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2. 기업의 상호가 본 법 제31, 32, 33, 34조의 규정에 부합할 것
3. 본 법 제35조 1항에 따라 본사를 설정할 것
4. 법률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구비할 것
5. 법률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수수료를 충분히 납부할 것 사업자등록 수수료는 사업자등록 분야 및 업종의 수와 정부의 구체적인 비용수준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 **제25조 사업자등록증 내용**

1. 기업의 상호,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 주소
2. 법적대리인의 성명, 본적,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개인신분증
3.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또는 사원이 개인일 경우, 개인의 성명, 본적,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개인신분증. 창립주주 또는 사원이 조직일 경우, 창립주주, 사원, 회사 소유주의 사업자등록 번호 또는 창립 결의서. 합작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본적,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개인신분증. 회사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자의 성명, 본적,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개인신분증
4. 유한책임회사와 합작회사의 경우, 정관자본금.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의 총수, 출자주식의 가치, 발행예정 주식 총수. 개인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금. 법정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할 업종일 경우, 법정자본금
5. 사업분야 및 업종

### **제26조 사업자등록 내용변경**

1. 상호,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 주소, 경영 및 사업 목표, 분야, 종류, 법정자본금 또는 발행예정 주식 총수. 기업 소유주의 투자자본금 등을 변경하거나, 법적대리인 또는 사업자등

록 서류 내용의 기타 사항을 변경할 경우, 기업은 내용변경 결정일로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에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는다.

3. 사업자등록증이 분실, 또는 찢어지거나, 불에 타는 등 훼손되었을 경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

### 제27조 사업자등록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변경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은 반드시 증명서의 내용을 세워서, 통계청, 그 밖의 해당 동급기관과 기업이 본사 등록된 지역 관공서인 즉, 각급 인민위원회(현, 군, 중앙직할시, 면, 읍 등)에 통보한다.

2. 개인 및 조직은 사업자등록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변경증명서, 사업자등록 요약·발체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률규정에 따른 요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3. 사업자등록기관은 본 조 2항에서 명시한 기관이나 개인이 요청한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제28조 사업자등록 내용 공시

1. 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은 반드시 사업자등록기관의 기업정보망이나 일간지, 또는 전자신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3회 연속 공시·광고한다.

a) 기업의 상호

b)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의 주소

c) 사업분야 및 업종

d) 유한책임회사와 합작회사의 경우 법정자본금.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의 수, 출자주식 가치, 발행예정 주식 총수. 개인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금. 법정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일 경우, 법정자본금

e) 기업 소유주, 사원 또는 창립주주의 성명, 본적,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개인 신분증

f) 법적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g) 사업자등록 지역

2.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업은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변경사항을 공시·광고해야 한다.

### 제29조 자산 소유권의 이전

1.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작회사는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자자산의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해야 한다.

a) 등록된 자산이나 토지 사용권의 경우, 출자자는 국가기관의 수속절차에 따라 자산소유권이나 토지 이용권을 회사로 이전한다. 출자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b) 자산소유권을 등록하지 않은 자산의 경우, 출자는 자산양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양도증서상에 확인되어야 한다. 양도증서에는 기업의 상호와 본사주소, 출자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설립 결의서 또는 등록 번호, 회사의 법정 자본금 중 출자 자산의 총 가치 및 자본금으로 납입된 자산 단위의 수와 종류,

자본으로써 납입된 자산의 총가치, 양도일, 출자자 또는 출자자의 대리인이나 기업의 법적 대리인의 서명 날인

c) 베트남통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환이나 금이 아닌 형태의 주식 또는 자산형태의 출자지분은 출자자산에 대한 법적소유권이 합법적으로 회사로 이전되었을 때, 납입 완료로 간주한다.

2. 개인기업의 경영활동에 사용된 재산은 기업의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이전된다.

### 제30조 출자자산 평가

1. 베트남 통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환이나 금이 아닌 형태로 출자한 자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원, 창립주주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가 요구된다.

2. 기업 설립시 출자된 자산의 경우, 모든 사원, 창립주주의 만장일치 원칙에 기초하여 평가되며, 만약 출자자산이 출자시점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 사원, 창립주주는 채권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에 대한 평가가 종결된 시점의 출자자산 실제가치와 평가가치 간 차액에 대해 연대 책임진다.

3. 회사운영 중 출자된 자산의 경우, 기업과 출자자간 합의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된다. 전문평가기관이 평가하는 경우, 평가된 자산의 가치는 출자자와 기업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출자자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경우, 출자자 또는 평가기관, 기업의 법적대리인은 채권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에 대한 평가가 종결된 시점의 출자자산 실제가치와 평가가치 간 차액에 대해 연대 책임진다.

### 제31조 기업 상호

1. 기업의 상호는 반드시 베트남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숫자 또는 기호가 첨부될 수 있다. 또한, 발음이 가능해야 하며, 최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a) 기업의 종류

b) 개별 상호

2. 기업의 상호는 기업의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명에 기재하거나 표시하며, 각종 거래서, 서류·자료 그리고 기타 기업이 발행하는 인쇄물에 인쇄 또는 기재한다.

3. 본 조와 제32, 33, 34조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의 예상 등록 상호를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사업자등록기관의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한다.

### 제32조 기업 상호에 관한 금지 사항

1. 이미 등록된 상호와 중복되거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상호

2. 국가기관, 인민군대 단위,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직업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 조직의 상호를 기업명의 일부 또는 전체에 사용한 경우, 단, 상기 조직이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베트남 역사, 문화, 도덕, 그리고 민족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용어나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 제33조 외국어 또는 약자로 기재된 기업 상호

1. 외국어로 기재된 기업 상호는 베트남어에서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것을 말한다. 기업 상

호는 해당 외국어로 번역이 되거나 번역이 되지 않은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다.

2. 외국어로 된 기업 상호는 기업의 시설이나 각종 거래서, 서류·자료 그리고 기타 기업이 발행하는 인쇄물에 본래의 베트남어 상호보다 작게 기재하거나 인쇄한다.

3. 약자로 된 기업 상호는 베트남어 또는 외국어로 된 상호를 줄여서 기재할 수 있다.

### 제34조 중복 상호 및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호

1. 중복 상호란 베트남어로 읽혀지고 기재된 등록 예정 상호가 이미 등록된 다른 기업의 상호와 완전히 동일함을 의미한다.

2. 이미 등록한 기업상호와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상호는 다음과 같다.

a) 베트남어로 된 상호의 발음이 이미 등록된 타기업 상호와 동일한 경우

b) 베트남어로 된 상호가 이미 등록된 타기업 상호와 단지 기호 “&”만이 다른 경우

c) 약자로 기재된 등록 예정 상호가 이미 등록된 타기업 상호와 중복될 경우

d) 외국어로 기재된 등록 예정 상호가 이미 등록된 타기업 상호와 중복될 경우

e) 등록 예정 상호가 이미 등록된 기업의 상호에 숫자, 로마자 숫자, 베트남 알파벳 등을 첨가한 경우. 단, 등록 예정 기업이 이미 상호를 등록한 기업의 자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f) 등록된 타회사 상호가 기존의 상호에 “신(New)”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었을 경우

g) 등록 예정 상호가 이미 등록된 기업상호와 단지 “북부”, “중부”, “서부”, “남부”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만이 다를 경우. 단, 등록 예정 기업이 이미 상호를 등록한 기업의 자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제35조 기업의 본사

1. 기업의 본사란 기업의 연락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본사 소재지는 베트남 영토 내에 위치해야 하며, 시, 도, 군, 구, 읍, 면, 동, 거리, 번지수 등이 정확히 표기된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있을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에 본사의 영업시간(opening time)을 통지해야 한다.

### 제36조 기업의 직인

1. 기업은 개별직인을 보유하며, 직인은 본사에 보관해야 한다. 직인의 형태 및 내용, 제작 조건, 사용조건 등은 정부의 규정에 의해 따른다.

2. 직인은 기업의 재산이며, 기업의 법적대리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직인의 사용·관리에 책임을 진다. 필요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업은 2개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

### 제37조 기업의 대표사무소, 지사, 사업장

1. 대표사무소란 기업에 속한 단위으로써, 기업의 이익과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임 대표자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대표사무소의 조직과 활동은 법률규정에 따른다.

2. 지사란 기업에 속한 단위으로써, 기업의 전체나 일부 기능, 또는 부여된 권한에 따라 대표 기능까지 수행할 의무가 있다. 지사의 사업 분야 및 업종은 기업의 사업 분야 및 업종과 부합해야 한다.

3. 사업장이란 기업의 구체적인 사업활동 장소를 말한다. 사업장은 본사 주소 외에 위치할

수 있다.

4.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명은 기업의 상호를 따르며,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임을 나타내는 각각의 부가 내용이 첨가되어야 한다.

5. 기업은 지사, 대표사무소를 국내외에 설치할 권리가 있다. 또한 기업은 한 행정구역에 하나 이상의 대표사무소, 지사를 둘 수 있다. 지사, 대표사무소의 설립 절차 및 수속은 정부의 규정에 따른다.

## 제 3 장 유한책임회사

제 1 절 2인 이상의 사원을 가진 유한책임회사

### 제38조 2인 이상의 사원으로 이루어진 유한책임회사

1. 유한책임회사는 다음과 같은 기업을 말한다.

a) 회사의 사원은 조직 또는 개인이며, 사원의 수는 50명을 넘지 않는다.

b) 회사의 사원들은 자기가 기업에 출자한 지분만큼 채권 및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해 책임진다.

c) 사원의 출자지분은 본 법의 제43, 44, 4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2. 유한책임회사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법인자격을 갖는다

3.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제39조 자본 출자 및 출자지분 확인서의 발행

1. 사원은 기한 내 서류상 기재된 종류의 재산을 충분히 출자한다. 사원이 약속한 출자 재산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 타사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회사는 출자재산의 종류 변경이 승인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에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한다. 회사의 법적대리인은 출자 약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자본 출자 정도를 서면으로 사업자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서면 신고가 지연되거나 신고내용이 확실하거나 충분치 않고, 사실에 위배되어 회사와 다른 사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만일 약속한 자본금을 기한 내에 모두 출자하지 않은 경우, 출자하지 않은 자본금은 회사에 대한 해당 사원의 채무로 간주하며, 사원은 기한 내에 충분히 출자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최종 시한이 지났음에도 약속한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은 사원이 있을 경우, 미출자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a) 1인 또는 일부 사원이 미출자 금액을 출자한다.

b) 새로운 사원이 회사에 출자하도록 한다.

c) 각 사원이 정관자본 중 자신의 출자액 비율에 따라 출자한다.본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미출자액이 출자완료 된 이후, 약속한 출자액을 출자하지 못한 사원은 자연히 사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회사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내용을 수정하여 등록해야 한다.

4. 출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사원은 회사로부터 출자지분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출자지분

확인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 a) 회사 상호, 본사소재지 주소
  - b) 사업자등록번호와 발급일
  - c) 회사 정관자본금
  - d) 사원이 개인일 경우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사원이 조직일 경우 조직명, 주소, 국적, 회사 설립결정서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 사원의 지분, 출자자본의 가치
  - f) 출자지분 확인서 번호와 발급일
  - g) 회사 법적대리인의 성명, 서명날인
5. 출자지분 확인서가 분실되거나, 찢어지거나, 불에 타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훼손된 경우, 사원은 회사로부터 출자지분 확인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제40조 사원명부

1. 사업자등록 후 회사는 즉시 사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원명부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 a) 회사 상호, 본사 소재지 주소
- b) 사원이 개인인 경우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사원이 조직일 경우 조직명, 주소, 국적, 회사 설립결정서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c) 출자시점의 출자자본 가치와 사원의 지분, 출자시기, 출자자산 종류, 출자자산 종류마다의 수량과 가치
- d) 사원이 개인인 경우 사원의 서명날인, 사원이 조직인 경우 법적대리인의 서명날인
- e) 사원 각각의 출자지분 확인서 번호와 발급일

2. 사원명부는 본사에 보관한다.

#### 제41조 사원의 권리

1.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사원총회에 참여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한 각 문제에 관한 토론, 건의, 표결 한다.
- b)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c) 사원명부, 거래내역서, 회계장부, 연간 재무제표, 사원총회 의사록, 회사가 발행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검사, 재고, 발체, 복사할 수 있다.
- d) 회사가 납세를 비롯한 법률에 따른 기타 재정 의무를 완수한 이후의 이윤을 지분에 비례하여 배분 받는다.
- e) 회사의 해산 또는 파산 시,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회사의 잔여자산 가치를 배분 받는다.
- f) 회사가 정관자본을 증자할 시, 추가 출자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며, 본 법률규정에 따라 지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g) 사장 또는 회장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사원 또는 회사의 이익에 손실을 미친 경우 법률에 따라 진정·제소, 고소할 수 있다.
- h) 양도, 상속, 증여 및 법률과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른 기타 방법을 통해 자신의 지분

을 처분할 수 있다.

- i) 이외 법률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권리를 가진다.
2. 정관자본금의 25% 이상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그 이하 비율을 소유하고 있는 사원이 나 사원집단은, 본 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사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정관자본금의 75% 이상을 소유한 사원이 존재하며, 회사정관에서 그 이하의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그 외 소수지분 사원들이 모여 본 조 2항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42조 사원의 의무

1. 약속한 출자금에 기한 내에 모두 출자하고, 회사에 출자하기로 서류상에 약속한 출자자본 내 회사의 채무와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본 법 제43, 44, 45, 60조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자본금을 회사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다.
2. 사원은 회사정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사원총회의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본 법이 규정하는 기타 의무들을 이행해야 한다.
5.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개인적 책임을 진다.
  - a) 법률 위반
  - b)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영 및 거래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c) 회사에 재정적 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

#### 제43조 지분의 환매

1. 만일 다음과 같은 다음 각 문제들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정에 반대표결을 행사한 경우, 사원은 회사에 대해 자신의 출자지분을 환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a) 사원 또는 사원총회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회사정관의 수정 또는 보완
  - b) 기업 조직개편
  - c) 회사정관에 규정된 기타 경우출자지분 환매 요구는 반드시 문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본 항 a, b, c에서 규정한 문제들이 결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본 조 1항에서 규정된 사원의 요청이 있을 시, 만일 가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시장가격 또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된 원칙에 따라,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매해야 한다. 결제는 회사가 전액 환매 이후에도 채무와 기타 재산상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3. 만일 회사가 본 조 2항에서 규정된 출자지분 환매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원은 다른 사원이나 사원이 아닌 타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 제44조 출자지분 양도

본 법 제45조 6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다음 규정에 따라 자신의 출자지분 일부 또는 전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타 사원들에 대해 그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모집해야 한다.

2. 모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타 사원들이 자신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사원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 **제45조 기타 경우의 출자지분 처리**

1. 개인사원이 사망하거나 법원에 의해 사망선고가 내려진 경우, 상속인은 유언 또는 법률에 따라 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
2. 사원이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해당 사원의 회사내 권리와 의무는 후견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3. 다음의 경우 사원의 출자지분은 본 법제 43조와 44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환매하거나 양도될 수 있다.
  - a) 상속자가 사원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경우
  - b) 본 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수증자가 사원총회로부터 승인 받지 못한 경우
  - c) 사원이 해산 또는 파산한 조직인 경우
4. 사원이 상속자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권을 박탈당한 경우, 해당 출자지분은 민사법에 따라 처리된다.
5. 사원은 자신의 출자지분 일부 또는 전체를 타인에게 증여할 권리가 있다. 수증자가 같은 혈통의 3대 이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연히 회사의 사원이 된다. 수증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승인 후에만 사원이 될 수 있다.
6. 사원이 출자지분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해당 출자지분을 사용할 수 있다.
  - a) 사원총회 승인시, 사원이 된다.
  - b) 본 법 제 4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출자지분을 모집, 양도한다.

#### **제46조 회사의 관리조직구조**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총회, 사원총회 의장, 사장 또는 회장을 둔다. 11인 이상의 사원들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조직해야 하며, 11명 미만으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판단에 의해 감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업무 조건과 제도, 위원장은 회사 정관에 의해 규정된다.

사원총회 의장이나 사장 또는 회장은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법적대리인이 된다. 회사의 법적대리인은 반드시 베트남에 상주하여야 한다. 30일 이상 베트남에 부재할 경우에는 회사 법적대리인의 권한과 의무 이행을 위해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서면 위임해야 한다.

#### **제47조 사원총회**

1. 사원총회는 모든 사원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사원이 조직인 경우에는 수임 대표자를 지명하여 사원총회에 참가한다. 회사정관에서 정기 사원총회 회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나, 최소 1년에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2. 사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임무를 가진다.
  - a) 회사의 연간 발전 전략 및 경영계획에 관한 결정
  - b) 정관자본금의 증자 및 감자, 추가 출자 동원의 시기와 방식 결정
  - c) 가장 최근 공시한 회사의 재무제표상에 기록된 자산 총 가치의 50% 이상, 또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그 이하 비율의 투자프로젝트와 투자방식에 대한 결정

d) 시장개발, 마케팅, 기술이전 방안 및 가장 최근 공시한 회사의 재무제표상에 기록된 자산 총 가치의 50%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또는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그 이하 비율의 대출 및 자산 매각에 대한 결정

e) 사원총회 의장, 사장 또는 회장, 회계 총책임자를 비롯해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관리자의 임명, 면직, 파면, 고용 및 해고를 결정

f) 사원총회 의장, 사장 또는 회장, 회계 총책임자를 비롯해 회사정관에 규정된 기타 관리자의 급여, 상여금(보너스) 및 기타 수익을 결정

g) 연간 재무제표, 이윤의 사용 및 배분계획 또는 회사의 손실 처리계획에 대한 승인

h) 회사의 관리조직기구 결정

i) 자회사, 지사, 대표사무소 설립 결정

j) 회사 정관의 수정 및 보완

k) 회사 조직개편 결정

l) 회사의 해산 및 파산 결정

m) 이외 본 법과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와 의무

#### 제48조 수임 대표자

1. 수임대표자의 지명은 반드시 서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지명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회사와 사업자등록기관에 보고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a) 조직명, 본사소재지 주소, 국적, 설립허가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와 일자

b) 출자지분 비율, 출자지분 확인서 번호와 발급일

c) 지명된 수임대표자의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d) 위임 기간

e) 사원의 법적대리인, 수임대표자의 성명, 서명날인수임대표자의 변경은 결정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와 사업자등록 기관에 보고되어야 하며, 회사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2. 수임대표자는 다음 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민사행위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b) 기업 설립 및 경영 금지 대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c) 경영관리 또는 회사의 주요 경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d) 국가가 출자지분이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에 대해서는 관리자 또는 모기업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의 배우자, 부모, 양부모, 자녀, 양자, 양녀, 친형제는 자회사의 수임대표자에 지명될 수 없다.

3. 수임대표자는 사원을 대신하여 본 법에서 규정된 사원총회 사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사원총회를 통한 사원으로써 권리를 이행함에 있어, 수임대표자에 대한 사원의 제한은 제3자에게 어떤 법적 효력도 갖지 않는다.

4. 수임대표자는 사원총회 전 회의에 참가할 의무를 가진다. 수임대표자는 사원총회 사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고, 신중히, 최선을 다해 이행하며, 사원과 회사의 합법적 최대 이익을 보호한다.

5. 수임대표자는 위임된 출자지분에 비례한 의결권을 가진다.

#### 제49조 사원총회 의장

1. 사원총회는 1인의 사원을 회장으로 선출한다. 사원총회의 대표자는 회사의 사장 또는 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사원총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임무를 가진다.
  - a) 사원총회의 활동 일정과 계획을 준비하거나 그 준비를 조직한다.
  - b) 사원총회 회의의 또는 각 사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사일정과 내용, 자료를 준비하거나 그 준비를 조직한다.
  - c) 사원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거나 각 사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한다.
  - d) 사원총회의 결정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하거나 감사를 조직한다.
  - e) 사원총회를 대표하여 사원총회의 각 결정에 서명한다.
3. 사원총회 의장의 임기는 5년을 넘지 않는다. 사원총회 의장은 재임 회수의 제한 없이 재선출될 수 있다.
4. 회사정관에서 사원총회 의장을 법적대리인으로 규정한 경우, 모든 거래문서에는 이점을 명기해야 한다.
5. 부재 시 사원총회 의장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타사원에게 사원총회 의장의 권한과 임무를 문서를 통해 위임한다. 만일 수임 사원이 없거나, 의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원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사원 중 1인을 선출하여 사원총회의 권한과 임무를 이행하게 한다.

#### 제50조 사원총회의 소집

1. 사원총회는 사원총회 의장이나 본법 제41조 2항과 3항에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원, 사원 집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다. 사원총회는 회사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사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사원총회 의장은 의사일정, 자료내용을 준비하거나 그 준비를 조직하고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사원은 서면으로 의사일정에 관해 건의할 수 있다. 건의서에는 다음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 a) 사원이 개인일 경우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사원이 조직일 경우 조직명, 주소, 국적, 회사 설립결정서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또는 수임대표자의 성명, 서명날인
  - b) 출자지분 비율, 출자지분 확인서 번호와 발급일
  - c) 의사일정에 관한 건의 내용
  - d) 건의 사유 사원총회일로부터 최소 근무일수 1일 이전까지 본사에 제출된 건의가 규정에 따른 내용을 충족하였을 경우, 사원총회 의장은 건의를 받아들여, 사원총회 의사일정을 보완한다. 회의 바로 직전에 제출된 건의는 다수의 회의 참가 사원이 동의할 경우 인정된다.
2. 사원총회 소집통지는 소집통지서, 전화, 팩스, 텔렉스 또는 회사정관이 규정한 기타 전자수단을 통해 각 사원총회의 각 사원에게 직접 전달된다. 회의 소집통지서에는 시간, 장소, 의사일정이 명기되어야 한다. 의사일정과 회의자료는 반드시 개회 이전에 사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회사정관의 수정 및 보완, 회사발전 방향 승인, 연간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구조개편 또는 해산에 관한 회의자료는 늦어도 회의당일로부터 근무일수 2일 이전까지 각 사원

에 전달되어야 한다. 기타 자료의 전달 시한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다.

3. 사원총회의 의장이 본 법 제 41조 2항과 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원, 사원집단의 소집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원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원이나 사원집단이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자등록 기관에 사원총회 조직과 진행에 대한 감독을 요청한다. 동시에 본인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불성실한 의무이행으로 인해 그들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를 입힌 사원총회 의장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

4.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총회의 소집은 본 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는 문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a) 사원이 개인일 경우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사원이 조직일 경우 조직명, 주소, 국적, 회사 설립결정서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집을 요청한 각 사원의 출자자본 비율, 출자지분 확인서 번호와 발급일

b) 사원총회 소집을 요청한 사유와 해결이 필요한 문제

c) 의사일정 예안

d) 소집을 요청한 각 사원 또는 그들의 수임대표자의 성명, 서명날인

5. 사원총회 소집 요청이 본 조 4항의 규정한 내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 사원총회 의장은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사원, 사원집단에 상기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그 외 경우, 사원총회 의장은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사원총회 의장이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회사와 관련 사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법률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소집을 요청했던 사원 또는 사원집단은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사원총회의 소집과 사원총회 진행에 사용된 적합한 경비는 이후 회사에 의해 상환된다.

### **제51조 사원총회 진행의 조건과 절차**

1. 사원총회는 최소, 정관자본 75% 이상을 대표하는 사원들의 출석 시에 진행될 수 있다.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다.

2. 첫 번째 사원총회가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진행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 첫 번째 회의 개최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두 번째 회의를 소집한다. 두 번째 회의는 최소 정관자본 50% 이상을 대표하는 사원들의 출석 시에 진행될 수 있다.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다.

3. 두 번째 사원총회가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진행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 두 번째 회의 개최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 번째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사원총회는 출석 사원수와 출석 사원에 의해 대표되는 정관자본에 구애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4. 사원, 사원의 수임대표자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표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원총회 진행 절차와 표결형식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다.

### **제52조 사원총회의 결정**

1. 사원총회는 회의에서의 표결 형식을 통해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각 결정을 통과시키며, 서면 또는 회사정관에서 규정하는 기타 형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 사안의 결정은 사원총회에서의 표결 형식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a) 회사정관의 수정 및 보완

- b) 회사 발전방향 결정
  - c) 사원총회 의장의 선출, 면직, 해임, 사장 또는 회장의 임명, 면직, 파면
  - d) 연간 재무제표 승인
  - e) 회사의 구조개편 또는 해산
2. 다음 각 경우에 사원총회의 결정은 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다.
- a) 회의참가 사원 지분총액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의결수를 얻어 승인된 경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다.
  - b) 회사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상에 기록된 총 자산 가치의 50%나 그 이상의 또는 회사정관에서 규정된 그 이하 비율의 가치를 가진 자산의 매각, 회사 정관의 수정이나 보충, 회사의 구조개편이나 해산에 대해 회의참가 사원 지분총액의 최소 75%를 대표하는 의결수를 얻어 승인된 경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다.
3. 서면 의견수렴 형식을 통한 사원총회의 결정은 정관자본의 최소 75%를 대표하는 사원수를 얻은 경우 승인된다.

**제53조 사원총회 의사록**

1. 각 사원총회는 반드시 회사의 의사록상에 기재되어야 한다.
2. 사원총회 의사록은 회의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작성완료 및 승인되어야 한다. 의사록은 다음 주요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
  - a) 회의 시간과 장소. 회의의 목적과 의사일정
  - b) 참가한 사원, 수임대표자의 성명, 출자자본 비율, 출자지분 확인서 번호와 발급일. 불참한 사원, 수임대표자의 성명, 출자자본 비율, 출자지분 확인서 번호와 발급일
  - c) 토론 및 의결된 사안. 토론된 각 사안마다에 관한 사원의 발표의견 요약
  - d) 각 표결 사안마다의 찬성, 반대, 기권 투표수
  - e) 가결된 각 결정
  - f) 참가한 사원, 수임대표자의 성명, 서명날인

**제54조 서면 의견수렴 형식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안 통과절차**

회사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결정 통과를 위한 사원들의 서면 의견수렴에 관한 권한과 방식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1. 사원총회 의장이 권한에 속한 각 사안의 가결을 위해 사원총회 사원들의 서면 의견수렴 여부를 결정한다.
2. 사원총회 의장은 결정이 필요한 내용에 관한 보고서 및 해설서, 결정 초안 및 표결 질의서를 준비하여 사원총회 각 사원에게 전달할 책임을 가진다. 표결 질의서(voting inquiry)는 다음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 a) 회사 상호, 본사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발급일, 사업자등록 지역
  - b) 사원총회 사원의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 신분증 번호, 자신이 대표하는 출자지분 비율
  - c) 의견수렴 사안과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에 따른 답변의견
  - d) 회사에 표결 질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최종시한
  - e) 사원총회 의장과 사원의 성명, 서명날인규정 시한 내에 회사에 제출된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된 표결 질의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사원총회 의장은 검표를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회사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표결 질의서의 접수시한 종료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검표결과와 통과된 결의안을 각 사원에게 전달한다. 검표결과 보고서는 본 법 제53조 2항에서 명시한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 제55조 사장 또는 회장

1. 기업의 사장 또는 회장은 회사의 경영 및 사업을 운영하는 이로써, 자신의 권한과 임무 수행에 관하여 사원총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사장 또는 회장은 다음의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 a) 사원총회의 결정을 이행
- b)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관련된 각 사안을 결정
- c) 회사의 경영 및 투자계획을 시행
- d) 회사 내부관리 규제서를 공포
- e) 사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직위를 제외한, 사내 각 관리자를 임명, 면직, 파면
- f) 사원총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를 체결
- g) 회사 조직구조 구성방안 제안
- h) 사원총회에 연간 회계결산 보고서를 제출
- i) 경영상 발생한 이윤 분배 및 손실처리 방안 제안
- j) 직원 고용
- k) 이 외 기업정관의 규정, 또는 사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사장 또는 회장이 회사와 체결한 노동계약서 상에 규정된 기타 임무

### 제56조 사원총회 사원, 사장 또는 회장의 의무

1. 사원총회 사원, 사장 또는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회사와 회사 소유주의 합법적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 받은 권리와 임무를 성실하고, 신중히, 최선을 다해 이행한다.

b) 회사와 회사 소유주의 이익에 충실하며, 회사의 정보, 노하우, 경영기회를 이용하지 않는다. 또한, 사리사욕 또는 타 조직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 직무와 회사의 재산을 남용해선 안된다.

c) 사원총회 사원, 사장 또는 회장과 이들의 관계인이 소유주이거나 지배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각 기업에 관해 적시에, 충분하고 정확하게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d) 법률과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2. 사장 또는 회장은 회사가 기간이 만기 채무를 완제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급여인상 또는 상여금(보너스) 지급을 받을 수 없다.

### 제57조 사장 또는 회장의 기준

1. 사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기준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민사행위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른 기업 설립 및 경영 금지 대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b) 최소 10%의 정관자본을 소유한 개인이거나, 사원은 아니나 경영관리나 회사의 주요 경영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제 경험을 갖춘 자, 또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춘 인

물이어야 한다.

2. 국가가 출자지분이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회사에 대해서는 본 조 1항에 규정된 기준 이외에도, 관리자 또는 모기업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의 배우자, 부모, 양부모, 자녀, 양자, 양녀, 친형제는 사장 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 **제58조 사원총회 사원, 사장 또는 회장의 보수, 급여, 상여금(보너스)**

1. 회사는 경영 효과와 결과에 따라 사원총회 사원, 사장 또는 회장을 비롯한 기타 관리자에게 보수, 급여, 상여금(보너스)을 지급할 권한이 있다.

2. 사원총회 사원, 사장 또는 회장의 보수, 급여는 법인 소득세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경비로 계산되며,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에서 개별 항목으로 기재·구분한다.

#### **제59조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계약 및 거래**

1. 회사와 다음 각 대상간의 계약 및 거래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사원, 사원의 수임대표자, 사장 또는 회장, 회사의 법적대리인

b) 본 항 a)에 규정된 사람들의 관계인

c) 모회사의 관리자, 모회사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d) 본 항 c)에 규정된 사람의 관계인법적대리인은 진행 예정인 계약서의 초안 또는 거래의 주요 내용을 각 사원총회 사원에 전달하고, 동시에 회사의 본사와 지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총회는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 또는 거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가진 전체 자본 중 최소, 75% 이상을 대표하는 사원들이 동의하면 계약, 거래가 승인된다. 상기 각 계약 및 거래의 관련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

2. 본 조 1항의 규정에 맞는 동의를 얻지 못한 계약, 거래는 무효로 처리된다. 회사의 법적대리인, 관련 사원과 해당 사원의 관계인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해당 계약 및 거래로 거둔 수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 **제60조 정관자본금의 증자, 감자**

1. 사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는 다음 형식을 통해 회사의 정관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다.

a) 사원의 출자자본 증자

b) 회사의 자산 가치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관자본금을 조정

c) 새로운 사원의 출자 허용

2. 사원의 출자자본을 증자하는 경우, 추가 출자자본은 해당 사원의 회사 정관자본금 중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로 각 사원에게 할당된다. 정관자본금 증가에 반대하는 사원은 추가로 출자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사원들간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해당 추가 출자금액은 회사 정관자본금 중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비율로 다른 사원들에게 할당된다. 새로운 사원의 가입을 허용하여 정관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합의가 필요 하며, 회사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회사는 다음 형식을 통해 회사의 정관자본금을 감자할 수 있다.

a)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활동을 한 경우, 회사는 정관자본금 중

출자자본의 비율에 따라 사원에게 출자지분 일부를 사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동시에 사원에게 상환한 이후에도 채무변제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를 보장해야 한다.

4. 정관자본금의 증·감자 결정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회사는 사업자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 회사 상호, 본사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와 발급일, 사업자등록 지역
- b) 사원이 개인인 경우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사원이 조직일 경우 조직명, 주소, 국적, 회사 설립결정서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사원 각각의 출자지분
- c) 정관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 예정인 자본 금액
- d) 사원총회 의장, 회사 법적대리인의 성명, 서명날인법정자본금을 증자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정이 담긴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법정자본금을 감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정이 담긴 보고서와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외국인 소유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는 독립 회계감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사업자등록기관은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정관자본금의 증·감 여부를 등록한다.

#### **제61조 이윤 배분의 조건**

회사는 경영상 이윤이 발생하고, 납세의무를 비롯한 기타 법률규정에 따른 재정적 의무를 완수한 이후에 각 사원에게 이윤을 배분할 수 있다. 동시에 기한 내 채무변제를 비롯한 재산상의 의무 이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제62조 상환된 출자지분 또는 배분된 이윤의 회수**

본 법 제60조 3항과 4항에 위배되는 정관자본금의 감축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어긋나는 사원에게 이윤분배로 인해 일부 출자지분이 상환된 경우, 각 사원은 상환 받은 금액과 기타 재산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감축된 출자지분이나 배분된 이윤에 상응한 상환금액과 기타 재산을 반환하기 전까지 채무변제를 비롯한 회사의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 **제 2 절 1인 유한책임회사**

#### **제63조 1인 유한책임회사**

- 1. 1인 유한책임회사란 하나의 조직 또는 개인이 소유주(이하 회사 소유주라 한다.)인 기업을 말한다. 회사 소유주는 회사의 정관자본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기업의 채무와 기타 재산적 의무에 관해 책임을 진다.
- 2. 1인 유한책임회사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법인 자격을 갖는다.
- 3. 1인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제64조 회사 소유주의 권리**

- 1. 기업 소유주가 조직인 경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회사정관의 내용을 결정하고, 회사 정관을 개정·보완할 권리
  - b) 회사의 연간 발전전략 및 경영계획을 확정할 권리
  - c) 회사의 관리조직구조 및 관리자의 임명, 해임, 면직 등을 결정할 권리

- d) 가장 최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총 회사자산 가치의 50% 이상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그 이하 비율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결정
  - e) 시장, 마케팅, 기술개발 방법 등을 결정할 권리
  - f) 가장 최근 재무제표에 기록된 총 회사자산 가치의 50% 이상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그 이하 비율의 회사정관에 규정된 대출계약서 또는 기타 계약서 통과를 결정
  - g) 가장 최근 재무제표에 기록된 총 회사자산 가치의 50% 이상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그 이하 비율의 자산 매각에 대한 결정
  - h) 회사의 정관자본금의 증자,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 회사의 정관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체 양도 등을 결정할 권리
  - i) 자회사 설립 및 기타 회사에 출자 등을 결정할 권리
  - j) 경영활동의 감독·평가 등을 조직할 권리
  - k) 회사가 납세를 비롯한 기타 재산상 의무를 완수한 후, 이윤 사용을 결정할 권리
  - l) 회사의 조직개편을 제안하거나, 해산을 결정하거나 파산을 요구할 권리
  - m) 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한 이후, 회사의 재산 전체를 회수할 권리
  - n) 그 외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권리
2. 기업 소유주가 개인인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회사정관의 내용을 결정하고, 회사정관을 수정·보완할 권리
  - b) 기업의 투자, 경영, 내부경영 등을 결정할 권리. 단,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c) 타조직 또는 개인에게 회사의 정관자본금 일부 또는 전체를 양도할 권리
  - d) 회사의 납세를 비롯한 기타 재산상의 의무를 완수한 후, 이윤 사용을 결정할 권리
  - e) 회사의 조직개편, 해산을 결정하거나 파산을 요구할 권리
  - f) 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한 이후, 회사의 재산 전체를 회수할 권리
  - g) 그 외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권리

**제65조 회사 소유주의 의무**

1. 회사 소유주는 약속한 기한 내 자본금을 출자할 의무가 있으며, 약속한 출자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기한 내 출자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채무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회사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 회사 소유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분명하게 구분할 의무가 있다. 회사 소유주가 개인일 경우, 개인과 자신의 가족의 지출과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의 지위로써의 지출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4. 기업과 회사 소유주 간의 매매, 대출, 임대, 임차, 기타 거래에 대해 계약에 관한 법(laws governing contracts)과 관련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5. 이 외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의무를 수행한다.

**제66조 회사 소유주의 권리에 대한 제한**

1. 회사 소유주는 타 조직 또는 타인에게 정관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방법으로만 출자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단, 기타 형식으로 출자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한 경우 회사의 채무와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

계 정관자본금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을 등록해야 한다.

2. 회사 소유주는 만기 채무 또는 기타 재산상 의무를 완제하기 전에 회사의 이윤을 취득할 수 없다.

#### **제67조 소유주가 조직인 1인 유한책임회사의 관리조직구조**

1. 회사 소유주는 본 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임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임 대표자의 임기는 5년을 넘지 않는다.. 수임 대표자는 본 법 제48조 2항 기준과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2. 회사 소유주는 언제든지 수임 대표자를 변경·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최소 2인이 수임 대표자로 선임된 경우, 회사의 관리조직구조는 사원총회, 사장 또는 회장, 감사인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사원총회에는 수임 대표자 전체가 포함된다.

4. 1인이 수임 대표자로 선임된 경우, 수임 당사자가 대표이사를 겸임한다. 이 경우, 회사의 관리조직구조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 감사인 등으로 구성된다.

5. 회사정관은 사원총회 의장,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을 회사의 법적대리인으로 규정한다. 회사의 법적대리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이며, 만일 30일 이상 베트남에 부재할 경우,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타인을 법적대리인으로 서면 위임해야 한다.

6. 사원총회,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 그리고 감사인의 기능, 권리, 임무는 본 법 제 68, 69, 70, 71조에서 규정한다.

#### **제68조 사원총회**

1. 사원총회는 회사 소유주를 대신하여 회사 소유주의 권리와 임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사를 대행할 권리가 있다. 또한, 본 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임무 수행을 위해 회사 소유주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회사 소유주에 대한 사원총회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임무, 업무제도는 회사정관과 관련법에 규정에 근거해 실행된다.

3. 회사 소유주는 사원총회 의장을 지명하며, 사원총회 의장의 임기, 권리 및 임무는 본 법 제49조와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한다.

4. 사원총회의 권한, 회의 소집 형식은 본 법 제50조의 명시된 규정에 의거한다.

5. 사원총회는 총사원의 최소 2/3가 출석하였을 경우, 회의를 진행한다.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은 동일한 가치의 1개 의결권을 가지며, 사원총회는 서면으로 의결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다.

6. 사원총회의 결의안은 총회 출석 사원의 1/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통과된다. 회사 정관의 수정·보완, 조직개편, 정관자본금의 일부 혹은 전체 양도 등은 총회 출석 사원의 최소 3/4가 동의하는 경우 가결된다. 사원총회의 결의안은 통과일로부터 법적가치를 가지나, 회사정관상 회사소유주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사원총회의 각 회의 내용을 의사록에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사원총회의 의사록 내용은 본 법 제53조의 명시된 규정에 따른다.

#### **제69조 대표이사**

1. 대표이사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회사 소유주의 권리와 임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를 대신할 권리가 있다. 또한, 본 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부

여된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 소유주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회사 소유주에 대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임무, 업무제도는 회사정관과 관련 법에 규정에 근거해 이행된다.

3. 회사 소유주의 권리와 의무 이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결정은 회사 소유주가 비준한 날로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나, 회사 정관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70조 사장 또는 회장

1. 사원총회 또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사장 또는 회장을 임명 또는 고용할 수 있다. 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는 5년을 넘지 않으며, 자신의 권리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원총회 또는 대표이사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2. 사장 또는 회장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a) 사원총회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을 이행
- b)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활동과 관련된 각 사안을 결정
- c) 회사의 경영계획 및 투자계획을 실행
- d) 회사의 내부 관리규제서를 공포
- e) 사내 관리자를 임명, 면직, 파면할 권리. 단, 사원총회 또는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관리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f)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서를 체결할 권리. 단, 사원총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g) 회사 조직구조 구성방안을 제안
- h)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에 연간 회계결산보고서를 제출
- i) 경영상 발생한 이윤 및 손실을 사용·처리방안을 제안할 권리
- j) 직원을 고용할 권리
- k) 이 외 회사정관, 사장 또는 회장이 사원총회 또는 대표이사와 체결한 노동계약서 상에 규정된 기타 권리

3. 사장 또는 회장의 기준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민사행위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른 기업 설립 및 경영 금지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b) 사원총회 또는 대표이사와의 관계인, 수임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를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와의 관계인이 아닌 자
- c) 경영,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 및 업종에 전문지식과 실제 경험이 풍부하며, 또는 회사정관상 규정된 각종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제71조 감사인

1. 회사 소유주는 1-3명의 감사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감사인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는다. 감사인은 자신의 권리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회사 소유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감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사원총회,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이 소유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회사의 경영·관리업무 수행할 임무

b) 회사 소유주와 관련 국가기관에 재무제표, 경영현황보고서, 관리업무평가보고서, 기타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기 서류를 심사할 임무. 심사한 각종 보고서를 회사 소유주에

#### 보고할 임무

- c) 회사의 경영 업무, 관리조직구조의 보완·수정 방안을 소유주에게 제안할 임무
  - d) 이 외 회사정관, 회사 소유주의 요구 및 결정에 따른 기타 임무
3. 감사인은 회사의 본사, 지사, 대표사무소가 관리·보관하는 그 어떠한 서류도 열람·검토할 권리가 있다. 사원총회,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 그리고 기타 관리자는 소유주의 권리를 수행하고, 회사의 경영·관리업무 운영에 대한 각 정보를 감사인의 요청에 성실하고 충분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감사인의 기준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 a) 민사행위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른 기업 설립 및 경영 금지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b) 사원총회 또는 대표이사, 또는 감사인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와의 관계인이 아닌 자
  - c) 회계, 회계감사에 전문지식이 풍부하며,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 및 업종에 전문지식과 실제 경험이 풍부하며, 또는 회사정관상 규정된 각종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제72조 사원총회의 사원,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 감사인의 의무

1. 사원총회의 사원,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a) 상기인은 주어진 임무와 권한 이행시, 법률, 회사정관, 회사 소유주의 결정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b) 회사와 회사 소유주의 합법적인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 받은 권리와 임무를 신중하고, 최선을 다해, 충실히 수행한다.
  - c) 회사와 회사 소유주의 이익에 충실하며 회사의 정보, 노하우, 경영기회를 이용하지 않는다. 또한, 사리사욕 또는 타 조직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 또는 회사의 재산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 d) 사원총회의 사원,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 감사인 또는 이들과의 관계인이 기업주, 주주, 지배출자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관해 적시에 정확하게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상기 보고서는 회사의 본사와 지사에 게시되어야 한다.
  - e) 이 외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의무가 있다.
2. 사장 또는 회장은 회사가 만기 채무를 완제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보너스)을 지급 받지 못한다.

#### 제73조 회사 관리자와 감사인 보수, 급여, 기타 수익

1. 회사 관리자와 감사인은 회사의 경영 효과 및 결과에 따라 보수, 급여, 또는 기타 수익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 회사 소유주는 사원총회의 사원,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인의 보수, 급여, 또는 기타 수익의 정도 및 수준을 결정한다. 회사 관리자와 감사인의 보수, 임금, 기타 이익은 법인 소득세법,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경비로 계산되며,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에서 개별 항목으로 기재·구분한다.

#### 제74조 소유주가 개인인 1인 유한책임회사의 관리조직구조

1. 소유주가 개인인 1인 유한책임회사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으로 구성된다.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은 회사정관의 규정에 근거해 회사의 법적대리인이 된다.

2. 대표이사는 사장 또는 회장을 겸직할 수 있거나, 타인을 사장 또는 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사장의 구체적 권리, 의무, 임무는 회사정관 그리고 사장 또는 회장과 대표이사 간에 체결한 노동계약서의 규정에 따른다.

#### 제75조 회사와 관계인 간의 계약 및 거래

1. 소유주가 조직인 1인 유한책임회사와 다음과 같은 대상 간의 계약 및 거래는 다수결의 원칙과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사원총회,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 감사인의 승인 및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a) 회사 소유주와 회사 소유주의 관계인

b) 수임 대표자, 사장 또는 회장, 감사인

c) 본 조 b항에서 명시한 자의 관계인

d) 회사 소유주의 관리인,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e) 본 조 d항에서 명시한 자의 관계인회사의 법적대리인은 계약서 초안 혹은 거래내역을 사원총회,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 감사인에게 전달하며, 동시에 회사의 본사 및 지사에 상기 문서를 게시한다.

2.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과 거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승인된다.

a) 계약 당사자 또는 거래자 양측은 모두 독립된 법적주체로 개별 권리, 의무, 재산 그리고 이익을 가져야 한다.

b) 계약 또는 거래상의 가격은 계약서 체결 또는 거래를 이행하는 당시의 시장가격을 말한다.

c) 회사 소유주는 본 법 제65조 4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한다.

3. 계약 및 거래는 본 조 1항의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하지 않고 체결되었을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회사의 법적대리인과 계약 당사자 양측은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고, 해당 계약 및 거래로 거둔 수익을 회사에 반환한다.

4. 회사 소유주가 개인인 1인 유한책임회사와 회사 소유주 또는 회사 소유주의 관계인 간의 계약과 거래는 별도의 회사 문서로 기록·보관된다.

#### 제76조 정관자본금의 증자 및 감자

1. 1인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자본금을 감자할 수 없다.

2.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소유주의 투자 또는 타인의 출자 자본 동원을 통해 법정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다. 회사 소유주는 정관자본금의 증자 형식 및 정도를 결정한다. 타인의 출자자본 동원을 통해 법정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신규사원의 출자 약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등록 해야 한다.

## 제 4 장 주식회사

#### 제77조 주식회사

1. 주식회사는 기업의 한 형태로써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 a) 정관 자본금은 주식이라고 불리는 동일한 가치의 비율로 나누어진다.
  - b) 주주는 조직이나 개인이 될 수 있고, 최소 주주 원수는 3명이며, 최대 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 c) 주주는 자신의 출자액 한도 내에서 기업의 채무와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d) 주주는 본 법 제81조 3항과 84조 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주식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2. 주식회사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법인 자격을 갖는다.
  3. 주식회사는 자본 동원을 위해 각종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8조 주식의 종류**

1. 주식회사는 반드시 보통주를 가지며, 보통주의 보유자는 보통주주라 한다.
2. 주식회사는 우선주를 가질 수 있으며, 우선주의 보유자는 우선주주라 한다.우선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a) 의결 우선주
  - b) 배당 우선주
  - c) 상환 우선주
  - d) 회사정관이 규정한 그 밖의 기타 우선주
3. 정부가 위임한 조직과 창립주주만이 의결 우선주를 취득할 수 있다. 창립주주의 의결 우선주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창립주주의 의결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된다.
4. 배당 우선주, 상환 우선주, 그리고 그 밖의 기타 우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자는 회사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5. 동종 주식의 보유자는 동일한 권리, 의무 및 이익을 갖는다.
6. 보통주는 우선주로 전환될 수 없으나, 우선주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

**제79조 보통주주의 권리**

1. 보통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발표할 수 있으며, 직접 또는 수임대표자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통주는 1주에 한 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b)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른 비율로 이윤을 배당 받는다.
  - c) 수권주식 중 모집주식을 주주가 취득한 보통주 비율에 비례하게 우선 인수할 수 있다.
  - d) 본 법 제84조 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주주는 주주가 아닌 타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 e) 의결권을 가진 주주명부를 열람, 조사, 발체할 수 있으며,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f) 회사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그리고 주주총회의 결의안을 열람, 조사, 발체 또는 복사할 수 있다.
  - g) 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할 경우,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에 상응하여 잔여자산을 배분

받을 수 있다.

h) 그 외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권리가 있다.

2.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통주의 10% 또는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그 이하 비율을 보유하는 주주 또는 주주단(group shareholders)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있을 경우) 위원을 지명·추천할 권리

b) 이사회 의사록, 결의안, 베트남 회계 시스템의 양식에 따른 반기·연간 재무제표, 감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 발췌할 권리

c) 본 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권리

d) 필요시, 회사 운영·관리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을 감독·조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 요청한다. 상기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요청자가 개인일 경우 성명, 현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요청자가 조직일 경우 조직명, 현주소, 국적, 회사설립결정서 번호(number of establishment)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각 주주의 보유주식, 주식 매입일, 주주단 전체의 보유주식 총수, 회사의 주식 총수 중 보유비율, 감독·조사 사안, 감독·조사 목적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e)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권리

3. 본 조 2항에서 규정한 주주 또는 주주단은 아래와 같은 경우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이사회가 주주의 권리, 관리자의 의무를 심각히 위반하였거나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결정을 내린 경우

b) 이사회 임기가 6개월 이상 지났으나, 새로운 이사회진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c)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주주총회 소집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요청서에는 요청자가 개인일 경우 성명, 현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요청자가 조직일 경우 조직명, 현주소, 국적, 회사설립결정서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각 주주의 보유주식과 주식 매입일, 주주단 전체의 보유주식 총수, 회사의 주식 총수 중 보유비율, 주주총회 소집 요청 근거 및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이사회 위반행위 증거, 자료, 권한을 초과한 결정에 대한 위반정도 등을 추가·기재해야 한다.

4. 회사정관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본 조 2항 a에서 규정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지명 및 추천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a)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위원 지명·추천을 위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한 보통주주는 늦어도 주주총회 개회일까지 주주총회 참석자에게 주주단 구성을 통보한다.

b)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위원 총수에 근거하여 본 조 2항에서 규정한 주주 또는 주주단은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한명 또는 그 이상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후보자를 지명·추천할 수 있다. 주주 또는 주주단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주주 또는 주주단이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보다 적을 경우, 이사회, 감사위원회 또는 다른 주주들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80조 보통주주의 의무

1.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식 매입 청약금 전액을 납입하며, 자신이 출자한 출자액 범위 한도에서 회사의 채무와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보통주로 출자한 납입금은 어떤 형식으로도 반환할 수 없으나 타인이나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만일 주주가 본 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즉, 주식 출자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경우, 반환된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채무와 기타 재산상의 의무에 대해 이사와 회사의 법적대리인은 연대 책임을 진다.

2. 회사 정관과 내부 관리규제를 준수한다.
3. 주주총회, 이사회 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4. 이 외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의무를 수행한다.
5. 보통주주는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한다.

- a) 법을 위반 행위
- b) 자신의 영리, 타조직 및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한 사업 또는 기타 거래 행위
- c) 회사가 직면한 재정적 위기상황에서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 제81조 의결 우선주와 의결 우선주주의 권리

1. 의결 우선주란 보통주와 비교하여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을 말한다. 1개의 의결 우선주의 의결권은 회사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2. 의결 우선주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주주총회 권한 내의 문제에 대하여, 본 조 1항에서 명시한 의결권에 따라 표결할 수 있는 권리
  - b) 이 외 본 조 3항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보통주주로서의 권리
3. 의결 우선주주는 의결 우선주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82조 배당 우선주와 배당 우선주주의 권리

1. 배당 우선주는 보통주에 지급되는 것 보다 더 높은 비율로, 또는 매년 고정 비율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을 말한다. 연간 지급되는 배당금은 고정 배당금과 특별 배당금으로 나누어진다. 고정 배당금은 회사의 경영결과와 무관하게 배당되며, 고정 배당금의 구체적 배당비율과 특별 배당금의 책정 방법은 배당 우선주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다.
2. 배당 우선주주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상기 제1항에 규정한 비율로 배당금을 받을 권리
  - b) 기업이 해산하거나 파산할 경우, 회사가 채무와 상환 우선주를 변제한 이후 출자비율에 따라 잔여재산 일부를 배분 받을 권리
  - c) 본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보통 주주로서의 권리
3. 배당 우선주주는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권 또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권 등을 갖지 않는다.

### 제83조 상환 우선주와 상환 우선주주의 권리

1. 상환 우선주는 우선주 보유자의 요구 또는 상환 우선주 증명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회사가 상환하는 주식을 말한다.
2. 상환 우선주주는 본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주주로서 기타 권리를 가진다.
3. 상환 우선주주는 의결권, 주주총회 참석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후보자의 추천권 등을 갖지 않는다.

### 제84조 창립주주의 보통주

1. 창립주주는 총 청약 보통주의 최소 20%를 함께 매입하며,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납입한다.
2. 사업자등록증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는 사업자등록기관에 주식출자를 통보해야 한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본사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사업자등록 지역
  - b) 청약 보통주 총수, 창립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총수
  - c) 개인창립주주의 성명, 현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 신분증 번호, 기관창립주주의 기관명, 현주소, 국적, 회사 설립결정서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 주식의 총수와 납입된 주식가치, 각 창립주주의 출자자산의 종류
  - d) 창립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총수와 주식가치
  - e) 회사의 법적대리인의 성명, 서명날인회사의 법적대리인은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회사와 타인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3. 창립주주가 청약주식 인수가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창립주주의 미납입 주식은 다음 중 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 a) 상기 주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창립주주가 자신의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상기 주식을 인수한다.
  - b) 하나 또는 일부 창립주주가 주식을 인수한다.
  - c) 창립주주가 아닌 다른 이에 의해 인수가액을 납입한다. 주식을 인수한 타인은 자연히 창립주주가 되며, 이 경우, 청약주식 인수가액을 완납하지 않은 창립주주는 더 이상 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창립주주의 청약주식 인수가액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창립주주는 자신의 출자액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와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4. 미등록 창립주주가 수권주식을 모두 매입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수권주식을 모두 매각한다.
5.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 창립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보통주를 다른 창립주주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주주총회가 승인한 경우, 자신이 보유한 보통주를 타인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 양도예정 주주는 주식 양도에 관한 의결권이 없으며, 양수자는 회사의 창립주주가 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통주에 대한 창립주주의 제한이 모두 폐지·소멸된다.

### 제85조 주권(株券; share certificate)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증서 또는 하나 이상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주권이라 한다. 주권은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 여부를 불문한다. 주권에 기재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회사 상호, 본사소재지 주소
  - b)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증 발행일
  - c) 주식의 종류와 총수
  - d) 각 주식의 액면가격 및 주권에 기재된 주식의 총 액면가격
  - e) 기명주식에 대해 개인주주의 성명, 현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기관주주의 기관명, 현주소, 국적, 회사 설립결정서 번호 또는 사

## 업자등록번호

- f) 주식 양도 절차 요약
  - g) 법적대리인의 서명날인 및 회사의 직인
  - h) 회사 주주명부 상의 등록된 수와 주권 발행일
  - i) 이 외 우선주의 주권에 대한 본법의 제81, 82, 83조에 따른 기타 내용
2. 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내용과 형식이 잘못되더라도 주식 보유자의 권리와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사회 의장과 회사의 사장 또는 회장은 상기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연대 책임진다.
3. 주권이 분실되거나, 찢어지거나, 불에 타는 등 훼손되었을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의 청구에 따라 주권을 재발급한다. 청구서에 기재된 다음의 각 내용에 대해 서약해야 한다.
- a) 실제로 주권을 분실하거나, 주권이 찢어졌거나 불에 타는 등 훼손이 사실이며, 분실한 주권을 최선을 다해 찾았으며, 분실 주권 발견시 이를 회사에 반납, 폐기처분 할 것임을 약속한다.
  - b) 새로운 주권 발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책임을 약속한다. 액면가격이 일천만 동(VND) 이상인 주권의 경우, 새로운 주권 발급 청구서를 접수하기 전에, 회사의 법적대리인이 주권 보유자에게 분실 또는 훼손 사실에 대해 먼저 공고할 것을 요구한다. 공고일로부터 15일 이후에 회사는 신규 주권을 발급한다.

## 제86조 주주명부

1. 주식회사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주주명부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주주명부는 서류나 전자파일 또는 양자 형식 모두일 수 있다.
2. 주주명부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 a) 회사의 상호 및 본사소재지 주소
  - b) 수권주식 총수, 수권주식의 종류와 각 종류의 총수
  - c) 매각된 각 종류의 주식 총수와 납입된 주식의 가치
  - d) 개인주주의 성명, 현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기관주주의 기관명, 현주소, 국적, 회사설립결정서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종류의 수, 주식 청약일(등록일)
3. 주주명부는 회사의 본사 또는 증권 등록, 예탁, 변상, 납입 센터(securities registration, custody, payment and clearing center) 에 보관한다. 주주는 회사 또는 상기 센터의 영업시간에 주주명부를 열람, 검사, 발체, 복사할 수 있다.
4.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상기 비율 보유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 제87조 주식 모집 및 양도

1. 이사회는 모집 가능한 주식의 총수에 대한 주식 모집 시기, 방식, 가격 등을 결정한다. 모집가격은 모집 시기의 시장가격 또는 가장 최근에 기록된 주식명부 상의 가치보다 낮아선 안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a) 최초의 주식모집은 창립주주를 제외한 자에게 시행된다.
  - b) 전체 주주에 대한 주식모집은 현재 회사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른다.
  - c) 중개인(브로커) 또는 보증인에게 주식을 모집하는 경우, 의결권을 지닌 주주의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구체적인 할인율이 적용된다.

d) 이외 기타 경우 및 할인 정도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2. 회사가 보통주를 추가 발행하거나, 취득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모든 보통주주에게 보통주를 모집할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a) 회사는 안전한 방법을 통해 주주의 현주소로 상기 사실을 서면 통지한다. 통지일로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을 3번 연속 언론매체에 공고해야 한다.

b) 개인주주의 경우, 통지서에는 주주의 성명, 현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가 명기되어야 하며, 기관주주의 경우, 기관명, 현주소, 국적, 회사 설립결정서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발행예정 주식 총수, 취득권을 가진 주주의 주식수, 주식 모집가격, 매입 기간, 회사 법적대리인의 성명, 서명날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통지서상 주식모집 확정시한은 주주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합당하고 합리적인 기한이어야 한다.

c) 주주는 타인에게 주식 매입 우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d) 만일 주식 매입 등록서가 통지서에 고지한 시한에 맞게 회사에 송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주는 매입 우선권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주주와 매입 우선권을 인수한 타인이 발행예정 주식을 모두 매입하지 않은 경우, 잔여 발행 예정 주식은 이사회가 관리한다. 이사회는 회사주주에게 모집한 조건보다는 불리한 조건의 기타 합리적인 방식으로 주주 또는 타인에게 잔여 주식을 분배할 수 있다. 단, 주주총회가 다르게 승인하였거나,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식 인수가액을 완납하고, 본 법 제86조 2항에 규정한 주식 취득자에 관한 정보를 주주명부에 정확하고 충분히 기록한 경우, 해당 주식은 매각된 것으로 간주한다. 매입일로부터 주식 취득자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

4. 주식 매각 이후, 회사는 주식 취득자에게 주권을 발행·제공한다. 이 경우, 주주명부에 기록된 본 법 제86조 2항에 규정한 주식 취득자에 관한 정보는 회사의 주주으로써 자신의 주식 소유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5. 본 법 제81조 3항과 제84조 5항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양도는 통상적인 방식인 서면양도 또는 주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양도증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양측의 수입대표자에 의해 체결되며, 양도인은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등록되기 전까지 관련주식 보유자이다.

6. 주식 공모의 조건, 방식 및 절차는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정부는 주식의 사모(사적 모집)에 대한 안내를 규정한다.

### 제88조 채권(bond)의 발행

1. 주식회사는 법률과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채권, 전환채, 그리고 기타 각종 채권을 발행할 권리가 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단, 증권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a) 이미 발행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최근 3년 연속 만기 채무를 완제 또는 충분히 변제하지 못한 경우

b) 최근 3년 연속 평균 세후 이익(after-tax profit)이 발행 예정 채권에 지불될 예상 이자율보다 높지 않을 경우공인된 금융조직이 채권자인 경우, 채권자에게 발행되는 채권은 상

기 a, b항의 규정에 제한 받지 않는다.

3.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는 채권의 종류, 총 가치, 발행 시기를 결정한다. 단, 가장 최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 상기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와 함께, 채권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에 대해 근거자료와 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 제89조 주식과 채권 매입

주식회사의 주식과 채권은 베트남 통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국통화, 금, 토지 사용권의 가치, 지적 재산권의 가치, 기술, 기술 노하우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기타 자산 등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1회 완납해야 한다.

#### 제90조 주주의 요구에 따른 주식 환매

1. 회사의 구조조정, 회사정관상 규정된 주주의 권리와 의무의 변경 결정에 대해 반대 표결한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을 환매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요구서에는 주주의 성명, 주소, 수종의 주식 총수, 매각 예정가격, 환매 요구 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본 항에서 명시한 사안에 관한 결정이 주주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매 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 회사는 본 조 1항에 명시한 주주의 요구에 따라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가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한 원칙에 따른 가격으로 주식을 환매한다. 가격에 관해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주주가 타인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양측이 가격결정 전문기관에 가격결정을 의뢰할 수 있다. 회사는 최소 3개의 가격결정 전문기관을 주주에게 소개하며, 주주의 선택은 최후 결정으로 간주한다.

#### 제91조 회사의 결정에 의한 주식 환매

회사는 전체 판매된 보통주의 30% 이하 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매각한 배당 우선주의 일부 또는 전체를 환매할 수 있다.

1. 이사회는 매 12개월에 한번씩 각종 매각주식 총수의 1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환매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외, 주식의 환매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2. 이사회는 주식 환매가격을 결정한다. 보통주의 환매가격은 본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매시기의 시장가격보다 높아선 안된다. 기타 종류 주식의 경우, 회사정관 상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회사와 관련 주주간 기타 합의가 없는 경우, 환매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낮을 수 없다.

3. 회사는 각각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에 비례한 주식을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주식환매에 대한 결정은 결의안 가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회사의 상호와 본사소재지 주소, 환매하는 주식의 종류와 총수, 환매가격 또는 환매가격 결정원칙, 환매 지불절차와 기간,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식모집 절차 및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기 기간 이내에 주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한다. 주식매각을 동의한 주주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모집한다.

#### 제92조 환매된 주식의 인수가액 납입(payment) 및 처리조건

1. 회사는 환매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 납입 이후에도 채무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를 보장하는 경우, 본 법 제90조와 91조에 따라 주주에게 환매주식을 지급할 수 있다.

2. 본 법 제90조와 91조에 따라 환매된 주식은 회수된 주식으로 수권주식(authorized share)에 속한다.
3. 환매된 주식의 소유권 확인서 또는 주권은 대금이 완납된 후에 즉시 폐기한다. 이사회 의장, 사장 또는 회장은 해당 주권을 폐기하지 않거나, 늦게 폐기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4. 환매 주식에 대한 정산을 완료한 후, 만일 회사 회계장부에 기록된 회사자산의 총 가치가 10% 이상 감소되면, 회사는 환매 주식의 매입금 전액 지급일로부터 15일 내에 모든 채권자에게 상기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제93조 배당금 지급

1. 우선주의 배당금은 각종 우선주가 규정한 개별 조건에 따라 지급된다.
2. 보통주의 배당금은 현재까지의 이익에 근거하여 책정되며, 회사의 순이익에서 지불된다. 주식회사는 회사가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법에 따라 납세 및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규정과 회사정관에 근거하여 회사 기금을 구축하고 이전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의 지급 이후에도 회사가 채무와 기타 재산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만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할 수 있다. 배당금은 현금, 주식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기타 재산으로 지급된다. 현금 지급은 베트남동으로 이루어지며, 수표(cheque) 또는 현금 지급령(monetary order)을 우체국을 통해 각 주주의 현주소로 발송할 수 있다. 주주가 회사에 등록된 은행계좌에 대한 세부정보를 회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배당금을 직접 주주의 은행계좌에 송금할 수 있다. 주주가 고지한 은행계좌로 배당금을 송금한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이사회는 적어도 배당금 지급 30일 이전까지, 배당금을 수여 받을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각 주식의 배당률, 지급기간과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실제 배당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까지 모든 주주들에게 배당금 지급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회사 상호, 개인주주의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기관주주의 기관명, 주소, 국적, 회사 설립결정서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수종의 주식 수, 각 주식에 대한 배당률과 해당 주주에게 지급될 배당금 총액 및 배당금 지급 기한과 방식, 이사회 의장과 회사 법적대리인의 성명 및 서명날인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주주명부 완성일로부터 배당금 지급 기간까지의 기간 중 자신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 받는다.

### 제94조 환매주식 지급액 또는 배당금 회수

본 법 제92조 1항과 위배되는 주식의 환매 또는 본 법 제93조의 규정과 어긋나는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주주는 지급 받은 금액과 기타 재산을 모두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주주가 회사에 상기 사항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반환하지 못한 금액과 재산 가치의 한도에서 회사의 채무 및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 제95조 주식회사의 관리조직 구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사장 또는 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주주가 11명 이상인 주식회사, 또는 회사의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조직일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사회 의장, 사장 또는 회장은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법적대리인이 된다. 법적대리인은 베트남에 상주해야 하며, 30일 이상 베트남에 부재시, 회사 법적대리인의 권리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정관에 따라 타인에게 법적대리인 자격을 서면 위임한다.

### 제96조 주주총회

1. 주주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모든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회사의 최고 결정기관이다.
2. 주주총회는 아래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a) 회사의 발전방향 승인
  - b) 주식별 종류와 수권 주식의 종류별 총수 결정. 회사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 종류별 연간 배당을 결정
  - c) 이사 및 감사위원의 선출, 면직, 해임
  - d) 회사정관에 별도의 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 작성된 회사 재무제표 중 총 자산가치의 50%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투자 또는 자산 매각에 대한 결정
  - e) 회사정관에 규정된 수권주식 한도 내에서 신규 주식의 추가 발행을 통해 정관자본금을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회사정관의 수정 및 보완
  - f) 연간 재무제표의 승인
  - g) 종류별 매도된 주식 총수 10% 이상에 대한 환매 결정
  - h)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및 처리
  - i) 회사의 구조개편, 해산을 결정
  - j) 본 법률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권리
3. 기관주주는 법률규정에 따라 주주권을 실행하기 위해 1인 이상의 수임대표자를 지명할 수 있다. 만일 1인 이상의 수임대표자를 지명한 경우, 각 대표자가 대표할 주식 수 및 의결권 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수임대표자의 지명, 해임, 교체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문서를 통해 회사에 통보되어야 한다. 통보서는 다음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 a) 주주의 성명, 주소, 국적, 회사 설립결정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발급일
  - b) 주식의 수량, 종류와 회사에서의 주주 등록 일자
  - c) 수임대표자의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 d) 대표 권리를 위임 받은 주식의 수
  - e) 수임대표자와 주주의 법적대리인의 성명, 서명날인회사는 본 항에 규정된 수임대표자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5일의 기한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7조 주주총회 소집권리

1. 주주총회는 연례총회와 비상총회가 있으며, 최소 1년에 1회 이상 개최한다. 총회는 반드시 베트남 영토 내의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2. 연례 주주총회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사업자등록기관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연례주주총회는 다음 각 사안들을 협의하고 가결한다.
  - a) 연간 재무제표

- b) 이사회가 회사 경영관리 업무실적 평가 보고
  - c) 이사회, 사장 또는 회장의 회사경영활동 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보고
  - d) 종류별 각 주식의 배당률
  - e) 이외 기타 각 사안
3. 다음 각 경우 이사회는 비상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a)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b) 이사회에 잔여 이사 수가 법률 규정에 따른 이사 수 보다 부족한 경우
  - c) 본 법 제 79조 2항에 규정된 주주나 주주단의 요청에 따라
  - d)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 e) 법률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경우
4. 회사정관에서 별도의 기한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본 조 3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은 경우나, 또는 본 조 3항 c와 d에서 명시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사회가 규정에 맞게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 의장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에 대해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5. 이사회가 본 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향후 3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감사위원회가 규정에 맞게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위원장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에 대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6. 감사위원회가 본 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본 법 제 79조 2항에서 규정된 총회 개최를 요청한 주주 또는 주주단이 이사회, 감사위원회를 대체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주주 또는 주주단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사업자등록기관에 총회의 소집과 진행에 대한 감사를 제의할 수 있다.
7. 주주총회 소집자는 총회 참석권을 가진 주주의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주주명부에 관련된 진정·제소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회의 의사일정과 내용을 작성하고, 자료를 준비하며, 총회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여,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참석권을 가진 주주 각 각에게 총회소집을 통지한다.
8. 본 조 4, 5, 6 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과 진행을 위해 사용된 경비는, 이후 회사가 상환한다.

#### **제98조 주주총회 참석권을 가진 주주명부**

1. 참석권을 가진 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주 등록명부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주주총회 참석권을 가진 주주명부는 소집결정이 있을 시 작성되며, 회사정관에서 별도의 기한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늦어도 총회 개막일 30일 전에 작성이 완료되어야 한다.
2. 참석권을 가진 주주명부에는 개인주주의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가 기재되거나, 기관주주의 기관명, 주소, 국적, 설립결정서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명부에는 종류별 주식의 수량, 주주별 주주등록 번호와 등록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3. 주주는 주주총회 참석권을 가진 주주명부를 열람, 검사, 발췌,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명부 중 자신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의 수정 또는 정보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9조 주주총회의 의사일정과 내용

1. 주주총회 소집자는 참석권과 의결권을 가진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총회의 의사일정과 내용, 자료 및 회의 의사일정 중 각 사안별의 의결초안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총회의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여, 총회 참석권을 가진 주주 각각에 소집을 통지한다.
2. 본 법 제 79조 2항에 규정된 주주 또는 주주단은 총회 의사일정에 관해 건의할 수 있다. 건의는 반드시 문서를 통해야 하며, 회사정관에서 별도의 기한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 개회일로부터 최소, 근무일 수 3일 이전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건의서에는 주주명, 주주의 주식별 보유수량, 회사에서의 주주등록 일자, 총회의사일정에 대한 건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3. 주주총회 소집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 조 2항에서 규정된 건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a) 건의가 기한에 맞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이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경우
  - b) 건의 사안이 주주총회의 결정권리에 속하지 않는 경우
  - c)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른 기타 경우
4. 주주총회 소집자는 본 조 3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 2항에서 규정된 건의를 받아들여 총회 의사일정과 내용의 초안에 적용해야 한다. 건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될 경우 회의 의사일정과 내용에 정식으로 보충된다.

### 제100조 주주총회 소집통지

1. 주주총회 소집자는 회사 정관이 별도의 기한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개막일로부터 최소, 근무일수 7일 이전까지 참석권을 가진 주주 전체에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주주 현주소지로 안전하게 발송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전달된다. 소집통지에는 회사명, 본사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증 번호 및 발급일, 사업자등록 지역, 주주 또는 주주의 수임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총회의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2. 소집통지에 첨부하여, 총회에 참가할 수임대표자 지명 양식, 총회 의사일정, 총회 의사일정 중의 각 사안별 표결용지, 의결의 기초가 되는 토론자료, 의결 초안을 전달해야 한다. 만일 회사가 웹사이트나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을 경우, 소집통지 및 각 첨부자료는 해당 웹사이트나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시되어야 하며, 동시에 각 주주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 제101조 주주총회 참석권

1. 개인주주, 수임대표자, 기관주주는 직접 또는 서면 위임을 통한 타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한다. 본 법 제 96조 3항에서 규정된 수임대표자가 없는 기관주주의 경우, 타인에게 권리를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다.
2. 대표자에게 권리를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하게 하는 일은 회사가 별도 규정한 양식에 따른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른 서명날인을 갖추어야 한다.
  - a) 개인주주가 위임자인 경우, 반드시 해당 주주와 수임대표자의 서명날인
  - b) 기관주주가 위임자인 경우, 수임대표자, 주주의 법적대리인과 수임대표자의 서명날인
  - c) 기타 경우, 주주의 법적대리인과 총회 참석을 수임한 대표자의 서명날인총회 참석을 수임한 대표자는 총회장에 입장하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3. 본 조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 총회에 참석한 수임대표자의 표결용지는 다음 각 경우에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
  - a) 위임자가 사망, 또는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b) 위임자가 권한 위임을 중단한 경우

4. 만일 회사가 본 조 3항의 규정 중 하나의 경우를 최소 주주총회 개막 24시간 이전에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본 조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5. 주주명부 작성 완료일부터 주주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중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양도된 주식 수 만큼 양도인을 대신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제102조 주주총회 진행조건**

1. 주주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주식 총수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수의 주주 출석 시에 진행될 수 있다.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다.
2. 첫 번째 회의가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진행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 첫 번째 회의의 개최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두 번째 회의를 수 있다. 두 번째 회의는 의결권을 가진 주식 총수의 최소 51%를 대표하는 수의 주주 출석 시에 진행될 수 있다.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다.
3. 두 번째 회의가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진행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 두 번째 회의의 개최예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 번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는 출석 주주 수와 각 출석 주주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 수 비율에 구애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4. 새로운 주주총회만이 본 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통지에 첨부되어 전달된 회의의 의사일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제103조 주주총회의 진행 절차 및 표결**

회사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진행 절차 및 표결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1. 총회 개최일 이전, 참석권을 가진 각 주주가 충분히 등록할 때까지 참가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참가 등록자는 총회 의사일정 중 표결이 필요한 안건 수에 상응하는 표결카드(voting card)를 발급 받게 된다.
2. 주주총회의 주재자, 서기, 검표위원회는 다음 규정에 따른 확정된다.
  - a)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가 소집한 각 회의의 주재자가 된다. 의장이 부재중 또는 일시적으로 업무능력을 상실한 경우, 다른 이사 중 1인을 총회 주재자로 선출한다. 주재자를 맡을 인물이 없는 경우,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이사의 주재 하에 주주총회가 주재자 선출투표를 하여 총회에 참가한 인물 중 최고 득표자를 주재자로 선출한다.
  - b) 이외 다른 경우는, 주주총회 소집을 서명한 이의 주재 하에 주주총회가 주재자 선출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주재자로 선출한다.
  - c) 주재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서기 1인을 지명한다.
  - d) 주주총회는 총회 주재자의 제의에 따라 3인 이하의 검표위원회를 선출한다.
3. 주주총회의 의사일정과 내용은 주주총회의 개최식에서 즉시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의사일정은 총회 내용 중의 안건마다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시간배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4. 총회 주재와 서기는 가결된 의사일정에 맞게, 참석자 대다수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총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5. 주주총회는 의사일정 내용 중의 각 사안마다 토론 및 표결을 거친다. 표결은 의결찬성 표결카드를 수거하고, 그 다음으로 반대 표결카드를 수거하며, 마지막으로 검표를 통해 찬

- 성, 반대, 기권표를 각각 집계한다. 검표결과는 폐회 직전에 주재자에 의해 발표된다.
6. 총회 개최 이후 도착한 주주 또는 참석권한을 가진 수임대표자 역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이후에는 즉시 표결참가 권리를 가진다. 주재자는 뒤늦게 등록하는 이들을 위해 총회를 중단해선 안된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표결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7. 주주총회 소집자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a) 모든 총회참가자가 검사 또는 기타 보안 조치를 받도록 요구할 권리
  - b) 담당 기관에게 총회의 질서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 회의의 질서를 무너뜨려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재자의 운영권한을 준수하지 않는 이들 또는 보안검사에 관한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자들을 주주총회로부터 추방할 권리
8. 다음 각 경우에 주재자는 규정에 따른 참가등록 인원이 충분한 주주총회를 다른 시일로 연기하거나 총회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a) 총회장소가 참가자 전체를 위한 편리한 좌석을 갖추지 못한 경우
  - b) 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가 존재하거나 회의가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위기에 처한 경우총회의 연기 기한은 개최 예정일로부터 최대 3일이다.
9. 주재자가 본 조 8항의 규정과 어긋나게 주주총회를 연기 또는 일시 중단한 경우, 주주총회는 참가자 중 다른 인물을 선출하여 종료 시까지 총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해당 총회의 표결 효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제104조 주주총회 결의안의 통과

1. 주주총회는 회의에서의 표결 또는 서면 의견수렴 형식을 통해 각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2.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 사안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안은 주주총회에서의 표결 형식을 통해 통과되어야 한다.
- a) 회사정관의 수정 및 보완
  - b) 회사 발전방향의 승인
  - c) 주식의 종류와 모집권한을 가진 종류별 주식 총수
  - d) 이사와 감사위원의 선출, 면직, 해임
  - e) 회사 정관에 규정된 별도의 비율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 공시한 회사 재무제표상에 기록된 자산 총가치의 50%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투자 또는 자산매각 결정
  - f) 연간 재무제표 승인
  - g) 회사의 구조개편, 해산
3. 주주총회의 결의안은 다음 각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을 경우 가결된다.
- a) 출석한 주주 전체의 의결권 총수 최소 65%를 대표하는 수의 주주가 승인할 경우
  - b) 수종의 주식과 수권 주식의 종류별 주식 총수, 회사정관의 수정·보완, 회사의 구조개편이나 해산, 회사정관에 규정된 별도의 비율이 없는 경우의 가장 최근 작성된 회사 재무제표상에 기록된 자산 총 가치의 50%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투자 또는 자산매각 결정에 대해서는 출석주주 전체의 의결권 총수 최소 75%를 대표하는 수의 주주가 승인할 경우
  - c) 이사와 감사위원의 선임은 누적투표 방식에 따라 시행되며, 그에 따라 각각의 주주는 소유 주식 총수에 이사 또는 감사위원 선출 인원을 곱한 수에 상응하는 총 의결권을 가진다. 주주는 자신의 총 의결권 수 전부를 1인 또는 일부 후보자에게 모두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비록 소집절차, 의사일정, 회의내용 그리고 회의진행절차 등이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참

석 주주 및 수임대표자가 보유한 주식의 100%에 해당하는 득표수로 주주총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합법으로 간주하며, 즉시 효력을 가진다.

5. 서면 의견 수렴의 형식에 따른 결의안의 통과는 만일 출석 주주의 최소 75% 이상이 승인하였을 경우, 가결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다.

6. 주주총회의 결의안은 가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주총회에 참가한 주주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 제105조 주주총회의 결의안 통과를 위한 서면 주주 의견수렴의 권한과 절차

회사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안 통과를 위한 서면 주주 의견수렴의 권한과 절차는 다음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1.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안 통과를 위한 서면 주주 의견수렴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

2. 이사회는 표결질의서, 주주총회의 결의안 초안과 결의안 초안을 해설하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표결질의서는 결의안 초안과 해설자료에 첨부되어 주주 주소로의 정확한 전달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전해진다.

3. 표결질의서는 다음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a) 회사 상호, 본사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발급일, 사업자등록 지역

b) 의견수렴의 목적

c) 개인주주의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번호. 또는 기관주주의 경우, 주주 또는 수임대표자의 기관명, 주소, 국적, 설립결정서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주주의 종류별 주식 수량과 의결권 수

d) 결의안 통과를 위한 의견수렴 필요 사안

e) 찬성, 반대, 기권을 포함한 표결 방법

f) 회사에 표결 질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최종시한

g) 이사회 의장과 회사 법적 대리인의 성명, 서명날인

4. 답변된 표결질의서는 개인주주의 서명날인, 또는 기관주주의 수임대표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회사로 보내지는 표결질의서는 밀봉된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누구라도 검표 이전에는 개봉할 권한이 없다. 표결질의서 내용에서 확정된 시한이 지나거나 이미 개봉된 표결질의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5.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또는 회사 관리직책을 맡고 있지 않은 주주의 입회 하에 검표 및 기록서류 작성을 진행한다. 검표 기록서류는 다음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a) 회사 상호, 본사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증 번호와 발급일, 사업자등록 지역

b) 목적과 결의안 통과를 위해 의견수렴이 필요한 각 사안

c) 주주 수와 표결에 참가한 총 투표수, 그 중 유효표와 무효표의 수를 구분하여, 표결 참가 주주명부의 목록에 첨부

d) 각 사안별 찬성표, 반대표, 기권표 총 수

e) 통과된 각 결의안

f) 이사회 의장, 회사의 법적 대리인과 검표 감사인의 성명, 서명날인 이사회 각 임원과 검표 감사인은 검표 기록서류의 충실성, 정확성에 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검표의 불충실, 부정확함으로 인해 통과된 각 결의안으로부터 발생된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6. 검표 결과서는 검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주에게 전달한다.
7. 응답한 표결 질의서, 검표서, 가결된 의결서 전문과 표결 질의서와 함께 첨부된 관련 서류는 회사 본사에 보관된다.
8. 주주의 서면 의견 수렴방식에 따라 통과된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결의안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제106조 주주총회 의사록

1. 주주총회는 반드시 의사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베트남어 또는 외국어와 함께 기록된다.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회사 상호, 본사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발급일, 사업자등록 지역
  - b) 회의 시간과 장소
  - c) 회의의 목적과 의사일정
  - d) 총회 주재자 및 서기
  - e) 토론된 각 사안마다에 관한 주주의 발표의견 요약
  - f) 주주의 총수, 참가 주주의 표결 총수, 주주 및 주주의 수임대표자의 주식 및 표결 총수
  - g) 각 표결 사안마다의 찬성, 반대, 기권 투표수 결과, 참가 주주의 의결권 총수에 상응하는 비율
  - h) 가결된 각 결정
  - i) 총회 주재자 및 서기의 성명, 서명날인베트남어와 외국어로 작성된 의사록은 동일한 법적 가치를 지닌다.
2. 주주총회 의사록은 회의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작성완료 및 승인되어야 한다.
3. 총회 주재자와 서기는 이사회 의사록 내용을 정확하고 거짓없이 기록하며, 의사록 내용에 책임을 진다. 주주총회 의사록은 회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든 주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주주총회 의사록, 참석 주주명부, 가결된 의결서 전문과 소집통지서와 함께 첨부된 관련 자료는 본사에 보관된다.

#### 제107조 주주총회 결정의 취소 요청

- 아래의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 표결 질의서, 또는 검표 결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주, 이사, 사장 또는 회장, 감사위원회는 법원 또는 중재소에 주주총회의 결정을 검토하여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본 법과 회사정관상 규정에 따른 절차에 위배되는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 안건의 내용과 결정 절차가 본 법과 회사정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108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기관으로서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회사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결정하고 이행하기 위해 회사를 대신해 전권을 가진다.
2. 이사회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회사의 연간 발전 전략 및 경영계획에 관한 결정
  - b) 각종 수권주식의 총수를 제안
  - c) 각종 수권주식의 한도 내에서 신규주식 모집에 대한 결정. 기타 형태의 자본 동원 결

정

- d) 회사의 주식 및 채권 모집가격 결정
  - e) 본 법 제91조 1항에 따른 주식 환매 결정
  - f) 본 법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 및 투자계획을 결정
  - g) 시장개발, 마케팅, 기술개발 방안을 결정. 본 법 제120조 1항과 3항이 규정한 계약과 거래를 제외한, 매매, 대출 계약과 가장 최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회사자산 총 가치 50% 이상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한 그 이하 비율의 계약을 승인
  - h) 사장 또는 회장, 그리고 회사정관이 규정한 기타 중요관리자를 임명, 해임, 파면하거나 상기인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며, 해당 관리자의 급여 및 기타 수익을 결정,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임대표자를 선출하고, 수임대표자의 급여 및 기타 수익을 결정
  - i) 회사의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사장 또는 회장 그리고 기타 관리자를 지도·감독
  - j) 조직구조, 회사의 내부 관리규제, 자회사, 지사, 대표사무소 설립을 결정. 타기업 주식의 매입을 결정
  - k) 주주총회 의사일정 및 회의자료를 승인,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안 통과를 위해 의견을 수렴
  - l) 주주총회에 연간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
  - m) 지급 배당금의 수준을 제안하고, 배당금의 지급 절차 및 기간 또는 영업상 발생한 손실의 처리를 결정
  - n) 회사의 조직개편을 제안하거나, 해산을 결정하거나 파산을 요구
  - o) 이외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권한과 의무
3. 이사회는 회의의 표결이나 서면을 통한 의견 수렴 또는 회사정관에 의한 기타 형식의 결의안을 가결한다. 이사회의 임원은 1인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4. 주어진 기능과 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이사회는 법률규정, 회사정관, 주주총회의 결정을 올바르게 준수해야 한다. 이사회가 가결한 결의안이 법률규정 또는 회사정관에 위배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상기 결의안을 통과에 찬성한 이사는 회사 손실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며,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본 결의안을 반대한 임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는 최소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사회에 상기 결의안의 실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9조 이사의 임기와 원수(員數)

1. 이사회는 회사정관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최소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이사는 회사정관에 따라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이사회와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으며, 이사회의 임원은 재임 회수의 제한 없이 재선출될 수 있다.
2. 임기가 만료된 이사회는 신규 이사회가 선출되어 인수인계 후, 직무를 수행할 때까지 계속 활동한다.
3. 임기내 해임 또는 파면된 임원을 대체하거나 추가로 선출할 경우, 해당 임원의 임기는 이사회의 잔여임기와 같다.
4. 이사회의 임원은 회사주주일 필요는 없다.

### 제110조 이사회 의장의 기준과 조건

1. 이사회 의장은 다음 각 기준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a) 민사행위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른 기업 설립 및 경영 금지 대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 b) 보통주 총수의 최소 5%를 보유한 개인주주이거나, 주주는 아니나 경영관리나 회사의 주요 경영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제 경험을 갖춘 자, 또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국가가 정관자본금의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에 대해, 이사는 관리자 또는 모기업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관계인이 될 수 없다.

### 제111조 이사회 의장

1.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회사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선출한다. 이사회가 의장을 선출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임원 중에서 선출한다. 회사정관 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 의장은 사장 또는 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
2.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임무를 가진다.
  - a) 이사회의 활동 일정과 계획을 준비하거나 그 준비를 조직한다.
  - b) 이사회 의사일정과 내용, 회의자료를 준비하거나 그 준비를 조직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c) 이사회의 결정을 통과한다.
  - d) 이사회의 결정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하거나 감사를 조직한다.
  - e) 주주총회를 주재한다.
  - f) 이외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권리와 임무를 이행한다.
3. 부재 시, 이사회 의장은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타 임원에게 이사회 의장의 권한과 임무를 서면 위임한다. 만일 수임 임원이 없거나, 의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임원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임무를 이행하게 한다.

### 제112조 이사회 회의

1. 이사회가 의장을 선출한 경우, 의장 선출 및 기타 결의안 채택을 위해 해당 임기의 이사회 선출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첫번째 이사회를 개최한다.
2. 이사회는 정기 또는 비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본사 또는 기타 장소에서 개최한다.
3. 정기 이사회는 필요시 이사회 의장에 의해 언제든지 개최되며, 최소 매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4. 이사회 의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a) 감사위원회의 요청시
  - b) 사장 또는 회장, 또는 최소 5인 이상의 관리자가 요청한 경우
  - c) 최소 2인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이 요청한 경우
  - d)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경우
5. 이사회 의장은 본 조 4항에서 명시한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 의장이 요청을 받은 후에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

에 대해 의장이 책임을 진다. 요청자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소집자는 회사정관 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최소 근무일수 5일 이전에 이사회 소집을 통지한다. 이사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 시간, 장소, 의사일정, 토론사안 및 결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회의자료와 임원의 투표용지를 소집통지서에 첨부한다. 소집통지서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전달되며 회사에 등록된 임원의 현주소로 정확히 전달한다.

7. 이사회 의장 또는 회의 소집자는 소집통지서와 기타 첨부 자료를 이사와 더불어 감사위원, 사장 또는 회장에 전달한다. 감사위원, 사장 또는 회장은 이사회의 임원이 아니며, 이사회에 참석하고 토론할 권한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8. 이사회 회의는 총 이사회 구성원의 3/4가 출석하였을 경우, 진행될 수 있다. 투표용지는 봉투에 밀봉되어 개회식 최소 1시간 이전에 이사회 의장에게 전달되며, 전 참석자의 참관하에 개봉된다.

9. 이사는 이사회의 전체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이사회의 다수가 동의하는 경우, 타인에게 위임하여 회의에 참석토록 할 수 있다.

### 제113조 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의 회의는 반드시 의사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베트남어 또는 외국어와 함께 기록된다.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회사 상호, 본사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발급일, 사업자등록 지역
- b) 회의의 목적과 의사일정
- c) 회의 시간과 장소
- d) 참가 임원, 수임대표자의 성명, 불참 임원의 성명, 불참 사유
- e) 토론 및 의결된 사안
- f) 토론된 각 사안마다에 관한 임원의 발표의견 요약
- g) 각 표결 사안마다의 찬성, 반대, 기권 투표수 결과
- h) 가결된 각 결정
- i) 참가 임원, 수임대표자의 성명, 서명날인회의 주재자와 서기는 이사회 의사록 내용을 정확하고 거짓없이 기록하며, 의사록 내용에 책임을 진다.

2. 이사회 의사록 및 회의자료는 본사에 보관된다.

3. 베트남어와 외국어로 작성된 의사록은 동일한 법적 가치를 지닌다.

### 제114조 이사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1. 각 이사는 사장 또는 회장, 부사장 또는 부회장, 회사 각 단위의 관리자들에게 회사의 재정현황 및 경영활동, 각 단위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리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요청한 자료와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제115조 이사의 해임, 파면 그리고 추가

1. 이사는 아래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된다.

- a) 본 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임원의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b)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 6개월 동안 자신의 주어진 권한과 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c) 사의를 표명한 경우
  - d) 이 외 회사정관에 규정된 기타 경우
2.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도,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의해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 3. 이사 구성원수가 회사정관이 규정한 수의 1/3으로 감소된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가 1/3으로 감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을 추가·보충한다. 그 외 경우, 가장 최근 회의에서 해임 및 파면된 임원을 대체할 신규 임원을 선출한다.

**제116조 회사 사장 또는 회장**

1. 이사회는 임원 중 1인 또는 외부에서 사장 또는 회장을 선임한다. 회사정관이 이사회 의장이 회사의 법적대리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사장 또는 회장이 회사의 법적대리인이 된다.
2. 사장 또는 회장은 회사의 경영 및 사업을 운영하는 이로써, 자신의 권한과 임무 수행에 관하여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를 5년을 넘지 않으며, 재임 회수의 제한 없이 재선출될 수 있다. 사장 또는 회장의 기준은 본 법 제57조와 같다. 사장 또는 회장은 타기업의 사장 또는 회장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
3. 사장 또는 회장은 다음의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 a) 이사회 결정이 불필요한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관련된 각 사안을 결정
  - b) 이사회 결정을 시행
  - c) 회사의 경영 및 투자계획을 시행
  - d) 회사의 조직구조 구성방안 및 내부관리 규제를 제안
  - e)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직위를 제외한, 사내 각 관리자에 대한 임명, 면직, 파면
  - f) 회사 직원과 더불어 사장 또는 회장의 임명권한에 속한 관리자의 급여 및 보조금(있을 경우)을 결정
  - g) 직원 고용
  - h) 경영상 발생한 이윤 분배 및 손실처리 방안 제안
  - i) 이 외 법률, 회사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 기타 권한과 임무
4. 사장 또는 회장은 법률규정, 회사정관, 회사와 체결한 노동계약서, 그리고 이사회 결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충실히 운영한다. 만일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사장 또는 회장은 법적 책임을 지며, 손실을 배상한다.

**제117조 이사, 사장 또는 회장의 보수, 급여 그리고 기타 수익**

1. 회사는 경영 효과 및 결과에 따라 이사, 사장 또는 회장을 비롯한 기타 관리자에게 보수, 급여, 기타 수익을 지급할 권한이 있다.
2. 회사정관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사, 사장 또는 회장의 보수, 급여와 기타 수익은 아래와 같다.
  - a) 이사는 업무에 따라 급여 및 상여금(보너스)을 지급 받는다. 이사의 급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근무일수와 급여수준을 고려해 책정된다. 이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임원의 급여수준을 산정한다. 이사회 전체 급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 b) 이사의 식대, 활동비, 그리고 기타 합리적인 비용은 부여된 임무 수행시 지급된다.
  - c) 사장 또는 회장은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 받는다. 사장 또는 회장의 급여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3. 이사, 사장 또는 회장, 그리고 기타 관리자의 보수, 급여는 법인 소득세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경비로 계산되며,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에서 개별 항목으로 기재·구분하며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된다.

#### **제118조 관련 이익(related benefit)의 공개**

1.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사장 또는 회장, 그리고 사내 기타 관리자는 관련 이익을 공개해야 한다.

a) 출자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있는 해당 기업의 상호, 본사소재지 주소, 사업 분야 및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및 발급일, 사업자등록 지역, 출자지분 또는 주식 취득 비율 및 시기

b) 상기 경영진 및 기타 관리자의 관계인이 별도로, 또는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정관자본금의 35%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상호, 본사소재지 주소, 사업 분야 및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및 발급일, 사업자등록 지역, 출자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 비율 및 시기

2.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내용은 관련 이익이 발생한 날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공지한다. 수정 또는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수정·보완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회사에 공지한다.

3. 본 조 1항, 2항에서 규정한 공개사항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고되며, 본사에 게시·보관된다. 주주, 주주의 수임대표자, 이사, 감사위원, 사장 또는 회장은 필요시 언제든지 공개사항을 열람·검토할 수 있다.

4. 이사, 사장 또는 회장은 모든 개인 또는 타인을 대신한 회사의 경영업무의 범위 내 모든 형태의 활동도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진술, 보고해야 하며, 대다수의 기타 이사들이 동의하는 경우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상기 활동을 보고 또는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 활동상 발생한 모든 이윤은 회사가 취득한다.

#### **제119조 회사 관리자의 의무**

1. 이사, 사장 또는 회장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가진다.

a) 법률, 회사정관, 주주총회의 결정 등을 준수하여 주어진 임무와 권한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b) 회사와 주주의 합법적인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 받은 권리와 임무를 신중하고, 최선을 다해, 충실히 수행한다.

c)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며 회사의 정보, 노하우, 경영기회를 이용하지 않는다. 또한, 사리사욕 또는 타 조직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 또는 회사의 재산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d) 이사회에 임원, 사장 또는 회장,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인이 기업주이거나, 주식 또는 지배출자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관해 적시에 정확하게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상기 보고서는 회사의 본사와 지사에 게시되어야 한다.

2.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의무 외에도 사장 또는 회장은 회사가 만기 채무를 완제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급여 인상 또는 상여금(보너스)를 지급 받지 못한다.

3. 이외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의무를 가진다.

## 제120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계약 및 거래

1. 회사와 다음 각 대상간의 계약 및 거래는 반드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주주, 회사가 발행한 총 보통주의 35% 이상을 취득한 주주의 수임대표자, 그리고 이들의 관계인

b) 이사, 사장 또는 회장

c) 본 법 제118조 1항 a, b에서 명시한 기업, 이사, 사장 또는 회장의 관계인

2. 이사회는 가장 최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기업자산 가치의 50% 미만 또는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그 이하 비율의 계약과 거래를 승인한다. 이 경우, 법적대리인은 계약서 초안 또는 거래의 주요 내용을 이사에 전달하고, 회사의 본사와 지사에 게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 또는 거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기 각 계약 및 거래의 관련 인원은 의결권이 없다.

3. 본 조 2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는 계약서 초안과 거래의 주요 내용을 주주총회에 제출하거나, 주주의 의견을 서면 수렴한다. 이 경우, 관련 주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계약 및 거래는 총회 출석 주주의 65% 이상이 동의한 경우 한해 승인된다.

4. 본 조 2항과 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못하였거나, 승인 이전에 체결된 계약과 거래는 무효이며, 법률규정에 의해 처리된다. 회사의 법적대리인, 관련 주주, 이사, 사장 또는 회장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해당 계약 및 거래로 거둔 수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 제121조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는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5인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의 임기는 5년을 넘지 않으며,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무제한 재선출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는 위원 중 한명을 대표로 선출하여,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며, 감사위원장의 권리와 임무는 회사정관에서 규정한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반 이상은 베트남에 상주해야 하며, 위원 중 최소 1명은 회계사 또는 감사역(auditor)이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감사위원회를 선출·구성하지 못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감사위원회는 신규 감사위원회가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할 때까지 주어진 권리와 임무를 수행한다.

## 제122조 감사위원의 기준과 조건

1. 감사위원의 기준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21세 이상의 민사 행위능력을 가진 자로, 본 법에서 규정한 기업 설립·운영 금지 대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

b) 이사회, 사장 또는 회장, 그리고 기타 관리자의 배우자, 부모, 양부모, 자녀, 양녀, 친형제 관계가 아닌 자

2. 감사위원은 회사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회사의 직원이거나 주주일 필요는 없다.

## 제123조 감사위원회의 권리와 임무

1.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사장 또는 회장의 회사 관리·운영을 감사하며, 부여된 임무수행에 대해 주주총회 앞에 책임을 진다.
2. 회사의 경영·관리·운영 및 회계업무조직, 통계, 재무제표를 충실하고, 엄정하게,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감사한다.
3. 회사의 경영현황 보고서, 반기·연간 재무제표, 이사회의 관리업무 평가보고서를 심사한다. 회사의 경영현황 보고서, 반기·연간 재무제표, 이사회의 관리업무 평가보고서 심사 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4. 필요시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 또는 본 법 제79조 2항에서 규정한 주주 또는 주주단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기타 자료 및 회계장부를 상시 검토한다.
5. 본 법 제79조 2항에서 규정한 주주 또는 주주단의 요청시, 감사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감사를 시행한다. 감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와 감사를 요청한 주주 또는 주주단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한다.본 항에서 규정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이사회의 일반활동을 침해해선 안되며, 회사의 경영활동 및 운영을 중단시켜서는 안된다.
6.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관리조직구조와 경영활동운영의 수정, 보충, 개선을 건의한다.
7. 이사, 사장 또는 회장 등이 본 법 제119조에서 규정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적발한 경우, 이사회에 본 사실을 서면 보고하고,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를 중지,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한다.
8. 본 법과 회사정관이 규정하거나 주주총회가 결정한 기타 권리와 임무를 수행한다.
9. 감사위원회의 부여된 직무를 실행하기 위해 독립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결론을 보고하거나, 기타 사항을 건의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 **제124조 감사위원회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1. 이사회 소집 통지서, 표결 질의서, 그리고 각종 첨부 서류는 이사회 구성원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시기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2. 이사회에 제출할 사장 또는 회장의 보고서나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서류는 이사회 구성원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시기에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3. 감사위원은 본사, 지사 그리고 기타 장소에 보관된 회사의 서류나 자료를 열람하고, 회사의 관리자와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를 방문할 권한이 있다.
4. 이사회, 이사, 사장 또는 회장, 기타 관리자는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경영 및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고,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제125조 감사위원의 급여 및 기타 수익**

회사정관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의 급여와 기타 수익은 아래와 같다.

1. 감사위원은 업무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으며, 주주총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주총회는 예상 근무일수와 각 감사위원의 업무성격과 연간 평균 임금수준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의 급여 수준과 연간 활동예산을 책정한다.
2. 감사위원의 합리적인 수준의 식대, 활동비, 독립 자문기관의 서비스 이용비 등의 경비를 지급 받으며, 총급여 및 지출비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감사위원회의 연간 활동예산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감사위원회의 급여 및 활동경비는 법인 소득세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경비로 계산되며,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에서 개별 항목 기재·구분한다.

### 제126조 감사위원의 의무

1. 부여된 권한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투철한 직업정신을 바탕으로 법률규정, 회사정관, 주주총회의 결정을 준수한다.
2. 회사와 주주의 합법적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 받은 권리와 임무를 신중하고, 최선을 다해, 충실히 수행한다.
3.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하며 회사의 정보, 노하우, 경영기회를 이용하지 않는다. 또한, 사리사욕 또는 타 조직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 또는 회사의 재산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4. 이 외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의무가 있다.
5. 본 조 1, 2, 3, 4항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 감사위원들은 손실을 배상함에 있어 개인적 또는 연대 책임진다.
6. 부여된 권한과 임무를 위반한 감사위원을 적발한 경우,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에 이 사실을 서면 보고하며, 위반자의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배상하도록 한다.

### 제127조 감사위원회의 해임 및 파면

1. 감사위원은 아래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된다.
  - a) 본 법 제122조에서 규정한 감사위원의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b)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 6개월 동안 자신의 주어진 권한과 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c) 사의를 표명한 경우
  - d) 이 외 회사정관에 규정된 기타 경우
2.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 이외에도,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의 결정에 의해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이사회는 기존의 감사위원회의 해임 및 해산을 논의하고, 신규 감사위원회를 선출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제128조 연례 보고서 보고

1.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사회는 아래와 같은 보고서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a) 회사의 경영현황 보고서
  - b) 재무제표 또는 재정보고서
  - c) 회사 운영·관리 업무 평가보고서
2. 법률상 회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연간 재무제표는 주주총회가 검토, 통과하기 전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보고서와 자료는 회사정관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연간회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심사·감사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4. 이사회가 준비한 보고서와 자료, 감사위원회의 심사·감사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는 회사정관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연간회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본사 또는

지사에 구비되어야 한다. 최소 1년 이상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접 또는 변호사, 전문 회계감사원, 회계원과 함께 상기 보고서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 제129조 주식회사의 정보 공개

1. 주식회사는 회계연도 종료이후 90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연간 재무제표를 세무서와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간 재무제표의 내용 요약본은 모든 주주들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3.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서 주식회사의 연간 재무제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 제 5 장 합작회사

### 제130조 합작회사

1. 합작회사는 기업의 한 형태로써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 a) 최소 2인의 사원이 회사의 공동 소유주이어야 하며, 하나의 공동 성명으로 사업을 영위한다.(이하 무한책임사원이라 함.) 무한책임사원 외에도 유한책임사원이 있을 수 있다.
  - b) 무한책임사원은 자신의 전 재산으로 회사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을 말한다.
  - c)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범위의 한도 내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합작회사는 사업자등록 확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법인 자격을 가진다.
3. 합작회사는 어떠한 종류의 증권도 발행하지 않는다.

### 제131조 출자 및 출자지분 확인서 발급

1.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은 약속한 출자가액을 기한 내에 모두 출자한다.
2. 약속한 출자가액을 기한 내에 충분히 출자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약속한 출자가액을 기한 내에 충분히 출자하지 않은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출자액은 회사에 대한 사원의 부채로 간주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명될 수 있다.
4. 약속에 따른 출자를 완료한 사원은 출자지분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출자지분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a) 회사의 상호, 본사 소재지
  - b)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번호
  - c) 회사의 정관자본금
  - d) 사원의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기타 공인된 개인신분증, 사원의 유형(무한책임사원 혹은 유한책임사원)
  - e) 출자지분의 가치 및 사원이 출자한 재산의 종류
  - f) 출자지분 확인서 발급번호 및 발급일
  - g) 출자지분 확인서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 h) 출자지분 확인서 소유자와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서명날인

5. 출자지분 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확인서가 찢어지거나, 불에 타는 등 훼손되었을 경우, 회사는 사원에게 출자지분 확인서를 재발급한다.

### 제132조 합작회사의 자산

1. 회사의 소유권으로 이전된 사원의 출자재산
2. 회사의 이름으로 발생한 재산
3. 회사를 대신한 무한책임사원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재산이나, 무한책임사원에 의해 등록된 사업 분야와 업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재산
4. 그 밖의 법률규정에 따른 재산

### 제133조 무한책임사원의 권리 제한

1. 무한책임사원은 개인기업의 기업주나 다른 합작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단, 다른 무한책임사원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조직과 개인의 이익이나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와 동종분야를 경영하는 타인을 대신할 수 없다.
3.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자신이 출자한 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 제134조 무한책임사원의 권리와 의무

1. 무한책임사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다.
  - a)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회의, 토론회, 표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무한책임사원은 하나의 의결권(one vote) 혹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을 가진다.
  - b) 회사를 대신하여, 등록된 사업 분야와 업종의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협상할 수 있으며, 각종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다.
  - c) 등록된 사업 분야와 업종의 사업활동을 위해 회사직인과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의 사업활동을 위해 자기 금전을 지불하였을 경우, 지불액의 원금과 시세에 따른 이자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d) 자신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닌 사업활동에 의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 e)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해 회사와 다른 무한책임회사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재산, 회계장부 그리고 기타 자료를 어느 때나 검사·열람할 수 있다.
  - f) 자본 출자비용 혹은 회사정관에서 합의한 규정에 따라 이윤을 배분 받는다.
  - g) 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할 경우,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 출자비용에 따라 잔여재산 일부를 배분 받는다.
  - h)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하거나 법원이 사망을 선언한 경우, 해당 사원의 상속자는 본 사원의 책임에 해당하는 채무를 제외한 회사 재산을 상속 받는다. 사원총회가 승인할 경우 상속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 i) 그 외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른 기타 권리가 있다.
2. 무한책임사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신중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관리하며, 회사와 무한책임사원 전체의 합법적인 이익의 최대 창출을 보장한다.
- b) 법률규정, 회사정관 그리고 사원총회의 결의안을 준수하여 회사의 사업활동 및 운영·관리를 시행한다. 만일 본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c)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조직과 개인의 이익이나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의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
- d) 회사의 등록된 사업 분야와 업종에 관련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전 또는 여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회사, 본인 또는 타인 등의 개인을 대신하는 경우, 취득한 재산이나 금전을 회사에 상환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한다.
- e) 회사의 부채를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잔여 채무 변제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 f) 회사에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정관 상 합의한 규정에 따라 또는 회사에 출자한 지분에 상응하는 손실을 받아들인다.
- g) 매월 정기적으로 회사에 자신의 사업 현황과 결과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히 서면 보고하며, 다른 사원의 요청이 있을시 자신의 사업 현황과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h) 이 외에도, 본 법과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가 있다.

### 제135조 사원총회

1. 모든 무한책임사원이 모여 사원총회를 구성한다. 사원총회는 한 명의 무한책임사원을 사원총회 의장으로 선출하며, 의장은 회사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사의 사장 또는 회장을 겸직한다.
2. 무한책임사원은 회사 경영상의 업무에 대한 토론과 결정을 위해 사원총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원총회 소집을 요청한 사원은 회의 내용, 진행 프로그램, 그리고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한다.
3. 사원총회는 회사 전체 사업상의 업무 전반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일 회사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총사원 3/4의 승인이 필요하다.
  - a) 회사 발전 전략
  - b) 회사정관 수정 및 보완
  - c) 신규 무한책임회사의 가입 승인
  - d) 무한책임사원의 탈퇴 또는 제명
  - e) 투자프로젝트 결정
  - f) 회사 정관자본금의 50% 이상 또는 정관자본금에 상당한 금액의 대출이나 기타 형태의 자본 동원에 대한 결정. 단, 회사정관이 비율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g) 회사의 정관자본금에 상응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재산의 매매에 대한 결정. 단, 회사정관이 비율을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h) 연간 재무제표, 총 이윤 및 사원 당 분배되는 이윤의 승인
  - i) 회사 해산 결정
4. 본 조 3항에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최소 총사원의 2/3이 동의한 문제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정관이 규정한다.

5. 유한책임사원의 투표권은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른다.

### 제136조 사원총회의 회의 소집

1. 사원총회 의장은 필요시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요청시 사원총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무한책임사원의 요청이 있음에도 사원총회 의장이 사원총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원이 사원총회 회의를 소집한다.

2. 초청서, 전화, 팩스, 텔렉스(telex), 그 밖의 전자통신 등으로 회의 소집을 통보하며, 회의 참석 안내서, 회의의 목적, 내용, 프로그램, 회의 장소, 그리고 소집 요청 사원의 성명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야 한다.본 법 제135조 3항에 규정한 문제의 결정에 대한 토론자료는 회의 이전에 모든 사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송부 기간은 회사정관에 규정에 따른다.

3. 사원총회 의장 또는 회의 소집 요청 사원은 회의를 주관한다. 사원총회의 회의는 회사의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회의록에 기재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회사명, 본사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및 발급일, 사업자등록 장소
- b) 회의의 목적, 프로그램, 내용
- c) 회의 시간 및 장소
- d) 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성명
- e) 회의 참석 사원의 의견
- f) 가결된 결의안, 승인 사원수 및 결의안의 기본 내용
- g) 회의 참석 사원의 성명, 서명날인

### 제137조 합작회사의 사업 운영

1.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법적대리인으로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제한은, 제3자가 그 제한을 알고 있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 무한책임사원은 사업운영에 대해 회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분담하여 책임진다. 일부 또는 모든 무한책임사원이 일부 경영업무를 수행할 경우, 결의안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통과된다.회사의 등록된 사업 분야 및 업종에 대한 사업활동 범위를 벗어난 무한책임사원의 활동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단, 다른 사원들이 모두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회사는 한 개 이상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사원총회는 사원 1인에게 본 계좌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도록 임명할 수 있다.

4. 사원총회 의장, 사장 또는 회장은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다.

- a)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으로 회사의 사업 업무를 운영·관리한다.
- b) 사원총회 회의를 소집하고 조직하며, 사원총회의 결의안 혹은 의결안에 서명한다.
- c) 무한책임사원의 사업업무를 분배·협력하며, 회사 내규와 기타 내부조직업무 규제 관한 결정에 서명한다.
- d) 법률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영수증, 증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충실하게 정리·보관한다.
- e) 국가기관과의 관계나 소송사건, 무역분쟁 혹은 기타 분쟁에서 피고 혹은 원고의 자격으로 회사의 대표자 역할을 수행한다.

### 제138조 무한책임사원 자격 정지

1. 무한책임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격 정지된다.
  - a) 독단적으로 회사에 대한 출자자본금을 취소·철회하는 경우
  - b) 사망하였거나 법원이 사망을 선언한 경우
  - c) 법원이 실종을 선언하였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당하거나 상실한 경우
  - d) 회사에 의해 제명당한 경우
  - e) 회사정관이 규정한 기타 경우
2. 사원총회가 승인하는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자신의 투자자본금을 회수할 수 있다.
3. 무한책임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로부터 제명된다.
  - a) 회사가 두 번 이상 요청한 이후에도 출자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약속된 출자액을 출자하지 못했을 경우
  - b) 본 법 제13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c) 사업을 충실하고 신중하게 운영하지 않거나, 회사 또는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손해를 입히는 부적절한 행위를 자행한 경우
  - d) 무한책임사원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
4.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당하거나 상실하여 사원자격을 정지당한 경우, 해당사원의 출자지분은 공평하고 합당하게 상환된다.
5. 본 조 1항 a, d항의 규정에 따라 무한책임사원 자격이 정지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사원은 사원자격이 정지되기 이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전재산으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6. 사원자격이 정지된 이후에도, 자격정지 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전체 또는 일부에 사용될 경우, 해당 사원, 법적 대리인 또는 상속자는 사용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9조 신규 사원의 가입**

1.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신규 사원의 가입이 가능하다.
2.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사원총회의 승인 후 15일 이내에 회사에 약속한 출자액을 출자해야 한다. 단, 사원총회가 별도로 기간을 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신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 및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해 자신의 전재산으로 변제하고 연대책임을 진다. 단, 해당 사원과 다른 사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40조 유한책임사원의 권리와 의무1. 유한책임사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회사 정관의 수정 및 보완, 유한책임사원의 권리와 의무, 회사의 구조조정 및 해산 그리고 유한책임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정관의 기타사항에 대한 회의, 토론회, 표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b) 회사정관자본의 자본 출자 비율에 따라 매년 이윤을 분배 받는다.
- c)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를 제공받으며, 사원총회 의장과 무한책임사원에게 경영현황과 회사의 경영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회계장부, 문서, 계약서, 거래서 그리고 기타 자료 및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
- d) 회사내 다른 사원에게 자신의 출자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 e) 자기와 타인의 대리자로서 회사의 등록된 사업 분야 및 업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f) 유한책임사원은 상속, 증여, 저당, 담보, 그리고 법률과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른 기타 방식으로 자기의 출자지분을 처리할 수 있다. 사망하였거나 법원이 사망을 선언하였을 경우, 상속자는 사망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g) 회사의 해산시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자본 출자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 일부를 배분 받는다.

h) 이외 본 법과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를 가진다.

2. 유한책임사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다.

a) 자신이 출자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 및 기타 재산상 의무에 관한 변제의 책임이 있다.

b) 회사 관리에 참여하거나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c) 회사정관과 회사 내규, 그리고 사원총회의 결의안을 준수한다.

d) 이외 본 법과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른 기타 의무가 있다.

## 제 6 장 개인기업

### 제141조 개인기업

1. 개인기업이란 한 개인이 기업주이며 동시에, 기업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해 자신의 재산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기업을 말한다.

2. 개인기업은 그 어떤 형태의 증권도 발행하지 않는다.

3. 각 개인은 한 개의 개인기업만을 설립할 수 있다.

### 제142조 기업주의 투자자본

1. 개인 기업주의 투자자본이란 기업주가 자발적으로 등록한 자본을 말한다. 개인기업의 기업주는 베트남 통화,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환, 금, 또는 기타 재산으로 이루어진 투자자본 총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등록할 의무가 있다. 기타 재산으로 이루어진 투자자본의 경우, 재산의 유형, 수, 그리고 잔여 가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2. 기업의 사업활동에 쓰이는 자본과 대출·임대자산(리스(lease))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법률규정에 따라 기업의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기재되어야 한다.

3. 사업과정 중, 개인 기업주는 기업의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신의 투자금을 증감자할 수 있다. 기업주의 투자금 증감자 내역은 회계장부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감자된 투자자본이 등록투자자본보다 낮을 경우, 기업주는 사업자등록 기관에 등록된 이후에만 투자금을 감자할 수 있다.

### 제143조 기업 관리·운영

1. 개인기업의 기업주는 기업의 사업활동 결정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 납세와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 후의 이윤 사용은 법률규정에 따른다.

2. 개인기업의 기업주는 직접 혹은 다른 이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다른 이를 기업경영자로 고용하였을 경우, 기업주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기관에 등록하며,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진다.

3. 개인기업의 기업주는 기업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중재위원회 혹은 법원 앞에서 원고(고

소인), 피고(피고인), 또는 관련 권리 및 의무자가 된다.

4. 개인기업의 기업주는 기업의 법적 대리인이다.

#### **제144조 기업 임대**

개인기업의 기업주는 자신의 기업 전체를 임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사업자 등록기관 및 세무서에 공증된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서류를 통해 임대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임대 기간동안 기업주는 기업 소유주의 자격으로 법적 책임을 지며, 기업의 사업활동에 대한 소유주 및 임차인의 권리와 책임은 임대계약서에서 규정한다.

#### **제145조 개인기업 매각**

1. 개인기업의 기업주는 다른 이에게 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매입자에게 기업을 이전하기 최소 15일 이전에 기업주는 사업자등록 기관에 서면으로 본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서에는 기업의 상호, 소재지,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 기업의 미지급 채무액, 근로계약서 그리고 그 밖의 완료하지 못한 계약서 그리고 해당 계약서의 해결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한다.

2. 기업 매각 이후, 기업주는 기업의 미변제 채무와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단, 매각자와 매입자 간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업 매각자 및 매입자는 노동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 기업 매각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재사업자등록 한다.

## **제 7 장    기업집단**

#### **제146조 기업집단(Corporate group)**

1. 기업집단이란 장기간 경제적 이익, 기술, 시장,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에 관련하여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 집합을 말한다.

2. 기업집단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 a) 모회사-자회사
- b) 경제 그룹(economic conglomerate)
- c) 기타 형태

#### **제147조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권리와 책임**

1. 자회사의 법적 유형은 본 법 및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해 사원, 소유주 또는 주주의 자격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본 조 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계약, 거래 그리고 그 밖의 관계는 독립적인 법적 주체를 인정한다는 전제에 의거해 독립적이고 평등하게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3. 소유주, 사원 또는 주주로서의 권한 이상으로 자회사를 간섭하고, 일반적인 사업통례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또는 해당 회계연도에 적절한 배상이 없는 비이윤활동을 자회사에게 강제할 경우, 모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본 조 3항에서 명시한 활동을 자회사에 강제한 모회사의 경영자는 모회사와 함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본 조 3항에서 규정한대로 배상하지 않는 경우, 채권단, 또는 사원과 자회사의 법정자본금을 최소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자신이 직접 또는 자회사를 대신하여 모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6. 본 조 3항에서 명시한 것과 같은 경영활동이 타 자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경우, 이익이 발생한 자회사와 모회사는 손해 자회사에게 이익을 환급한다.

#### **제148조 모회사와 자회사의 재무제표**

1.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에 모회사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자료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a) 회계법의 규정에 따른 기업집단의 통합 재무제표
  - b) 기업집단의 사업결과 종합 연차보고서
  - c) 기업집단의 관리·운영결과 종합보고서
2. 본 조 1항에서 규정된 보고서 작성 책임자는 모든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다.
3. 모회사 법적대리인의 요청시, 자회사의 법적 대리인은 기업집단의 종합보고서와 통합 재무제표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보고서, 자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자회사가 작성하고, 제출한 보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하거나, 날조된 정보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모회사의 경영자는 상기 보고서를 기업집단의 종합보고서 및 통합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5. 모회사의 경영자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자회사로부터 보고서, 자료,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도, 모회사의 경영자는 종합보고서 및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한다. 제출한 보고서에는 해당 자회사의 정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으나 보고서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첨부한다.
6. 모회사와 자회사의 연간 재정결산보고서 및 자료, 기업집단의 통합 재무제표 및 종합보고서를 모회사의 본사에 보관한다. 또한, 본 항에서 규정한 자료 및 보고서 사본은 베트남에 위치한 모회사의 각 지사에 보관되어야 한다.
7. 법률 규정에 따른 보고서와 자료 외에도 자회사는 거래 및 매매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모회사에 제출한다.

#### **제149조 경제 그룹**

경제 그룹이란 규모가 매우 큰 경제집단을 말한다. 정부는 경제 그룹의 조건, 조직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안내를 규정한다.

## **제 8 장    기업의 조직개편, 해산 및 파산**

#### **제150조 기업의 분할**

1.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같은 종류의 여러 회사로 분할될 수 있다.
2.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분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분할 당사회사의 사원총회, 회사 소유주 또는 주주총회는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라

회사의 분할결정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회사 분할에 대한 결의안에는 분할 당사회사의 상호와 본사 주소, 신설회사의 상호, 회사 자산의 분배를 위한 원칙과 절차, 직원 고용계획, 분할 당사회사의 출자지분·주식·채권을 신설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 조건, 기간, 분할 당사회사의 의무해결 원칙, 분할 시행일 등의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 분할에 관한 결의안은 통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든 채권자들에게 전달되고, 직원들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b) 신설회사들의 사원, 소유주 또는 주주들은 정관을 승인하며, 사원총회 의장, 대표이사, 이사회장, 신설회사의 사장·회장을 선출하거나 임명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등록을 시행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서류에는 위 a)항에서 언급한 회사 분할에 관한 결의안을 첨부해야 한다.

3. 사업자 등록 이후, 분할 당사회사는 활동을 종료한다. 신설회사는 분할 이전 회사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유지하며, 당사회사의 미지급 채무, 근로계약,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채권자, 고객, 또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할된 신설회사 중 한 회사가 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51조 기업의 분리

1.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기존의 회사(이하 분리 당사회사라 함.)의 일부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나 이상의 동종 신회사(이하 분리회사라 함) 설립을 위해 분리할 수 있다.

2.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분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분리 당사회사의 사원총회, 회사 소유주 또는 주주총회는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라 회사의 분리결정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회사 분리 결의안에는 분리 당사회사의 상호와 본사 주소, 신설회사의 상호, 회사 자산의 분배를 위한 원칙과 절차, 직원 고용계획; 분리 당사회사의 출자지분·주식·채권을 신설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 조건, 기간; 분리 당사회사의 의무해결 원칙, 분리 시행일 등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 분리에 관한 결의안은 통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든 채권자들에게 전달되고, 직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b) 분리회사의 사원, 소유주 또는 주주들은 정관을 승인하며, 사원총회 의장, 대표이사, 이사회장, 분리회사의 사장·회장을 선출하거나 임명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등록을 시행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서류에는 위 a)항에서 언급한 회사 분리에 관한 결의안을 첨부해야 한다.

3. 사업자 등록 이후, 분리 당사회사와 분리회사는 분리 당사회사의 미지급 채무, 근로계약,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단, 분리 당사회사, 분리회사, 채권자, 고객, 또는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 제152조 기업의 신설합병

1. 동일한 업종의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사(이하의 합병 당사회사라 한다)는 모든 자산, 권리, 의무, 합법적 이익 등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병하여 신회사(이하 합병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당사회사는 활동을 종료, 해산한다.

2. 신설합병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합병 당사회사는 합병계약을 준비한다. 합병계약서에는 당사회사의 상호 및 주소; 합병회사의 상호와 사무소; 합병의 절차와 조건; 직원 고용계획; 재산 이전의 절차, 조건, 기

간; 당사회사의 출자지분, 주식, 채권을 합병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 조건, 기간; 합병 시행일; 신설회사의 정관 초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b) 합병 당사회사의 사원, 소유주 또는 주주들은 합병계약서와 합병회사의 정관을 승인하며, 사원총회 의장, 대표이사, 이사회장, 합병회사의 사장·회장을 선출 또는 임명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시행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서류에는 합병계약서를 첨부한다. 합병계약은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든 채권자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직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3. 만약 신설합병 후, 합병회사가 관련시장의 30~50%를 점유하게 된다면, 회사의 합법적 대표는 신설합병을 진행하기 전 경쟁관리기관에 통보해야한다. 단, 경쟁법(Law on competition)에서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합병 후, 합병회사가 관련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금지한다. 단, 경쟁법에서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자 등록 이후, 당사회사는 활동을 종료한다. 합병회사는 합병 당사회사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유지하며, 당사회사의 미지급 채무, 근로계약,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제153조 기업의 흡수합병

1. 동일한 업종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는 모든 자산, 권리, 의무, 합법적 이익 등을 이전하는 동시에 활동을 종료, 해산하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이하 합병회사라 한다.)에 합병 될 수 있다.

2. 합병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관련회사들은 합병계약서와 합병회사의 정관 초안을 준비한다. 합병계약서에는 합병회사의 상호 및 주소; 소멸회사의 상호 및 주소; 합병의 절차와 조건; 직원 고용계획; 재산 이전의 절차, 조건, 기간; 소멸회사의 출자지분, 주식, 채권을 합병회사의 출자지분, 주식, 채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 조건, 기간; 합병 시행일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b) 관련회사의 사원, 소유주, 또는 주주들은 합병계약서와 합병회사의 정관을 승인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시행한다. 이 경우, 사업등록 서류에는 합병계약서를 첨부한다. 합병계약은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든 채권자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직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c) 사업등록 이후, 소멸회사는 활동을 종료·해산하고, 합병회사는 소멸회사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계승하며, 소멸회사의 미지급 채무, 근로계약,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만약 합병 후, 합병회사가 관련시장의 30-50%를 점유하게 된다면, 회사의 합법적 대표는 합병을 진행하기 전 경쟁관리기관에 통보해야한다. 단, 경쟁법에서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합병 후, 합병회사가 관련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금지한다. 단, 경쟁법에서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54조 회사의 전환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이하 전환 당사회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이하 전환회사라 한다)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환 당사회사의 사원총회, 회사 소유주 또는 주주총회는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라 회사의 전환결정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회사 전환에 대한 결의안에는 전환 당사회사의 상호와 본사 주소, 전환회사의 상호와 본사 주소, 전환 당사회사의 출자지분·주식·채권을 신설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 조건, 기간; 직원 고용계획; 전환 시행일 등의 주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회사 전환에 관한 결의안은 통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든 채권자들에게 전달되고, 직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3.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분리회사의 사업등록을 시행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서류에는 회사 전환에 관한 결의안이 첨부되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 이후, 전환 당사회사는 활동을 종료한다. 전환회사는 전환 당사회사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계승하며, 미지급 채무, 근로계약,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155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전환**

1. 기업 소유주가 정관자본의 일부를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 소유주와 양수 조직 및 개인은 사업자 등록기관에 사원 수 변동을 등록해야 한다. 본 항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등록 시행일로부터 회사는 2인 이상의 사원을 가진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된다.
2. 기업 소유주가 개인에게 회사 정관자본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기업 소유주는 양도 절차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수인으로 소유주의 변경을 등록해야 하며, 1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된다.

#### **제156조 경영 일시 정지**

1. 기업은 일시적으로 경영활동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경영활동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활동을 재개 할 경우, 활동 정지일 또는 재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기관 또는 세무서에 경영활동 일시정지 및 재개 시기와 기간을 문서로 통보한다.
2. 사업자 등록기관과 국가기관은 조건부 분야와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이 법률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인 경영활동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일시정지 기간동안 기업은 계속하여 세금을 납부, 채무를 이행하며, 소비자 및 근로자와 체결한 계약을 시행한다. 단, 기업의 채권단, 소비자,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 **제157조 기업이 해산되는 조건 및 경우**

1.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산된다.
  - a) 회사정관 상에 기재된 활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 결정이 없는 경우
  - b)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소유주, 합작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또는 기업 소유주,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
  - c) 회사가 6개월 이상 연속, 본 법에 규정된 최소 사원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d)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2. 기업은 채권 및 기타 재산상 의무를 보장했을 시, 해산이 가능하다.

### 제158조 기업 해산 절차

기업의 해산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1. 기업 해산 결정서가 통과된 경우, 결정서에 기록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기업의 상호와 본사 주소
  - b) 해산 이유
  - c) 기업의 계약 청산, 채무변제 기간 및 절차. 계약 청산 및 채무변제 기간은 기업해산 결정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d) 노동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에 대한 처리 방안
  - e) 기업의 법적 대리인의 성명, 서명날인
2. 개인 기업주, 사원총회 또는 회사 소유주, 이사회는 직접 기업자산의 청산을 시행한다. 단, 회사정관에 청산조직 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결정서가 통과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산 결정서는 사업자 등록기관과 채권자, 권리, 의무, 이익 등에 관련한 사람, 그리고 직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본 결정서는 기업 본사와 지사에 공고한다. 법률의 신문 게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경우, 기업해산 결정서는 최소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전자신문에 3회 연속 게재되어야 한다. 해산 결정서는 채권 해결방안에 관한 통보서와 함께 모든 채권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통보서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무액, 채무 변제 기간, 장소, 방법, 채권자의 제소해결 방법과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기업의 채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변제한다.
  - a) 임금채무, 해고 부조금(보조금), 법률규정에 따른 사회보험, 그리고 노동조합 협약 및 노동계약에 따른 노동자의 기타권리
  - b) 조세채무(세금채무) 및 기타 그 밖의 채무각종 채무와 기업해산 비용을 모두 변제한 후의 잔여 재산은 개인기업주, 사원, 주주 또는 회사 소유주에 속한다.
5. 기업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7일 이내에 기업의 법적대리인은 기업해산과 관련한 서류를 사업자 등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기관은 기업해산 관련 서류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명단에서 해당기업을 삭제한다.
6.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해야 한다. 기업의 해산 절차와 수속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본 항에서 규정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사업자 등록기관에 기업해산 관련서류를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업은 해산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 등록기관은 사업자등록 명단에서 해당기업을 삭제한다. 이러한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대리인과 사원, 1인 유한책임회사의 회사 소유주,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합작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등은 미변제 채권 및 기타 재정적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진다.

### 제159조 해산 결정 이후의 금지행위

기업의 해산이 결정된 시점부터 기업 및 기업 경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행하는 것을 엄금한다.

1. 재산의 은닉 및 분산
2. 채무 상환 요구권(right for claiming debts)의 정지 및 감면
3. 기업자산을 이용해 무담보 채권을 담보 채권으로 전환하는 행위
4. 기업 해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자산의 저당, 담보, 증여, 임대
6. 효력을 가진 계약서 시행의 종결
7. 기타 방법을 통한 자본 동원

#### 제160조 기업 파산

기업의 파산은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 제 9 장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

#### 제161조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 내용

1. 기업법과 관련 법률 문서를 발간, 배포, 관리한다.
2. 사업등록을 관리하며, 사회·경제 개발 전략, 입안, 정책, 계획 등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등록에 대해 안내한다.
3. 기업 경영자와 전문가의 경영 윤리를 증진시키고 업무를 배양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조직하고, 기업을 관리하는 국가공무원들의 정치적, 도덕적 자질 증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숙련된 노동자 집단을 양성하고, 훈련시킨다.
4.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전략,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따른 기업 관련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5. 기업의 경영활동을 조사·감사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 또는 관련조직과 개인의 법률위반 행위를 처리한다.

#### 제162조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1. 정부는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를 통일하며, 각 부, 부처와 협력하여 국가관리를 시행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 시행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
2. 각 부, 부처는 각각의 주어진 임무와 권한 내에서 국가관리 시행에 대해 정부를 대신한다.
  - a) 국가관리 권한에 속하는 사업조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혹은 기업협회의 요청에 따라 재평가한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조건은 폐지하고,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건의하며, 주어진 국가관리 임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조건을 제정·공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한다.
  - b) 사업조건에 대한 법률 시행을 안내하고, 국가관리 권한에 속하는 사업조건 집행에 대한 위반 행위를 처리하고, 검사·감사한다.
  - c) 법률 문서를 홍보하고, 보급한다.
  - d) 조건부 사업 분야에 대한 경영활동 관리를 조직하고, 환경 오염을 검사, 처리하며, 환경을 보호한다. 또한, 식품안전위생과 근로위생(labor hygiene)을 보장한다.
  - e) 베트남표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 및 서비스 품질표준 시행에 대한 위반사항을 검사, 감사, 처리한다.
  - f)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밖의 책임과 권한을 수행한다.
3. 성·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주어진 권한과 임무 내에서 각 지역의 기업에 대한 국가관

리를 시행한다.

a) 현급 인민위원회와 산하 전문기관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투자 저해요소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권한 내에서 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또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감사·감독하며, 위반 사항을 처리한다.

b) 사업자등록을 시행하고, 사업자등록 내용에 따라 기업과 가족 경영체를 관리한다. 기업법과 관련법의 위반행위를 행정 처리한다.

c) 현급 인민위원회와 산하 전문기관이 세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업조건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상기 분야의 국가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 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위반처리를 건의한다.

d) 사업자 등록기관을 조직하고, 성급 사업자 등록기관 편제를 결정한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행정적 위반 처리에 대해 현급 및 그 이하 지방단위 인민위원회를 지도한다.

### 제163조 사업자 등록기관의 조직구조, 임무 및 권한

1. 사업자등록기관의 임무 및 권한은 아래와 같다.

a) 사업자등록을 해결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증명서를 발급한다.

b) 기업 정보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며, 법률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 개인 및 조직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c) 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경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각 기업에게 요청한다. 또한, 기업의 보고제도 시행을 장려한다.

d) 사업자등록서류의 내용에 따라 기업을 감사·감독하도록 해당 국가기관에 건의하거나, 직접 시행한다.

e)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처리하며,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한다. 또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업의 해산을 요구한다.

f)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진다.

g) 본 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한다.

2. 사업자 등록기관의 조직구조는 정부에 의해 규정된다.

### 제164조 기업의 경영활동 감사 및 검사

기업의 경영활동 감사 및 검사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 제165조 위반 처리

1.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위반 정도와 성격에 따라 본 법에 의거 기율 처리, 행정 처리, 또는 형사 처리한다. 기업, 소유주, 사원, 주주, 기업의 채권단, 또는 기타 개인 등의 이익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회수 당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취소된다.

a) 사업자등록 서류에 명기한 내용을 날조한 경우

b) 본 법 13조 2항에 따라 기업설립을 금지 당한자에 의해 기업이 설립된 경우

c)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세금 코드(tax code)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d) 사업자등록증 또는 본사 소재지 변경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연속 6개월 이상 등록된 본사에서 활동하지 않을 경우

e) 연속 12개월 동안 사업자등록기관에게 사업활동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 f) 사업자등록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연속 1년 이상 사업활동을 정지한 경우
- g) 본 법 제163조 1항에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h) 금지된 분야 및 사업활동을 영위한 경우

## 제 10 장 부 칙

### 제166조 국영기업의 전환

1. 2003년에 제정된 국영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모든 국영기업은 국영기업 연간 전환계획 실행을 위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본 법 발효 후 최대 4년 이내에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해야 한다.정부는 국영기업의 전환 절차에 대해 규정하며 안내한다.
2. 국영기업 전환 기간 동안 본 법에 규정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 국영기업법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 제167조 국방·안보 목적의 기업

국방·안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국방·안보와 경제가 결합된 형식의 국영기업은 본 법과 정부의 별도 규정에 따라 조직, 관리되며, 활동한다.

### 제168조 기업에서의 국가 자본 소유권 시행1. 국가는 기업에서의 국가 자본 소유권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시행한다.

- a) 국가는 자본 투자자의 역할로 소유권을 시행한다.
  - b) 국가자본을 보전하고 개발한다.
  - c) 국가 행정관리 기능과 소유권 시행 기능을 분리한다.
  - d) 기업의 사업 자유권과 소유권 시행을 분리하며, 기업의 경영권을 존중한다.
  - e) 자본에 대한 소유주의 권리와 의무를 통일하고 집중시킨다.
2. 국가 대리기관(state representative agency)의 기능, 임무, 권한; 국가 자본 소유권 시행 체계; 국가자본의 보전 및 개발 실태와 효과에 대한 평가 조건과 기준; 국가 대리기관에 대한 검사, 평가 및 협력 체계; 국영기업의 개편, 구조조정, 정리, 기업활동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및 대책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3. 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에 국가 소유자본의 경영 실태, 기업에서의 국가보유자본과 자산 가치의 보전과 개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169조 국영기업 설립

본 법 발효 후, 국가에 의해 설립된 기업은 본 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조직, 관리된다.

### 제170조 신규 개정 기업법 발효 이전에 설립된 기업에 대한 법률 적용

1. 1999년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개인회사, 합작회사는 사업자 등록 수속을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2. 본 법이 발효하기 전에 설립된 외국투자기업은 본 조 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할 권리가 있다.

a) 본 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한다. 재등록은 본 법 발효 후 2년 안에 실시해야 하며, 기업은 본 법에 따라 조직, 관리, 활동한다.

b) 재등록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기업은 투자허가서에 명시된 분야와 기간 내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며, 정부의 규정에 따라 투자우대 혜택을 받는다.

3. 경영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 투자자가 베트남 정부에 자산을 비상환 양도하기로 약속한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정부의 규정에 따른 국가 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만이 변경이 가능하다.

4. 10명 이상의 직원을 상시 고용하는 가족 경영체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본 법에 따라 활동한다. 소규모의 가족 경영체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사업 등록하며, 활동한다.

### **제171조 시행 효력**

1. 본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효력을 갖는다.

2. 본 법은 1999년 기업법과 2003년 국영기업법을 대체한다. 단, 본 법 166조 2항에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본 법은 또한 1996년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과 2000년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 개정판에서 규정한 기업의 조직, 관리 및 활동에 관한 규정을 대체한다.

### **제172조 시행 안내**

정부는 제 7, 24, 36, 37, 61, 87, 149, 163, 165, 166, 167, 168, 169, 170조와 기업에 대한 국가관리와 부합하는 기타 필수내용의 시행안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본 법은 2005년 11월 29일 제 11차 8회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에 통과되었다.



# 외국인직접투자 절차 및 수속, 처리에 관한 잠정 시행령<sup>1)</sup>

수상실 공문 2006년 7월 24일 3902/VPCP-KTTH 에 의거, 2005년 11월 29일 59/2005/QH11의 투자법 세부시행 안내에 관한 시행령이 수립될 때까지 외국인 투근 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투자부<sup>2)</sup>는 아래와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프로젝트(이하 투자프로젝트라 함)에 대한 처리, 투자 절차 및 수속을 잠정적으로 안내한다.

## 1. 투자프로젝트 최초처리

1.1 본 공문 상 처리 배분업무는 잠정적인 것이며, 정부에 제출된 시행령 초안은 각 지방으로 확대 공포될 예정이다.

1.2 특별법에 투자 수속절차, 승인심사 등이 규정된 특별 분야에 속한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한다.

1.3 투자법 29조에 규정한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아니하고, 2,000만 US\$ 혹은 3,000억 베트남 동(VND) 미만 규모로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외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투자등록 절차에 따라 투자허가 승인서를 발급한다. 계획투자국<sup>3)</sup>은 최초 서류를 접수, 서류의 적법성을 심사한 후 투자허가승인서 발급기관인 성급 인민위원회에 동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투자승인 허가서 발급을 요청한다.

1.4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는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아니하고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내 4,000만 US\$ 혹은 6,000억 베트남 동(VND) 미만 규모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승인서 서류접수, 발급, 조정, 회수 업무를 지속한다. 2,000만 US\$ 혹은 3,000억 베트남 동(VND) 미만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투자허가승인서 발급 업무를 투자등록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5 투자법 안내에 관한 시행령의 공포 이전까지는, 계획투자부가 잠정적으로 기존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최초 접수와 처리를 담당한다.

## 2. 투자 수속절차

2.1 투자법과 기업법 규정에 따른 투자허가승인서 발급을 위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본 시행령 1절에 언급된 투자허가승인서 발급기관에서 수속한다. 투자 자본규모와 분야에 의거하여, 투자허가승인서 발급 업무는 투자등록과 투자심사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2.2 투자허가승인서 발급 등록업무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본 시행령은 투자법 시행령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한 한시적 법이며, 첩부의 각종 양식 또한 향후 새로운 양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2) 베트남 중앙정부의 투자유치 담당 부처로 영문명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이다. 동 부처에 대한 한글명은 영문명을 그대로 따라 「계획투자부」로 사용한다.

3) 베트남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담당 부처로 영문명은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이다.

a) 프로젝트 서류:

- 투자허가승인 신청서
- 투자자 재정능력보고서(투자자 작성하며, 내용에 책임을 진다)
- 국내외 투자자 간에 합작회사설립형식에 대해서는 합작계약서, 경영협력계약에 따른 투자형식에 대해서는 경영협력계약서

- 베트남에 최초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는 본 시행령 3절에 규정된 각 기업 유형에 맞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b) 검토내용 투자허가승인서 발급 기관은 법인 소득세, 수출세, 수입세 그리고 토지에 대한 현행법들의 규정에 따라 투자허가승인서에 투자우대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부응하는 투자우대 지역과 분야에 의거하여 투자등록서류와(기업설립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서의 적법성을 검사한다.

2.3 2,000만 US\$ 혹은 3000억 베트남 동(VND) 미만의 투자자본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중 조건부 투자에 속하는 분야에 대한 심사업무 기준은 아래와 같다.

a) 프로젝트 서류

- 투자허가승인신청서
- 국내외 투자자 간의 합작회사설립형식에 대해서는 합작계약서, 경영협력계약에 따른 투자형식에 대해서는 경영협력계약서

- 투자자 재정능력보고서 (투자자 작성하며, 내용에 책임을 진다)

- 베트남에 최초로 투자하는 외국투자자가 경제단체 설립을 등록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투자자는 본 시행령 3절의 규정에 따라, 각 기업유형에 맞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b) 심사내용

- 투자법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조건에 적합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 베트남에 최초로 투자하는 외국투자자에 의한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법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기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자등록 내용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 검토한다.

2.4. 투자자본 규모 미화 2000만 불 또는 3000억동 이상의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심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a) 프로젝트 서류

-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서(투자등록 신청서)

- 투자자의 법적 지위 확인서류(투자자가 조직일 경우 회사설립 결정서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서류; 개인 투자자일 경우 여권 사본 또는 개인증명서)

-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간의 합작경제단체 형태의 경우 합작계약서; 경영협력계약에 따른 투자형태일 경우 경영협력계약서

-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고서(투자자가 작성하며, 내용에 책임을 진다)

- 경제기술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프로젝트의 목표, 프로젝트 시행 장소, 토지사용 신청, 투자 규모(생산 및 경영 능력), 투자자본, 프로젝트 진행 정도, 산업문제 및 환경문제 해결방안

- 베트남에 최초로 투자하는 외국투자자가 경제단체 설립을 등록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투자자는 3절의 규정에 따라 기업유형에 맞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

해야 한다.

-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의 조건에 적합한 타당성 심사를 시행한다.

b) 심사내용

- 기반시설, 토지사용, 건설, 광물 및 기타자원 사용에 대한 종합계획과 부합해야 한다.

- 토지 사용 신청: 면적, 토지 유형

- 프로젝트 진행 정도

- 환경문제 해결방안

-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법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조건에 적합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 그 외, 베트남에 최초로 투자하는 외국투자자에 의한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법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기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자등록 내용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 3. 사업자등록 서류

#### 3.1. 합작회사<sup>4)</sup> 형태에 따라 기업을 설립할 경우

a) 회사정관 초안

b) 사원명부, 주민등록증 사본, 사원의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 기타 개인 증명서 사본

c) 법률규정에 따라 직업 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라이선스 사본; 법률규정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법정자본금 확인서

#### 3.2. 유한책임회사 형태에 따라 기업을 설립할 경우

a) 회사정관 초안

b) 사원명부 및 기타 첨부 서류

- 개인이 사원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 신분증 사본

- 조직이 사원일 경우: 설립 의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제 상응하는 조직의 기타 서류, 위임에 따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 개인 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

- 외국조직이 사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공증이 필요하며, 상기 공증은 서류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c) 법률규정에 따라 직업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직업 증명서 사본; 법률규정에 따라 법정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법정자본금 확인서

#### 3.3. 주식회사 형태에 따라 기업을 설립할 경우

a) 회사정관 초안

b) 창립주주명부 및 기타 첨부 서류

- 개인이 주주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 신분증 사본

- 조직이 주주일 경우: 설립 의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의

---

4) Partnership을 의미하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포괄하는 「합작회사」로 번역한다.

기타 서류, 위임에 따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

- 외국조직이 주주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공증이 필요하며, 상기 공증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c) 직업, 분야별 사업 경우에 대해서 분야별 증명서 규정에 맞는 사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 라이선스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직업, 분야별 사업 경우에 대해서 법정자본금 확인 문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정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 4. 투자 허가승인서 절차

##### 4.1. 투자허가승인서 등록 절차

a) 투자자는 계획투자국 혹은 관리위원회에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b) 규정에 맞는 투자등록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허가승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투자허가승인서를 발급하고 발급된 투자허가서 사본을 유관기관, 각급 성 인민위원회, 경제기술 분야 관리 부처, 베트남 정부은행, 자원환경부, 무역부, 재경부 및 계획투자부에 발송한다.

##### 4.2. 투자허가승인서 발급심사 절차

a) 초안서류

- 계획투자부에 제출 경우는 10부를 제출해야 하며 그 중에 원본 서류 1부가 있어야 한다.

- 관리위원회에 제출 경우는 4부를 제출해야 하며, 그 중에 원본 서류 1부가 있어야 한다.

b) 계획투자부에 의해 발급된 투자허가증명서의 투자프로젝트 심사절차

- 규정에 맞는 서류를 충분히 수령한 후에 계획투자부는 연관이 있는 각급 성 인민위원회 그리고 각분야 부처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발송한다. 각 분야, 부처들의 의견을 토대로, 계획투자부는 투자허가승인서를 승인권자인 정부 수상에게 제출하고 또는 투자허가증명서 발급 결정을 검토한다. 승인이 불가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계획투자부는 투자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문서에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한다.

- 투자허가승인서를 발급한 후에, 관리위원회는 발급된 투자허가승인서 사본을 유관기관, 각급 성인민위원회, 경제기술 분야 관리 부처, 베트남 정부은행, 자원환경부, 무역부, 재경부 및 계획투자부에 발송한다.

c) 투자허가승인서를 발급하는 관리위원회에 의한 투자프로젝트 심사절차

- 합법적으로 작성된 서류들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위원회는 투자확인서 발급을 검토하기 위하여 2.4항 b란에 규정된 내용들에 따라 심사한다. 승인이 불가한 프로젝트에 경우에는, 계획투자부는 투자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통보서에 충분한 이유를 제시한다.

- 투자허가승인서 발급후, 관리위원회는 투자허가승인서 사본을, 각급 성인민위원회, 경제기술 분야 관리 부처, 베트남 정부은행, 자원환경부, 무역부, 재경부 및 계획투자부에 발송한다.

4.3. 투자허가승인서는 동시에 사업등록증의 역할을 하며 기업법 27조에 있는 규정에 따라 사업등록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2006년 7월 1일 투자법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급된 투자허가승인서 조정절차

5.1 투자법 이전에 투자허가승인서를 받고 활동하는 외투기업 중 활동시한이 종료하여 자산을 정부에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 a) 투자법과 기업법에 따라 재등록 및 조직 개편을 하거나,
- b) 재등록을 하지 않고 규정에 따른 투자우대를 적용 받으며, 발급된 투자허가승인서에서 규정한 시한, 분야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5.2 재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가 투자승인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는 1항에서 제시한 투자허가승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절차를 받아야만 한다. 투자허가승인서에서 규정한 분야 범위 내에 새로운 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지역에 투자허가승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6. 투자허가 승인서

6.1 투자허가승인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들을 포함한다.

- a) 투자자의 주소, 이름
- b) 사용토지면적, 투자프로젝트 실행장소
- c) 투자프로젝트 규모, 목표
- d) 총 투자자본금
- e) 투자프로젝트 실행속도, 기한
- f) 투자 지원 및 우대 항목 확인(있을 경우)

6.2 베트남에 투자를 처음으로 하는 외국투자자에게 발급하는 투자허가승인서는 기업법 25조 규정에 따라 사업등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경영협력계약 형식에 따라 투자한 경우에는 제외) 투자허가승인서는 동시에 기업의 사업등록 허가승인서이다.

## 7. 투자우대 규정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 임대세, 수입세, 법인세에 대한 우대조항들은 정부의 142/2005/ND-CP 의정, 149/2005/ND-CP 의정, 152/2004/ND-CP 의정, 164/2003/ND-CP 의정의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투자허가승인서를 발급하는 기관들은 투자허가승인서에 투자 우대가 기재된 문서에 투자 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근거로 한다.

## 8.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한 처리

8.1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 서류를 제출 했으나, 투자허가서의 미 발급 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허가 승인서 발급 기관은 접수된 투자 프로젝트 서류에 근거하여 본 공문의 내용과 기업법 및 투자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사업자등록 내용에 대하여 보충 및 자문을 하여야 한

다.

8.2 계획투자부에 접수된 투자 프로젝트는 동 기관이 투자허가 승인서에 대해 심의 규정 및 투자허가 승인서 발급 결정을 하며 성급 인민위원회 혹은 투자관리위원회에 이관한다. 최초 계획투자부에 등록된 투자건 이나 현행법 상 성급 인민위원회 및 유관 투자관리위원회 심의 항목일 시에는 계획투자부는 해당 기관에 등록업무를 이관하고 투자 건을 접수한 기관은 규정에 준하여 지속적인 행정 심의를 실시하며 투자자에게 수속 이관에 대한 내용을 통보 하여야 한다.

## **9. 외국의 투자 건으로 이미 허가를 득한 각 투자허가 승인서 및 발효된 정식**

9.1 공문은 전 국가와 관련 공무 발효에 적용된다.

본 공문은 장관의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효되며, 본 법령 관련 시행 중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가 있을시 계획투자부는 협력 해결해야 하며, 혹은 정부 수상의 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에 관한 시행령

투자법과 기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등록 및 전환과  
투자승인 확인서 등록 변경에 관한 규정  
(101/2006/ND-CP)

2001년 12월 25일자 정부 조직법,  
2005년 11월 29일자 기업법과 투자법에 근거하며,  
계획투자부<sup>1)</sup> 장관의 제안에 따른다.

## 제 1 장 총 칙

### 제1조 적용 범위

1. 기업법 제170조 2항, 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투자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허가서 재등록과 변경을 규정하며, 통합 투자법 제8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투자허가서가 발급된 경영협력계약을 투자승인 확인서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한다.
2. 투자법 및 기업법에 따라 재등록 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의무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며, 재등록 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허가서와 투자승인 확인서로 전환하지 않은 경영협력계약에 대해 규정한다.

### 제2조 적용 대상

1.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투자승인 확인서가 발급된 외국인투자기업
  - a) 합작기업
  - b) 100% 외국인투자기업
  - c) 2003년 4월 15일자 시행령 (38/2003/ND-CP)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 주식회사
2.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투자승인확인서가 발급된 경영협력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프로젝트

### 제3조 용어의 해석

1. 재등록이라 함은 기존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설립되고,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기업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투자허가서에 따른 기업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투자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승인 확인서는 동시에 사업자 등록증이다.
2. 기업 전환은 투자법 및 기업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형태 변경을 의미하며 투자증명서를 새로 발급 받는다.
3. 투자승인 확인서 교체는 경영합작계약의 당사자가 투자허가서를 투자승인 확인서로 변경

1) 베트남 중앙 정부의 투자유치 담당 부처로 영문명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이다. 동 부처에 대한 한글명이 자료에 따라 투자계획부, 계획투자부, 기획투자부 등으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본 법령집에서는 영문명을 그대로 따라 「계획투자부」로 사용한다.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재등록 기업은 기존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발급된 투자허가서를 기업법과 신규 통합 투자법에 따라 신규 투자승인 확인서로 발급 받은 외국투자 기업을 말한다.

5. 전환 기업은 기업법과 투자법에 따라 기업형태가 변경되고 신규 투자승인 확인서가 발급된 외국투자기업을 의미한다.

6. 재등록하지 않은 기업은 기업법이 발효된 이후 2년간 재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한다.

#### **제4조 변경 및 재등록 결정 권리**

1. 본 시행령과 투자법 및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은 기업의 재등록 및 전환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본 시행령과 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허가서가 발급된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경영협력 계약의 양측은 투자허가 승인서로의 변경 등록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 **제5조 투자승인 확인서와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기관**

1. 투자승인 확인서는 계획투자부가 공포한 통일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투자승인 확인서는 동시에 사업자 등록증명서 W이다.

2. 기업의 재등록 및 전환과 관련한 서류 접수 기관,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 및 국가 관리 기관은 투자법의 일부 조항의 시행안내를 규정한 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의 재등록 및 전환을 시행한다.

## **제 2 장    외국투자기업의 전환 및 재등록**

#### **제6조 기업의 재등록 형식**

1. 합작회사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100% 외국투자기업은 2인 이상의 사원을 가진 유한회사로 재등록한다.

2. 1개의 단체 혹은 개인의 투자에 의한 100% 외국투자기업인 경우 1인 사원 유한회사로 전환 가능하다.

3. 2003년 4월 15일 정부시행령 번호 38/2003/ND-CP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투자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로의 전환 가능하다.

#### **제7조 사업자 재등록 서류**

사업자 재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의 법적 대리인이 서명한 사업자 재등록 신청서

2. 기업법에 준하여 수정된 기업정관 초안

3. 적법한 투자승인서 및 조정허가서 사본재등록시, 기업이 사업자등록 및 투자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상기 준비서류에는 조정내용과 상응하는 법률규정에 대한 각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본 조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의

어떠한 서류도 기업에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제8조 사업자 재등록 수속 및 절차

1. 재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은 본 시행령 제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조항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접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등록 서류는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되며, 이에 책임을 진다.
2. 합법적인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15일 이내에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신규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만일 재등록을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기관은 공문을 통해 기업에 거절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야 한다.

### 제9조 재등록 기업의 권한과 의무

1. 재등록 기업은 재등록 이전의 모든 법적 권리와 이익을 계승하며, 미변제 채무, 근로계약,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재등록 기업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
  - a) 투자승인 확인서 상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 b) 등록된 기업 상호, 직인, 계좌, 세금 코드(tax code)를 유지할 수 있다.
  - c) 이외, 투자법과 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가 있다.
3. 재등록 기업은 투자법과 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지닌다.

### 제10조 기업 전환 형식

1. 합작기업과 2인 이상의 소유주로 이루어진 100%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1인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가능하다.
2. 1개의 단체 혹은 개인에 의한 100%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2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가능하다.
3. 외국투자기업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주식회사로 전환하며,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가능하다.

### 제11조 기업 전환 조건

1. 전환 기업은 상기 각 기업형태 전환의 경우에 대해, 기업법의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외국투자기업 기업소유주는 반드시 창립주주여야 한다. 기업소유주가 다수일 경우, 기업소유주 중 최소 1인은 창립주주여야 한다.

### 제12조 기업 전환 서류

1. 기업 전환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a) 형태 전환 내용이 명확히 기입된 기업의 법적 대리인이 서명한 기업 전환 신청서
  - b) 기업법의 규정에 준하여 수정된 기업정관 초안
  - c) 100%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기업소유주의 기업 전환 결정서. 합작기업의 이사회 또는 외국투자주식회사의 주주총회 결정서. 기업전환 결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 기업의 기존 상호, 본사주소; 전환 이후의 상호, 본사주소; 외국투자기업의 자산, 출자지분, 주식, 채권을 전환 기업의 출자지분, 주식, 채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

건 및 기간. 직원 고용 방안, 전환 기간.기업 전환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모든 채권자에게 결정서를 송부하며, 직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d) 적법한 투자허가서 및 조정 허가서의 사본

2. 전환 기업이 신규사원을 추가하는 경우, 상기 서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신규사원이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사본

b) 신규사원이 법인일 경우: 회사설립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이와 상응하는 법인자료; 위임에 따른 수임자의 위임장,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사본  
신규사원이 외국법인일 경우, 법인이 사업자 등록한 기관이 공증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상기 공증은 서류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3. 전환시 기업이 사업자등록 및 투자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기업 전환 신청 서류에는 조정내용에 부합하는 기타 법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13조 기업 전환 절차

1. 기업 전환은 기업의 재등록 수속과 동시에 혹은 재등록 이후에 진행할 수 있다.

2. 본 시행령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기업은 본 시행령 제5조 2항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접수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업 전환 신청서류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며, 그 내용에 책임진다.

3. 합법적인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만일 전환을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은 공문을 통해 기업에 거절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야 한다.

### 제14조 전환 기업의 권한과 의무

1. 전환 기업은 재등록 기업은 재등록 이전의 모든 법적 권리와 이익을 계승하며, 미변제 채무, 근로계약,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전환기업은 투자승인 확인서 상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활동한다. 만약 각 외국투자자가 법정자본금 30%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서 상의 우대사항에 대한 우대혜택을 받는다. 이 외 투자법과 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를 지닌다.

3. 전환 기업은 투자법률과 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지닌다.

### 제15조 무상환 이전을 약속한 경우의 기업 재등록 및 전환

1. 재등록 또는 전환으로 인해 투자허가서가 발급된 무상환 이전 투자프로젝트의 협약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베트남정부를 위한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 무상환 이전을 약속한 외국투자기업은 본 시행령에 따라 재등록 및 변경을 시행한다.

2.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기업의 재등록과 전환이 무상환 이전과 관련한 내용의 변경을 가져올 경우, 수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 제 3 장 투자승인 확인서 변경 등록

#### **제16조 투자승인 확인서 변경 등록의 경우**

투자법 제88조 1항에 의한 투자승인 확인서 변경 등록은 2006년 7월 1일 이전에 투자허가서가 발급된 경영협력계약 형식에 따른 투자프로젝트에 대해 적용된다.

경영협력계약에 참여한 각 측이 투자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의 재등록을 요청할 경우, 본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투자승인 확인서 변경 등록 수속을 시행한다.

#### **제17조 투자승인 확인서 변경 등록 서류**

투자승인 확인서 변경 등록 서류는 아래와 같다. :

1. 경영협력계약에 참여한 각 측이 서명한 투자승인 확인서 변경 신청서
2. 적법한 투자허가서 및 조정 허가서 사본경영협력계약에 참여한 각 측이 경영협력계약 및 투자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경우, 상기 서류와 함께 조정내용에 부합하는 기타 법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본 조항에 규정된 서류 이외의 어떠한 서류도 경영협력계약 계약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 **제18조 투자승인 확인서 변경 등록 수속 및 절차**

1. 본 시행령에 따라 투자승인 확인서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경영협력계약 계약당사자는 본 시행령 제5조 2항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접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승인 확인서 변경 등록서류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며, 위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합법적인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투자승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만일 변경을 거부하거나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해당기관은 공문을 통해 기업에 거절 사유를 명확히 통보해야 한다.

#### **제19조 전환 기업의 권한과 의무**

1. 전환 기업은 재등록 기업은 재등록 이전의 모든 법적 권리와 이익을 계승하며, 미변제 채무, 근로계약,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전환기업은 투자승인 확인서 상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활동한다. 만약 각 외국투자자가 법정자본금 30% 이상을 보유하였다면,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서 상의 우대사항에 대한 우대혜택을 받는다. 이 외 투자법과 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를 지닌다. 전환 기업은 투자법률과 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지닌다.

#### **제20조 경영협력계약에 참여한 각 측의 권한과 의무**

1. 경영협력계약 계약당사자는 신규 투자승인 확인서에 따라 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
2. 경영협력계약에 참여한 각 측은 투자허가서, 조정허가서, 경영협력계약, 그리고 투자법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를 계승한다.

## **제 4 장 재등록하지 않은 외국투자기업과 투자승인 허가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영협력계약 계약당사자**

#### **제21조 재등록하지 않은 기업의 권한과 의무**

1. 재등록하지 않은 기업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 a) 투자허가서와 기업정관에 따라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업종 및 분야와 활동기간 조정을 제외하고, 필요시 투자허가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b) 기존의 기업 상호, 직인, 계좌, 세금 코드 등을 유지할 수 있다.
  - c) 이 외 투자법률과 기업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권한이 있다.
2. 재등록하지 않은 기업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 a) 발급된 투자허가서에 따라 활동할 의무가 있다.
  - b) 기업법과 투자법, 그리고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22조 투자승인 확인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영협력계약 계약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1. 경영협력계약에 참여한 각 측은 발급된 투자허가서와 승인된 경영합작계약서에 따라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2. 경영협력계약에 참여한 각 측은 투자법과 관련법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23조 경영협력계약 계약 당사자에 대한 투자허가서 조정**

1. 경영활동과정에서 재등록하지 않은 외국투자기업과 투자승인 확인서를 변경하지 않은 경영협력계약 계약당사자의 투자허가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2. 조정 서류는 투자법 시행령에 따르며, 본 시행령 제5조 2항에서 규정한 접수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3. 투자허가서 조정 승인확인서 발급 절차 및 기관은 투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국가관리 업무 분담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4.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투자허가서 조정승인 확인서의 발급 형식으로 와 투자허가서 조정승인 확인서 양식을 바탕으로 기업과 경영협력계약의 투자허가서의 조정을 승인한다. 상기 조정승인 확인서는 투자허가서의 일부로써 분리할 수 없다.
5.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투자허가서 조정 없이 승인서를 발급한다.
  - a) 기업이 본사를 둔 중앙직할 성·시 내의 거래사무소, 물류창고, 제품 진열 쇼룸(생산은 하지 않음.) 등의 설치
  - b) 중앙직할 성·시 내의 본사 소재지 변경

## **제 5 장 부 칙**

#### **제24조 시행 조항**

1. 본 시행령은 관보에 게재일로부터 15일 이후에 발효된다.
2. 계획투자부 장관은 본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업 재등록과 전환 서류 양식 및 투자승인 확인서 변경 신청서, 투자허가서 조정승인 확인서 양식을 제정·공포한다.
3. 각 부처 장관, 장관 부처 동급 기관장 및 각 정부 산하 기관장, 중앙직할 성·시 인민위원장은 본 시행령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 3) 외국인직접투자 절차 및 수속, 처리에 관한 잠정 시행령<sup>2)</sup>

수상실 공문 2006년 7월 24일 3902/VPCP-KTTH 에 의거, 2005년 11월 29일 59/2005/QH11의 투자법 세부시행 안내에 관한 시행령이 수립될 때까지 외국인 투근 변동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투자부<sup>3)</sup>는 아래와 같이 외국인 직접투자프로젝트(이하 투자프로젝트라 함)에 대한 처리, 투자 절차 및 수속을 잠정적으로 안내한다.

#### 1. 투자프로젝트 최초처리

1.1 본 공문 상 처리 배분업무는 잠정적인 것이며, 정부에 제출된 시행령 초안은 각 지방으로 확대 공포될 예정이다.

1.2 특별법에 투자 수속절차, 승인심사 등이 규정된 특별 분야에 속한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를 시행한다.

1.3 투자법 29조에 규정한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아니하고, 2,000만 US\$ 혹은 3,000억 베트남 동(VND) 미만 규모로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외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투자등록 절차에 따라 투자허가 승인서를 발급한다. 계획투자국<sup>4)</sup>은 최초 서류를 접수, 서류의 적법성을 심사한 후 투자허가승인서 발급기관인 성급 인민위원회에 동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투자승인 허가서 발급을 요청한다.

1.4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는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아니하고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내 4,000만 US\$ 혹은 6,000억 베트남 동(VND) 미만 규모의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승인서 서류접수, 발급, 조정, 회수 업무를 지속한다. 2,000만 US\$ 혹은 3,000억 베트남 동(VND) 미만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투자허가승인서 발급 업무를 투자등록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5 투자법 안내에 관한 시행령의 공포 이전까지는, 계획투자부가 잠정적으로 기존 투자프로젝트에 대하여 최초 접수와 처리를 담당한다.

#### 2. 투자 수속절차

2.1 투자법과 기업법 규정에 따른 투자허가승인서 발급을 위하여,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본 시행령 1절에 언급된 투자허가승인서 발급기관에서 수속한다. 투자 자본규모와 분야에 의거하여, 투자허가승인서 발급 업무는 투자등록과 투자심사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2.2 투자허가승인서 발급 등록업무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a) 프로젝트 서류:

- 투자허가승인 신청서
- 투자자 재정능력보고서(투자자 작성하며, 내용에 책임을 진다)

2) 본 시행령은 투자법 시행령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한 한시적 법이며, 첩부의 각종 양식 또한 향후 새로운 양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3) 베트남 중앙정부의 투자유치 담당 부처로 영문명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이다. 동 부처에 대한 한글명은 영문명을 그대로 따라 「계획투자부」로 사용한다.

4) 베트남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담당 부처로 영문명은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 (DPI)이다.

- 국내외 투자자 간에 합작회사설립형식에 대해서는 합작계약서, 경영협력계약에 따른 투자형식에 대해서는 경영협력계약서

- 베트남에 최초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는 본 시행령 3절에 규정된 각 기업 유형에 맞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b) 검토내용 투자허가승인서 발급 기관은 법인 소득세, 수출세, 수입세 그리고 토지에 대한 현행법들의 규정에 따라 투자허가승인서에 투자우대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부응하는 투자우대 지역과 분야에 의거하여 투자등록서류와(기업설립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서의 적법성을 검사한다.

2.3 2,000만 US\$ 혹은 3000억 베트남 동(VND) 미만의 투자자본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중 조건부 투자에 속하는 분야에 대한 심사업무 기준은 아래와 같다.

a) 프로젝트 서류

- 투자허가승인신청서

- 국내외 투자자 간의 합작회사설립형식에 대해서는 합작계약서, 경영협력계약에 따른 투자형식에 대해서는 경영협력계약서

- 투자자 재정능력보고서 (투자자 작성하며, 내용에 책임을 진다)

- 베트남에 최초로 투자하는 외국투자자가 경제단체 설립을 등록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투자자는 본 시행령 3절의 규정에 따라, 각 기업유형에 맞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b) 심사내용

- 투자법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조건에 적합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 베트남에 최초로 투자하는 외국투자자에 의한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법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기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자등록 내용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 검토한다.

2.4. 투자자본 규모 미화 2000만 불 또는 3000억동 이상의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 심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a) 프로젝트 서류

-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서(투자등록 신청서)

- 투자자의 법적 지위 확인서류(투자자가 조직일 경우 회사설립 결정서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서류; 개인 투자자일 경우 여권 사본 또는 개인증명서)

- 국내투자자와 외국투자자간의 합작경제단체 형태의 경우 합작계약서; 경영협력계약에 따른 투자형태일 경우 경영협력계약서

- 투자자의 재정능력 보고서(투자자가 작성하며, 내용에 책임을 진다)

- 경제기술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프로젝트의 목표, 프로젝트 시행 장소, 토지사용 신청, 투자 규모(생산 및 경영 능력), 투자자본, 프로젝트 진행 정도, 산업문제 및 환경문제 해결방안

- 베트남에 최초로 투자하는 외국투자자가 경제단체 설립을 등록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투자자는 3절의 규정에 따라 기업유형에 맞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의 조건에 적합한 타당성 심사를 시행한다.

b) 심사내용

- 기반시설, 토지사용, 건설, 광물 및 기타자원 사용에 대한 종합계획과 부합해야 한다.
- 토지 사용 신청: 면적, 토지 유형
- 프로젝트 진행 정도
- 환경문제 해결방안
- 조건부 투자 분야에 속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법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의 조건에 적합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다.
- 그 외, 베트남에 최초로 투자하는 외국투자자에 의한 프로젝트의 경우, 기업법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기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자등록 내용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3. 사업자등록 서류**

3.1. 합작회사<sup>5)</sup> 형태에 따라 기업을 설립할 경우

- a) 회사정관 초안
- b) 사원명부, 주민등록증 사본, 사원의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 기타 개인 증명서 사본
- c) 법률규정에 따라 직업 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라이선스 사본; 법률규정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필요로 하는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법정자본금 확인서

3.2. 유한책임회사 형태에 따라 기업을 설립할 경우

- a) 회사정관 초안
- b) 사원명부 및 기타 첨부 서류
  - 개인이 사원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 신분증 사본
  - 조직이 사원일 경우: 설립 의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제 상응하는 조직의 기타 서류, 위임에 따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 개인 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
  - 외국조직이 사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공증이 필요하며, 상기 공증은 서류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 c) 법률규정에 따라 직업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직업 증명서 사본; 법률규정에 따라 법정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경우 법정자본금 확인서

3.3. 주식회사 형태에 따라 기업을 설립할 경우

- a) 회사정관 초안
- b) 창립주주명부 및 기타 첨부 서류
  - 개인이 주주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 신분증 사본
  - 조직이 주주일 경우: 설립 의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의 기타 서류, 위임에 따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
  - 외국조직이 주주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공증이 필요하며, 상기 공증은 서류 제

---

5) Partnership을 의미하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포괄하는 「합작회사」로 번역한다.

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c) 직업, 분야별 사업 경우에 대해서 분야별 증명서 규정에 맞는 사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야별 라이선스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직업, 분야별 사업 경우에 대해서 법정자본금 확인 문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정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 4. 투자 허가승인서 절차

##### 4.1. 투자허가승인서 등록 절차

a) 투자자는 계획투자국 혹은 관리위원회에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b) 규정에 맞는 투자등록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허가승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투자허가승인서를 발급하고 발급된 투자허가서 사본을 유관기관, 각급 성 인민위원회, 경제기술 분야 관리 부처, 베트남 정부은행, 자원환경부, 무역부, 재경부 및 계획투자부에 발송한다.

##### 4.2. 투자허가승인서 발급심사 절차

a) 초안서류

- 계획투자부에 제출 경우는 10부를 제출해야 하며 그 중에 원본 서류 1부가 있어야 한다.

- 관리위원회에 제출 경우는 4부를 제출해야 하며, 그 중에 원본 서류 1부가 있어야 한다.

b) 계획투자부에 의해 발급된 투자허가증명서의 투자프로젝트 심사절차

- 규정에 맞는 서류를 충분히 수령한 후에 계획투자부는 연관이 있는 각급 성 인민위원회 그리고 각분야 부처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발송한다. 각 분야, 부처들의 의견을 토대로, 계획투자부는 투자허가승인서를 승인권자인 정부 수상에게 제출하고 또는 투자허가증명서 발급 결정을 검토한다. 승인이 불가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계획투자부는 투자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문서에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한다.

- 투자허가승인서를 발급한 후에, 관리위원회는 발급된 투자허가승인서 사본을 유관기관, 각급 성인민위원회, 경제기술 분야 관리 부처, 베트남 정부은행, 자원환경부, 무역부, 재경부 및 계획투자부에 발송한다.

c) 투자허가승인서를 발급하는 관리위원회에 의한 투자프로젝트 심사절차

- 합법적으로 작성된 서류들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위원회는 투자확인서 발급을 검토하기 위하여 2.4항 b란에 규정된 내용들에 따라 심사한다. 승인이 불가한 프로젝트에 경우에는, 계획투자부는 투자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통보서에 충분한 이유를 제시한다.

- 투자허가승인서 발급후, 관리위원회는 투자허가승인서 사본을, 각급 성인민위원회, 경제기술 분야 관리 부처, 베트남 정부은행, 자원환경부, 무역부, 재경부 및 계획투자부에 발송한다.

4.3. 투자허가승인서는 동시에 사업등록증의 역할을 하며 기업법 27조에 있는 규정에 따라 사업등록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2006년 7월 1일 투자법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급된 투자허가승인서 조정절차

5.1 투자법 이전에 투자허가승인서를 받고 활동하는 외투기업 중 활동시한이 종료하여 자산을 정부에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음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 a) 투자법과 기업법에 따라 재등록 및 조직 개편을 하거나,
- b) 재등록을 하지 않고 규정에 따른 투자우대를 적용 받으며, 발급된 투자허가승인서에서 규정한 시한, 분야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5.2 재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가 투자승인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는 1항에서 제시한 투자허가승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절차를 받아야만 한다. 투자허가승인서에서 규정한 분야 범위 내에 새로운 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투자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지역에 투자허가승인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6. 투자허가 승인서

6.1 투자허가승인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들을 포함한다.

- a) 투자자의 주소, 이름
- b) 사용토지면적, 투자프로젝트 실행장소
- c) 투자프로젝트 규모, 목표
- d) 총 투자자본금
- e) 투자프로젝트 실행속도, 기한
- f) 투자 지원 및 우대 항목 확인(있을 경우)

6.2 베트남에 투자를 처음으로 하는 외국투자자에게 발급하는 투자허가승인서는 기업법 25조 규정에 따라 사업등록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경영협력계약 형식에 따라 투자한 경우에는 제외) 투자허가승인서는 동시에 기업의 사업등록 허가승인서이다.

## 7. 투자우대 규정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 임대세, 수입세, 법인세에 대한 우대조항들은 정부의 142/2005/ND-CP 의정, 149/2005/ND-CP 의정, 152/2004/ND-CP 의정, 164/2003/ND-CP 의정의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투자허가승인서를 발급하는 기관들은 투자허가승인서에 투자 우대가 기재된 문서에 투자 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근거로 한다.

## 8.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한 처리

8.1 투자자가 투자프로젝트 서류를 제출 했으나, 투자허가서의 미 발급 프로젝트에 대하여 투자허가 승인서 발급 기관은 접수된 투자 프로젝트 서류에 근거하여 본 공문의 내용과 기업법 및 투자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사업자등록 내용에 대하여 보충 및 자문을 하여야 한다.

8.2 계획투자부에 접수된 투자 프로젝트는 동 기관이 투자허가 승인서에 대해 심의 규정 및

투자허가 승인서 발급 결정을 하며 성급 인민위원회 혹은 투자관리위원회에 이관한다.최초 계획투자부에 등록된 투자건 이나 현행법 상 성급 인민위원회 및 유관 투자관리위원회 심의 항목일 시에는 계획투자부는 해당 기관에 등록업무를 이관하고 투자 건을 접수한 기관은 규정에 준하여 지속적인 행정 심의를 실시하며 투자자에게 수속 이관에 대한 내용을 통보 하여야 한다.

## **9. 외국의 투자 건으로 이미 허가를 득한 각 투자허가 승인서 및 발효된 정식**

9.1 공문은 전 국가와 관련 공무 발효에 적용된다.

본 공문은 장관의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효되며, 본 법령 관련 시행 중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가 있을시 계획투자부는 협력 해결해야 하며, 혹은 정부 수상의 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베트남기업법

사업자등록에 관한사항



# 시행령

##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등록기관에 관한 규정

### 정 부

2001년 12월 25일자 정부 조직법,  
2005년 11월 29일자 기업법(문서번호 60/2005/QH11)에 근거하며,  
투자계획부 장관의 제안에 따른다.

### 시행령

## 제1장 총 칙

### 제1조 적용 범위

본 시행령은 사업자 등록기관 시스템과 기업법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서류, 수속 절차 및 사업자등록 내용변경 등록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 제2조 적용 대상

다음과 같은 대상에 본 시행령을 적용한다.

1.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시행할 국내외 조직 및 개인
2.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그 밖의 기타 조직 및 개인

### 제3조 사업자등록 권리와 사업자등록에 대한 기업 설립자의 의무

1. 법률규정에 근거한 기업의 설립과 사업자 등록은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개인과 조직의 권리이다.

2. 사업자 등록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은 사업자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사업자등록 내용변경을 해결하고 등록하는데 있어서 개인 또는 조직에 불편을 끼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엄금한다.

3. 각 부, 처, 각 급 인민의회 및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이나 해당 분야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할 수 없다.

4. 기업 설립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기재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제4조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은 기업법에 따라 경제활동 중인 기업과 영세기업에 발급된다.

2.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은 기업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며, 기업 설립자가 기재한 사업자등록서류 상의 내용 및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투자계획부가 규정한 사업자등록 양식

에 따르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이 적용된다.

3. 본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기업은 재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등록 내용변경 등록시 새로운 양식에 따른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4. 사업자 등록기관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은 전국적인 효력을 가진다.

5. 사업자등록서류에 기재한 사항들은 사업자등록기관에 보관되며 원정보 (original information)와 같은 법적 가치를 지닌다.

### 제5조 사업자 등록에 사용되는 사업 분야 및 업종

1. 사업자 등록에 사용되는 사업 분야 및 업종 목록은 기업법에 따라 활동하는 기업과 영세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2.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 분야 및 업종은 사업자등록에 사용되는 사업 분야 및 업종 목록에 따라 표기된다. 사업자등록에 사용되는 사업 분야 및 업종 목록은 통계청과 투자계획부가 제정·공포하며, 국민경제 분야에 관한 규정과 부합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분야 및 업종은 사업자등록에 사용되는 사업 분야 및 업종 목록에 속하지 않았으나 기타 법률 규범문서에 규정된 사업 분야 및 업종의 경우, 해당 법률 규범문서가 규정한 분야 및 종류에 따라 기재된다.

3. 국회, 국회 상무위원회, 정부에 의해 제정·공포된 법률 규범문서에서 규정한 사업 분야 및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위해선 직업 증명서가 필요하며, 각 개인은 한 기업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직업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4. 조건부 사업 분야 및 업종이란 오직 법, 법령, 혹은 지시령에서 규정한 분야 및 종류이며, 자신의 권한을 벗어난 조건부 사업 분야 및 업종을 규정하고 제정·공포하는 것을 엄금한다.

사업분야 및 업종의 조건을 규정하고 안내하는 것은 해당 관리기관의 책임이다.

## 제2장 사업자 등록기관의 임무, 권한, 조직구조

### 제6조 사업자 등록기관

1. 사업자 등록기관은 각 성·중앙 직할시(이하 **성급 단위**라 함.), 현, 군, 티 싸(thi xa), 성 직할시(이하 **현급 단위**라 함.)에 아래와 같이 설치된다.

a) 성급 단위: 투자계획국 산하 사업자등록소 (이하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이라 함)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경우,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을 여러 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은 순서에 따라 숫자를 매김으로 구분한다.

b) 현급 단위: 최근 2년간 협동조합과 영세기업의 등록수가 연간 500개 이상의 군, 현, 티 싸, 성 직할시에 사업자등록소를 설치한다.

현급 사업자등록소를 설치 않은 경우, 계획·재정국이 본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업자 등록 임무를 수행한다. (이하 **현급 사업자등록기관**이라 함.)

2. 성급 사업자등록기관과 현급 사업자등록소는 별도의 구좌와 직인을 갖는다. 현급 사업자등록소를 설치하지 않은 현의 경우 사업자등록에 사용되는 직인은 현급 인민위원회의 직인이다.

3. 성급 인민위원회는 경제특구 내의 기업과 영세기업의 사업자등록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경제구역 관리위원회의 경제구역과 수상의 설립 결정에 의한 개방경제구역(이하 경제특구라 함.)에 사업자등록소 설치를 허가한다.

4. 내무부는 투자계획부와 협력하여 성급 현급 사업자등록기관의 조직, 공무원, 경제특구 내의 사업자등록소를 안내하고, 경제특구내의 사업자등록소와 성급 사업자등록기관과 그 밖의 국가관리기관과 협력한다.

### 제7조 사업자등록에 대한 국가관리 업무상의 투자계획부의 임무, 권한, 책임

1. 투자계획부는 권한 내, 사업자등록에 관한 법률규범 문서와 전문분야, 업무, 양식, 사업자등록 업무 서비스 보고 제도 등을 안내하는 문건을 제정·공포하거나, 해당 상급기관에 건의한다.

2. 사업자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게 사업자 등록 업무를 지도, 교육, 안내한다.

3. 사업자등록에 관한 전국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 관리하며, 사업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에 대한 범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단계별 형성하고, 사업자등록에 관한 전국적인 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한다. 또한, 정부의 관련기관, 조직 및 개인에게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4. 내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자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과 사업자등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자격(standard)을 규정한다.

5. 사업자등록 중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변경 중인 기업, 지사·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기업, 기업의 해산·파산, 그리고 기업의 위반사건 등을 수록한 기업에 대한 관보를 전국적으로 발행한다.

6. 사업자등록 분야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 제8조 성급 사업자 등록기관의 임무, 권한, 책임

1.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사업자등록서류를 직접 접수하며, 서류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기업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2. 지방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관리, 운영 업무에 협력하며 성급 인민위원회, 지방 세무서, 관련기관, 그리고 중소기업개발국, 조직 및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3. 기업법 제163조 1-c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경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연간보고제도 시행을 적극 장려한다.

4. 사업자등록 내용에 따라 기업에 대한 검사·감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국가기관에 감사·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5. 법률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을 적발하였을 경우, 조건부 사업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6. 기업법 제165조 2항에서 명시한 경우에 근거하여,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다.

7.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기타 기업형태의 사업자등록을 승인한다.

### 제9조 현급 사업자 등록기관의 임무, 권한, 책임

1. 영세기업의 사업자등록서류를 직접 접수, 서류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2. 해당지역의 영세기업 활동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관리, 운영 등의 업무에 협력하며, 정기적으로 현급 인민위원회, 성급 사업자등록기관, 현급지방 세무서에 해당지역의 영세기업,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한다.
3. 해당지역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 내용에 따라 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국가기관에 관리·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지역의 기업, 지사, 대표사무소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결정한다.
4. 필요시, 경영현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영세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5. 법률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영세기업을 적발하였을 경우, 조건부 사업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영세기업의 사업활동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6. 본 시행령 제46조에서 명시한 경우에 근거해,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다.

## **제3장 기업 상호**

### **제10조 기업 상호**

1. 기업의 상호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a) 첫 번째 요소: 유한책임회사 (약자로 TNH), 주식회사 (약자로 CP), 합자회사 (약자로 HD), 개인기업 (약자로 TN) 등의 기업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한다.
  - b) 두 번째 요소: 기업의 개별 상호
2. 기업은 사업 분야 및 업종을 등록하였거나, 투자형식 또는 그 밖의 부요소 등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때, 이들 요소들을 사용하여 기업의 상호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개별 상호를 위해 사용된 투자형식이나 사업 분야 및 업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상호를 변경해야 한다.
3. 만일 기업의 상호가 원산지, 제품품질, 서비스 등을 묘사하는 성격의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 **제11조 기업 상호에 관한 금지 사항**

1. 성·중앙 직할시 범위에서 이미 사업자등록된 상호와 중복되거나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호는 금지한다. 본 규정은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국가기관, 인민군대 단위,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직업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 조직의 명칭을 기업의 일부 혹은 전체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3. 베트남 역사, 문화, 도덕, 그리고 민족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단어나 기호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기업은 다른 조직 및 개인의 무역 거래명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업의 상호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거래명의 소유주가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 규정 위반시, 해당 기업은 법적 책임을 진다.

## 제12조 중복 상호 및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호

1. 중복 상호란 베트남어로 읽혀지고 기재된 등록 예정 상호가 이미 등록된 다른 기업의 상호와 완전히 동일함을 의미한다.

2. 이미 등록한 기업상호와의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호는 다음과 같다.

a) 베트남어로 된 기업상호의 발음이 이미 등록된 타기업 상호와 동일한 경우

b) 베트남어로 된 기업상호가 이미 등록된 타기업의 상호와 단지 기호 "&"만이 상이한 경우

c) 약자로 기재된 등록 예정 기업 상호가 이미 등록된 타기업 상호와 중복될 경우

d) 외국어로 기재된 등록 예정 기업 상호가 이미 등록된 타기업 상호와 중복될 경우

e) 등록 예정 상호가 이미 등록된 기업의 상호 마지막에 숫자, 로마자 숫자, 베트남 알파벳(A, B, C, ...) 등 만을 첨가한 경우. 단, 등록 예정 기업이 이미 상호를 등록한 기업의 자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f) 등록 예정 상호가 기존의 상호에 "신(New)"이라는 단어가 첨가되었을 경우

g) 등록 예정 상호가 이미 등록된 기업상호와 단지 "북부", "중부", "서부", "남부"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만이 다를 경우. 단, 등록 예정 기업이 이미 상호를 등록한 기업의 자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h) 기업의 상호는 이미 등록된 기업의 상호와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 제13조 기업 상호 설정과 관련한 문제

1. 본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등록한 기업이 본 시행령 제12조에서 명시한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상호와 중복되거나 혼동을 야기시키는 경우, 상호변경을 강제하지 않는다. 대신, 중복 또는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기업간의 협상을 통해 기업 상호 변경 등록을 유도, 권장하고, 적합한 환경을 조성한다.

2. 기업법 제31, 32, 33, 34조와 본 장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의 등록 예정 상호의 등록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등록기관의 결정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한다.

3. 기업 상호를 등록하기 이전에 기업은 본사 소재지의 관할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현재 활동 중인 기업의 상호를 참고한다.

# 제4장 기업, 기업의 지사 및 대표사무소 등의 설립을 위한 사업자 등록 서류, 절차 및 수속

## 제14조 개인기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 서류

1. 투자계획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

2. 본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 기업주의 공인된 개인증명서 중 하나의 사본

3. 법정자본금 필수 사업 분야 및 업종 등을 규정한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정부의 법률규범 문서에 따른 기업에 대한 해당 기관 및 조직의 법정자본금 확인서

4. 직업 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사업 분야 및 업종 등을 규정한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정부의 법률규범 문서에 따른 개인기업의 경우, 기업법 제4조 13항에서 규정한

사장 혹은 기타 개인의 직업 증명서 사본

### 제15조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사업자 등록 서류

1. 투자계획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
2. 회사정관 초안. 회사정관 초안에는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적대리인, 사원, 수임 대표자(authorized representative) 전체,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주주, 창립주주의 수임 대표자 전체의 서명이 날인이 필요하다.
3. 투자계획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른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사원명단,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주주명단. 사원명단 또는 창립주주명단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a) 본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 창립멤버 또는 창립주주의 공인된 개인증명서 중 하나의 사본
  - b) 회사설립결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혹은 그에 상응하는 기타 자료, 정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자료, 본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임 대표자의 공인된 개인증명서 중 하나의 사본과 법인으로써의 창립사원 또는 창립주주의 위임 결정서 사본사원이 외국조직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사업자등록한 해당 기관의 공증(공인)이 필요하며, 본 공증은 사업자등록서류 접수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 법정자본금 필수 사업 분야 및 업종 등을 규정한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정부의 법률규범 문서에 따른 기업에 대한 해당 기관 및 조직의 법정자본금 확인서
5. 직업 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사업 분야 및 업종 등을 규정한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정부의 법률규범 문서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경우, 기업법 제4조 13항에서 규정한 사장(회장) 혹은 기타 개인의 직업 증명서 사본,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직업 증명서 사본.

### 제16조 1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사업자 등록 서류

1. 투자계획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
2. 회사정관 초안. 회사정관 초안에는 회사 소유주와 법적대리인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3. 개인이 회사의 소유주인 경우, 본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회사 소유주의 공인된 개인증명서 중 하나의 사본 또는 회사설립 결정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서류, 정관 또는 조직이 회사의 소유주인 경우(회사 소유주가 국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의 정관에 상응하는 서류
4. 기업법 제67조 3항에 따라 조직된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투자계획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른 수임 대표자 명단. 본 명단과 함께 본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수임 대표자의 공인된 개인증명서 중 하나의 사본  
기업법 제67조 4항에 근거해 조직된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본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수임 대표자의 공인된 개인증명서 중 하나의 사본
5. 회사 소유주가 조직일 경우 수임 대표자에 대한 소유주의 위임장
6. 법정자본금 필수 사업 분야 및 업종 등을 규정한 국회, 국회상무위원회, 정부의 법률규범 문서에 따른 기업에 대한 해당 기관 및 조직의 법정자본금 확인서
7. 직업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 분야 및 업종 등을 규정한 국회, 국회상무위원

회, 정부의 법률규범 문서에 따른 기업의 경우, 기업법 제4조 13항에서 규정한 사장 혹은 기타 개인의 직업 증명서 사본

### **제17조 분할, 분리, 신설합병, 전환, 흡수합병 회사에 관한 사업자 등록 서류**

1.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동종의 여러 회사로 분할할 경우, 본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도, 사업자등록서류에는 기업법 제150조에 따른 회사 분할 결정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분할에 관한 사원총회의 회의록,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분할에 관한 주주총회의 회의록과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2.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를 동종의 신규회사로 분리할 경우, 본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도, 사업자등록서류에는 기업법 제151조에 따른 회사 분리 결정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회사 분리에 관한 회의록, 그리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3. 일부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신설합병하여 한 개의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본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도, 사업자등록서류에는 기업법 제152조에 따른 회사의 합병계약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회의록과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만약 신설합병 후, 합병회사가 관련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 획득시, 사업자등록서류에 해당 경쟁관리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4.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동종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내용 보충 및 변경 등록에 관한 본 시행령 제5(V)장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도, 합병회사의 서류에는 기업법 제153조에 따른 회사의 합병계약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회의록과 합병회사와 합병당사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흡수합병 후, 합병회사가 관련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 획득시, 사업자등록서류에 해당 경쟁관리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5.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되는 경우, 본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도, 변경회사의 사업자등록서류에는 기업법 제154조에 따른 회사 변경 결정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회의록,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회의록과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6. 국영기업의 변경의 경우, 본 시행령 제14, 15, 16조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도, 변경회사의 사업자등록서류에는 변경결정서와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요구된다.

### **제18조 사업자등록서류 중 개인증명서**

1. 국내 베트남 국민 : 주민등록증 혹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사본
2. 해외거주 베트남인 : 다음과 같은 효력을 지닌 증서 사본
  - a) 베트남 여권
  - b) 외국 여권과 아래와 같은 문서 중 하나
    - 베트남 여권을 대체할 만한 가치를 지닌 문서
    - 베트남 국적 확인서
    - 베트남 국적 상실 확인서
    - 시민권 등록 확인서
    - 베트남 출신 확인서
    - 친인척 중 베트남 출신 확인서

- 베트남 혈통관계 확인서

3. 베트남 거주 외국인 : 베트남의 담당기관이 발급한 거주증(resident card)과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사본

4.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사본

### 제19조 사업자 등록 서류 접수

1. 기업 설립자 혹은 수임 대표자는 기업의 소재지가 위치할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본 시행령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한다.

2. 창립사원, 창립주주, 회사 소유주, 개인기업 소유주, 무한책임사원, 기업의 법적대리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적법한 사업자등록서류를 제출하며, 이에 연대 책임진다.

3. 서류 접수 후, 사업자등록기관은 서류 접수자에게 서류 접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법 제4조 3항에 따라 서류의 적법성에 대해서만 책임지며,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한 기업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제20조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1. 사업자등록기관은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근무일(휴무일을 제외한 근무일 수)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자등록서류의 수정 및 보완에 대한 요청 역시 사업자등록서류 접수 이후 10일 이내에 시행한다.

2. 만일 근무일 10일 경과 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 수정 및 보완을 요청 받지 못한 경우, 기업 설립자는 사업자등록서류를 접수한 사업자등록기관을 제소·진정할 수 있다. 제소·진정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으로부터 답변이 없을 경우 기업 설립자는 제소·진정, 고소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고소할 권리가 있다.

3. 기업의 법적대리인은 사업자등록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직접 서명날인하며 각종 서류의 사본이 공증 및 인증에 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공증, 인증되지 않은 경우, 이미 제출한 서류와 대조를 위해 본 시행령 제 14, 15, 16, 17, 18조에 규정한 각종 문서 원본과 호구증(family record book)을 제출한다.

### 제21조 사업자등록증 발급

1. 기업은 기업법의 제24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2. 서류가 적법하지 않거나 기업 상호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서류 접수 후, 근무일 7일 이내에 기업 설립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서면 통보한다. 통보서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기업은 사업활동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나, 조건부 사업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4. 사업자등록증을 발급일로부터, 기업은 직인을 제작할 수 있으며, 직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근거해, 직인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 제22조 사업자등록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투자계획부(중소기업 개발국)에 전달한다. 매월 둘째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기관은 전월(前月) 신규사업자등록 기업, 등록 내용변경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명단을 세무서, 통계청, 기술경제분야 관리기관, 현급 사업자등록기관,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싸(xa), 프엉(phuong), 티 쩐(thi tran) 베트남의 행정단위 : 읍, 면, 동에 해당함.인 경우 해당 인민위원회에 송부한다.

### 제23조 사업자등록 비용

사업자등록 비용은 사업자등록 분야 및 종류의 수량에 따라 결정된다. 재정부는 투자계획부와 협력하여 사업자등록료 징수 및 사용 제도에 관해 안내한다.

### 제24조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 설치 등록

1.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 설치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기업은 지사, 대표사무소 활동 등록신청서를 지사, 대표사무소의 경우, 설치 예정지의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하며,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시행한 사업자등록기관에 설치통보서를 제출한다.

지사, 대표사무소 활동 등록신청서와 사업장 설치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a) 기업의 상호 및 본사 소재지 주소
- b) 기업의 사업 분야 및 업종
- c) 설치 예정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 상호.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 상호는 기업의 상호를 따르는 동시에 지사 설치를 등록하는 경우 "지사", 대표사무소 설치를 등록하는 경우 "대표사무소", 신규사업장 설치를 등록하는 경우, 신규사업장의 조직형태 등이 첨가되어야 한다.
- d) 기업의 법적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서명날인, 현주소
- e)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 소재지 주소
- f)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활동 내용 및 범위
- g)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혹은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서명날인, 현주소

2.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활동 등록신청서 혹은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a)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b)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회사정관 사본
- c)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또는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 설치에 관한 회의록 및 서면 결정서
- d)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 대표자 임명 결의안의 합법적 사본

사업자등록하기 이전 직업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지사의 경우, 대표 혹은 부대표의 직업 증명서 사본

3. 지사, 대표사무소, 사업장 설치를 위한 신청서류를 본 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충분히 구비하고, 지사의 사업 분야 및 업종이 기업의 사업 분야 및 업종과 부합하고, 신설 지

사, 대표사무소, 사업장의 활동내용이 기업의 활동내용과 부합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은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에 활동승인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증에 신규사업장을 첨가하여 기재한다.

활동승인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지사, 대표사무소는 직인을 제작할 수 있으며, 직인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4. 기업이 본사 소재지가 아닌 다른 성·시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지사, 대표사무소 활동승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기업의 사업자등록서류를 보완하고, 사업자등록증의 재발급을 위해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설립한 해당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서면 통보한다.

5. 기업이 본사 소재지가 아닌 다른 성·시에 사업장을 설치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에 대한 내용이 보완된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기업의 사업장을 설정한 해당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통보서에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합법적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6. 기업의 해외 지사, 대표사무소 설치에 해당 국가의 법률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해외 지사, 대표사무소 정식 개소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서면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서에는 사업자등록서류를 보완하고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변경발급할 수 있도록, 지사, 대표사무소 활동승인확인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의 합법적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제5장 사업자등록 내용 보충 및 변경 등록

### 제25조 사업 분야 및 업종 보충, 변경등록

1. 사업 분야 및 업종의 보충·변경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기업은 당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통보서를 제출한다.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a) 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발급일

b) 기업의 본사 소재지 주소

c) 등록된 사업 분야 및 업종

d) 보충 혹은 변경할 사업 분야 및 업종

e) 기업의 법적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법정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분야 및 업종을 보충 혹은 변경할 경우, 해당기관의 법정자본금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직업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 분야 및 업종을 보충 혹은 변경할 경우,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개인기업은 기업법 제4조 13항에 따라 사장(회장) 또는 기업 관리자 중 1인의 직업증명서를,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직업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통보서에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수정 회사정관 사본, 사업 분야 및 업종의 보충·변경에 관한 회의록과 서면

결의안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 통보서 접수시, 사업자등록기관은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본 조 1항에 따라 기업의 사업 분야 및 업종 보충·변경 등록 신청서류를 충분히 갖추었을 경우,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사업 분야 및 업종 보충 및 변경등록을 시행해야 한다.

## 제26조 기업의 본사 소재지 변경등록

1. 본사 소재지를 다른 성·중앙직할시 등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은 본사 소재지 이전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통보서를 송부한다.

통보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b) 기업의 본사 소재지 주소
- c) 기업 본사 예정 이전지 주소
- d) 기업의 법적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통보서에는 수정 회사정관 사본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기업의 본사 소재지 이전 등록에 관한 회의록과 서면 결의안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통보서 접수시, 사업자등록기관은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본 조 1항에 따라 기업의 본사 소재지 이전 등록 신청서류를 충분히 갖추었을 경우,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본사 소재지 이전 변경등록을 시행해야 한다.

2. 본사 소재지를 다른 성·중앙직할시 등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은 본사 소재지 이전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과 본사 이전 예정지역의 사업자등록기관에 통보서를 전달한다.

통보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b) 기업의 본사 소재지 주소
- c) 기업 본사 이전 예정지 주소
- d) 기업의 법적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새로운 본사 예정 소재지의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한 통보서에는 수정 회사정관 사본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명단,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수임 대표자의 명단,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주주 명단,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명단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서면 결의안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본사 이전 예정지의 사업자등록기관은 본 조 2항에 근거해 합법적인 기업의 본사 소재지 이전 등록 신청서류가 모두 구비된 경우,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본사 소재지 이전을 등록하며, 기업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한다.

기업은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수령시, 새로운 본사 소재지의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이전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납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기업은 사업자등록한 이전 지역의 사업자등록기관에 신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발송해야 한다.

3. 기업의 본사 소재지 이전은 기업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제27조 기업 상호 변경등록

1. 기업 상호 변경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기업은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상기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기업의 현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b) 기업의 본사 소재지 주소

c) 변경 예정 상호

d) 기업의 법적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통보서 상에는 수정 회사정관 사본과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기업상호 변경에 대한 서면 결의안과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2. 사업자등록기관은 통보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만일 기업의 변경 예정 상호가 기업법의 제 31, 32, 33, 34조와 본 시행령 제3(III)장의 기업 상호 설정 관련 규정에 반하지 않는 경우,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기업의 상호 변경등록을 시행한다.

3. 기업의 상호를 변경하여도 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 제28조 무한책임사원 변경등록

합자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을 신규가입 받거나, 제명하거나 사원이 탈퇴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신규가입 또는 제명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합자회사는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상기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a) 회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b) 회사의 본사 소재지 주소

c) 신규, 제명, 탈퇴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d) 모든 무한책임사원 혹은 수임 무한책임사원의 서명 날인

사업자등록기관은 통보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회사가 무한책임사원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을 경우,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무한책임사원 변경등록을 시행한다.

### 제29조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법적대리인 변경등록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법적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기업은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상기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회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b) 회사의 본사 소재지 주소
- c) 기업의 현 법적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 d) 기업의 대체 예정 법적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 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 e)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의장,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장의 성명과 서명날인. 회사의 사원총회 의장, 대표이사 혹은 이사회장이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수감 중이거나, 정신병 또는 인식불가능 질환 등의 정신장애로 투병 중이거나, 통보서 서명을 거부한 경우, 회사의 법적대리인 변경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원총회의 사원, 회사 소유주 또는 이사회 **위원**의 서명을 날인한다.

통보서에는 수정 회사정관 사본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회의록, 서면결의안을 첨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기관은 통보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회사가 법적대리인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을 경우,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회사의 법적대리인 변경등록을 시행한다.

### 제30조 개인 기업주의 투자자본금 변경등록

개인기업은 등록 투자자본금의 증·감자를 결정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상기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a) 회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b) 기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서명날인, 거주주소
- c) 회사의 본사 소재지 주소
- d) 사업 분야 및 업종
- e) 등록된 투자자본금액, 변경 예정 투자자본금액, 투자자본금 변경일 및 방식

사업자등록기관은 통보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투자자본금 변경등록을 시행한다.

### 제31조 회사 정관자본금 변경등록

1. 회사는 정관자본금을 증·감하거나 출자자본비율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통보서를 송부한다.

- a) 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b)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 전체,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소유주,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 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혹은 회사설립결정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c)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각 사원,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주주의 출자지분비율,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각 수임 대표자의 위임된 보유비율

d) 등록된 법정자본금, 증자 혹은 감자된 예정 법정자본금, 추가 출자 기간 혹은 상환 일자, 상환 방식

e) 회사의 법적 대리인, 합자회사의 경우 수임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의장,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이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통보서에는 수정 회사정관 사본과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회의록과 서면 결의안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정자본금의 감자의 경우, 법정자본금 감자 결정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작성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첨부한다.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의 경우, 재무제표는 독립된 회계감사기관의 공증(공인)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기관은 통보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회사의 증자·감자를 시행한다.

2.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정자본금의 감자는 시행하지 않는다.

3. 법정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감자인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감자된 등록자본금이 법정자본금보다 낮지 않을 경우, 투자자본금 혹은 정관자본금의 감자를 등록한다.

### 제32조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변경등록

1.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변경은 창립주주가 청약주식 매입액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다른 창립주주 혹은 기타 출자자가 청약주식을 대신 인수하는 경우, 시행한다.

2. 창립주주 변경등록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행한다.

3. 창립주주 변경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다.

변경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회사는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본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회사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본사 소재지 주소
- 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창립주주의 성명,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국적, 서명날인, 출자지분
- 창립주주가 아닌 기타 출자자의 성명,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있을시),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국적, 서명날인, 보상출자 이후의 출자지분

- 회사의 법적대리인의 성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통보서와 함께 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창립주주 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회의록 사본과 결정서, 그리고 변경 이후 창립주주명단 및 수정 회사정관을 첨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기관은 통보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창립주주의 변경을 등록한다.

### 제33조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변경등록

1. 신규사원의 가입으로 인한 변경등록시, 변경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본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회사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본사 소재지 주소
- 신규사원이 조직일 경우, 조직명, 소재지 주소, 개인일 경우, 사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출자자본의 가치 및 출자지분, 출자일, 출자 자산종류, 신규사원이 출자할 각 자산의 수 및 가치
- 신규사원 가입 이후, 기존 사원의 변경된 출자지분
- 신규사원 가입 이후, 회사의 법정자본금
- 회사의 법적대리인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서명날인

통보서와 함께 신규사원 가입에 관한 사원총회의 회의록과 결의안, 수정 회사정관, 신규사원의 출자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신규사원이 외국 조직인 경우, 회사설립 허가서, 사업자등록증, 이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문서의 합법적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며, 신규사원이 외국 개인일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한다.

사업자등록기관은 통보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회사의 정관자본금의 변경을 등록한다.

2.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사원변경등록의 경우, 변경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는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본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회사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본사 소재지 주소
- 양도사원이 조직일 경우, 조직명, 소재지 주소, 개인일 경우, 사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양도사원의 출자자본지분
- 양수사원이 조직일 경우, 조직명, 소재지 주소, 개인일 경우, 사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양수사원의 출자자본지분, 양도 이후, 회사에 출자된 출자지분
- 양도 일자 (시간)
- 회사의 법적대리인, 양도인, 양수인의 성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통보서와 함께 수정 회사정관, 양도계약서, 양도 완료 증서, 회사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통보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사원변경을 등록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사원변경등록의 경우, 변경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는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본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회사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본사 소재지 주소
-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국적, 출자지분
-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국적, 출자지분
- 상속 일자(시기)
- 회사의 법적대리인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서명날인

통보서와 함께 수정 회사정관, 상속 증서의 합법적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은 통보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사원변경을 등록한다.

4. 기업법 제39조 3항에 따라 자본 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원으로 인한 사원변경등록의 경우, 변경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는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회사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본사 소재지 주소
- 자본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원이 조직일 경우, 조직명, 소재지 주소, 개인일 경우, 사원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출자지분
- 회사사원 또는 기타 출자자가 상기 사원을 대신하여 보상출자하기로 한 경우, 해당 출자자의 성명, 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있을시),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국적, 서명날인, 보상출자 이후의 출자지분
- 회사 법적대리인의 성명,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혹은 본 시행령 제18조가 규정한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통보서와 함께 수정 회사정관, 출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원 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회의록 사본과 결정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기관은 통보서 접수 후,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사원변경을 등록한다.

#### **제34조 법원의 결정에 의한 사업등록 내용 변경 등록 및 경영활동 등록**

법원의 결정에 의해 사업자등록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업은 내용변경을 등록한다. 사업자등록 내용 변경등록 서류에는 본 장에서 규정한 각종 서류 외에도 법적 효력을 가진 법원의 결정서와 판결문을 첨부해야 한다.

본 규정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지사, 대표사무소 활동 내용변경등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35조 기업의 제소권

본 시행령 제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기관이 사업자등록내용 보충·변경 통지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후, 기업이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내용 보충·변경등록을 할 수 없거나 사업자등록기관으로부터 사업자등록내용 보충·변경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본 시행령 제20조 2항에 따라 제소할 수 있다.

## 제6장 영세기업의 사업자 등록

### 제36조 영세기업

1. 한 명의 베트남국민 또는 한 조직, 가족 경영체가 기업주로서 한 장소에 한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영세기업은 1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회사직인이 없으며 경영활동에 대해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2. 농림어업, 염전을 생산하는 가족 경영체, 노점상 또는 저소득 서비스 업종은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다. 단, 조건부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성·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에 적용할 저소득의 기준을 규정하며, 이에 따라 규정치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는 가족 경영체 혹은 서비스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저소득의 기준은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소득세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1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기업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

### 제37조 사업자 등록권

1. 민사행위 능력을 충분히 갖춘 만 18세 이상의 베트남인과 영세기업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할 권리가 있다. 단, 미성년자, 민사행위 제한자 혹은 상실자, 형사 고발된 자, 수감자 혹은 경영·사업권을 박탈당한 자는 제외한다.

2. 본 조 1항에서 규정한 한 개인 또는 가족 경영체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영세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 제38조 영세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절차 및 수속

1. 개인 혹은 가족 경영체의 대표자는 영세기업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장을 설치할 해당 현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개인 혹은 가족 경영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합법적 사본을 첨부, 제출한다.

2. 영세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개인 또는 영세기업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날인, 거주지
- b) 사업장 주소
- c) 사업 분야 및 업종
- d) 경영 자본금

법률, 법령, 시행령이 규정한 직업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 및 업종의 경우, 본

조 1항에 명시한 문서 외에도, 개인 혹은 영세기업 대표자의 직업증명서 합법적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률, 법령, 시행령이 규정한 법정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 및 업종의 경우, 본 조 1항에 명시한 문서 외에도,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법정 자본금 확인서의 합법적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현급 사업자등록기관은 본 항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사업자등록 신청자에게 기타 문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3. 현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서류 접수 후, 접수확인서(영수증)를 발급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영세기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 a) 사업 금지 분야 및 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 분야 및 업종
- b) 현급 지역에서 이미 등록된 타 영세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영세기업의 등록 예정 상호
- c)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비용 완납

4.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현급 사업자등록기관은 영세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급 세무서와 관련기관에 전달한다.

5. 사업자등록서류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5일이 경과되었으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자등록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 받지 않았을 경우, 영세기업 등록자는 사업자등록서류를 접수한 해당 현급 사업자등록기관을 제소·진정할 수 있다. 제소장 혹은 진정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현급 사업자등록기관으로부터 답변이 없을 경우, 영세기업 등록자는 법률규정에 근거해 사업자등록서류를 제출한 해당 지역의 현급 인민위원회에 제소·진정하거나, 성급 행정법원에 소송할 권리가 있다.

### 제39조 사업 시점

영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경영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단, 조건부 사업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0조 영세기업의 사업장

노점상 등을 경영하는 영세기업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고정적인 장소를 선택해야만 한다. 본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나 현재 거주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장소, 또는 주로 사업을 하는 장소 또는 거래 등이 일어나는 장소를 말한다. 노점상 등을 경영하는 영세기업은 사업자등록기관에 등록된 장소 외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 세무서, 소재지와 경영활동지로 등록된 해당 지역의 시장관리기관에 상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제41조 사업자등록 내용변경 등록

1. 이미 등록된 사업자등록 내용을 변경할 경우, 영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현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상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30일이상 경영활동을 일시 정지할 경우, 영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현급 사업자등록기관과 직접관리 세무서에 상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단, 경영 일시 정지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3. 경영활동을 종료할 경우, 영세기업은 해당 현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함과 동시에 세금 및 기타 미이행 재정적 의무 등을 포함한 채무를 완제한다.

#### 제42조 영세기업 상호 설정

1. 영세기업은 개별 상호를 설정할 수 있다. 영세기업의 상호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 a) 첫째 요소 : 영세기업
- b) 둘째 요소 : 영세기업의 개별 상호

영세기업의 상호는 베트남어로 기재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며, 숫자 또는 기호가 첨부될 수 있다.

2. 만약 영세기업이 사업 분야 및 업종을 등록하였거나, 투자형식에 따라 투자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 분야 및 업종, 투자형식, 그리고 기타 보조요소를 영세기업의 상호에 이용할 수 있다.

3. 영세기업의 상호로 베트남 역사, 문화, 도덕, 그리고 민족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단어 나 기호를 사용할 수 없다.

4. 영세기업의 상호는 현급 범위 내에서 이미 등록된 기타 영세기업의 상호와 중복되어선 안된다.

## 제7장 사업 일시정지 절차·수속,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및 회수

#### 제43조 사업 일시정지

활동을 일시 정지하는 기업은 당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성급 사업자등록기관 과 세무서에 사업활동 정지 최소 10일 이전에 서면으로 본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2. 기업의 본사 소재지 주소
- 3. 사업 분야 및 업종

4. 활동 정지 기간, 정지일과 재개일, 통보서에 기재될 일시 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활동 정지일로부터 1년 후, 기업이 경영활동을 계속하여 정지해야 할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에 본 사실을 계속하여 통보해야 한다. 경영활동 일시정지 총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5. 활동 정지 사유

6. 기업의 법적 대리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기타 공인된 개인증명서 번호, 그리고 서명 날인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경영활동 정지 결의안 및 회의록을 통보서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기관은 통보서를 접수하고 기업관리장부에 본 사실을 기록한다.

#### 제44조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1.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한다.

a)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분실 지역 공안기관,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분실신고하며, 신문·방송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해 연속 3번 공고(공시)한다.

b) 공고일로부터 30일 이후, 만일 기업이 분실한 사업자등록증을 찾지 못하면, 기업은 당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 투자계획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분실신고에 관한 공안기관의 확인서
-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분실 공고에 관한 신문·방송사의 확인서 또는 상기 사실을 공고중인 신문

2. 사업자등록증이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불에 타는 등 훼손되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불에 타는 등 훼손되었을 경우,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 투자계획부가 규정한 양식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이 찢어지거나 해진 경우, 훼손된 사업자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이 불에 탄 경우, 훼손된 사업자등록증의 합법적 사본과 화재사고에 관한 공안기관의 확인서

3. 상기 1, 2항의 경우에 대해 기업의 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접수 확인증(영수증)을 발부한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한다. 재발급된 사업자등록번호는 분실되거나 훼손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번호를 그대로 따른다. 단, 재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에 재발급 사실을 정확히 기재한다.

4.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불에 타는 등 훼손된 지사, 대표사무소의 활동등록 증명서에 관한 재발급은 본 조 1, 2, 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 제45조 사업자등록증 회수 절차 및 수속

1. 사업자등록기관이 사업자등록서류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임을 적발한 경우.

만약 사업자등록기관이 사업자등록서류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임을 적발한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의 위반행위를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서를 **발행·공포**한다.

만약 사업자등록기관이 사업자등록서류에 기재한 사실이 허위임을 적발한 경우, 우선 사업자등록위반행위에 대해 담당기관에 행정위반 처벌을 요청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한다.

2. 기업법 제13조에 따라 기업설립 및 경영 금지대상에 속한 개인 기업주,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a) 개인기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의 위반행위를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서를 발행·공포한다.

b)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설립 및 경영 금지 대상 속하는 사원 또는 주주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원 및 주주의 변경등록을 시행한다. 상기 기간 이후에도, 기업이 사원 또는 주주 변경등록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에 위반행위 통보서를 송부하고,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서를 발행·공포한다.

c) 합자회사의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은 기업 설립 금지 대상에 속하는 무한책임사원의 변경을 회사에 요구하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무한책임사원 변경등록을 시행한다. 상기 기간 이후에도 기업이 무한책임사원의 변경등록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에 위반행위 통보서를 송부하고,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서를 발행·공포한다.

3. 기업법 제165조 2항 c, d, e를 위반한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서면으로 위반행위를 통보하고, 본 기관 소재지에 법적대리인의 출두를 요구한다. 출두 약속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후까지 해당 법적대리인이 출두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서를 발행한다.

4. 기업이 기업법 제165조 2항 g에 명시한 것과 같이 서면으로 보고서 제출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3조 1항 c에 따라 보고서를 사업등록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 제출 요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은 본 기관 소재지에 법적대리인의 출두를 요구한다. 출두 약속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후까지 해당 법적대리인이 출두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서를 발행한다.

5. 기업이 금지 사업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하는 것을 사업자등록기관이 적발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기관은 위반행위에 관한 통보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서를 발행·공포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사실을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국가관리기관에 통보한다.

6.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서를 수령한 후 기업은 기업법 158조에 따라 해산한다. 사업자등록증 회수 결정일로부터 6개월 후, 기업의 해산서류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업은 해산을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자등록기업 명부에서 기업 상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적대리인과 전 사원, 1인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주식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전 사원,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해산된 기업이 변제하지 않은 채무(있다면), 미납 세금 또는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 제46조 영세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회수

영세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 회수된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60일 동안 경영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자 등록한 현금 사업자등록기관에 60일 동안 통보없이 경영활동을 일시 정지한 경우
3. 다른 군·현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4. 금지 사업 분야 및 업종을 경영한 경우
5. 그 외 투자계획부의 안내에 따른 기타 경우

## 제8장 부 직

#### **제47조 위반 처리 및 포상**

1. 해당 국가공무원 및 공직자는 기업 설립자에게 본 시행령과 부합되는 사업자등록 조건, 수속절차를 첨가하고,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사업자 등록을 해결하거나 사업자등록 내용 검사·검토시, 조직 및 개인 등의 민원인을 불편하게 하고, 트집을 잡거나, 위압적, 권위적인 태도로 민원인을 대한 국가공무원은 법률규정에 따라 기율처리한다.

2. 조건이 충족된 조직 및 개인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않은 조직 및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국가공무원 및 공직자는 위반 정도 및 성격에 따라 법률규정에 따라 기율처리되거나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사업자등록 업무를 올바르게 시행하고 완성한 사업자등록기관과 사업자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포상된다.

#### **제48조 시행효력**

1. 본 시행령은 200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본 시행령과 위배되는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2. 본 시행령은 2004년 4월 2일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시행령(문서번호 109/2004/ND-CP)을 대체한다.

#### **제49조 시행령 시행안내 책임**

각 부 장관, 부처 동급 기관장, 정부 산하기관장,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본 시행령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투자계획부 장관은 본 시행령의 시행을 안내할 책임이 있다.

정부를 대신하여

수 상  
판 반 카이